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태국 · 인도네시아 · 러시아



Contents

태국

제1장 시장 개요	5
제2장 통관 제도	14
제3장 관세 제도	47
제4장 검역 제도	70
제5장 라벨링 제도	79
제6장 통관문제사례	92
제7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97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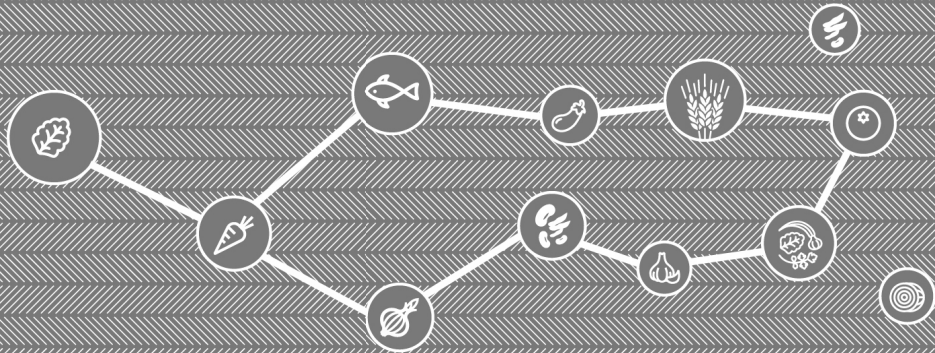
제1장 시장 개요	145
제2장 통관 제도	153
제3장 검역 제도	197
제4장 관세 제도	203
제5장 라벨링 제도	207

러시아

제1장 수출 현안	219
제2장 통관 제도	225
제3장 검역 제도	245
제4장 관세 제도	334
제5장 라벨링 제도	347
제6장 통관문제사례	360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태국



- 제1장 시장 개요
- 제2장 통관 제도
- 제3장 관세 제도
- 제4장 검역 제도
- 제5장 라벨링 제도
- 제6장 통관문제사례
- 제7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태 국

Contents

제1장 시장 개요	5
제1절 일반 개황	5
제2절 경제 개황	7
제3절 농수산 및 식품 산업 동향	8
제4절 태국의 자유 무역 협정	11
제2장 통관 제도	14
제1절 일반사항	14
제2절 수입식품 신고제도(LPI)	25
제3절 원산지 규정	27
제4절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AEO) 제도	35
제5절 수입금지 품목	40
제6절 통관 시 유의사항	41
제7절 통관관련 연락처	46
제3장 관세 제도	47
제1절 관세정책	47
제2절 관세제도	54
제3절 특별소비세	61
제4장 검역 제도	70
제1절 식물검역 규정	70
제2절 동물검역 규정	74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태 국

Contents

제5장 라벨링 제도	79
제1절 관련법 및 규정	79
제2절 식품 분류	80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83
제4절 라벨링 승인 절차	91
제6장 통관문제사례	92
제1절 통관 주의사항	92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94
제7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97
제1절 수출 애로 해소 사례 및 현지화 사업	97
제2절 태국 내 참고 홈페이지 및 연락처	98
제3절 참고자료(잔류농약 허용기준)	99
제4절 참고자료(수입금지 품목)	124
제5절 자료출처	139

제 1 장

시장 개요

▶ 제1절 ▶ 일반 개황

- 태국의 정식 명칭은 타이 왕국(The Kingdom of Thailand)이며,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도는 방콕(Bangkok) 이다.
 - 태국의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6,886만 명으로, 수도인 방콕에 약 92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가 사회 및 생활문화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 태국의 국토 면적은 513,120km²로 남한의 5배, 세계 51위 수준이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다.
 - 태국은 열대 몬순 기후로 건기(11월 초~2월 말), 여름(3월 초~5월 말), 우기(6월 초~10월 말)의 3계절로 구분된다.
 - 태국의 공용어는 타이어(語)이며, 화폐 단위는 바트(Baht)로 1달러는 2017년 10월 20일 기준으로 33.17바트이다.
 - 2017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바트는 30.5원이다.
- 태국은 1932년 6월 혁명 이래 입헌군주제를 근거로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이며 정치 형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상·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 국정의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왕은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상징적 국가원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 태국의 주요 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 노동인구의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주축이 되는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

○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식품, 철강, 화학 등이다.

■ 태국의 경쟁력으로는 동남아 중심의 전략적 위치, 사회간접자본 발달 및 안정된 사업환경 등을 들 수 있다.

○ 반면,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정치 불안정, 중진국 함정 및 자연재해가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 태국은 UN, WTO, APEC 등의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간 협력 강화로 역할 증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역내로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견지하고 있다.

○ ASEAN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생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해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기업 또한, 산업별로 ASEAN 역내 국가 업체 인수, 시장진출 등을 진행하며 역내 교류와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 ASEAN 역내 인접 국가들 및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아시아지역으로의 교역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대표적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경제 개황

- ▣ 태국의 2016년 GDP는 4,097억 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하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부터 연평균 5%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됐다.

 -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11년 하반기 대규모 홍수사태를 겪으면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 ▣ 태국의 바트화는 2013년 이후 지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대내적으로는 반정부시위 등 정치적 불안,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중단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이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 태국의 2016년 수출과 수입 규모는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2016년 수출액은 2,142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
 - 2016년 수입액은 1,784억 달러로 2013년 대비 7% 이상 감소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원자재 및 중간재로 전체 수입액의 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국의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2014	2015	2016
명목 GDP(US\$ 십억)	395.1	399.2	407.1
경제성장률(%)	0.8	2.8	3.2
1인당 GDP(달러)	5,889	5,742	5,662
소비자 물가상승률(%)	1.9	-0.9	0.2
실업률(%)	0.8	0.9	1.0
수출(10억 달러)	226.7	214.1	214.1
수입(10억 달러)	209.4	187.2	178.4
무역수지(10억 달러)	17.3	26.9	35.8
외환보유(10억 달러)	157.1	156.5	171.9

자료: IMF,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 태국 중앙은행, 태국 투자청, World Bank(2017년 6월 확인 기준)

제3절

농수산 및 식품 산업 동향

1. 산업 개요

- ❑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 세계의 부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태국에는 식품공장이 9,000여 개, 식품연구소가 150개 있으며, 태국은 세계 13위의 할랄 제품 생산 국가이다.
- ❑ 농업은 2016년 기준 태국 GDP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3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 태국의 농수산업과 식품 산업은 다양화 및 전문화돼 있어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태국의 수출액은 240억 달러에 달했다. 아세안 최대 식품수출국이자 세계 12위 식품 수출 대국이다.

2. 시장 동향

- ❑ 태국은 2015년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및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쌀은 가장 중요한 작물로, 태국은 지난 30년 동안 쌀 수출국 세계 1위였으나 최근 인도와 1, 2위 다툼을 하고 있다.
- ❑ 2014년에는 1,097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980만 톤을 수출, 2016년에는 전년 대비 0.9%로 다소 상승한 988만 톤의 쌀이 수출되었다.
- ❑ 쌀 이외 주요 농산물은 고무, 타피오카(카사바), 설탕 등이 있으며, 농업 외에 수산물과 축산업도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 ❑ 가공식품인 참치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냉동 새우 등의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닭과 돼지 등 축산업이 발달해서 관련 식품 산업도 아세안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태국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 현황

(단위: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3분기	2017년 3분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감율
농업	17,973	16,057	15,040	10,832	13,277	22.5
- 고무	6,022	5,057	4,444	3,124	4,558	45.9
- 쌀	5,439	4,613	4,401	3,091	3,578	15.7
- 타피오카	2,813	2,794	2,256	1,659	1,484	-10.5
- 과일	1,205	1,238	1,479	1,105	1,969	53.5
- 화훼	1,575	1,370	1,459	1,115	1,223	9.6
축산업	920	985	1,001	735	735	0
수산업	2,153	1,783	2,055	1,472	1,595	8.3
- 새우(갑각류)	966	784	1,089	771	835	8.3
- 생선	660	555	565	408	405	-0.8
- 오징어, 문어	365	303	294	207	272	31.4
농수산물	27,120	25,647	25,766	19,239	21,435	11.1
- 설탕	2,792	2,737	2,373	2,009	2,230	11.0
- 생선가공품	3,060	2,658	2,566	1,887	1,911	1.2
- 새우(갑각류)가공품	1,223	1,054	1,038	704	785	11.5
- 육류가공품	2,074	2,152	2,211	1,617	1,780	10.1
- 파인애플 캔	509	573	594	453	458	1.1

자료: 태국 중앙은행 수출통계

태국은 수출액 기준으로 천연고무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쌀, 생선가공품, 타피오카(카사바), 설탕, 육류가공품 등의 순이다.

3. 시장 전망

-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과도정부가 전임 잉락 정부의 고가 구매 정책을 중단하고, 고무, 쌀 등 태국 주요 수출품의 국제시세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했다.
- 또한, 2014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농업 생산이 줄어든 가운데 2015년에는 2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중국의 고무 및 카사바 수요 감소로 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6년 3분기부터 가뭄이 해갈되면서 농산물 생산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로 2016년 농가소득은 1.4% 상승했다.
- 태국 정부는 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동 분야를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10대 집중육성산업 중 하나로 지정했고, 태국을 글로벌 식품 연구개발 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특히 태국은 기능성 식품 및 건강식품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태국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2107년		
			1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명목 농가소득	-10.0	1.4	-9.0	19.7	29.2	30.9
농업생산	-4.4	-2.1	-4.0	6.7	19.5	27.4
농산물 가격	-5.9	3.6	-5.2	12.1	8.1	2.8

주: 농가소득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자료: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calculated by Bank of Thailand(2017년 6월 확인 기준)

제4절 태국의 자유 무역 협정

1. 태국의 FTA 정책

- 태국 정부는 FTA 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FTA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양질의 제품을 수입해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000년대 탁신 정부 이후 과거 소규모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하던 것에서 탈피해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과감히 추진했었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블록화를 통한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 축에서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2. 태국의 국가별 FTA 추진 동향

- 국제무역 보호 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ASEAN 국가 간 경제 협력을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AFTA를 체결하였다.
 - 태국은 1967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처음 ASEAN을 설립한 회원국이다.
 - ASEAN 회원국은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며 ASEAN의 본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해 있다.
- 태국은 ASEAN의 회원국으로 한-ASEAN FTA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에 상품협정이 발효되었다.
 - 일반품목군의 경우 우리나라는 2010년 1월까지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고, ASEAN 6개국은 2012년 1월까지, 베트남은 2018년 1월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20년 1월까지 모든 관세 철폐 예정이다.

-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 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 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되어 관세 철폐가 진행 중이다.

▣ 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모두 12개로, 이 가운데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 등과 개별국가로 FTA를 맺었고, ASEAN의 회원국으로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벙골만 국가 등 6개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다.

▣ 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자유무역협정	서명 시기	발효 시기	특 징
Thailand-Peru FTA	2005.11.19.	2011.12.31.	전체 상품의 70%를 커버하는 5,962개 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 관세 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NZCEP)	2005.4.19.	2005.6.1.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면제
Thailand-Australia FTA	2004.7.5.	2005.1.1.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면제
Thailand-India FTA	2003.10.9.	2004.9.1.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Thailand-Chile Free Trade Agreement	2013.10.4.	2015.11.5.	칠레와 태국 모두 전체 상품의 90%를 즉시 관세인하 품목으로 설정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TEPA)	2007.4.3.	2007.11.1.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2009.2.27.	2010.3.12.	태국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8.80% 관세 면제
ASEAN-China FTA	2004.11.29.	2005.7.20.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ASEAN-India FTA	2009.8.13.	2010.1.1.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2008.4.11.	2009.6.1.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ASEAN-Korea FTA	2009.2.27.	2010.1.1.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2007.8.1.	2012.7.1. (fast track) 2013.7.1. (normal track)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등 벙골만 지역 국가들과의 FTA
ASEAN Free Trade Area (AFTA)	1992.1.28.	2003.1.1.	2010년부터 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단 coffee, potato, cut flower, coconut 등 4개 민감품목은 5% 저율 관세 부과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국가정보-태국

3. 한-태 FTA 현황

■ 한-태 FTA 협정 체결 경과

-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했으나, 아세안 국가 중 태국만이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했다.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 태국의 후아한에서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에 양국 대표가 서명했다.
- 이로 인해 2010년 1월부터 한-태 간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이 동시에 발효됐으며, 상품협정은 2010년 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 KOTRA 방콕 무역관과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한-ASEAN FTA 설명회를 2009년 3월 2일 방콕에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약 150명의 태국 진출 한국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서 한-태 FTA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 한편, 2009년 6월 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 한-아세안 FTA 국가별·협정별 발효년도 ■

국가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개정의정서
대한민국	'07년 6월 1일	'09년 5월 1일	'09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태국	'10년 1월 1일	'10년 1월 1일	'09년 9월 1일	'16년 1월 1일

자료: FTA.go.kr(2017년 4월 기준)

■ 원산지 증명서(AK Form)

- 태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AK Form) 제출이 필요하다.
- 현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HS code에 따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세변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발급 절차는 원산지 규정 내용 확인

제 2 장

통관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수입 통관 절차

☐ “태국 내로 물품의 수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태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입농산물은 선적화물이 통관 항에 도착하고 타이 관세국(Thai Customs Department)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태국 내 반입이 불가하다.
- ② 관세국(Customs Department)은 수입업자에게 선적물 도착 통보를 하지 않으며, 도착 여부는 운송업자가 통보한다. 수입업자는 선적물 도착 여부를 바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 ③ 해상 수입 통관을 위해 수입업자는 반드시 통관서류와 함께 송장, 포장 리스트, 적재 영수증(bill) 사본, 수입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세관(Customshouse)에 제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를 지급해야 한다.
- ④ 총 관세가 확정되지 않거나 긴급방출이 요구되는 경우, 보증금(Deposit)을 낼 수 있다. 관련 서류는 반드시 창고로 보내 검열관이 통관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은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관된다.
- ⑤ 항만공사(Port Authority)에서 선적물의 크기나 총 중량을 기준으로 양륙비와 보관비를 산정한다.

- ⑥ 양륙비와 보관비를 지급한 후, 수입업자가 반드시 영수증과 방출 및 출하 주문서(Order)를 제출하고 창고 증권(Warehouse Receipt)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승인된다. 세관(Customs) 방출 과정은 보통 2-3일 걸린다.
- ⑦ 폐기되거나 반입 불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국(Customs Department)의 법무부서(Legal Affairs Bureau)에 상고할 수 있다.
- *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데이터 교환) 의무 전송을 시행함에 따라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위해 온라인 세관(e-customs)을 통해 입항보고 및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데이터를 미전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이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 수입신고 : 관세청과 연계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다.
 - 관련 서류 제출 :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 및 필요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 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관세 등 제세 납부 : 관련 세금 또는 예치보증금을 직접 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물품검사 및 반출 :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 받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 검사직원은 당해 수입 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검사한다. 검사한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물품 반출을 허락한다.
- 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작업, 보세창고에의 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 수출 가공지역으로의 반·출입 등 통관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통관 업무는 하역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세관(항만, 지역 또는 공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수입신고서의 전자 제출

■ 수입자는 관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이를 관련법과 적하목록 등 참조 파일과 대조하여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을 검증한 후, 승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1차 정확성 검증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에러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자료가 수정된 수입신고서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다시 전송해야 한다.
-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14자리로된 전자신고 서류 번호를 발급하며 “세금 및 관세 납부 준비 완료” 상태로 전환한다. 여기에서 유형을 나타내는 한 자리 숫자 “0”은 수입신고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자 자료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미리 전송한 경우

- 선박이 일정대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참조 파일과 비교해서 해당 자료의 1차 정확성 검증작업을 시행하며, 추가로 관련법에 따른 승인/허가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선박 도착보고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 선박 도착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적하목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적하목록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자체조사를 하고, 선박 대리인에게 적하목록을 수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 신고서와 일치하는 정확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지 않으며 수정자료 접수 후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수입신고 번호를 발급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이 수입신고번호를 발급하기 전에는, 수입자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수입신고 수정 자료를 전송하여 자료를 수정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번호가 부여된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 서비스부서에 수정 신청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서류를 포함한 관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며 공휴일이나 근무 시간 이후의 업무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수입 신고는 거래 건당 200바트이다.

【 전자수입신고서류번호의 숫자 별 의미 】

X¹ X² DD³ X⁴ YY⁵ MM⁶ NNNNN⁷

1. A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A9DD-1-YYMM-99999]를 초과하면 다음 알파벳(B,C) 등으로 변경
2. 한자리(1-9) 0에서 시작해서 수입신고 번호가 9999를 초과할 때 다음숫자(1,2)로 변경
3. 일자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4. 서류유형을 나타내는 코드
 - 0=수입신고, 1=수출신고, 2=월경신고, 3=화물 선취득 요령, 4=사전 하역 신청, 5=화물 수입신고, 6=특별 월경 신고, 7=특별 원경 수입신고, 8=환적신고
 - A=내국 이동 수입신고, B=국내 이전 수출신고, C=무역 자유지역 이전된 수입신고, D=무역 자유지역으로 이전한 수입신고
5. 연도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
6. 월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
7. 0001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

3. 관세 등 제세 납부

- 수입자는 관세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 은행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관세청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한다.
 -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한다.
 - 수입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 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 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한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 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반입 물품의 검사 및 양도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해상 적하목록, 항공 적하목록, 육상 적하목록을 입력내용과 대조해서 수입신고 및 진행 상황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청의 리스크 관리원칙에 따라 위험도(프로필)를 확인하게 된다. 신청인이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물품의 검사명령 또는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면제”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관세, 관세액 및 물품검사 면제 대상”(그린 라인)임을 입력하고, 수입신고 현황을 “수입신고필 인도준비 완료”로 자동 전환한다.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세관창고에 해당 물품을 수입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서 세관 관할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
 - 수입신고서가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액 및 물품검사 대상”(레드 라인)임을 입력하고, 세관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자료를 보냄으로써, 신청인이 세관창고에서 물품검사를 받도록 통보한다.

5. 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절차

- 검사 면제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항공 선하증권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수입자가 단일창구통관시스템상에서 통관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 서류(관련법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서류, 관련 면허/등록/허가를 입증하는 서류 등)를 세관 서비스부서에 제출한 후 통관절차 종료에 따라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세관 서비스부서는 해당 서류의 수령 사실을 기록하고 검사공무원이 세관 컴퓨터 시스템의 수입신고에 따라 1차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접수한 서류가 수입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안 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관세율, 과세액 및 물품 검사 대상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내륙 컨테이너항만에서 물품 검사받을 준비를 한다.
- 물품검사는 관세율 및 과세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관세율, 과세액 및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검사 신청인에게 물품의 양도를 통지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세관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한다.

▣ 관세율, 과세액, 물품검사 대상에 대한 인도 전 검사

-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입신고서 목록에 있는 물품으로서 리스크 관리대상인 물품은 관세 및 관련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 사유 등으로 인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관세율 및 과세액에 대한 검사를 희망한 경우
 - ① 종전 수입한 물품과 동일유형 및 범주의 물품에 대해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②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 등 제 세액이 높게 책정되어, 동 세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입력한 경우
- 관세율, 과세액,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설명자료, 서류 또는 전자자료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과세액의 산정자료로 제출된 서류나 신고서 내용의 진위 및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수입신고서는 보장된 처리 완료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세관 공무원은 수입자에게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수입자는 상기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한 해명,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과세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고가액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 물품은 ‘과세액 산정방식 1=수입 물품의 구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과세액 심사를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추가 설명, 보완 및 증빙자료 등을 접수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당 물품의 과세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관 공무원은 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의 과세액 산정을 완료해야 한다.



- 신고가액이 '과세액 산정방식 1=수입 물품의 구매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관세법 B.E. 2469 규정에 따른 관세청 132호 (B.E.2543) 및 그 수정 145호 (B.E. 2547) 2장에 명시된 대로 신고가액이 구매가액인 경우, 신고가격을 해당 수입 물품의 구매가액으로 간주한다.
- 수입자가 신고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경우
 - ① 수입자는 '과세액 산정방식 1 = 수입 물품의 구매가액'에 따라 신고 가액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세관 공무원에 통보한다.
 - ② 세관 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서 항목별 증가액을 기록하고, 세관 서비스부 서장 및 책임자에게 방식 1에 따라 과태료 없이 과세액 증액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과세액 산정방식 1 = 수입 물품의 구매가액'에 따른 과세액 범주에 따라 추가로 내야 될 세액과 관세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④ 수입자는 수입항,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추가 세액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세액 및 관세가 납부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한다."
- 세관 공무원이 수입 물품 신고가액의 진위 및 정확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유 등으로 수입 물품의 가액을 '과세액 산정방식 1 = 수입 물품의 구매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과세액 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늦출 수 있는 사유가 된다.
 - ① 수입자가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 세액의 최고금액까지 추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세관은 당해 물품의 견본, 사진, 또는 설명 자료 등을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부여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 ② 세관 공무원은 재 사정된 과세액과 신고품목 통관에 사용된 예치 보증금의 산출근거 등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해당 재평가 가액을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신청인에게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하는데 요구되는(추가 보증금 예치에 필요한) 세금 및 관세액을 통보한다.
 - ④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차후 물품반출을 위한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물품액의 증가에 대한 자료를 '케이스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동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항 항만, 지역, 공항의 사건조사 담당 공무원은 세금 및 관세 벌과금, 부가세 벌과금 및 기타 과태료 부과 등 조사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며, 수입자가 예치금을 낸 후에는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한다.
 - ⑤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신청인에게 관세 등 제 세액과 과태료 등을 통지하며, 신청인은 금융 부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 ⑥ 수입자는 물품의 반입 항만, 지역 또는 공항의 금융부서에 세금 및 관세 보증금과 부가세 및 기타 과태료 등 부족분을 추가로 예치한다. 추가 보증금을 예치한 후에는 동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할 수 있으며,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검사 결과 기록이 가능한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한다.
- ⑦ 세관 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하고, 사안에 따라 향후 관세율 산정에 필요한 견본, 사진 및 기타 증거 자료 등을 채취한 후, 물품 반출을 허가한다.
- ⑧ 세관 공무원이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 자료를 케이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사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사결과 관세법 등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된 경우

- 관세 EH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유죄로 판정되어 물품반출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하고 조기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 ① 세관 공무원은 수입신고서의 신고가액 등을 검토하여 관세율 및 제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서비스 부서장이나 책임자에게 산정세액이 승인을 요청한다.
 - ②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신고서 정보를 물품이 반입된 항만이나 공항의 법무 부서에 통보하여 사건 파일을 작성토록 하고, 물품의 조기 반출 전에는 과태료, 부가세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가 차질 없이 예치될 수 있도록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 단, 관련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 물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외한다.
 - ③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로 예치해야 할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④ 수입자가 물품의 조기 반출을 위해 추가예치금을 예치하게 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납부 영수증 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서 상황을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로 자동 전환 시킴
 - ⑤ 세관 공무원은 향후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물품의 사진, 또는 기타 증거자료 등을 채취하고 난 다음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 ⑥ 검사결과에 따라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 정보를 ‘케이스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6. 창고에서 물품 인수

- ❑ 수입자는 수입 물품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된 수입신고서 상의 정보와 일치 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 ❑ 수입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창고에서 물품이 인출되기 전에 세관 서비스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수정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 ❑ 세관 서비스부서가 이를 수정하게 한 경우, 수입자는 자신이 이 수정작업 등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7.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

- ❑ 통관절차 완료 후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이미 제출한 정보와 당해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액 또는 관세율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여긴다.
- ❑ 수입 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상세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긴다.
- ❑ 수입 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한 후 면세지역이나 수출지역으로 이송할 때 역시, 당해 수입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자세한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긴다.

8. 보세창고에서의 수행절차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 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 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 조치하도록 한다.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 공무원은 물품 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관세율, 과세액 및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물품 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 번호를 창고 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 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터 공무원을 자동으로 배정하여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 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 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수 있게 한다.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는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9.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수입신고 후, 검사대상 물품을 공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 수입신고서가 검사면제 대상인 경우도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는 여타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 지시가 있는 경우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에게 “관세율, 가격 등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게 통지하고 창고에 대상 물품을 준비하도록 관련 자료를 전송한다.
 - 창고는 당해 물품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창고는 검사를 위해 수입자에 해당 물품을 인도한 후 이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한다.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가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과세액 확정 후 물품을 반출토록 지시한다.
 - 수입항만이나 공항, 면제지역, 수출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무선식별태그(RFID)가 도입·운영 되는 경우, 출입 차량은 코드확인을 위해 RFID 판독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10. 수입자의 자료 수정

- ❑ B/L 일련번호가 부착된 인도 지시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물품이 수입되는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관세청에서 피드백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가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는, 이 사실을 물품을 수입한 항만이나 공항의 세관에 통보하여 사안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검사 부서에 당해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 물품검사와 반출이 완료된 후 수입신고서 상의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공항만 세관이나 검사장소 또는 반출지 세관의 관리 부서에 별도 수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수입식품 신고제도(LPI)

1. 제도현황

■ 2014년 9월부터 수입식품 신고제도(License Per Invoice, LPI)시행.

- 이는 수입업체가 태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처(Thailand'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태국 FDA는 수입식품 신고제도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세관 시스템(e-customs)을 활용하여 물품 세관등록의 전산화 및 합법적 세관 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 수입식품 신고절차

- ①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 서류 제출
- ② 식약청 승인 후 수입 유통 식품 식별번호 발급
- ③ 선적 진행 및 선적서류정보 확인
- ④ 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신고
- ⑤ 선적정보를 수입식품 신고(LPI) 전자시스템에 입력
- ⑥ 선적서류 통관업체 제출
- ⑦ 수입 진행

■ 초콜릿 가공품, 인스턴트커피와 차, 토마토케첩, 아이스크림, 생수, 식초 등 식품 59개 종목에 적용

■ 신청방법

- ① <http://igt.fda.moph.go.th> 들어감
- ② LPI다운로드
- ③ 셋업
- ④ 프로그램 접속 / username/password->tfda에서 받아야 한다.
- ⑤ CI, PL, Shelf life, ISO/HAPPC/GMP IMPORT PERMIT, FDA PERMIT 첨부, FDA LPI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 유의사항

- 통상적으로 등록 후 4~7일 후에 승인 코드가 부여되며 승인코드가 없으면 통관 진행을 못한다.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있더라도 이 코드가 없으면 통관할 수 없다. 제조업체에서 서류 제출 느리거나 미비하거나 하면 통관이 지연된다.
- 영문사이트가 없고, 태국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틀리면 모두 거절된다.
- 선적이 들어오고 서류를 모두 충족해도 승인코드가 없으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는다.
- 시스템에 등록해도 되고 서류를 준비해서 FDA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1. 원산지 판정의 일반 원칙

▣ 수출국 지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건

- 식물 및 식물이 성장한 후 식물로부터 수확되거나 모인 산물
- 해당 지역에서 키우거나 태어난 동물
- 해당 지역에서 키우거나 태어난 동물에서 얻어진 물건
- 광물 등 천연자원
-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서 잡은 수산물 등

▣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를 고려해 본선인도(FOB) 금액의 40%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제조,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Build-Up Method(집적법) : $RVC = VOM/FOB \times 100\%$
 ※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원료의 가격, 직접노동비, 직접경상비, 운송비, 이익을 포함한 가치
- Build-Down Method(공제법) : $RVC = (FOB-VNM)/FOB \times 100\%$
 ※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비원산지재료가치) : 원료의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또는 해당 지역에서 원료에 대해 최초로 지급한 가격

▣ 사용된 원재료의 HS코드와 다른 HS코드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앞자리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한다.)

2.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인 AK Form을 발급받아야 함.

■ 발급 형태

-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태국의 경우 상무부이며, 한국은 세관(47개)과 상공회의소(67개)에서 실시한다.

■ 발급 시기

- 수출신고 수리 이후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적 전, 선적일 포함 영업일 3일 이내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 발급받는 경우 '소급발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 발급 기관

- 상공회의소의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http://cert.korcham.net>) 발급 가능하다.(유료회원: 무료 / 무료회원: 건당 7,000원)
- 세관의 경우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무료)

■ 발급 절차

- 1) 수출 물품 HS code 확인
- 2) FTA 세율 절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
-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4)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심사/발급
- 5) FTA 관련 자료보관(FTA 검증대비)

■ 신청서류

- 수출 물품, 거래 관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1)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서 -> 전산입력
 - 2) 수출 신고필증
 - 3) 인보이스, 패키징리스트,

- 4) 원산지(포괄)확인서
- 5) FTA BOM, 제조공정도 등
- 6) 원재료 단가(구매)입증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7) 역내산 원재료 입증서류 및 기타 서류

▣ 발급 시 주의 사항

- 심사 승인 이후 FTA C/O를 인쇄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 양면인쇄
 - 최초 1부만 인쇄할 수 있다.
 - 컬러인쇄

▣ 한-아세안 FTA 인증수출자 제도

- AK FORM은 원칙적으로 수출 건 별/수출 물품 별로 심사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심사 및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 기타

- 제3국 송장을 발행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제3자의 회사명, 국적 등을 기재한다.
- HS code는 수입국의 HS code가 우선하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 파악이 중요하며, 참고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므로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원산지 효력을 인정한다.

3.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절차



Step 01 수출 물품 HS코드 확인

- 통관 취급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고, 수입국에서도 같은 HS코드(6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HS코드는 6단위까지 국제공통 적용이므로 협정국가 간에 동일한 정보의 HS코드를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마다 물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 6단위 분류내용이 다른 경우, 수출자는 수출 물품의 HS 분류가 정확한지 세관의 수출 물품 품목분류 심사과정을 통해 재확인하고, 바이어로부터도 수입국 세관당국의 품목판정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입국 기준 HS코드를 적용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Step 02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 확인

- 상대국 양허품목인지 확인하고, 실행세율과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유리한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한다. 수출대상품목이 이미 무관세 품목이거나 기본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은 각 협정별 부속서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별표에서 규정되어 있다.

Step 03 원산지 입증자료 준비

- 공통 준비서류

-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 수출 신고필증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 원산지소명서 1부 (신청시스템 입력 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 원산지(포괄)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 : 생산자 ≠ 수출자

○ 원산지 기준별 원산지 입증서류

원산지 기준	원산지입증 제출서류
완전생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포괄)확인서 ▶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세번(HS코드) 변경기준 및 특정 공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설명서 (원산지소명서의 제조공정이 불충분한 경우) ▶ 원재료사용리스트 (원재료가 5개 이상인 경우 작성 / 상품명, HS코드, 원산지, 투입비중(%), 원재료공급자/생산자 정보 포함) ▶ 원재료투입입증서류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 1종)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서(BOM) ▶ 원재료 가격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중 택1종) ▶ 역내산 및 한국산원재료입증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 1종)
조합기준 (복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준에 따른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 ▶ 예) CTH+RVC 35%인 경우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입증자료 모두 제출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협정별로 정해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신청하거나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
- 각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은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원산지 증명서 발행 주체
 - 한-아세안, 한-인도, 한-싱가포르, 한-페루 : 상공회의소 및 세관
 -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 수출기업

■ 원산지 검증/실사 대비

- 원산지검증 및 실사에 대비하여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 관련 당사자는 아래의 서류를 FTA 특례법 및 각 협정에 의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신청문서의 흠결이 있을 경우 책임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 및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법정기간 동안 잘 관리하여야 한다. 증빙 문서는 전자적인 매체에 담아 보관할 수 있다.

보관자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서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서 사본 ▶ 수입거래 계약서 ▶ 수입 물품 운송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증명서 사본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원산지증빙 자료) ▶ 수출 물품 출납 서류 ▶ 수출 물품 구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 사본 ▶ 수출 물품 생산 관련 자료/재료구매 출납 자료 ▶ 공정명세서 ▶ 원가계산서 ▶ 수출 물품 공급계약서
보관 기간	5년 (FTA 특례법 5년 / 한-아세안 FTA 협정 3년/ 한-중 FTA 3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 센터 홈페이지

【 Form AK 샘플 양식 】

아세아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수출자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			참고번호 한국 / 아세안 자유 무역 특혜 관세 원산지증명서 (선언서와 증명서의 결합) FORM AK 발행국가 뒷면 확인			
2. 수입자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						
3.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			4.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			
5. 제품 번호	6. 물품표시 및 일련번호	7. 포장개수·포장형태· 품명·수량·품목번호	8. 원산지 결정기준	9. 물품 총중량 및 FOB가격	10. 송장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	
11. 수출자 신고 모든 상품은 ___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래 서명자는 위의 내용과 진술이 정확하다고 선언합니다. _____ (국가) 더불어 ___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한국 / 아세안 자유 무역 특혜 관세 상품에 대해 규정된 원산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_____ (수입국가) _____ 신청일자, 장소, 서명			12. 인증 수출업자의 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_____ 발급 장소, 일자, 서명, 발급기관 인장			
13.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연결원산지증명서			

Form AK 뒷면 Overleaf Notes

1.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AKFTA) 하에서 특혜 관세를 위해 이 양식을 수락한 당사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2. 조건 : AKFTA에 의거하여 특혜 관세를 누리려면 위에 열거된 당사국들에게 보낸 물품 :

- (i) 목적지의 양허 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에 포함되어야 한다.
- (ii) AKFTA의 부속서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라 위탁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iii) AKFTA의 부속서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 또는 생산자는 이 표의 8번 상자에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충족된 원산지 기준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box 11에 명시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상황	box 8에 삽입
(a)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b)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or "RVC 40%"
(c)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WO-AK" "RVC" (예: RVC 45%) "CTH + RVC 47%) "Specific Processes"
(d)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Rule 6"

4. 각 물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위탁화물의 모든 물품은 각자의 권한으로 별도로 수령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크기 또는 예비 부품의 유사한 제품이 발송될 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5. 상품 설명 : 상품 설명은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제조자의 명칭, 상표는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6. HARMONIED SYSTEM NUMBER : Harmonized System 번호는 수입 당사자의 번호이어야 한다.

7. 수출자 : Box 11의 "수출자"란 용어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8. 공식 용도 : 수입 당사국 세관 당국은 특혜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4란의 해당란에 (✓)을 표시해야 한다.

9. 제3국 송장 :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발행"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고 송장 발행 회사의 이름과 국가와 같은 정보는 상자7에 표시해야 합니다.

10. 전사회 : 물품이 다른 국가에서의 전사를 위해 수출 당사국의 보내어진 경우, 전시 도중 또는 후에 당사국 영토로의 수입을 위한 경우, 운영 인증 절차 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사회"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하고 상자2에 표시된 전사회명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11. back-to-back 원산지 증명서 : 운영 인증 절차의 Rule7(2)에 따라 Back-to-Back CO의 경우 "Back-to-Back CO" 상자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4절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AEO) 제도

1. 제도개념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물류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인증한 업체를 의미한다.
 -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무역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이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 ‘17년 2월 기준 미국·EU·중국 등 세계 69개국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에서는 AEO제도를 FTA와 함께 국제무역환경 변화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 운영현황

- 수출입 안전 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란 2005년 6월 WCO에서 채택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의 일환으로, 적법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AEO 공인 기업들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 태국은 1999년부터 AEO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통관 우선 혜택(Gold Card Scheme)’ 제도를 운용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입자에게 보다 신속한 통관 혜택을 부여해왔다.
 - 통관 우선업자(Gold Card)로 인증받은 수출입자가 수출입하는 물품은 적색신고로 선별되어 수입통관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작위 검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품 검사가 면제된다.
 - 또한, 환급 및 관세·조세 보상 신청 시에 즉시 승인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 태국 관세청은 2007년 AEO 작업반을 설치하여 2009년에는 수출자 부문에, 2012년에는 수입자 부문에 시범적으로 제도를 적용하였고, 2013년부터는 AEO 이행고시를 제정 하여 본격적으로 AEO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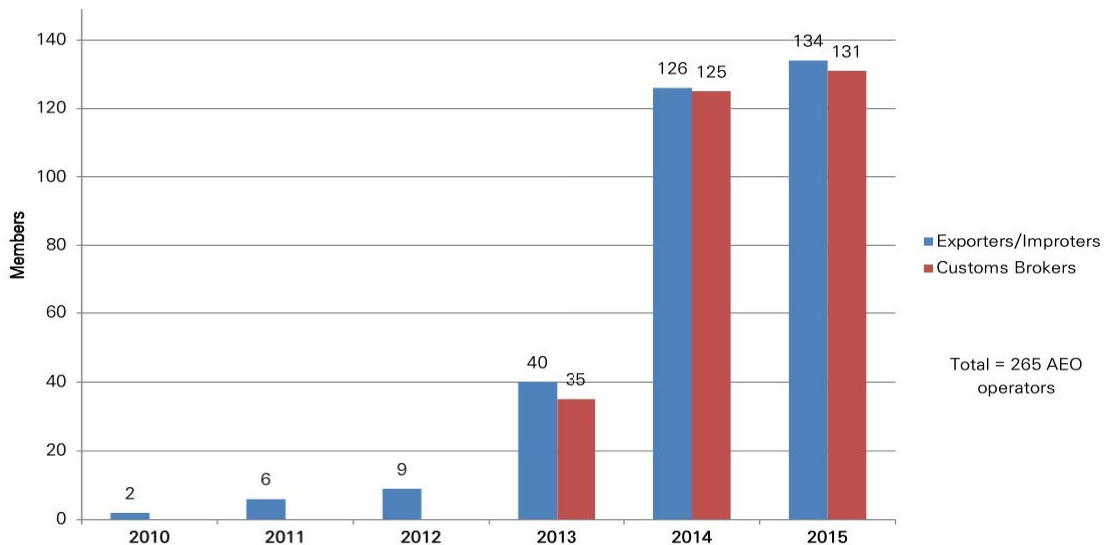
○ 수출입자에 대한 AEO 고시는 「Customs Notification No.12/2556」를, 통관업자에 대해서는 「Customs Notification No.13/2556」을 각각 시행하면서 통관 우선 혜택 제도는 폐지하였다.

☐ 2014년 1월에는 관세청의 표준통관 및 관세 평가과에 AEO 이행부서(AEO Standard Division)를 설치하여 AEO 공인기업에 대한 사후심사와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등을 전담하고 있다.

*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 201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AEO 공인 수출입자는 134개, 통관업자는 131개로 총 265개의 업체가 공인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AEO 공인 현황 ■



자료: www.unescap.org

- 태국은 2014년 홍콩 및 우리나라와 최초로 MRA 협의를 시작하여 2015년 MRA 체결 작업반을 설치하고 2015년 1월 홍콩, 중국과 MRA를 체결하였다.
- 태국의 AEO 추진실적은 2013년부터 AEO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신고 가운데 AEO 공인기업들에 대한 건수가 대략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9월까지 조사한 것으로 약 58만 건 가운데 약 19만 건이 AEO 혜택이 적용된 통관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통관 상 물품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담보, 세금납부 등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며,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AEO 기업으로 분류되어 통관절차가 진행된다.
 -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통관 및 관세환급 등이 일반 기업들보다 신속히 처리된다.
 - 샘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 특히, 원칙적으로 수출입통관서류 및 기타 서류는 수출 또는 수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AEO 공인기업들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적용하여 심사를 완화해주고 있다.
- 태국은 내부적으로는 AEO 공인을 등급화하고, 여러 물류 당사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대외적으로는 MRA 체결 국가를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3. 공인절차

■ 공인요건

-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수출입기업과 통관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일정 기간 관련 사업을 영위한 법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수출입업체는 5만 바트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가진 법인으로써 태국무역위원회 또는



태국상업회의소 및 이와 유사한 조직의 회원이어야 한다.

- 통관업체는 1만 바트 이상의 등록 자본금을 가지고 관세 고시(customs Announcement NO.76/2552 dated 15 October B.E. 2552)에 따라 공인된 통관업체 또는 통관 대행업자로서 관세청에서 승인한 통관업 관련 협회에 최근 3년간 소속되어야 한다.
- 상무부에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무건전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수출입기업의 경우 연속 2년간, 통관업체의 경우 연속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e-Customs System)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통관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3년 이상 수출입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통관업체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통관전문가 1인 또는 통관업을 영위하기에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전자통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춰야 한다.
- AEO 공인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간 관세법을 위반하여 section 27에 따른 처벌 또는 형법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재공인의 경우 최근 3년간 AEO 공인이 취소된 경우가 없어야 한다.
- 또한, 물류당사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기밀 유지 등의 보안 체계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AEO 공인신청을 하려는 기업은 관세청 관세 평가국에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태국 관세청 고시(Customs Notification No. 8/2542)상의 신청서와 함께 상무부장관이 발행한 법인등록 확인 서한, 관세청 고시상에 기술된 단계로부터 발급받은 재무상태 확인서, 최근 3년간의 재무서류, 경영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AEO 공인요건 ■

구분	수출입자	통관업자
적격조건	5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	1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통관법인 또는 통관대행자
재무건전성	연속 2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	연속 3년간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을 입증
사업요건	3년간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통관전문가를 이용하여 수출입 업무 영위	통관전문가 2인 이상의 인력으로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능력 보유
법규준수도	공인 신청하는 때에 최근 3년간 관세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인 신청하는 때에 최근 3년간 AEO 공인 취소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위험관리능력	영업기밀 유지 등의 보안 체계 및 위험평가시스템 보유	

자료: 신흥교역국의_통관환경연구(태국)_KIPF_세법연구센터

□ 운영요건

-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담보 예치, 수출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2만 바트 이하의 담보(은행보증서 또는 관세청장이 승인한 형태의 담보)를 예치해야 한다.
 - 최소 5년간 관련 서류를 포함한 수출입신고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세관 직원에게 회계 장부, 서류, 증거 및 정보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련 장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능력과 관세 납부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관세청에 재무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세법 및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관세청 고시(Notification No. 8/2542)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인 자격이 취소된다.
- 2014년 11월 태국 관세청은 AEO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사용자가 신청, 보고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고 있다.
- AEO 공인기업들은 공인을 받은 후에도 3년마다 공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한국과 태국의 AEO(2016. 2. 27 체결)

- 우리나라는 2010년 미국 등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2016년 현재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 한국과 태국의 AEO 체결 ■



□ 태국과의 약정은 지난 2014년 11월 양 관세 당국이 약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여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AEO MRA에 해당한다.

※ AEO-MRA 체결국 :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캐나다, 멕시코, 터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도미니카, 대만, 태국(14개국)

5. AEO와 FTA 비교

구분	AEO	FTA
대상	수출입 관련 기업	수출입 화물
내용	체결국, AEO 화물에 대한 수입검사 등 세관통제 축소	체약국 화물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	시간 & 비용 절감	비용 절감

▶ 제5절 ▶ 수입금지 품목

□ 감미료, 복어, GMO 옥수수 등은 수입금지이며, 태국은 감미료(Sweetener), 복어(Puffer Fish), 특정 형태의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등 몇 개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제6절

통관 시 유의사항

1. 관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세관 직원 포상제도

- ❑ 우리 수출기업과 투자기업을 비롯해 태국 진출 외국기업이 통관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이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관세법 위반 시 세관과의 벌금액에 대한 타협 과정과 과정의 장기성, 불투명성 및 결과 예측의 어려움과 그에 따르는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다.
- ❑ 태국 관세법상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으며, 밀수, 부정무역/탈세의 경우 물품액의 4배 벌금 및 징역 10년을 병과할 수 있고, 허위신고의 경우 50만 바트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을 병과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 위반 물품의 경우 물품을 몰수하거나 물품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 ❑ 다만, 관세법 위반자와 세관 간에 벌금에 대해 합의하면 세관은 기소하지 않고 벌금만 부과할 수 있으며 태국 관세청은 벌금액에 대한 내부 양정기준을 갖고 있다. 내부 양정기준상 관세탈루의 경우 부족 세액 추징 외에 관세 부족 세액의 2배, 부족 부가가치세의 1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세관과 합의되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 시 법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벌금액에 대한 경감 권한이 없다. 또한, 관세법상 밀수 등 적발 시 세관 직원에 대해 매각대금의 25%(탈세 적발 추징 시 추징세액의 10%)를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다.
- ❑ 이처럼 과도한 벌금, 벌금 형량 협의에 의한 기소중지 제도, 법원으로 이송 시 법원의 벌금 경감 권한이 없고, 과도한 포상금제도 등 4가지 요인이 맞물려, 업체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과도한 포상금 제도로 태국 세관 직원은 사소한 오류도 엄격히 문제 삼으며 심지어 통관 당시 잘못된 신고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가 통관 이후 일시에 추징시효 10년 치를 일괄적으로 추징 통보하기도 한다.

- ❑ 세관 직원은 통상 처음엔 벌금액을 부족 세액의 2배로 통보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넘기겠고, 이 경우 4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범칙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 ❑ 수입자가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고 조기에 종결지으려고하나 세관과의 벌금 협의 과정이 길고 세관의 재량이 많아 계속 세관 직원에게 선처를 요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세관 벌금 양정기준상 경미한 과실 여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벌금이 면해지는 신고 오류의 경우 이를 증빙하면 부족세액의 10%만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과세가격, 품목분류 오류 신고의 경우 원만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입 요건 미구비의 경우 예외 없이 물품 몰수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만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매우 세고 업체 경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자는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품목분류 관련 유의사항

- ❑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는 우리 업체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가장 빈번한 애로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해 통관을 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태국 세관에서는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했다는 명목으로 추후에 벌금을 부과한다.
- ❑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화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화물 검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통관 전이라도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했다고 부족 관세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 ❑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태국 세관으로부터 HS code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태국관세청 서울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한국 관세청 평가분류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경우 추후 세관과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 논리에 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사후심사 대비 필요

-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BOI(태국 투자청) 감면을 받은 수입 자재를 세관 사전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 ❑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 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수입요건 구비

- ❑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여부를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에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 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 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수입 전 수입 물품에 어떤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챙겨봐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상의 변동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5.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유의사항

-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형식적 요건 위주로 심사하나,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 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내용이 보류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시 수입자가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나 태국 세관은 중요 오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검증요청 및 회신 절차에 의해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통관 불편을 일으키는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 증명서 1번란 송하인 주소와 송장상의 주소 상이
 - 3번란 선명/편명 기재 누락
 - 6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선하증권(B/L)과 기재 내용 상이
 - 7번란 포장수량, 종류가 송품장 내용과 상이
 - 8번란 원산지 기준 표기방식 누락
 -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 시 제출된 송품장, 패키리스트, B/L과 상이
 -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누락
 - 제3국 송상 표기 누락

-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 또는 송품장 가격과 불일치
- 소급발급 문구 기재 누락

- ▣ FTA 특혜신청 물품 외에 태국 세관은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수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상 모순이 없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일치 및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7절 통관 관련부서 연락처

태국 세관

Division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Headquarters	1 Sunthornkosa Road,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000	02-667-6000
Customs Care Center	< Operating hours > Monday - Friday 08:30 - 16:30	1164	-
Customs Clinic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tax and duty incentives, tariff classification, valuation, etc.	02-667-7880-4 (customs_clinic@customs.go.th)	02-667-7885
Report on smuggling activities and evasion of duty	P.O. Box 10, Klong Toey, Bangkok, 10110	02-667-7002 02-667-7716 (feedbacks@customs.go.th)	02-671-7995

제 3 장

관세 제도

제1절 관세정책

1. 일반사항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태국 재무부 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
- 태국은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 HS) 가입국으로 2008년 7월에 개정된 관세율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태국 관세청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통합 관세 데이터베이스(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 감면 대상 품목, 화학물질 목록, 철장제품 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품목분류 체계와 관세율표

- 태국에서 수출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HS 협약의 품목분류 체계를 따르며,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관세율령(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 태국은 HS 협약상 공통적인 6단위 HS 코드와 아세안 회원국 간의 품목분류용인 AHTN 2단위를 합한 8자리 숫자의 소호(subheading)로 이루어진 HS 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를 사용한다.
 -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은 2007년 아세안 회원국 간 공통 품목분류 체계의 시행에 관한 의정서(the 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를 채택하여 아세안 회원국 간의 거래에서는 8단위의 공통된 HS 코드를 사용한다.
- 관세율표상에서는 8단위 숫자보다 긴 품목분류코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하위분류 코드(Sub Code)와 수출입통계품목분류코드(Statistic Code)이다.
 - 하위분류코드는 관세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부 고시에 근거한 관세 감면 대상을 HS 코드 뒤에 2자리 숫자로 나타낸다.
 -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이 1가지인 경우에 하위분류코드는 '00'으로 표기되며, 1가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01'부터 '29'까지 표기된다.
 - 수출입통계품목분류코드는 수출입통계를 참조하기 위하여 8단위 HS 코드에 3자리 숫자를 덧붙여 총 11단위로 이루어진 코드를 사용한다.
- 관세율표는 재무부에서 제정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통합 관세율 조회화면에서 수출입 관세율, 관세 감면 여부 등을 태국어와 영어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율 조회화면은 호(Heading), 소호(Subheading), 품명(Description), 법정세율(Statutory Rate), 경감세율(Duty Reduction), 전자수입 허가대상(Electronic Permit)

여부로 나뉘어 있으며, 경감세율 열에서 WTO 세율, FTA 협정관세, 관세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관세청 통합관세율 조회 홈페이지에서 승용차의 방열기와 그 부분품(소호 품명:Apple)인 HS 코드 '0808.10.0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조회하면,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기본세율이 10%이며 상호대응 관세로 인해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 상기 조회화면에서 'Notification'을 클릭하면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협정 및 국내 규정을 볼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Asean-Korea FTA B.E. 2555'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화면 ■

999 :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Ceiling Rate)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Statutor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Unit	specific rate Baht				
08.08	0808.10.00	- Apples	60	kilogram	50.00	ว.ร. ๑๑/๙ 6 ม.ร. 2560	01/0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000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Section 12 of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General Rate)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Dut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Unit	specific rate Baht				
08.08	0808.100000	- Apples	10	kilogram	3.00	ว. 12 ๑.01 (2560)	01/0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AK1 : ASEAN-KOREA : Detail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Dut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Unit	specific rate Baht				
08.08	0808.100000	- Apples	** Exempted			ASEAN-KOREA (2560)	01/0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 Please Check Countries granted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from Tariff Schedule annexed to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FTA 협정세율 조회화면 ■

Heading	Subheading	Code	Description of goods	Unit	Rate of duty												Countries granted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Imported until 31 December 2012		1 Jan. 2013 to 31 Dec. 2013		1 Jan. 2014 to 31 Dec. 2014		1 Jan. 2015 to 31 Dec. 2015		1 Jan. 2016 to 31 Dec. 2016		Since 1 Jan. 2017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ad valorem (%)	Specific Baht/Unit	
08.05	0804.50.20	00	-- Mangoe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Malaysia and Laos				
	0804.50.30	00	-- Mangosteen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Malaysia and Laos				
	0805.10.10	00	-- Fresh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Laos				
	0805.10.20	00	-- Dri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Laos				
	0805.20.00	00	--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satsumas and similar citrus hybrid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Indonesia and Laos				
08.05	0805.40.00	00	--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0805.50.00	00	--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and limes (Citrus aurantiifolia, Citrus foetida)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Laos, for Korea not for: Lemons (Citrus limon, Citrus limonum)				
08.06	0805.90.0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and Laos				
	0806.10.00	00	-- Fresh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6.20.00	00	-- Dri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7	0807.11.00	00	-- Watermelon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Malaysia, and Laos				
	0807.19.0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Malaysia				
08.07	0807.20.10	00	-- Mand backcross solo (Berk solo)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Malaysia and Laos,				
	0807.20.9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Malaysia and Laos				
08.08	0808.10.00	00	-- Apple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8.30.00	00	-- Pear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not for pears				

예) www.customs.go.th 접속 후 '사과' HS code:0808.10.00 검색 후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확인

■ 2017년 11월 관세법 개정안 발효 예정

-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 (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됐으며, 개정된 법안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기간 제한
 -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 기간 제한
 -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 ASEAN 국가 간 통일된 HS code 기준표 발표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 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 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 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HTN 2017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2. 법정 관세율

- 2003년 이후 태국의 법정 기본세율 체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태국에서는 법정(기본) 관세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태국의 실행 관세율(일시 또는 조정세율)은 국회의 비준 없이 재무부 장관이 내각의 승인과정을 거쳐 적용한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필요 시 내각의 승인과정을 통해 관세율표 상에 게시된 세율의 50% 범위에서 각종 특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 태국의 법정 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관세율표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과 19등급의 특별세율,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율의 종가세 적용 품목군에는 민감 품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판,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된다.

3. 실행 관세율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하여 놓고 있다. 이에는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어 있고, 비 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태국은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 일부 IT 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월에 이미 마무리하였다.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에는 소금, 광물원료, 화학약품, 비료, 펄스, 운송장비, 고무생산품, 철장 등이 있으며,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종가세율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 우선 적용된다. 실행 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비종가 관세율(Non-ad Valorem Duties)

- 특별세율과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종가관세율은 전체 대상품목의 16.5%를 차지하며, 비종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등이고 이는 태국 관세율 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 특별 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ges)

-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 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밀가루, 으깬곡물류, 어분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율을 부과한다. 수입 부과금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그 중 종가의 부과금은 특별관세율에 관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4. 한-태 협정관세율 체계

■ 한-태 협정관세율 개요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 과정을 거쳐 2006.8월은 상품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 쌀, 자동차 등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하게 되었다. 이후 태국 측 요구에 따라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했으며 2007.12월에 최종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10.1월부터 발효되었다.

■ 태국과 관세양허 내용

- 태국의 양허는 일반 품목군과 민간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 품목군은 다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일반 품목군은 2017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5,209개 품목, 전체 품목 수의 94.45%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91%에 상당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철폐하게 되어 있다. 그중 별도의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에 철폐하고 78개 품목은 2017년까지 철폐토록 하는 등 구분하여 양허하고 있다.

- 민감 품목군 중 일반 민감 품목의 경우 3.17%에 해당하는 175개 품목 또는 수입액 기준 5.2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5% 이내로 관세를 감축토록 하고 있으며, 초민감 품목에 131개 대해서는 6개는 2016년까지 관세 50% 인하, 37개는 20% 인하, 6개는 50% 이상 인하, 51개는 최소 수입할당 물량 적용,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양허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 기계 및 화학제품의 경우 2010년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고, 화장품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관세철폐가 되었으며, 철강은 일-태의 경제제휴협정 일정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여 나가게 하고 있다. 담배(72%)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제2절 관세제도

1. 관세평가제도

①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시점에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
-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당해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총계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 아래의 수입 품목은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선물, 견본, 공짜제품
 - 판매대행 물품(판매를 요청받아 수입하였으나 물품인수자가 판매비용만 받는 경우)
 - 회사의 지점이 수입한 물품
 -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
 - 폐기를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자가 수수료만 받은 경우
 - 구매자가 아니고 중간 판매자인 중개인이 수입하는 물품

②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 동종물품은 물리적 형태, 품질, 사회적 평판 등에서 당해 수입품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종물품의 거래 가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 운송,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 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당해 수입 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 전후) 태국에 수출되어야 한다.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
 - 당해 수입 물품과 같은 거래 규모 또는 수량이어야 한다.
 - 태국 내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같은 규모 또는 같은 수량의 동종품목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 규모나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거래 규모는 같으나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한다.
 - 수량은 같고 거래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 규모를 조정한다.
 - 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규모와 수량을 조정한다.
 - 위의 조정에 있어서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 하나 이상의 동종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가격의 물품을 당해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정한다.

③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당해 수입 물품을 생산한 자에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적용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 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유사한 시기(당해 수입 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태국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한다.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이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수입 물품과 거래 규모 및 거래량이 같아야 한다.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의 용역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 만약 동일 거래 규모나 거래량의 유사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 규모나 거래수량이 달라도 다음과 같이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거래 규모가 같고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한다.
 - 거래 수량이 같고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 규모를 조정한다.
 - 거래 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 규모와 수량을 조정한다.
- 만일 운임,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정할 수 있다.
- 만일 유사물품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최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공제방법 또는 당해 수입 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①~③방법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조건으로 태국에 판매된 수입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만일 당해 수입 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최고수량으로 판매된 가격
 - 상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
 - 아래의 원재료, 장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된 가격
 - * 수입 물품에 체화된 원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금형 또는 유사물품
 - * 수입 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된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수 불가피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
 - 아래의 비용을 공제
 - * 당해 물품의 태국 내에서 판매와 관련된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계약이된 수수료
 - * 태국 내에서 발생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 *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세금
- 단위당 거래가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 당해 물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전후로 가장 근접한 날에 태국에서 판매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
 - 물품이 수입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가격
 - 수입되어 태국 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대의 수량으로 판매된 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비용과 가공비를 공제한 가격. 이 가격은 수입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원가계산방법

- ①~④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며, 수입자가 요청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⑤방법을 제④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아래 항목의 합계로 정한다.
 - 원재료, 부품, 노무비, 가공비, 기계장비, 유지비 등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가공비용. 다만, 수출환급 대상 원재료에 부과되는 생산자의 국내 제세금은 제외
 - 다른 생산자에 의해 태국에 수출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합계
 -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용기 비용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된 재료 및 노무비
 - 아래의 재료 및 장비 비용
 - * 수입 물품에 체화된 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금형 또는 유사물품
 - * 수입 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운임, 운송비, 보험료 등 당해 수입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 생산자의 비용으로 태국 내에서 수행된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 용역비

⑥ 역산 가격

- ①~⑤방법까지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5가지 방법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 원칙, 요건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태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2가지 가격이 있을 경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가격 체계
 -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원가계산 방법에서 언급된 항목이 아닌 생산 비용
 - 태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수입 물품의 판매가격
 - 최소 과세가격
 - 근거 없이 결정된 가격

○ 역산 가격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각 방법의 기간은 1회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의 평가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 제3국에서 수집한 비용, 원재료 가격정보도 계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 당해 수입 물품의 실제 가격과 동등한 가격
- 전문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2. 사후심사제도

■ 수입 사후심사

○ 세관 사후심사 대상기업 및 관계자의 의무 모든 수출입 관련 기업 및 관계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일로부터 5년 이내 문서, 장부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자체사무실 및 보관시설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만약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도, 해당 기업, 관계자, 정산인은 모든 관련 서류를 폐업일로부터 2년 동안 당해 기업 사무실 또는 정산인 사무실 등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꼭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여타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의 사후 심사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태국 관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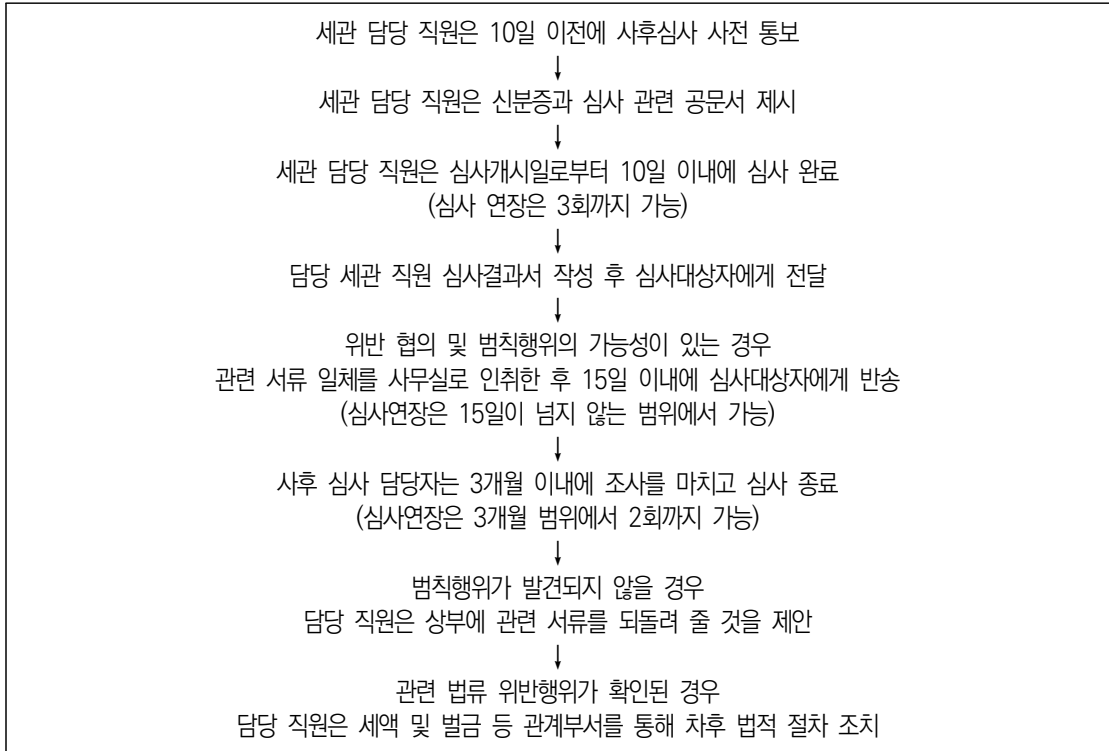
○ 수출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보관서류의 유형 및 종류

- 수출입업자의 경우 : 보관서류는 납세영수증, 수출입허가서, 재무제표 및 기타 회계 관련 서류, 운임 및 보험 지급문서, B/L, L/C, 송장, 물품구매 관련 요청/계약/서신, 판권(저작권), 로열티, 수수료, 재고목록, 물품 구매/판매/제조/가격산정 관련 보고서류 등
- 선사 또는 대리점의 경우 : 적한목록, B/L, 운임 지급서, 기타 물품운반 관련 서류
- 상기 대리인의 경우 : 당해 건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 및 선사/대리점이 보관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
- 상기 관계인의 경우 :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소관 분야 서류 보관

○ 사후심사 직원의 권한

- 담당세관 직원은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장부, 거래장부, 정보문서,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 또는 관계인의 사무실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세관 직원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회계 및 거래장부, 기타 관련 서류, 증거물 등을 세관사무실로 인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사후심사 절차



■ 수출 사후심사

○ 세관 사후심사분에서는 수입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 또는 전송받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별기준에 의거 위험도를 분석하게 된다. 각 부서에서 별도의 선별기준을 정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동 제시자료를 추가하여 위험분석에 사용하게 되면 위험분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 신고서 첨부서류의 정확성 확인
- 신고서, 상업 송장 및 첨부서류의 신고내용 확인
- 컴퓨터에 입력된 신고서 및 상업 송장 관련 자료의 확인
- 승인서, 면제허가서 등 세관 기본서식에 대한 확인
- 제한 물품 여부에 대한 확인, 제한 물품에 대해서는 허가서, 면허증 등의 서류에 대한 확인
- 각종 세율 및 수수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 환율, 과세가격, 관세액의 계산 등에 대한 정확성 확인
-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수출신고서 원본에 “심사 완료”라는 봉인을 날인

3. 관세환급제도

▣ 일반원칙

- 관세법 제19조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이미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 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 환급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검토
- 보증금, 관세, 기타 납부금에 대한 환급 및 환급통지 절차
- 보증금 및 관세 환급수표의 발행



제3절

특별소비세(Excise Tax)

1. 일반 현황

- ▣ 특별소비세(Excise Tax)는 국내 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사치'로 간주하는 특정 범위의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법(Excise Tariff Act B.E. 2527)에 따라 세입청(the Revenue Department)에서 부과와 징수를 주관한다.
- ▣ 2013년 4월 24일 소비세법이 개편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 차량의 엔진 용량, 탄소 배출량과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리 부과한다.
- ▣ 소비세는 수입 물품의 경우 CIF 가격을, 내국 물품의 경우에는 공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류를 제외하고는 '수입관세*(소비세율/(1-1.1×소비세율))'의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주류, 담배, 음료수(당분 음료, 커피, 차) 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소매가 인상이 발생했다.

 - 태국 정부는 소위 '죄악세(Sin Tax)' 대상인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 산정에 가격 및 중량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가격 또는 중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장가격 또는 CIF을 반영해 세율을 산정하던 것과는 차별된다.
 - 신 소비세 적용으로 인해 연간 120억 바트(3억6228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소비세 품목별 세율 수준 ■

품목	소비세율	
	가치에 근거	수량에 근거
오토 및 보트	30~50%	
전기통신	30%	
배터리	30%	
일부 전기제품	30%	
크리스탈 유리제품, 향수와 화장품	30% 20%	
경마장,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30%	Square metre / 3,000바트(회당 / 1,000바트)
골프	30~50%	
카펫 및 타일	30%	
대리석 및 화강암	30%	
무알콜 음료	30%	Litre 당 20~100바트
석유 및 석유제품	50%	Litre / kg 당 20바트
오존 파괴물질	30%	3,000바트
차량	40~80%	
오토바이	30%	
담배제품	90%	piece / gm 당 5바트
주류	30%	litre 당 1,000~3,000바트
게임용 카드	60%	100장 / 500바트

출처: EXCISE TAX ACT, B.E. 2560 (2017)

2. 특별소비세 적용품목

■ 새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는 5월 20일에 합법화되어 2017년 9월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 주류 및 담배

- 맥주 1대당 0.50바트와 병당 2.66바트 상승하는 동안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30바트로 증가
- 고가 맥주의 경우, 세금은 0.99-2 바트 정도 감소
- 수입 와인에 대한 세금은 병당 최소 110바트 인상될 것이며 담배는 팩당 2-15 바트 인상
- 저렴한 담배 브랜드의 경우 세금은 팩당 4-15바트, 고가 담배는 팩당 2-10바트가 부과될 예정

☐ 설탕세

- 설탕 소비를 줄이고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음료에 대한 소비세 세금을 시행했다. 새로운 소비세 설탕 세금이 부과되는 음료는 다음과 같다.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없고 맛이 없는 인공 광천수, 탄산음료 및 탄산 청량음료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료가 첨가된 미네랄 생수 및 탄산 청량음료 및 기타 무알콜 음료
 - 과일 및 채소 주스
 - 커피 및 차
 - 에너지 드링크
 -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음료 중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것
- 새로운 소비세가 개정되기 전에는 수입 음료에 CIF 기준 가격의 20% 종가세가 부과되었다. 개정된 소비세법은 이전의 종가세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설탕 함량에 대한 특정 세금이 도입되는 특별 세금 및 종가세를 모두 갖춘 혼합 세율 시스템을 도입. 또한, 새로운 소비세 법에 따라 세금은 CIF 기준 가격 대신 "권장 소매가"로 계산된다.
- 100mL당 6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보다 높은 세금 부담을 지니며, 소비세 부서는 음료 업계가 2년 동안 음료 소비세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 받는 동안 제조 공식을 재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2년 후, 설탕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은 아래의 소비세 비율표에 따라 증가할 예정이다.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02.01	Artificial mineral water, soda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nd without flavor	14	Liter	0
02.02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02.03			
	(1)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02.03.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Septem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02.03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1)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30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2)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30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02.04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1)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	---	---	-------	---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2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6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제 4 장

검역 제도

▶ 제1절 식물검역 규정

1. 법체계 및 관리기관

-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이며,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 ❑ 국립 농산물 식품국(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ACFS)은 농업 시스템, 상품, 식품 및 식품 안전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식품 기준을 관리하며 농장 및 식품 시설의 기준 부합 제고 가축 건강 및 축산물 수입은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과 수산국(Department of Fisheries)의 소관이다.
- ❑ 식물 건강은 농업협동조합부 농무국(Department of Agriculture) 소관이다.
- ❑ 식품 안전은 공공부건부의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담당이다.

2. 용어의 정의

- ☐ 식물(Plant) : 식물과 그 일부분(생사 불문)
- ☐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 병해충 및 운반 매체
- ☐ 제한 물품(restricted material)
 -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식물, 식물 병해충 및 운반 매체
- ☐ 비금지물품(unprohibited material)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이 아닌 식물
- ☐ 식물 검역장(plant quarantine station)
 - 금지품 또는 제한 물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공고한 장소
- ☐ 격리 검역장(post-entry quarantine station)
 - 식물 및 금지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장소
- ☐ 식물 병해충 방제지구(plant pest control area)
 - 식물 병해충을 방제 또는 박멸하기 위하여 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지역

3. 금지품(Prohibited materials)

- ☐ 벼 속 식물, 고무나무 속 식물, 감귤 속 및 금귤 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비료, 식물병해충, 면화 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4. 제한 물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 속 식물, 생벼풀, 벼 싹, 고무나무 속 식물, 감귤 속 및 금귤 속 식물 및 코코넛
- 사탕수수(Saccharum) 속 식물, 커피 속 식물, 고구마, 면화 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 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 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유동(Aleurites) 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녹두(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5. 감귤류 과실의 수입요건

- 수출국은 태국 농업국에 다음 정보를 제고한다.
 - 감귤 병해충의 목록
 - 효과적인 감귤소독방법
- 태국과 수출국 간에 다음 사항을 합의해야 한다.
 - 소독처리, 처리된 과실의 재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식물검역증, 수출국에서의 검사방법, 태국의 반입항에서의 검사방법

6. 수입 절차

- 식물과 식물로 만든 제품은 금지, 제한, 비금지 세 부류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수입절차가 적용된다.
 - 금지품 수입
 - 금지품은 방콕항, 방콕공항 및 방콕우체국을 통해서만 수입하여야 한다.
 - 농업국장이 발부한 수입표찰을 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 금지품은 농업국장 앞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사전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제한 물품 수입
 - 식물 검역장을 통해서 수입하여야 한다.
 - 수출국 식물검역증 첨부
- 비 금지물품 수입
 - 비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식물검역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수수료

- ▣ 식물검역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 또는 공휴일이나 일과시간 후에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일정 수수료 및 여행경비를 부과한다.

제2절 동물검역 규정

1. 동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태국으로 동물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로부터 수입 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입자는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동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동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는 수입자의 신원 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 수입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입자와 수입자 대리인의 신원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이 포함된 수입 승인 발급 전에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다.
- 태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동물의 건강 조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의 동물 건강 요건에 따라 수입할 동물들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해 원산지의 수의청으로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한다.
- 수입 동물과 관련된 장비가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정확한 도착 날짜를 도착 전 최소 3일 전에 입증해야 한다.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 시에 임시 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다.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동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한

후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이다.

- 육종을 목적으로 한 수입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동물 혈통 증명서 혹은 다른 증서를 수입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자는 수입할 동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 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한다.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급해야만 한다.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바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수입동물은 동물 검역 시설로 이동된다.
- 검역 기간, 질병에 대한 규정된 검사와 조회를 위해 모든 수입 동물의 샘플이 수집된다.
- 이동 시 혹은 검역 시 수입될 동물이 아프거나 죽는 경우, 모든 관계자 및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한다.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다른 어떤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조사하고 규제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 수입증서는 모든 수입 동물의 규정된 심사를 통과한 후,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동물들이 풀어질 시점에 발급될 것이다.

2. 축산물 수입 검역

■ 수입 전 절차

- 수입자 혹은 축산물을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태국 가축 개발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입자는 입국항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의 수의청에 연락하여 태국으로 축산물 수입 시 필요한 규정과 동물 건강 요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 수입자는 수입일 최소 15일 전에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수입하려는 축산물에 대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는 수입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확인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 태국 가축 개발부는 동물 건강 요건 사항이 포함된 수입 승인서를 발급하기 전, 원산지의 동물 질병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권한이 있다.
- 태국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의 동물 건강 요건은 현 상황과 현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 수입자는 태국 가축 개발부에서 제정한 동물 건강 요건에 준수하여 수입 축산물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 수의청에 수입 승인서를 송부해야만 한다.
- 수입자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장비 필요시, 정확한 도착 날짜를 수입 전 최소 3일 전 입국항구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확증해야 한다.

■ 수입 시 절차

-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은 수입 통관 수속시에 임시수입증을 즉시 발급할 권한이 있다.
- 원산지 수의청에서 발급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식적인 영문 건강 증명서는 수입 동물이 도착하는 대로 종합점검 전에,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에 송부될 것이다.
- 수입자는 수입할 축산물에 대한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청구서 사본, 가격리스트, 패킹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해야만 한다.
- 수입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으로 인해 만들어진 태국 내각 규정에 따라 정해진 수입세를 지급해야만 한다.

■ 수입 후 절차

- 도착 시 진행되는 종합검진 이후, 축산물은 승인된 검역 시설로 이동된다. 검역 기간 동안, 적합한 실험을 거친 검사와 조회를 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샘플이 수집될 것이다.
- 최종 수입증서는 수입하려는 축산물이 심사를 통과하고, 태국의 수입 검역을 완료하여 최종 목적지에 축산물이 방출할 시점에 발급될 것이다.

3.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시

- ▣ 동물 혹은 축산물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송 시 태국에서 환송할 경우 국제동물검역소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 동물 혹은 축산물을 태국 환송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송하려는 자는 이동하기 최소 3일 전 항만에 있는 국제 동물 검역소 수의청에 통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식 건강 증명서, 청구서, 가격리스트, 패키징 리스트, 항공 화물 운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이동 승인을 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세관 수속을 위한 수송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국제동물검역소 수의청은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건강 검사와 필요시 소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수송할 동물 혹은 축산물은 검역 시설로 옮겨지며, 소유자는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소유자는 1956년 동물 전염병과 관련된 태국 내각 규정에 명시된 수송비를 지급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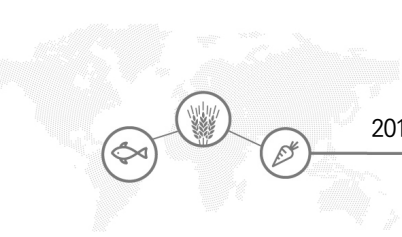
4. 동물 혹은 축산물 수송 및 수입 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대리자 임명에 대한 공문과 대리자의 신원확인증 사본 (수입자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할 시, 대리자를 임명해야한다.)
- 주택 등록증 사본

▣ 법인

- 수입자 신원확인증 사본
- 법인 등기 증명서 사본
- 대리인 임명 공문



○ 리인 신원증명서 사본

▣ 상업용 목적이 포함될 경우

○ 동물 무역 허가증 (이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가축부에서 적용된다)

5. 냉장 & 냉동 육제품 수입 검역

▣ 냉장&냉동 육제품 수입은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고 원산국으로부터 건강 증서를 받아야 하며, 도착 즉시 이 제품 화물은 입국항의 동물 검역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독, 표본 채취, 검사에 드는 비용은 kg당 가금류는 10바트, 다른 육제품은 5바트 이다.

제 5 장

라벨링 제도

제1절 관련법 및 규정

-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 Food Act B.E. 2522(1979)과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규정한 법에 따라 관리되며, 총 4개의 품목군으로 식품을 분류하고 있다.(특별통제식품, 규격화된 식품, 표준라벨링이 요구되는 식품, 일반 식품)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해서 식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특별관리식품의 경우 사전에 FDA로부터 라벨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모든 라벨에 대한 고시는 No. 194 B.E. 2543(2000)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이 중요한 식품에 대하여 일부 농산물 관리청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 위생처리 증명서를 요구한다.



제2절

식품 분류

1.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 ☐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 같은 필수요소 등이 식품법(The Food Act B.E 2522(1979))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통제식품에는 7가지 타입의 식품이 포함되어 있다.
- ☐ 태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특별통제식품은 라벨 부착 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번호	구분
1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follow-up formula modified milk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2	Infant food and follow-up formula food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3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 and young children
4	Sodium Cyclamates and food containing Sodium Cyclamates
5	Food additives
6	Weight-control foods
7	Steviol glycosides

2. 규격화된 식품(Standardized Food)

☐ 규격화된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품질과 관련한 특별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의 39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번호	그룹	번호	그룹	번호	그룹	번호	그룹
1	coffee	11	Soybean milk in sealed containers	21	vinegar	31	royal jelly and royal jelly products
2	edible salt	12	drinking water	22	butter	32	food in sealed containers
3	Vitamin fortified rice	13	fish sauce	23	cheese	33	food supplements
4	Alkaline-preserved eggs	14	honey	24	ghee	34	beverages
5	Cream	15	peanut oil	25	margarine and fat spreads,	35	cow's milk
6	Electrolyte drinks	16	Butter oil	26	soy sauce	36	flavored milk
7	Chocolate	17	palm oil	27	jam	37	milk products
8	Tea / herbal tea	18	coconut oil	28	jelly and marmalade	38	yoghurt
9	Some particular kinds of sauces	19	fats and oils	29	semi processed food	39	ice cream
10	Ice	20	Natural mineral water	30	brine for cooking		

3. 표준 라벨링이 요구되는 식품(Food with labeling)

- ☐ 구매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하며 11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번호	구분
1	Bread
2	Sauces in sealed containers
3	Husked rice flour
4	Some meat products
5	Flavoring agents
6	Processed gelatin and jelly desserts
7	Chewing gum and candy
8	Ready-to-Cook foods and Ready-to-Eat foods
9	Specially purposed foods
10	Irradiated foods
11	General food obtained through certain techniques of genetic modification or genetic engineering

▣ 육류제품 라벨링 ▣



4. 일반 식품(General Food)

- ☐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위생상태, 안전성, 라벨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감독되며, 일반식품은 태국 정부고시에 의해 표준 요구사항들이 제품마다 상이하다.



제3절

라벨링 표기사항

1. 표준라벨

- ❑ 태국 라벨은 수입되어 반입되기 전과 수매상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의해 압수된다.
- ❑ 승인된 라벨과 식품 포장 크기는 단일 식품 항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라벨

-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식품명, 식품의 시리얼 번호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정량(고체제품의 실중량, 용액제품의 실용량, 반고체 제품의 실 중량과 실 용량, 기타 식품은 실 중량 표시)
 - 봉인된 용기에 있는 식품은 실 내용물을 표시하며 용액부분을 제외한 고형량을 표시. (식재료에서 용액부분만 나눌 수 없는 제품은 제외) 기본적으로 내용물의 리스트는 전체 퍼센트로 나타내며 주요 내용물부터 시작. 농축된 제품 또는 사용전 희석·용해가 필요한 제품은 희석·용해 제품의 비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방부제를 사용한 제품은 “방부제 사용”을 표시
 - 색소 사용 시 “천연색소 첨가” 또는 “인공색소 첨가”를 표시
 - 조미료 사용 시 “----- 조미료 첨가” 표시
 - 감미료 사용 시 “----- 감미료 첨가”를 글자크기 2mm 이상과 글자색은 배경의 보색으로 표시

- 향신료 사용 시 “천연향” 또는 “인공향”을 표시
- 제조일자(연/월/일 또는 연/월), 유통기한(연/월/일), 최적상태의 제품품질보증 기한(연/월/일) 표시. “제조”, “만료”, “사용 전”의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내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 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제조일자(연/월/일), 유통기한(연/월/일), 90일 이상 보존 가능한 제품의 최적 상태 또는 품질보증(연/월/일)
 - FDA에 의해 지정된 특정 제품의 유통기한(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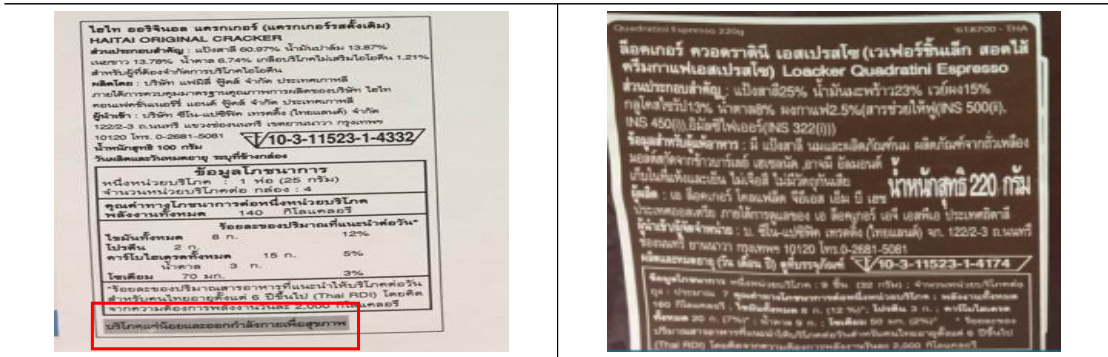
3. 제조업체의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

- ▣ 로마자 알파벳이 일부 포함된 수입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은 태국어 라벨을 사용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 식품 종류와 이름, 식품의 시리얼 번호
 - 미터법으로 표시된 제품용량
 -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생산국가(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생산자 또는 재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

4. 일부 가공식품의 라벨링 변경공시

- ▣ 2007년 8월 30일 태국 FDA는 스낵 식품에서 사용되는 신호등 라벨링 로고 필수조건을 철회하였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필수조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공시하였다.
- ▣ 하지만 태국 FDA는 여전히 “적게 섭취하고 건강을 위하여 운동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라벨링에 추가로 공지할 것을 요구한다.
 - 라벨링 부착 대상 제품 : 감자칩, 옥수수 칩, 스낵 식품, 비스킷/크래커, 와플 제품

【스낵 제품 라벨링】



5.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태국 FDA는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건부 공시를 변경하였다.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의 최고의 식품
-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추천된 것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음.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유아용 우유 제품 라벨링】



6. 프리미엄 라벨링

- ❑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또는 제품 수입자는 공중 보건 공고 No. 365 Re에 따라 품질 기준 및 명시된 특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 수출자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 사용을 원할 때, FDA 측으로 명시된 조건에 맞게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프리미엄 제품 라벨링 ■



7. 영양 정보 라벨링(Nutrition labeling)

-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특정 집단의 소비자 (예 : 학생, 임원, 노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 FDA에 의해 지정된 식품
- ❑ 영양분 라벨링 규정에서 제외된 식품은 유아용 식품과 유소아를 위한 보충 식품이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식품들은 제외된다.
- ❑ 영양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 사용은 선택이다.

영양 정보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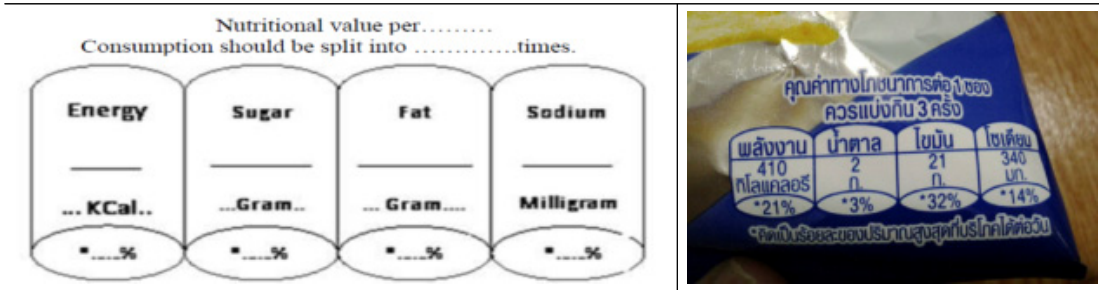
8. GDA 라벨링(Guideline Daily Amounts)

2011년 8월 기준으로 태국 FDA는 식품 포장지 앞면에 GDA(Guideline Daily Amounts)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며, Notification No. 374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표기된 식품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번호	구분
1	Fried or baked potato chips	9	Filled wafer
2	Fried or baked popcorns	10	Cookies
3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1	Cakes
4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ured peas/nuts	12	Pies, pastry, both with and without stuffing
5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3	Noodle, a sheet of rice noodle (Guay-Jub), wheat noodle, rice vermicelli and mung bean vermicelli.
6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ured peas/nuts	14	Kao Tom (Boiled rice) and Joke (Porridge rice)
7	Chocolate and similar kinds of products	15	Chilled and frozen ready-to-eat meals
8	Crackers or biscuits;		

GDA 라벨에는 제품의 영양가와 에너지, 설탕, 지방 및 나트륨에 대한 권장 일일 소비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라벨 양식은 다음과 같다.

Ⅱ GDA 가이드라인 라벨링 Ⅱ



9. 영양성분표시(Nutritional Claims)

- ❑ 영양성분표시는 식품이 가진 특정한 영양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유량, 비타민, 미네랄 함유량 등을 표현한 것이다.
- ❑ 태국 FDA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Low in cholesterol”, “less”, “reduc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good source of”, “rich in” 등 조금은 다른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가. 영양성분 표기

- ❑ 영양성분 표기는 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수준을 표기하는 것을 말하며 “칼슘의 원료”, “저지방 고섬유질”로 표기할 수 있다.
- ❑ 식품의 본연의 성질을 잃거나 영양성분이 전혀 없는 식품이 “free” 또는 “low”라는 용어를 식품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가공, 변환, 일정한 공법을 이용해서 식품에서 영양분을 제거하거나 영양분의 양을 낮추는 행위는 규제될 수 있다.

나. 상대적인 표기

- ❑ 상대적인 표기는 2가지 이상의 식품에너지 또는 영양성분기준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 “less than”, “fewer”, “more than”, “reduced”, “lite/light”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 하지만 이미 “low” 또는 “very low”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분 성분 또는 에너지값을 표시한 경우 상대적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 ❑ 영양분 기능 표기란 인체에 미치는 영양성분과 관계가 있으며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 성분은 적혈구 조성의 요소이다”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 ❑ 영양분 기능 표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표기되도록 허가되었으며 모든 조항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태국 RDI에 등재된 필수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 표기의 대상이 된다.
 - 식품의 주요 재료가 되는 영양분은 영양분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 특별한 식품 성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 표기를 하는 데 참조되어야 한다.
 - 영양성분 표기는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영양성분 표기는 질병 치료 또는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내포해서는 안 된다.

10. 유전자 변형 식품(GMO)

- ❑ 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하는 농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가공업과 사료용인 경우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 ❑ 라벨링 법에 따라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식자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식품들이 라벨링 법에 관리대상 품목이다.
 - 콩, 조리된 콩, 구운 콩,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콩, 낫도(Fermented soybean), 미소, 두부 또는 튀긴 두부, 냉동 두부, 콩 글루텐, 두유, 콩가루, 조리된 콩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 옥수수, 팝콘, 냉동/냉장 옥수수, 병/캔/레토르트 파우치를 사용한 옥수수,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옥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식품

- ❑ 라벨링은 주요 3가지 원료를 무게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각 원료가 최종 식품의 5% 이상 포함되고 유전자 변형 원료들에서 추출한 원료들이 5% 이상인 식품들은 “GMO 포함”이라는 라벨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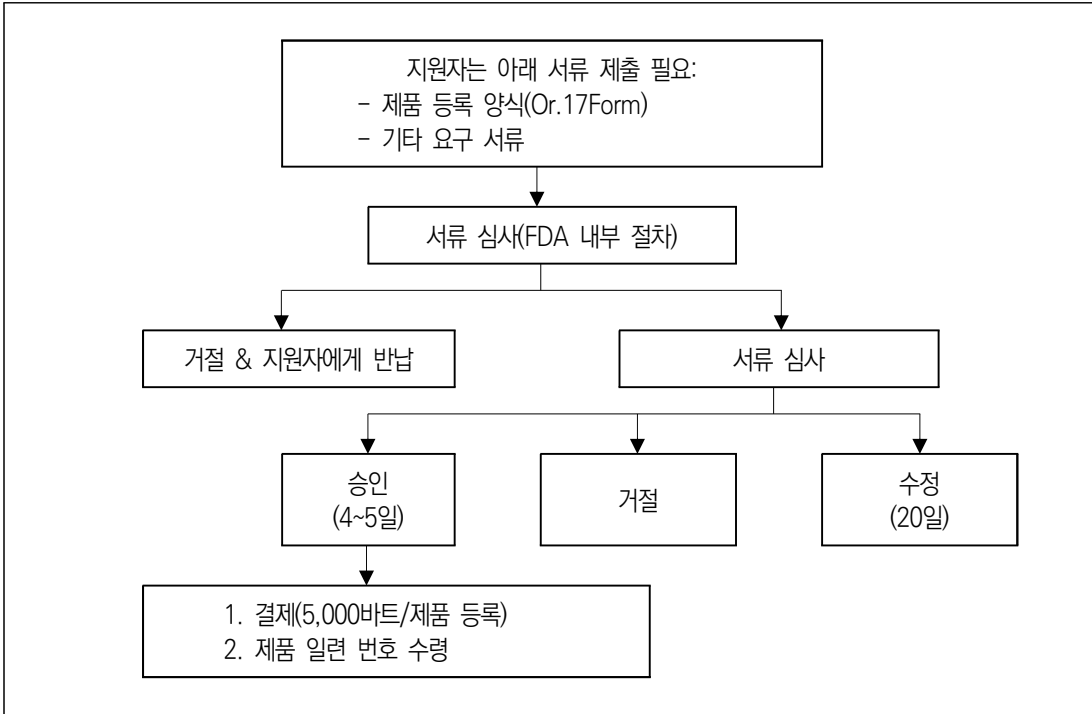
11. 요오드첨가 식염 라벨링(Iodized Salt Labeling)

- ❑ 정부의 USI(Universal Salt Iodization)전략에 따라 태국 FDA는 태국 아동 및 임산부의 요오드 결핍을 줄이기 위해 식용 소금(식품 성분으로 사용되는 식염 및 소금 포함)을 요오드화해야 한다.
- ❑ 식용 소금의 경우, 요오드는 식용 소금 30mg/kg이상이어야 하며 "Iodized Edible Salt"라는 문구를 식품 이름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성분으로 소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Iodized Edible Salt"의 문구가 성분 목록 표에 표기되어야 한다.

12. 식품첨가물 라벨링(Food Additive Labeling)

- ❑ 공중 보건부 고시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72 B.E. 2558 Re: Food Additive (No. 3)에 따라 2015년 12월 4일부터 유효.
- ❑ 식품 첨가물 표시에는 태국어로 된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외국 텍스트에 첨부될 수 있다). 명확하고 읽기 쉬운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4절 라벨링 승인 절차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 제1절 통관 주의사항

■ 한국 반찬류

- 콩자반, 마늘종, 양념깻잎, 깻마늘, 단무지, 무말랭이 같은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반찬류 같은 경우, 통관 시 태국식약청허가를 이미 발급받았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에 제조 공정도와 제조 성분표를 추가해 제조사 날인이 찍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해산물(김, 어묵, 생선류 등)

- 해산물(김, 어묵, 생선류)에 대해서는 추가로 태국 농수산청에서 아누얏(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하며, 허가증을 발급받는데 3~10일이 소요되므로 통관 입고 전에 미리 받아놔야 한다.

■ 소고기 함유 제품

- 모든 제품 소고기가 함유된 제품은 소고기에 대한 출처 서류, 소고기 안전필증, 성분분석표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하며 농수산청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 가능하다. 소고기에 대한 검역이나 허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입 이전에 이 절차를 다 마무리 후 진행해야 한다.

■ 젤리류

- 상기에 언급하다시피 소고기가 함유된 제품은 태국에서 통관하는데 검역이 까다롭다. 젤리류 제품의 젤라틴은 설령 소고기가 함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실히 함유가 안 되었다는 공증서를 제조사 날인과 싸인이 들어간 서류 형태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관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쌀에 대한 허가

- 태국은 쌀에 관해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쌀 관련 수입 시 태국 농수산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 현지 한국 농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 포워딩 업체 인터뷰

Q : 한국 식품을 수입 시 어여 발급 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까?

A : 태국의 전략 상품인 아이스크림을 2017년 수입 진행시, 12개 중 4개가 태국식약청허가가 발급이 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다.

Q : 태국 통관 시 거절되어 폐기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A : 소고기 만두 및 젤리 제품 수입 과정 중에 젤리에 젤라틴이 함유되어 통관 거부된 적이 있으며, 만두 속에 소고기가 함유된 덕에 거절되어 폐기 처분한 경험이 있다.

Q : 수입 애로 사항으로 자체 해결 방안이 있었습니까?

A : 방콕에는 3개의 항구에 있는데 그중에서 검역 규모가 가장 작은 TPT 항구로 입항하여 물건을 통관시키고 있으며, 방콕 포트 검역이 가장 까다로우며 BMT 항구는 거리가 멀어 물류비 부담이 있다.

Q : 태국 식품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A : 태국 FDA 등록 절차를 제외하고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 준비의 부족이나, 서류에 명시된 제품 정보(제품명, 중량 등)가 상이하여 통관 지연이 발생하며, 담당 관리자가 컨테이너를 열어 확인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번거로워지니 사전 서류 준비를 잘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주요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 개요

-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입법(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 B.E.2522 (1979))이 경제 안정, 공공복리, 공중 보건, 국가 안보, 공공질서와 풍속 기타 국가적 이해가 있을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가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과 수출에 필요한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발령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2. 주요 비관세장벽

- 옥수수, 대두, 콩가루 등 사료 원료(feed ingredients) 수입 통관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유제품 원료가 포함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수입 요건이 요구된다.
- 특정 물품과 용역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무역경쟁위원회(the Trade Competition Board)에 위임하고 있다.
 - 가격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설탕,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농산품과 석유가스, 의약품, 학생복, 음향기기 등이 있다.
 -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은 연간 주기로 공시되지만, 가격정책에 대한 검토체계는 불투명하게 운영된다.
- 무연 휘발유,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일부 제품에 높은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차량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10%에서 50% 범위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 주류에 수입관세와 소비세, 그리고 기타 추가 요금이 부과되면 누적되는 세금 부담은 약 400%에 달한다.
- 관세 당국의 과도한 위법 단속 포상금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태국 정부는 최근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관 공무원에 대한 특혜에 관련된 규정들을 수정하였다.

- 위법 단속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15%로 축소하고, 지급액 상한선을 새로 도입(건당 500만 바트)하였다.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해가 발생하고 정식 수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1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 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정한 강제 표준(Compulsory Standard)을 득해야 한다.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 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수입 검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번 수입 시마다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를 번거롭게 하기도 한다.
- 특히, 태국 내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표준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TISI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및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승인 수수료는 건당 1만 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으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세금납입증명서, 여권 및 노동허가증, 선적서류, 카탈로그, 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 품질 관리확인서, 매뉴얼

▣ 라벨링 제도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복잡한 농산물 및 식품 수입과정

- 태국으로의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 수입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시리얼 넘버(lek Or. Yor.)를 부여해 관리하며, 식품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통상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한다.
- 만약 신청서의 모든 서류가 정확하다면 수입 허가에 7일 업무일이 소요되고 제조 허가에는 20~60 업무일이 소요된다. 판매용이 아닌 박람회나 전시회를 위한 일시적 제품은 임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수출입 부과금

- 태국은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하여 수출입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품수출입법 제5조에서는 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의를 위해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수출입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수출입 부과금의 부과 및 그 요율에 대한 수정,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절차 등은 상무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수출입 부과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재무성의 국고에 납부되지 않고 국제무역 진흥기금에 직접 입금되며, 태국 정부는 국제무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국제무역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수출입 부과금을 동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기금의 집행과 배분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에서 별도 정하게 하고 있다.
- 수출입 부과금을 내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과금보다 낮은 금액을 내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2가지를 병행하여 부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제 7 장

수출업체 애로사항

▶ 제1절 수출 애로 해소 사례 및 현지화 사업(aT지원)

No.	제목	지역	태국(방콕)
1	태국 내 계약 조율 부분에 대한 법률 자문	품목	건강기능식품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상담회 외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한 바이어 미팅, 이메일, 통화 등으로 수출 계획까지 나왔으나 태국현지상황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계약의 조율부분들의 어려움, 자금결제, 현지에서 계약 시 조심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애로 사항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화 자문) 태국-한국 업체 양자 간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자료 지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대 태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만한 수출 지원 		

No.	제목	지역	태국(방콕)
2	태국 내 샤인머스켓 품종 등록 여부 확인	품목	샤인머스켓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샤인머스켓 품종 수출 관련하여 한국 종자원에 문의 결과 한국에는 품종등록이 안되어 있고 판매 등록만 되어 있어서 판매에 문제가 없지만, 일본 품종이므로 타 국가에 품종 보호나 특허 등록을 했다면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확인 요청 		
aT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화 자문) 한국의 샤인머스켓은 태국 농림부의 확인 결과 수입 가능하며, 태국 지식재산권 정부 부서 DIP에 확인하여 품종 보호 및 특허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자료 지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가 직면한 애로사항 및 문의 사항을 해결하여 대 태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원만한 수출 지원 		

제2절 **태국 내 참고 홈페이지 및 연락처**

웹사이트	홈페이지	연락처
태국 관세청	www.customs.go.th	02-667-6000 or 7000
태국 소비청	interweb.excise.go.th	02-446 8081-4
태국 FDA	www.fda.moph.go.th	02-590-7442
태국 농림부	www.dog.go.th	02-940-6670 to 128
태국 수산청	www4.fisheries.go.th	02-562-0600-15
LPI(License Per Invoice)	http://food.fda.moph.go.th/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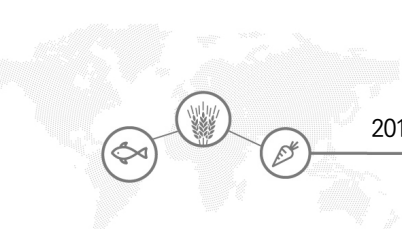
참고자료(잔류농약 허용기준)

- 2017년 1월 27일 태국 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살충제 잔류 농산물에 관한 보건부 (MOPH)의 통지에 대해 WTO (G / SPS / N / THA / 183 / Rev.1)에 통보했다.
- 이 통보는 식품 중 잔류 농약 잔류물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 기준 및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1	Chlorpyrifos	Chlorpyrifos (fat-soluble)	Okra	0.5
			Banana	2
			Paddy1	0.5
			Rice2	0.1
			Seed spices	5
			Fruit spices	1
			Root spices	1
			Kale	1
			Rambutan	0.5
			Celery	0.05
			Soybean	0.1
			Fresh bean pod	1
			Durian	0.4
			Oil palm	0.05
			Iceberg lettuce	0.1
			Chili	3
			Dried chili3	20
			Sweet pepper	2
			Eggplant	0.2
			Coconut	0.05
Peanut	0.05			
Sweet potato	0.05			
Longan	0.9			
Lychee	2			
Shallo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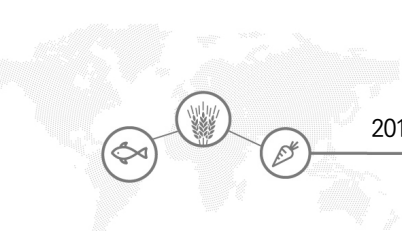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Onion	0.2
			Mushroom	0.05
			Beef, meat of buffalo	1 (fat)
			Mutton, meet of goat	1 (fat)
			Bovine and buffalo offal	0.01
			Sheep and goat offal	0.01
			Pork	0.02 (fat)
			Swine offal	0.01
			Poultry meat	0.01 (fat)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0.02
2	Chlorothalonil	Plant: Chlorothalonil Animal: (2,5,6-trichloro-4-hydroxy isophthalonitrile)	Soybean	0.2
			Fresh bean pod	2
			Chinese white cabbage	1
			Chinese cabbage	1
			Chinese Broccoli	4
			Tomato	5
			Potato	0.2
			Peanut	0.1
3	Carbaryl	Carbaryl	Lead tree	0.02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rn	0.02
			Sorghum	10
			Rice ²	1
			Rambutan	1
			Watermelon	1
			Durian	30
			Oil palm	0.05
			Brassica vegetables ⁴⁴	1
			Cucumber and other melons except watermelon	2
Chili	0.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Dried chili ³	2
			Sweet pepper	5
			Coconut	1
			Mango	3
			Mangosteen	1
			Potato	0.2
			Cacao bean	0.02
			Peanut	2
			Cashew nut	1
			Longan	20
			Lychee	1
			Orange	7
			Grape	0.5
			Sugarcane	0.05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1
			Poultry meat	0.05
			Egg	0.05
			Milk	1
4	Carbendazim/benomyl	Combination of carbendazim, benomyl, thiophanatemethyl is reported as carbendazim	Chinese leek	3
			Rice ²	2
			Rambutan	3
			Spring onion	3
			Green bean	0.5
			Soybean	0.5
			Fresh bean pod	3
			Mulberry leaf	0.1
			Chili	2
			Dried chili ³	20
			Tomato	0.5
			Mango	2
			Cotton seeds	0.1
			Peanut	0.1
			Asparagus	0.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Shallot	3
			Onion	2
			Grape	3
			Sugarcane	0.1
			Beef, buffalo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offal	0.1
			Egg	0.05
Milk	0.05			
5	Carbosulfan	Carbosulfan	Okra	0.5
			Lead tree	0.2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orghum	0.05
			Rice ²	0.2
			Rambutan	0.2
			Cucumber and other melons except watermelon	0.5
			Watermelon	0.2
			Green bean	0.05
			Cow peas	0.1
			Fresh green peas	0.1
			Soybean	0.05
			Fresh bean pod	0.5
			Durian	0.2
			Oil palm	0.05
			Brassica vegetables ⁴	0.5
			Chili	0.5
			Dried chili ³	5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0.03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Tomato	0.5
			Coconut	0.2
			Sweet potato	0.05
			Potato	0.05
			Coffee bean	0.05
			Cacao bean	0.05
			Sesame	0.2
			Sunflower kernel	0.05
			Peanut	0.05
			Cotton seed	0.05
			Castor bean	0.05
			Orange	0.1
			Asparagus	0.02
			Grape	0.1
			Mammal meat	0.05 (fat)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0.05
		Combination of carbofuran and 3-hydroxy carbofuran is reported as carbofuran	Okra	0.15
			Lead tree	0.2
			Fresh corn	0.01
			Fresh baby corn	0.01
			Corn	0.05
			Sorghum	0.1
			Rice ²	0.1
			Rambutan	0.05
			Green bean	0.2
			Cow peas	0.1
			Fresh green peas	0.15
			Soybean	0.1
			Fresh bean pod	0.02
			Durian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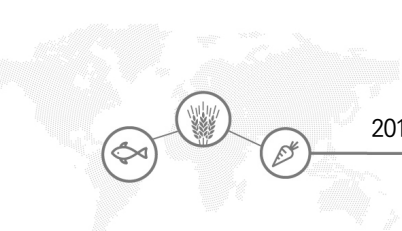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Oil palm	0.1
			Brassica vegetables ⁴	0.03
			Orange	0.02
			Chili	0.5
			Dried chili ³	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0.1
			Tomato	0.1
			Coconut	0.02
			Coffee bean	1
			Cacao bean	0.05
			Sesame	0.1
			Peanut	0.1
			Sunflower kernel	0.05
			Cotton seed	0.1
			Castor bean	0.1
			Asparagus	0.06
			Grape	0.0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0.01			
6	Captan	Captan	Barley	0.02
			Soybean	5
			Fresh bean pod	5
			Oil palm	5
			Mango	5
			Cotton seed	5
			Peanut	5
Grape	10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7	Quintozene	Plant: Quintozene (fat 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quintozene penta-chloroaniline and methyl pentachlorophenyl sulphide is reported as quintozene (fat soluble)	Seed spices	0.1
			Fruit spices	0.02
			Root spices	2
8	Clothianidin	Clothianidin	Durian	0.9
9	Sulfury fluoride	Sulfury fluoride	Rice ²	0.1
10	Cypermethrin	Cypermethrin	Okra	0.5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Fruit spices	0.1
			Root spices	0.2
			Cow pea	0.7
			Fresh green pea	0.05
			Soybean	0.05
			Fresh bean pod	5
			Durian	1
			Brassica vegetables ⁴	1
			Chili	2
			Dried chili ³	10
Tomato	0.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excluding tomato	0.03
			Mango	0.7
			Papaya	0.5
			Cotton seed	0.1
			Longan	1
			Lychee	2
			Orange	0.3
			Grapefruit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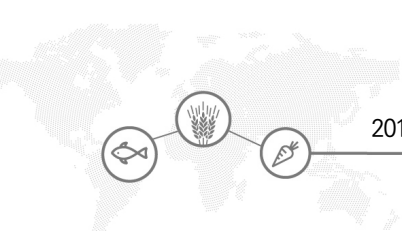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Pomelo	0.5
			Asparagus	0.4
			Shallot	0.1
			Onion	0.01
			Sugar cane	0.2
			Mammal meat	2 (fat)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5
			Chicken fat	0.1
			Egg	0.05
			Milk	0.05
11	2, 4-D	Combination of 2, 4-D and salt and ester of 2, 4-D reported as 2, 4-D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orghum	0.01
			Rice ²	0.1
			Spring onion	0.05
			Pineapple	0.05
			Mammal meat	0.2
			Mammal offal	1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1
Milk	0.01			
12	Deltamethrin	Combination of alpha-R Deltamethrin and trans-deltamethrin (fat soluble)	Garlic	0.1
			Banana	0.05
			Fresh baby corn	0.02
			Corn	1
			Fresh corn	0.02
			Spring onion	0.5
			Cow pea	0.2
			Oil palm	0.05
			Chinese cabbage-PAI TSAI	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Chinese white cabbage	2
			Chinese Broccoli	2
			Other Brassica vegetables ⁴	0.1
			Chili	0.1
			Dried chili ³	1
			Tomato	0.3
			Mango	0.2
			Coffee bean	2
			Cocoa bean	0.05
			Peanut	0.01
			Cotton seed	0.05
			Cashew nut	0.02
			Pineapple	0.01
			Asparagus	0.1
			Shallot	0.1
			Onion	0.05
			Sugar cane	0.05
			Beef, buffalo meat	0.5 (fat)
			Goat meat, mutton	0.5 (fat)
			Bovine offal, buffalo offal	0.03
			Goat and sheep offal	0.03
			Pork	0.5 (fat)
			Swine offal	0.03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2
			Poultry fat	0.1 (fat)
			Egg	0.02
			Milk	0.05F
13	Dichlorvos	Dichlorvos	Spices	0.1
			Orange	0.2
			Grain	0.2
			Mammal meat	0.05
			Poultry meat	0.05
			Milk	0.0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14	Dicofol	Plant: Dicofol (combination of o,p' & p,p'-isomers) (fat 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dicofol and 2,2-dichloro-1, 1-bis (4-Chloro-1,1-bis (4-chlorophenyl) ethanol (p,p'-FW152)} reported as Dicofol (fat soluble)	Seed spices	0.05
			Fruit spices	0.1
			Root spices	0.1
			Cucumber	0.5
			Green bean	0.1
			Soybean	0.05
			Tomato	1
			Beef, buffalo meat	3 (fat)
			Bovine offal, buffalo offal	1
			Poultry meat	0.1 (Fat)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0.01F
			15	Dithiocarbamate s e.g. zineb, ziram, thiram, propineb, maneb and
Garlic	0.5			
Rice ²	0.05			
Rambutan	2			
Spring onion	10			
Cucumber	2			
Musk melon	0.5			
Water melon	1			
Other melons except cucumber, musk melon and watermelon	0.5			
Soybean	0.1			
Fresh bean pod	0.2			
Durian	2			
Oil palm	0.1			
Chinese cabbage-PAI TSAI	5			
Chinese broccoli	15			
Morning glory	0.3			
Taro	0.1			
Chili	3			
Sweet pepper	1			
Dried chilli ³	20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Pumpkin	0.2
			Tomato	2
			Mango	2
			Potato	0.2
			Peanut	0.1
			Orange	2
			Asparagus	0.1
			Shallot	0.5
			Onion	0.5
			Grape	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1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1
			Egg	0.05
Milk	0.05			
16	Difenoconazole	Plant: Difenoconazole (fat-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difenoconazole and metabolite CGA 205375 reported as difenoconazole (fat soluble)	Mango	0.6
17	Dimethoate	Dimethoate	Sorghum	0.01
			Seed spices	5
			Fruit spices	0.5
			Root spices	0.1
			Cucumber and other melons except watermelon	1
			Cantaloupe	1
			Cow pea	0.05
			Pulses	0.1
			Tomato	2
			Cotton seed	0.05
Orange	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Shallot	0.05
			Onion	0.05
			Mammal meat	0.05
			Mammal f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f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5
			Milk	0.05
18	Diazinon	Diazinon	Fresh corn	0.02
			Fresh baby corn	0.02
			Corn	0.02
			Sorghum	0.02
			Seed spices	5
			Fruit spices	0.1
			Tea	0.1
			Chinese white cabbage	0.05
			Chinese broccoli	0.05
			Other Brassica vegetables ⁴	0.5
			Coffee bean	0.2
			Cotton seed	0.1
			Mammal meat	2 (Fat)
			Mammal offal	0.03
			Poultry meat	0.02
Poultry offal	0.02			
Egg	0.02			
Milk	0.02F			
19	Triazophos	Triazophos	Garlic	0.05
			Sorghum	0.05
			Fruit spices	0.07
			Root spices	0.1
			Green bean	0.2
			Cow pea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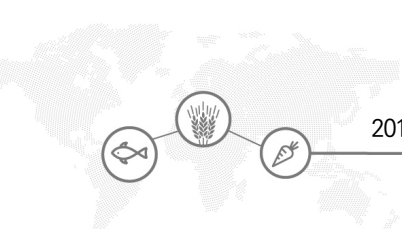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Soybean	0.05
			Fresh soybean	0.5
			Fresh bean pod	1
			Jujube	0.03
			Coffee bean	0.05
			Peanut	0.05
			Cacao bean	0.05
			Sesame	0.05
			Sunflower kernel	0.05
			Shallot	0.05
			Onion	0.05
			Grape	0.02
			Beef, buffalo meat	0.01
			Poultry meat	0.01
			Milk	0.01
			20	Tebuconazole
21	Thiamethoxam	Thiamethoxam	Mango	0.2
		Clothianidin	Mango	0.04
22	Buprofezin	Buprofezin	Cotton seed	0.35
23	Paraquat	Paraquat cation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3
			Sorghum	0.03
			Paddy1	0.05
			Rice2	0.05
			Pulses except soybean	0.5
			Soybean	0.1
			Fruits (inedible shell except orange)	0.01
			Orange	0.02
			Leafy vegetables	0.07
			Cucumber and other melons	0.02
			Tuber and root	0.0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Tomato	0.05
			Potato	0.05
			Cotton seed	2
			Strawberry	0.01
			Grape	0.01
			Mammal meat	0.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05
			Poultry offal	0.005
			Egg	0.005
			Milk	0.005
24	Pirimiphos-Methyl	Pirimiphos-Methyl	Fresh corn	1
			Fresh baby corn	1
			Corn	1
			Paddy ¹	7
			Rice ²	5
			Seed spices	3
			Fruit spices	0.5
			Oil palm	0.1
			Cacao bean	0.05
			Kapok seed	0.1
			Cashew nut	0.1
			Mammal meat	0.01
			Mammal offal	0.01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0.01
25	Permethrin	Permethrin - all isomers (fat soluble)	All kinds of spices	0.05
26	Prochloraz	Combination of prochloraz and matabolyte, which consists of 2,4,6-trichlorphenol moiety reported as prochloraz	Mango	7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27	Prothiofos	Prothiofos	Green bean	0.05
			Chili	3
			Dried chili ³	20
			Peanut	0.05
			Potato	0.05
28	Profenofos	Profenofos (fat soluble)	Cabbage	1
			Rose apple	0.05
			Spring Onion	0.05
			Soybean	0.05
			Durian	0.05
			Cotton seed oil	0.05
			Orange except pomelo and lime	0.1
			Brassica vegetables ⁴ except cabbage	0.5
			Chili	3
			Sweet pepper	0.5
			Dried chili ³	20
			Tomato	10
			Lime	0.05
			Mango	0.2
			Mangosteen	10
			Potato	0.05
			Cotton seed	3
			Pomelo	2
			Shallot	0.05
			Onion	0.05
			Grape	0.05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5			
Poultry offal	0.05			
Egg	0.02			
Milk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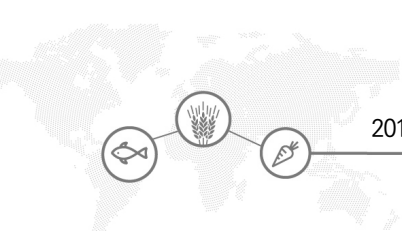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29	Fipronil	Plant: Fipronil (fat soluble) Animal: Combination of fipronil and fipronil sulfone reported as fipronil (fat soluble)	Basil	0.2
			Paddy1	0.01
			Rice2	0.01
			Cow pea	0.04
			Cotton seed	0.01
			Sweet basil	0.2
30	Famoxadone	Famoxadone (fat soluble)	Potato	0.02
31	Fenvalerate	Fenvalerate- all isomers (fat soluble)	Cabbage	3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w pea	1
			Soybean	0.1
			Oil palm	0.5
			Chinese white cabbage	1
			Chinese broccoli	3
			Other Brassica vegetables4	2
			Tomato	1
			Mango	1.5
			Potato	0.05
			Cotton seed	0.2
			Peanut	0.1
			Longan	1
			Lychee	1
Mammal meat	1 (Fat)			
Mammal offal	0.02			
Milk	0.1F			
32	Fenitrothion	Fenitrothion	Fresh corn	1
			Fresh baby corn	1
			Corn	1
			Paddy1	6
			Rice2	1
			Seed spices	7
			Fruit spices	1
			Root spices	0.1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Tea	0.5
			Soybean	0.5
			Fresh bean pod	0.5
			Coffee bean	0.05
			Mammal meat	0.05
			Poultry meat	0.05
			Egg	0.05
			Milk	0.01
33	Phosalone	Phosalone (fat soluble)	Seed spices	2
			Fruit spices	2
			Root spices	3
			Spring onion	0.5
			Cow pea	0.5
			Fresh green peas	0.5
			Soybean	0.05
			Fresh bean pod	0.5
			Durian	1
			Mulberry leaf	0.1
			Brassica vegetables ⁴	0.5
			Chili	0.5
			Sweet pepper	1
			Dried chili ³	4
			Tomato	0.5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0.5
			Orange	1
			Mangosteen	1
			Cotton seed	1
			Asparagus	0.5
			Shallot	0.5
			Onion	0.5
34	Folpet	Folpet (fat soluble)	Rambutan	0.1
35	Phenthoate	Phenthoate (fat soluble)	Seed spices	7
36	Malathion	Malathion (fat soluble)	Brassica vegetables	0.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Cabbage	8
			Fresh corn	0.02
			Fresh baby corn	0.02
			Corn	0.05
			Sorghum	3
			Seed spices	2
			Fruit spices	1
			Root spices	0.5
			Spring onion	5
			Broccoli	5
			Orange except pomelo	7
			Chinese white cabbage	8
			Kale	3
			Chili	0.1
			Dried chili ³	1
			Tomato	0.5
			Tapioca	0.5
			Pomelo	0.2
			Shallot	1
			Onion	1
Sugar cane	0.02			
37	Metalaxyl or Metalaxyl-M	Metalaxyl	Fresh corn	0.05
			Fresh baby corn	0.05
			Corn	0.05
			Seed spices	5
			Cucumber	0.5
			Cantaloupe	0.2
			Watermelon	0.2
			Long cucumber	0.5
			Durian	0.5
			Angled Gourd	0.2
			Orange	5
			Chinese broccoli	2
			Morning glory	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Taro	0.5
			Pepper	0.05
			Betel	0.05
			Pumpkin	0.2
			Wax Gourd	0.2
			Tomato	0.2
			Potato	0.05
			Pineapple	0.1
			Onion	2
			Grape	1
38	Methidathion	Methidathion	Rambutan	0.2
			Durian	0.2
			Custard apple	0.2
			Pears	0.1
			Orange	0.5
			Grape	0.1
			Apple	0.1
			Mammal meat	0.02
			Mammal offal	0.02
			Poultry meat	0.02
			Poultry offal	0.02
			Egg	0.02
			Milk	0.001
39	Methyl bromide	Bromide ion from use of methyl bromide and from all sources but not including covalently bound bromine	Paddy2	50
			Paddy2(attheportorfumigationareaafterreleasegasoutandletpaddyexposuretoairnotlessthan 24 hours)	1
		Paddy2(atthesellingarea)	0.01	
40	Lambda-cyhalothrin	Lambda-cyhalothrin all isomers (fat soluble)	Okra	0.03
			Basil	0.7
			Sorghum	0.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Rambutan	0.5
			Green bean	0.2
			Soybean	0.2
			Fresh bean pod	0.2
			Durian	0.5
			Oil palm	0.2
			Other cauliflower ⁴	0.3
			Broccoli and cauliflower	0.5
			Chili	0.3
			Sweet pepper	0.3
			Dried chili ³	3
			Mango	0.2
			Long eggplant, small eggplant and other eggplants	0.3
			Tomato	0.3
			Cacao bean	0.02
			Sesame	0.2
			Kapok seed	0.02
			Cotton seed	0.02
			Hoary basil	0.7
			Cumin	0.7
			Longan	0.2
			Lychee	0.5
			Asparagus	0.02
			Sweet basil	0.7
41	Azoxystrobin	Azoxystrobin (fat soluble)	Mango	0.7
42	Acephate	Acephate	Paddy ¹	1
			Rice ²	1
			All spices	0.2
			Green bean	0.3
			Soybean	0.3
			Potato	0.5
			Coffee bean	0.0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Cacao bean	0.05
			Cotton seed	2
			Peanut	0.2
			Mammal meat	0.05
			Mammal offal	0.05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1
			Egg	0.01
			Milk	0.02
43	Atrazine	Atrazine	Fresh corn	0.1
			Fresh baby corn	0.1
			Corn	0.1
			Pineapple	0.1
			Sugar cane	0.1
44	Abamectin	Avermectin B1a (fat soluble)	Watermelon	0.01
			Cow pea	0.01
			Fresh green pea	0.01
			Chinese Cabbage-PAI TSAI	0.01
			Chinese broccoli	0.01
			Brassica vegetables ⁴	0.01
			Chili	0.005
			Sweet pepper	0.09
			Dried chili ³	0.5
			Small eggplant	0.02
			Cotton seed	0.01
			Orange	0.01
			Mammal meat	0.01
			Mammal fat	0.1
			Mammal offal	0.1
			Poultry meat	0.01
			Poultry offal	0.02
			Egg	0.01
			Milk	0.005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45	Amitraz	Combination of amitraz and N-(2,4-dimethylphenyl)-N'-methyl formamidine reported as N-(2,4-dimethylphenyl)-N'-methyl formamidine	Longan	2
46	Ametryn	Ametryn	Tea	0.05
			Coffee bean	0.05
			Pineapple	0.05
			Sugarcane	0.05
47	Imidacloprid	Combination of imidacloprid and metabolite consist of 6-chloropyridinyl moiety, reported as Imidacloprid.	Basil	20
			Okra	0.1
			Paddy1	0.05
			Rice2	0.05
			Mango	0.4
			Hoary basil	20
			Cumin	20
			Longan	0.8
			Orange	1
			Sweet basil	20
48	Ethephon	Plant and animal: Ethephon(For grains:Ethephon and conjugates) Reported as Ethephon	Banana	2
			Cherry	3
			Durian	2
			Mango	2
			Pineapple	2
			Grape	1
			Apple	1
			Mammal meat	0.1
			Mammal offal	0.2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2
			Egg	0.2
			Milk	0.05
Mammal offal	0.2			

No.	Pesticide	Type of pesticide residue	Type of food	Maximum Residue Limit, MRL (mg/kg of food)
			Poultry meat	0.1
			Poultry offal	0.2
			Egg	0.2
			Milk	0.05
49	Ethion	Ethion (fat soluble)	Seed spices	3
			Fruit spices	5
			Root spices	0.3
			Pulses	0.1
			Fresh bean pod	0.3
			Chili	3
			Dried chili ³	20
			Lime	1
			Orange	2
			Pomelo	1
50	Iprodion	Iprodion	Seed spices	0.05
			Root spices	0.1
51	Omethoate	Omethoate	Lead tree	0.05
			Green bean	0.05
			Cow pea	0.05
			Soybean	0.05
			Tapioca	0.02
			Coffee	0.05
			bean	
			Cotton seed	0.05
52	Hydrogen phosphide in the form of aluminium phosphide or Magnesium phosphide or phosphine	Hydrogen phosphide	Rice ²	0.1

Commodity	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EMRL) (mg/kg)				
	Aldrin ①/ and Dieldrin	Chlordane ②/	DDT③/	Endrin④/	Heptachlor ⑤/
Cereal grains	0.02	0.02	0.1	0.01	0.02
Fruits	0.05	0.02	0.01	0.01	0.01
Vegetables, Herbs and Spices	-	0.02	-	-	0.05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and Root and tuber vegetables	0.05	-	-	-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ucurbits	-	-	-	0.01	-
Vegetables, Herbs and Spices; except Carrot	-	-	0.01	-	-
Root and tuber vegetables	0.01	-	-	-	-
Carrot	-	-	0.02	-	-
Plants for sugar	0.05	0.02	0.01	0.01	0.01
Plants for beverages	0.2	0.02	0.01	0.01	0.05
Nuts and Seeds	0.05	0.02	0.01	0.01	0.02
Pulses and Oil seeds	0.05	0.02	0.01	0.01	0.02
Vegetable fats and oils	0.2	0.02	0.05	0.05	0.02
Animal fats and oils	0.2	0.05	1	0.05	0.2
Mamalian meat and edible offal (fat)⑥/	0.2	0.05	5	0.05	0.2
Poultry meat and edible offal (fat)⑥/	0.2	0.05	0.3	0.1	0.2
Meat of aquatic animals, molluscs, and invertebrate animals (fat)⑥/	0.2	0.05	1	0.05	0.2
Meat of amphibians and reptiles (fat)⑥/	0.2	0.05	1	0.05	0.2
Eggs	0.1	0.02	0.1	0.005	0.05
Milk⑦/	0.006F	0.002F	0.02F	0.0008F	0.006F

Explanatory notes

①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HHDN and HEOD (fat soluble)

② definition of residue:

- Plant commodities: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fat soluble)

- Animal commodities: sum of cis- and trans- chlordane, and oxychlordane (fat soluble)

③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p, p/-DDT, o, p/-DDT, p,p/-DDE, and p,p/TDE(DDD) (fat soluble)

④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endrin and delta-keto-endrin (fat soluble)

⑤ definition of residue: sum of heptachlor and heptachlor epoxide (fat soluble)

⑥ (fat) indicated after the MRLs of meat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 applied to the fat of

m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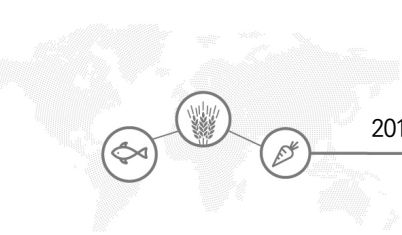
- ⑦ "F" indicated after the MRLs of milk and milk product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means the MRLs for fat-soluble pesticide residues in milk and milk products expressed on a whole product based. In addition, criteria for using the MRL with "F" are as follows:
- (1) For a "milk product" with a fat content less than 2 %, the MRL applied should be as half of those specified for milk.
 - (2) For a "milk product" with a fat content of 2 % or more, the MRL applied should be 25 times of the established MRL for milk, expressed on a fat basis.
- The mark "*" following the MRLs means these MRLs established at Limit of Quantitation (LOQ).

제4절 **참고자료(수입금지 품목)**

○ 현재 식물 검역법 개정 B.E. 2542 (1999)가 집행되고 있으며, 식물 병해충 및 기타 질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 검역법에 따라 수입된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 통지 및 명령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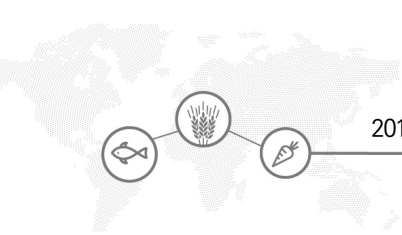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Plant		
1	Plant in the genus <i>Citrus</i> , <i>Fortunella</i> and <i>Poncirus</i>	Africa Australia Central America Ceylon Europe India Indonesia Japan Near East Mediterranean Region South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eserved food. 2. Oranges (including navels, valencias, mandarins and its hybrids such as tangor), lemons,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from Australi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Notification : Conditions for Im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Australia to Thailand dated 15 June 2004. 3. Oranges (including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lemons and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from Californi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1 (SCU 1)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om California, USA to Thailand. 4. Oranges (including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grapefruit (including pummelo) and lemon (excluding sour lemon, <i>Citrus limon</i>) from Florid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2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Florida, USA to Thailand. 5. Oranges (navels, tangerines, tangelos, valencias), lemons, limes, and grapefruit (including pommelo) from Arizona, US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specific commodity understanding 4 : Conditions for export of fresh citrus fruit from Arizona, USA to Thailand. 6. Citrus seeds from California, USA, French, Spain, Israel, South Africa and Australia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ccompan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Coconut (<i>Cocos nucifera</i>)	Central America East Africa Guam India Philippines South America West Indies West Afric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eserved food. 2. Finished products of coconut plants which have been processed by the method declared by the owner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before the import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decided the same are free of plant pests. 3. Dehusked coconut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3	Plants in the genus <i>Gossypium</i>	Africa Central America Mexico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West Indies	Cotton lint imported for industrial use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a Phytosanitary Certificate of the country of origin.
4	Plants in the genus <i>Hevea</i> such as rubber etc. and carrier such as Fresh latex, Cup lump, Scrap.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West Indies	
5	Cassava (<i>Manihot esculenta</i>)	Africa Brazil Indonesia	Preserved food Flour Sago
6	Plants in the genus <i>Oryza</i>	Central America Ceylon India Japan Philippines Republic of China South America United States of America West Africa West Ind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eserved food 2. Finished products of plants in the genus <i>Oryza</i> spp. Which must be handled according to conditions stipulated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3. Rice, broken-milled rice and steamed rice which must be accompanied by Phytosanitary Certificate
	Genetically modified plant		
1	Plants in the genus <i>Agrostis</i>	All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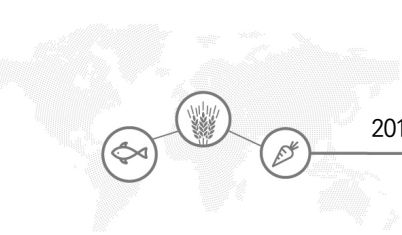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i>Actinidia chinensis</i> Planch	All countries	
3	<i>Allium cepa</i> L.	All countries	
4	Plants in the genus <i>Amelanchier</i>	All countries	
5	<i>Ananus comosus</i> (L.) Merr.	All countries	
6	<i>Apium graveolens</i> var. <i>dulce</i> (Mill.) D.C.	All countries	
7	<i>Arabidopsis thaliana</i> L.	All countries	
8	Plants in the genus <i>Arachis</i>	All countries	
9	<i>Armoracia rusticana</i> P. Gaertner, Meyer & Scherb.	All countries	
10	<i>Asparagus officinalis</i> Linn.	All countries	
11	<i>Atropa belladonna</i> L.	All countries	
12	<i>Avena sativa</i> L.	All countries	
13	<i>Beta vulgaris</i> L. sub sp. <i>vulgaris</i>	All countries	
14	Plants in the genus <i>Brassica</i>	All countries	
15	Plants in the genus <i>Camellia</i>	All countries	
16	Plants in the genus <i>Capsicum</i>	All countries	
17	Papaya (<i>Carica papaya</i> L.)	All countries	
18	Plants in the genus <i>Chrysanthemum</i>	All countries	
19	<i>Cichorium intybus</i> L.	All countries	
20	<i>Citrullus lanatus</i> (Thumb) Matsun & Nakai	All countries	
21	Plants in the genus <i>Citrus</i>	All countries	
22	<i>Cocos nucifera</i> L.	All countries	
23	Plants in the genus <i>Coffea</i>	All countries	
24	Plants in the genus <i>Cucumis</i>	All countries	
25	Plants in the genus <i>Cucurbita</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6	<i>Daucus carota</i> L.	All countries	
27	Plants in the genus <i>Dendranthema</i>	All countries	
28	<i>Dianthus carvophyllus</i> L.	All countries	
29	<i>Elaeis guineensis</i> Jacq.	All countries	
30	Plants in the genus <i>Eucalyptus</i>	All countries	
31	Plants in the genus <i>Fortunella</i>	All countries	
32	Plants in the genus <i>Fragaria</i>	All countries	
33	Plants in the genus <i>Gladiolus</i>	All countries	
34	<i>Glycine max</i> L.	All countries	1. Preserved food 2. Soybean use as raw material to produce animal feed or food for human consumption or use for industrial purpose
35	Plants in the genus <i>Gossypium</i>	All countries	
36	Plants in the genus <i>Helianthus</i>	All countries	
37	Plants in the genus <i>Hevea</i>	All countries	
38	Plants in the genus <i>Hordeum</i>	All countries	
39	Plants in the genus <i>Ipomoea</i>	All countries	
40	Plants in the genus <i>Juglans</i>	All countries	
41	<i>Lactuca sativa</i> L.	All countries	
42	<i>Lens culinaris</i> Medik.	All countries	
43	Plants in the genus <i>Linum</i>	All countries	
44	<i>Liquidambar styraciflua</i> L.	All countries	
45	Plant in the genus <i>Lupinus</i>	All countries	
46	<i>Lycopersicon esculentum</i> Miller	All countries	
47	Plant in the genus <i>Malus</i>	All countries	
48	<i>Manihot esculenta</i>	All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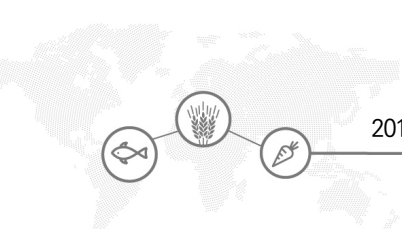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Crantz.		
49	Plant in the genus <i>Musa</i>	All countries	
50	<i>Medicago sativa</i> L.	All countries	
51	Tobacco (<i>Nicotiana tabacum</i> L.)	All countries	
52	Plant in the family Orchidaceae	All countries	
53	Plant in the genus <i>Oryza</i>	All countries	
54	Plant in the genus <i>Papaver</i>	All countries	
55	Plant in the genus <i>Pelargonium</i>	All countries	
56	Plants in the genus <i>Petunia</i>	All countries	
57	Plant in the genus <i>Phaseolus</i>	All countries	
58	Plant in the genus <i>Picea</i>	All countries	
59	<i>Pisum sativum</i>	All countries	
60	Plant in the genus <i>Poncirus</i>	All countries	
61	Plants in the genus <i>Populus</i>	All countries	
62	Plant in the genus <i>Prunus</i>	All countries	
63	Plant in the genus <i>Pyrus</i>	All countries	
64	<i>Ribes nigrum</i>	All countries	
65	Plant in the genus <i>Ricinus</i>	All countries	
66	Plant in the genus <i>Rosa</i>	All countries	
67	Plants in the genus <i>Rubus</i>	All countries	
68	Plants in the genus <i>Saccharum</i>	All countries	
69	Plants in the genus <i>Solanum</i>	All countries	
70	Plants in the genus <i>Sorghum</i>	All countries	
71	Plants in the genus <i>Stylosanthes</i>	All countries	
72	<i>Theobroma cacao</i> L.	All countries	
73	<i>Torenia fournieri</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i>Lind.</i>		
74	Plants in the genus <i>Trifolium</i>	All countries	
75	Plants in the genus <i>Triticum</i>	All countries	
76	Plants in the genus <i>Vaccinium</i>	All countries	
77	Plants in the genus <i>Figna</i>	All countries	
78	Plants in the genus <i>Vitis</i>	All countries	
79	Corn (<i>Zea mays</i> L.)	All countries	1. Preserved food 2. Maize use as raw material to produce animal feed or food for human consumption or use for industrial purpose
80	Plants in the genus <i>Zoysia</i>	All countries	
	Carrier		
1	Soil	All countries	-
2	Organic fertilizer	All countries	1. Organic fertilizer from animals except excrement of animal. 2. Organic fertilizer from plants which have been processed by the method declared by the owner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before the importation and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has decided the same are free of plant pests.
	Plant pest		
	Fungi		
1	<i>Ascochyta gossypii</i>	All countries	
2	<i>Asperisporium caricae</i>	All countries	
3	<i>Calonectria rigidiuscula</i>	All countries	
4	<i>Ceratocystis fimbriata</i>	All countries	
5	<i>Crinipellis perniciososa</i>	All countries	
6	<i>Deuterophoma tracheliphila</i>	All countries	
7	<i>Elsinoe australi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8	<i>Ephelis oryzae</i>	All countries	
9	<i>Haplobasidium musae</i>	All countries	
10	<i>Microcyclus ulai</i>	All countries	
11	<i>Moniliophthora roreri</i>	All countries	
12	<i>Mycosphaerella fijiensis</i>	All countries	
13	<i>Phaeoramularia angolensis</i>	All countries	
14	<i>Phellinus noxius</i>	All countries	
15	<i>Phymatotrichum omnivorum</i>	All countries	
16	<i>Phytophthora citricola</i>	All countries	
17	<i>Phytophthora hibernalis</i>	All countries	
18	<i>Phytophthora katsurae</i>	All countries	
19	<i>Rosellinia bunodes</i>	All countries	
20	<i>Rosellinia pepo</i>	All countries	
21	<i>Septoria limonum</i>	All countries	
22	<i>Sphaceloma manihoticola</i>	All countries	
23	<i>Uromyces musae</i>	All countries	
	Bacteria		
1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michiganensis</i>	All countries	
2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nebraskensis</i>	All countries	
3	<i>Clavibacter michiganensis</i> subsp. <i>sepedonicus</i>	All countries	
4	<i>Liberobacter africanum</i>	All countries	
5	<i>Pseudomonas rubrisubalbicans</i>	All countries	
6	<i>Pseudomonas corrugate</i>	All countries	
7	<i>Xanthomonas axonopodis</i> pv. <i>citrumelo</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8	<i>Xanthomonas campestris</i> pv. <i>cassavae</i>	All countries	
9	<i>Xanthomonas campestris</i> pv. <i>celebensis</i>	All countries	
10	<i>Xylella fastidiosa</i>	All countries	
	Protozoa		
1	<i>Nosema bombycis</i>	All countries	
2	<i>Phytomonas staheli</i>	All countries	
	Virus		
1	Afric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2	Banana streak virus	All countries	
3	Cassava brown streak virus	All countries	
4	Cassava common mosaic virus	All countries	
5	Cassava frog skin virus	All countries	
6	Cassava Ivorian virus	All countries	
7	Cassava vein mosaic virus	All countries	
8	Citrus leaf rugose virus	All countries	
9	Citrus leprosis virus	All countries	
10	Citrus psorosis virus	All countries	
11	Citrus ringspot virus	All countries	
12	Citrus rubbery wood virus	All countries	
13	Citrus tatter leaf virus	All countries	
14	Citrus variegation virus	All countries	
15	Citrus vein enation virus	All countries	
16	Cocoa necrosis virus	All countries	
17	Cocoa red mottle virus	All countries	
18	Cocoa swollen shoot virus	All countries	
19	Cocoa yellow mosaic virus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0	Cocoa yellow vein banding virus	All countries	
21	Coconut foliar decay virus	All countries	
22	Cotton anthocyanosis virus	All countries	
23	Cotton leaf crumple virus	All countries	
24	Cotton leaf mosaic virus	All countries	
25	Cotton leaf mottle virus	All countries	
26	Cotton stenosis virus	All countries	
27	Cotton terminal stunt virus	All countries	
28	East Afric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29	Indian cassava mosaic virus	All countries	
30	Maize Rayado fino virus	All countries	
31	Papaya bunchy top virus	All countries	
32	Papaya leaf curl virus	All countries	
33	Papaya mosaic virus	All countries	
34	Papaya waialua virus	All countries	
35	Rice dwarf virus	All countries	
36	Rice hoja blanca virus	All countries	
37	Rice yellow mottle virus	All countries	
38	Satsuma dwarf virus	All countries	
39	Sugarcane ramu stunt virus	All countries	
40	Tomato black ring virus	All countries	
41	Tomato bushy stunt virus	All countries	
42	Tomato ring spot virus	All countries	
43	Tomato spotted wilt virus	All countries	
	Viroid		
1	Citrus cachexia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viroid		
2	Citrus exocortis viroid	All countries	
3	Coconut cadang-cadang viroid	All countries	
4	Potato spindle tuber viroid	All countries	
5	Tinangaja viroid	All countries	
	Mycoplasma		
1	Banana marbling disease MLO	All countries	
2	Citrus witches broom MLO	All countries	
3	Coconut lethal yellowing MLO	All countries	
4	Sugarcane grassy shoot MLO	All countries	
	Insect		
1	<i>Anastepha fraterculus</i>	All countries	
2	<i>Anastepha ludens</i>	All countries	
3	<i>Anastepha oblique</i>	All countries	
4	<i>Anastepha suspensa</i>	All countries	
5	<i>Anthonomus grandis</i>	All countries	
6	<i>Anthonomus vestitus</i>	All countries	
7	<i>Artona catoxantha</i>	All countries	
8	<i>Bactrocera musae</i>	All countries	
9	<i>Bactrocera tryoni</i>	All countries	
10	<i>Caliothrips masculinus</i>	All countries	
11	<i>Ceratitis capitata</i>	All countries	
12	<i>Ceratitis cosyra</i>	All countries	
13	<i>Ceratitis quinaria</i>	All countries	
14	<i>Ceratitis rosa</i>	All countries	
15	<i>Diatraea saccharalis</i>	All countries	
16	<i>Erinnyis ello</i>	All countries	
17	<i>Leptopharsa heveae</i>	All countries	
18	<i>Lissorhoptrus oryzophilus</i>	All countries	
19	<i>Opogona sacchari</i>	All countries	
20	<i>Oryctes boas</i>	All countries	
21	<i>Oryctes monocero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2	<i>Pachymeris nucleorum</i>	All countries	
23	<i>Panthomorus cervinus</i>	All countries	
24	<i>Phenacoccus manihoti</i>	All countries	
25	<i>Prostephanus truncatus</i>	All countries	
26	<i>Pseudothraupis devastans</i>	All countries	
27	<i>Pseudothraupis wayi</i>	All countries	
28	<i>Rhynchophorus palmarum</i>	All countries	
29	<i>Sacadoses pyralis</i>	All countries	
30	<i>Scirtothrips aurantii</i>	All countries	
31	<i>Sesamia calamistis</i>	All countries	
32	<i>Sesamia cretica</i>	All countries	
33	<i>Trioza erythrae</i>	All countries	
34	<i>Trogoderma granarium</i>	All countries	
	Mite		
1	<i>Aceria guerreronis</i>	All countries	
2	<i>Aceria sheldoni</i>	All countries	
3	<i>Mononychellus tanajoa</i>	All countries	
4	<i>Oligonychus peruvianus</i>	All countries	
	Nematode		
1	<i>Anguina agrostis</i>	All countries	
2	<i>Anguinagraminis</i>	All countries	
3	<i>Anguina tritici</i>	All countries	
4	<i>Aphelenchoides arachidis</i>	All countries	
5	<i>Belonolaimus longicaudatus</i>	All countries	
6	<i>Bursaphelenchus xylophilus</i>	All countries	
7	<i>Cactodera cacti</i>	All countries	
8	<i>Ditylenchus destructor</i>	All countries	
9	<i>Ditylenchus dipsaci</i>	All countries	
10	<i>Dolichodorus heterocephalus</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11	<i>Globodera pallida</i>	All countries	
12	<i>Globodera rostochiensis</i>	All countries	
13	<i>Heterodera avenae</i>	All countries	
14	<i>Heterodera glycines</i>	All countries	
15	<i>Heterodera graminis</i>	All countries	
16	<i>Heterodera oryzae</i>	All countries	
17	<i>Heterodera oryzicola</i>	All countries	
18	<i>Heterodera punctata</i>	All countries	
19	<i>Heterodera sacchari</i>	All countries	
20	<i>Heterodera schachtii</i>	All countries	
21	<i>Heterodera sorghi</i>	All countries	
22	<i>Heterodera trifolii</i>	All countries	
23	<i>Hirschmantiella miticausa</i>	All countries	
24	<i>Hoplotaimus columbus</i>	All countries	
25	<i>Hoplotaimus indicus</i>	All countries	
26	<i>Longidorus sylphus</i>	All countries	
27	<i>Meloidogyne camelliae</i>	All countries	
28	<i>Meloidogyne chitwooki</i>	All countries	
29	<i>Meloidogyne coffeicola</i>	All countries	
30	<i>Meloidogyne graminis</i>	All countries	
31	<i>Nacobbus aberrans</i>	All countries	
32	<i>Pratylenchus coffeae</i>	All countries	
33	<i>Rhadinaphelenchus cocophilus</i>	All countries	
34	<i>Rotylenchulus macrodoratus</i>	All countries	
35	<i>Scutellonema bradys</i>	All countries	
36	<i>Trichodorus viruliferus</i>	All countries	
37	<i>Xiphinema americanum</i>	All countries	
38	<i>Xiphinema diversicaudatum</i>	All countries	
	Weed		
1	<i>Avena fatua</i>	All countries	

No.	Plant, Plant pest or Carrier	Source	Exception
2	<i>Chenopodium album</i>	All countries	
3	<i>Cirsium arvense</i>	All countries	
4	<i>Cirsium vulgare</i>	All countries	
5	<i>Galium aparine</i>	All countries	
6	<i>Polygonum convolvulus</i>	All countries	
7	<i>Rumex acetosella</i>	All countries	
8	<i>Rumex obtusifolius</i>	All countries	
9	<i>Salvinia molesta</i>	All countries	
10	<i>Thlaspi arvense</i>	All countries	
	Unknown Etiology		
1	Bract mosaic diseases	All countries	
2	Bristle top	All countries	
3	Citrus blight	All countries	
4	Cotton blue disease	All countries	
5	Dryout rot	All countries	
6	Head drop	All countries	
7	Little leaf	All countries	
8	Little mottle	All countries	
9	Natuna wilt	All countries	
10	Sacorro wilt	All countries	
11	Tatipaka wilt	All countries	

No.	Plant and Carrier	Origin	Exception
1	<i>Ananus comosus</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	<i>Arachis hypogaea</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3	Plants in the genus <i>Camellia</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4	Plants in the genus <i>Capsicum</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5	<i>Carica papaya</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6	<i>Citrullus lanatus</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7	Plants in the genus <i>Citrus</i>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Preserved food
8	<i>Cocos nucifera</i> and the following carries : dried copra, dried copra meal and coir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9	Plants in the genus <i>Coffea</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0	<i>Colocasia antiquorum</i> var. <i>esculenta</i> and the following carrier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1	<i>Cucumis melo</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2	<i>Elaeis guineensis</i>	All countries	-
13	<i>Glycine max</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soy meal and full fatted soy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4	Plants in the genus <i>Gossypium</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cotton seed meal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All countries	-
15	Plants in genus <i>Hevea</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resh latex, cuplump, scrap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
16	<i>Hordeum vulgare</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7	<i>Ipomoea batatas</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18	Plants in the genus <i>Lupinus</i>	All countries	-
19	<i>Lycopersicon esculentum</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0	<i>Manihot esculenta</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Preserved food

No.	Plant and Carrier	Origin	Exception
	flour and sago	All countries	
21	Plants in the genus <i>Musa</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rope
22	<i>Nicotiana tabacum</i>	All countries	Cigarettes, smoking tobacco, cigars and cigarillos
23	Plants in family Orchidaceae	All countries	-
24	Plants in the genus <i>Oryza</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rice bran, defatted rice bran and rice malt extract.	All countries other than those indicated in prohibited materials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5	Plants in the genus <i>Saccharum</i>	All countries	-
26	<i>Solanum tuberosum</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7	<i>Sorghum bicolor</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8	<i>Theobroma cacao</i>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29	Plants in the genus <i>Triticum</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30	<i>Vigna radiata</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31	<i>Zea mays</i> and the following carriers : flour, cob, corn meal and corn flour	All countries	Preserved food

제5절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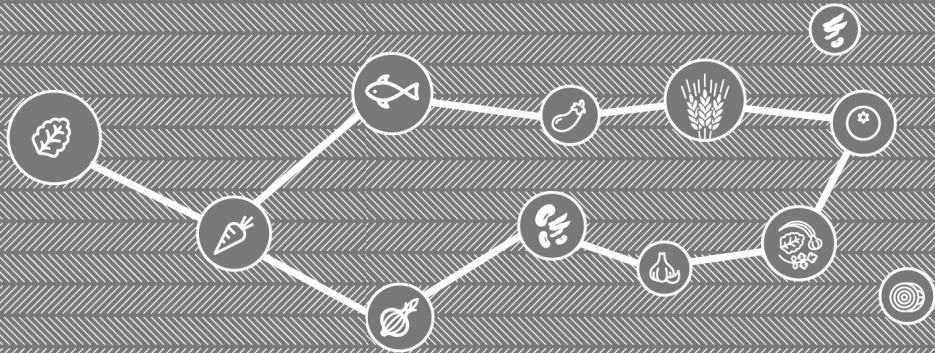
웹사이트	
태국 관세청	www.customs.go.th
태국 소비청	interweb.excise.go.th
태국 FDA	www.fda.moph.go.th
농수산물 수출지원 정보	www.kati.net
방콕포스트	www.bangkokpost.com
더 네이션	www.nationmultimedia.com
KOTRA 해외시장 뉴스	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관련 법규	
식품법	Food Act
식품 라벨링 규정	Labels
즉석식품 라벨링 규정	Labeling of some kinds of ready-to-eat foods
잔류농약 기준	Food Containing Pesticide Residues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관세법	The Customs Act
검역법	The Quarantine Act
식물검역법	Plant Quarantine Act
소비세법	Excise Tax Act

관련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태국의 수입규제 제도	한-태 상공회의소 / 2014.03
신흥교역국의_통관환경연구(태국)	KIPF 세법연구센터 / 2016.12
Food_Regulations_Enforcement_Thailand	Tilleke & Gibbins / 2016.11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Narrative	Gain Report / 2016.12
Thai FDA Revision on Pesticide Residue Standards and MRLs in Food	Gain Report / 2017.02
TH_Plant_Quarantine_Import_Regulations	Vertic
Thai Excise Department Implements New Sugar Tax on Beverages	Gain Report / 2017.10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인도네시아



- 제1장 시장 개요
- 제2장 통관 제도
- 제3장 검역 제도
- 제4장 관세 제도
- 제5장 라벨링 제도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인도네시아

Contents

제1장 시장 개요	145
제1절 시장 여건	145
제2절 유통현황 및 소비트렌드	147
제3절 최근 동향	150
제2장 통관 제도	153
제1절 일반사항	153
제2절 통관 서류	159
제3절 통관 절차	161
제4절 품목별 통관절차	166
제5절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186
제6절 기타 특이사항	192
제3장 검역 제도	197
제1절 일반사항	197
제2절 품목별 검역 정보	199
제4장 관세 제도	203
제1절 수입 관세 납부 방법	203
제2절 FTA 특혜 관세 수혜조건	205
제5장 라벨링 제도	207
제1절 일반사항	207
제2절 표시방법 유의점	209
제3절 돼지고기 표시 관련 유의사항	212
제4절 포장	214

제 1 장

시장 개요



제1절

시장 여건

1. 세계 4대 인구 대국으로 무슬림 인구 87% 차지

-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6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87%가 무슬림으로 단일국가 중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 식품시장의 규모는 2016년 2,6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성장. 최근 5개년 간 10.6%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조코위 정부의 자급자족 정책으로 인해 농업 및 식품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2. 5%대 지속적 경제 성장 추세

- 과거 6%대 성장을 기록하다,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수출과 내수부진, 환율 불안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5%대 성장 유지하고 있다.
 - * GDP : ('11) 6.2% → ('14) 5.4% → ('15) 4.7% → ('16) 5.0% → ('17) 5.3%(예상)
- 2014년 말 유가 인상, 2015년 쌀, 쇠고기 등 식품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16년 환율 소폭 하락 및 안정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추세가 주춤하였다.
 - * 인플레이션 : ('13) 6.4% → ('14) 6.4% → ('15) 6.4% → ('16) 3.5%

3. 취약한 인프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인

- 인도네시아는 세계 16위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3,600불 수준의 하위 중소득 국가로 전반적 인프라 수준은 동남아 역내 경쟁국가인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 특히 물류 인프라의 경우 물류성과지수가 동남아 9개국 중 5위로 동남아 주요국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GDP 대비 27%를 차지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 태국은 15.2%



제2절

유통현황 및 소비트렌드

1. 유통현황

- 아세안(ASEAN)에서 현대적 유통채널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인도네시아이다.
 - 2010년~2015년 기준 하이퍼마켓은 12.4%, 슈퍼마켓은 11.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유통채널별 비중 ■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니마트	3.81	5.00	5.86	6.73	7.66	8.20
슈퍼마켓·하이퍼마켓	8.33	7.89	7.95	8.38	8.67	8.55
재래시장	87.86	87.12	86.19	84.89	83.67	83.25

자료 : USDA Gain Report, 2016

- 특히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로 편의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 인도네시아 편의점 시장은 인도마트, 알파마트 로컬 2개 업체의 복점 형태로 각각 1만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2015년 인도네시아 편의점 연평균 성장률은 30%였다.

■ 주요 식품유통매장 ■

분 류	업체명	매장 수	비 고
슈퍼마켓	HERO	33	홍콩 데어리팜 소유
	Giant Express	117	
	Food Hall	25	전 SOGO 매장
하이퍼마켓	Carrefour/Trans Mart	90	PT Trans Retail Indonesia '12년 인수
	Giant	55	홍콩 데어리팜 소유
	Hypermart	112	최대 매장수 보유
	Lotte Mart	41	소매 14, 도매 27
미니마트	Indomaret	13,099	로컬업체로 인도네시아 편의점시장 복점
	Alfamart	11,115	
	Circle K	500	-

자료 : USDA Gain Report, 2016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GDP 비중은 아직 1%에 불과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급 성장해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tokopedia, bukalapak, lazada, elevenia 등이 있다.

■ 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쇼핑물 현황 ■

Blanja	Tokopedia	Bukalapak	Elevenia	Qoo10	OLX	Lazad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출처 : Blanja(www.blanja.com), Tokopedia(www.tokopedia.com), Bukalapak(www.bukalapak.com), Elevenia(www.elevenia.co.id), Qoo10(www.qoo10.com), OLX(www.olx.ph), LAZAZADA(www.lazada.com)

■ 인도네시아 내 한국제품 직구 서비스를 실시하는 홈페이지 ■

일레브니아 한국관

Qoo10 한국관

출처 : Elevenia(www.elevenia.co.id), Qoo10(www.qoo10.com)

2. 소비트렌드

가. 급속한 경제성장 및 중산층 증가로 인한 건강식품 소비 증가

- 경제가 급성장하여 중산층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건강식품 시장이 연 10~1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곡류 제품을 가족과 자녀를 위한 건강한 식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침 대용 시리얼 제품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2016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아침 대용 시리얼 제품시장은 979십억 루피아를 기록해 작년 대비 15% 성장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1분기 비타민 음료는 15% 이상 매출이 증가했지만 탄산음료는 15% 이상 감소했다. 이는 탄산음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구매의사가 줄었기 때문이다.

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식품 소비 형태 변화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는 '12년 40억 불에서 '16년 250억 불로 증가, '18년에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젝, 그랩, 해피 프레쉬 등 O2O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식품 분야로도 영역 확장이 예상되며, 이를 통한 장보기 대행, 음식 배달 등 식품 및 외식 소비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다. 도시화, 여성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간편식품 발달


- 경제발전, 도시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 2014년 인도네시아 간편식품 시장규모는 4억 129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6.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렴한 가격과 간편성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는 라면이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다. 인도 푸드그룹의 인스턴트 라면인 인도미(Indomie)는 2017년까지 5년 이상 인도네시아 탑 브랜드 자리를 지켰으며 인도네시아 도시 거주자 중 99.4%가 월평균 3봉지의 인도미를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17년 10월 기준 對 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수출 14백만 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제3절 최근 동향

1. 돼지 DNA 적발로 인한 한국 농식품 이미지 실추

-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식품에 할랄 인증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며,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DNA 검출 이후 현지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성분 포함 및 할랄 여부에 대해 민감해하는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기 관련 규정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시/라벨이 의무이다.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한다.

MENGANDUNG BABI	MENGANDUNG BABI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문구 또는 “돼지 함유”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 해석 : 제조과정 중 돼지에서 나온 원료와 접촉되었다.

- '17년 9월 말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라면인 S사의 매운맛 라면이 MUI 할랄 인증을 획득하면서 최근 실추되고 위축되었던 한국 식품의 이미지와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9년부터 할랄인증 여부 표기 의무화

-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령 2014년 33호에 의거 할랄인증의 의무화가 예고되었으나 인도네시아 국내의 여론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할랄인증 여부 표기 의무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앞으로 식품은 3가지로 분류되어 표기할 예정이다.
 - ① 할랄 인증 식품
 - ②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 ③ 돼지 성분을 포함한 식품
- 해당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 수입될 수 있다. 다만,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이라는 표기를 해야 수입 가능하고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 소비자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에서 어떤 소비층을 타겟으로 할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2019년부터 할랄인증의 역할을 민간기관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에서 정부 기관인 할랄 인증청(BPJPH)로 이관한다.
 - 할랄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 기관인 할랄 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현재 신설된 상태이지만 아직 그 기능 수행은 하지 않고 있다.

할랄 인증청(BPJPH) 기능	
- 할랄 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 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 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 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 제품보장에 관한 감독

- 할랄 인증청(BPJPH) 할랄 인증 절차
 - ① 할랄 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 인증청(BPJPH)에 제출한다.
 - ② 할랄 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를 요청한다.
 - ③ 할랄 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한다.
 - ④ 할랄 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 인증청(BPJPH)에 전달한다.
 - ⑤ 할랄 인증청은 MUI(현 할랄 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할랄 인증청에서 할랄 인증을 발급한다.

3. 참치, 고등어, 정어리 캔 제품 SNI인증 의무화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참치, 고등어, 정어리 캔 제품의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2016년 12월 27일부로 제정하고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관련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6년 제58호

제품명	HS CODE	SNI
참치 캔 제품(Tuna dalam Kemasan Kaleng)	1604.14.10.00	8223:2016
고등어 캔 제품(Makerel dalam Kemasan Kaleng)	1604.15.10.00	8222:2016
정어리 캔 제품(Sarden dalam Kemasan Kaleng)	1604.13.10.00 1604.12.10.00	8222:2016

제 2 장

통관 제도

제1절 일반사항

1. 개요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식품법안 Act No. 7(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으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법안이다.
- 식품법안(Food Act)에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는 제품으로,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식품 재료 이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이 된다.”
- 또한, 식품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
 -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 내수소비 및 수출되는 식품의 특성 향상을 위해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 수입 규정은 식품법안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안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수입절차

▣ 일반사항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면허의 주관부서는 무역부이지만, 의약 및 일부 식품과 같은 특별한 제품의 경우 추가로 다른 정부부서의 특수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는 수입업자가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수입절차가 복잡하다.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역면허(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는 관세청 등록번호(NIK,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및 수입자등록번호(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식품 및 음료 수입업자들은 추가로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IP/IT) 면허, 그리고 필요하면 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Ⅰ 수입절차 Ⅰ

파트너십 형성	기업이 수입업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한다		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한다.
	무역면허(SIUP)		
	관세청 등록번호(NIK)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수입허가 신청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의 정부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수입허가를 신청한다		제품 등록 ML 번호
	ITPT	수산물 수입허가	
	IP/IT 원예 제품	IT 동물 제품	
제품의 운송	통 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제품의 인도		

■ 무역면허(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 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무역면허(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를 발급받아야 한다.
- 무역면허에는 회사의 활동 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무역면허 발급부서인 산업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걱정시민인증서(letter of good conduct)를 요구할 수 있다.
- 무역면허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간편 업체 서비스(One Stop Shop Service)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무역면허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 관세청 등록번호(NIK,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 관세청 등록번호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이다.
- “관세청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관세청 등록번호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이용자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된다.
- 관세청 등록번호는 관세청이 취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하다.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청 등록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 된 관세청 등록번호는 취소 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관세청 등록번호를 회복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 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 관세청 등록번호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수입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판촉제품, 연구개발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수입업자 등록번호 없이도 수입 가능하다.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입업자 등록번호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 수입업자 등록번호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수입업자 등록번호는 API-U, 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수입업자 등록번호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며,
 -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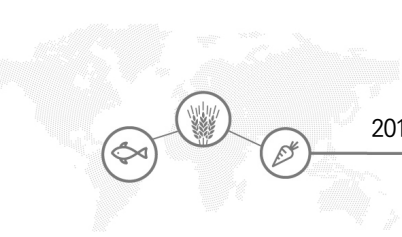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의 신청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 취지서) (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 본사 소재지증명서 (사본) 3. 투자 등록서 (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기본승인서) (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 (사본)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 (TDP) (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 (사본) 9. IMTA (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 처리	5 근무일
유효 기간	5년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수입업자 등록번호가 통지가 된다.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수입업자 등록번호는 취소될 수 있다.
 - 수입업자 등록번호가 2회에 걸쳐 효력 정지를 당했을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가 효력 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 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 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수입업자 등록번호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 품목은 항구에서 억류 조치된다.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 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려는 조치이다.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 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 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 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유효 기간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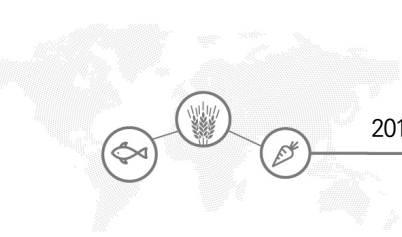
- 수입업자의 신청서가 승인되면, 수입업자에게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가 발급된다.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역협력국에 수입 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는 취소될 수 있다.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하는 행위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 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2절 통관 서류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양식(PIB)을 준비해야 한다. 세관 신고양식의 유형은 수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양식	
물품 수입 신고서 (PIB 양식)	BC 2.0
특정 물품 수입 신고서 (PIBK 양식)	BC 2.1
승객 혹은 운송수단 승무원의 물품 수입 신고서	BC 2.2
보세구역 보관예정 물품 수입신고서	BC 2.3
관세 지역 (DPIL)을 출발하여 보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이전 신고서	BC 4.0
수출 용도로 수입시설에 도착하는 수입 물품에 관한 정산 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	BC 2.5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	BC 2.6.1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재진입 신고서	BC 2.6.2
보세구역 간 물품 이전을 위한 신고서	BC 2.7

-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관세청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 지역 진입 시에도 구비해야 한다.
- 선하증권 (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 (AWB)
 - 상업 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 증명서 (C/O)
 -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 (영수증)
 - 특정 물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
 - 통제되는 물품에 대한 유효한 관련 허가서



-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 매매 계약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 카탈로그

- 서류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권장된다.



제3절

통관 절차

1. 개요

▣ 관세청의 역할

- 관세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강제,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 ▣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하며, 수입 관세의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진다.
- 많은 기업은 관세청 사안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만, 관세 및 세제의 책무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로 최고 500%에 달하는 행정적 벌과금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2. 통관절차

도착 전	관세항구에 도착	하역	수입 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 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으로 물품 인도	관세청에서 물품 인수

□ 도착전

- 도착전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진입 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 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 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관세 항구에서의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 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각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 제품의 목록

■ 수입 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 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 있다.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 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 관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이다.

- 수입 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170%의 요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10%이다.
- 사치품 판매세 (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된다.
- 소득세 (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이다.

- 위에 열거된 수입 관세 및 제세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한다.
- 전자데이터교환시스템이 전면 시행된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 수입 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결제를 이용한다.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 송장, 포장명세, 수입 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한다.
-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후, 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위험도에 따라 4개의 채널로 분류되어 통관 검사가 실시된다.(적색 통로, 황색 통로, 녹색 통로, MITA 통로)
* MITA 통로는 관세유예 여부로 Priority Channel 업체와 Non Priority Channel 업체로 구분됨.
- 채널의 분류는 수입업자의 신용과 재정,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따라 상이하다.

■ 수입 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된다. 수입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른다.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통로(근무일 5일) 이외에는,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근무일 3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보다는 빠르다. 실제로 녹색 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린다.

1. 적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JM)가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2. 황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JK)가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3. 녹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PB)가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4. MITA 일반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된다.
5. MITA 우선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된다.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함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 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원산지 규정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원산지 관련된 규정의 발표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관세율과 관련된 특혜대우의 시행을 주안점으로 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른 특혜 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ASEAN 물품교역 협약 (ATIGA)
- ASEAN-중국 FTA (ACFTA)
- ASEAN-한국 FTA (AKFTA)
- ASEAN-인도 FTA (AIFTA)
- ASEAN-호주 및 뉴질랜드 FTA (AANZFTA)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협약 (IJEPA)

☐ ASEAN-한국 FTA (AKFTA)

- 동 특혜 관세협약은 한국 및 다른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품에 적용이 된다. 수입업자는 관세율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KCCI)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양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 현재 KCCI는 일반 C/O, 특혜 관세 C/O, FTA C/O, 국가 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한다. 한국과의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에는 FTA C/O가 발급된다.
-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KCCI로부터 C/O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제4절 품목별 통관절차

1. 가공식품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제품의 수입 관련”에 따라 무역부는 2010년 188개 식품 및 음료 항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10자리 HS 관세 코드의 505개 항목에 대한 수입제품의 요구조건을 강화하였다.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제품, 완성된 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이 된다.
- 동 규정에 따라 가공식품의 수입은 등록된 특정제품 수입업자(ITPT,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특정제품 수입업자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2. 기업 등록번호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사본) 5. 관세청 등록번호 (NIK) (사본) 6. 물량, 제품의 종류, 관세분류/HS 10자리 번호, 도착항 등이 포함된 1년간의 수입계획
신청 처리소요 기간	7 근무일

- 특정제품 수입업자에 수록된 제품들은 전국의 국제공항 및 5개의 항구(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 Hatta) 등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Dumai 및 Jayapura 항구는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선적항으로 이용될 수 있다.
- 특정제품 수입업자들은 3개월마다 익월 15일까지 <http://intrade.kemendag.go.id>를 통해 수입제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ITPT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 부담으로 선적항에서 제품을 확인 또는 기술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제품 수입업자 등록이 철회된다.
 - 수입업자가 제4조에 요구되는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입업자가 특수제품을 연속된 6개월 동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부 산하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 사안에 대한 위반하였다고 보고할 경우

- 수입업자는 등록이 철회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ITPT를 위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입 포장식품의 경우, 의약품관리청은 최소 유통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부과.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의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1.5년 이상
 -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6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3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2. 수산물

-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수산물은 인도네시아와 상호승인협정, 양해각서 또는 기타 협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품 자급자족을 강조한 식품법 제 18호/2012에 따라 수산물 수입은 특정 어종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 한국은 2005년에 인도네시아와 어류 및 수산물 수출입의 품질 관리 및 위생 안전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관련 규정
 - ①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제품안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 규정 제 74호/Permen-KP/2016
 -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급에 기반해 해양수산부(MoMAF)에 의해 결정되는 수산물 수입 허용량과 수산물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수입은 API-U 또는 API-P를 보유한 회사를 통해 다음의 목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통조림 산업과 재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API-P)
 - 일반 가공처리를 위해 보존된 형태로 사용되는 원재료(API-U/P 모두 해당)
 - 미끼용 수산물(API-U/P 모두 해당)
 - 특정 식품 강화 또는 재료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API-U/P 모두 해당)
 - 호텔, 식당 그리고 일반시장에서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산물(API-U/P 모두 해당)



② 인도네시아로 수입 가능한 수산물 유형에 관한 해양수산물 경쟁력강화 총국장(PDSPKP), 해양수산부령 제 31호/KEP-DJP2HP/2015

- 이 법령은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가능한 수산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어류 통조림 산업용 원재료

HS 코드	품목	형태
0303.53.00.00	정어리(<i>Sardinella</i> spp.)	냉동
0303.55.00.00	잭 및 고등어(<i>Trachurus</i> spp.)	냉동
0303.54.00.10	대서양 고등어(<i>Scomber scombrus</i>)	냉동
0303.54.00.20	태평양 고등어(<i>Trachurus</i> spp.)	냉동

- 재 수출 및 인도네시아 국내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료
인도네시아로의 수입이 법적으로 금지된 수산물을 제외하고, 본 범주를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이 허가된다.

- 재래 가공용 보존 형태의 원재료

HS 코드	품목	형태
0303.54.00.20	태평양 다랑어(<i>Trachurus</i> spp.)	냉동
0303.89.15.10	인도양 다랑어(<i>Rastrelliger kanagurta</i>)	냉동
0303.89.15.10	복층 고등어(<i>Rastrelliger brachysoma</i>)	냉동

- 호텔, 레스토랑 및 현대식 시장에서의 소비

HS 코드	품목	형태
0302.11.00.00	송어(<i>Salmo trutta</i> , <i>Oncorhynchus</i> spp.)	신선
0303.14.00.00		냉동
0302.13.00.00	태평양 연어(<i>Oncorhynchus</i> spp.)	신선
0303.12.00.00		냉동
0302.14.00.10	대서양 연어(<i>Salmo salar</i>)	신선
0303.13.00.10		냉동
0302.21.00.00	큰 넙치(<i>Reinhardtius</i> spp.)	신선
0303.31.00.00		냉동
0302.51.00.00	대구(<i>Anoplopoma fimbria</i> / <i>Gadus</i> spp.)	신선
0303.63.00.00		냉동
0306.12.00.00	바닷가재(<i>Homarus</i> spp.)	냉동
0306.17.30.00	민물대하(<i>Macrobrachium rosenbergii</i>)	냉동
1212.21.10.00	김(Roasted laver)	건조
0307.41.20.00	오징어(<i>Loligo</i> spp., <i>Nototodarus</i> spp., <i>Todarodes pacificus</i>)	신선
0307.49.10.00		냉동

어류종에 따라 사진, 상품명, 학명 및 HS 코드가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서식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어류를 수입할 수 있다.

· 미끼류

HS 코드	품목	형태
0303.53.00.00	정어리(Sardinella spp.)	냉동
0307.49.10.00	짧은 지느러미 오징어(Illlex spp.)	냉동

○ 등록 및 허가

- 수출업자 등록

- 원산국의 수산물 수출업자는 어류검역조사본부(BKIPM)에 등록해야 한다.
- 등록된 한국 수출업자 목록 확인은 홈페이지(<http://www.bkipm.kkp.go.id/bkipmnew/upifn/index/4>)에서 할 수 있다.

- 수산물 수입허가(IPHP - Surat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 인도네시아로 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물 경쟁력강화 총국장(PDSPKP)으로부터 IPHP를 취득해야 한다. IPHP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신청절차

수출업자	구비서류준비 1. 수산물 위생증명서 2. 원산지증명서 3. 어획증명서
수입업자	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PDSPKP)에 수산물 수입허가(IPHP) 신청 1. API-U 또는 API-P 2. 해양수산물경쟁력강화총국(PDSPKP)으로 신청서 제출 3. 해당지역의 해양 및 어업사업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에서 발행한 추천서 4. 우수제조기준(GMP)을 증명할 PSDPKP에서 발행한 제조증명서(SK) 및 위생관리기준(SSOP) 또는 ISO 22000(가공수산물) 5. 수산물검역검사본부(BKIPM)에서 발행한 HACCP증명서 6. 원산국에 수출업자로 등록된 서류 7. 어획증명서 8. 수입하는 원재료가 어류 통조림 산업 및 보존용 재래 가공을 위한 목적일 경우, 인도네시아 어류 통조림 사업자 협회(APIKI) 및 인도네시아 어류보호협회(APPIKANDO)의 추천서 9. 수입업자명, 주소, 세금등록번호(NPWP), 수입목적, 의무수입량 및 유통 계획에 대한 정보가 담긴 사업계획 10. 수산물 수입허가(IPHP)로 수입한 실 수입량
해양수산물 경쟁력강화총국	허용된 쿼터 정보로 IPHP 발행

○ 검수

- 수산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후, 검역관이 검수를 한다. 수산물검역검사본부(BKIPM)는 검수 결과가 승인되면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원예작물

- 원예작물은 수입일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일정은 일년 중 각 물품이 수입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 관련규정

- ① 원예생산물 수입 권고사항에 관한 농업부 장관 규정 제 16호 /Permentan/HR.060/5/2017
 - 이는 2017년 5월에 규정 86/ Permentan/ OT.140/8/2013을 개정한 새로운 규정이다. 본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서(SPI)를 신청하는 즉시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 - 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를 취득해야 한다.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는 농업부에서 취득할 수 있다.

- ② 원예작물 수입조항에 대한 무역부 장관 규정 제 30호/Permentan/HR.060/5/2017
 - 이 규정은 이전 규정 제 71호/M-DAG/PER/9/2015의 개정안으로, 수입업자가 수입 허용량의 최소 80%를 수입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 규정은 원예작물의 수입허가서(IP)를 보유하고 API-U 또는 API-P를 보유한 회사에 한하여 원예작물 수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API 보유자는 매년 11월 수입허가서(IP)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전 규정에 따라 원예작물 수입추천서(RIPH)를 보유한 회사는 다음 해에 다시 새로운 수입추천서(RIPH)를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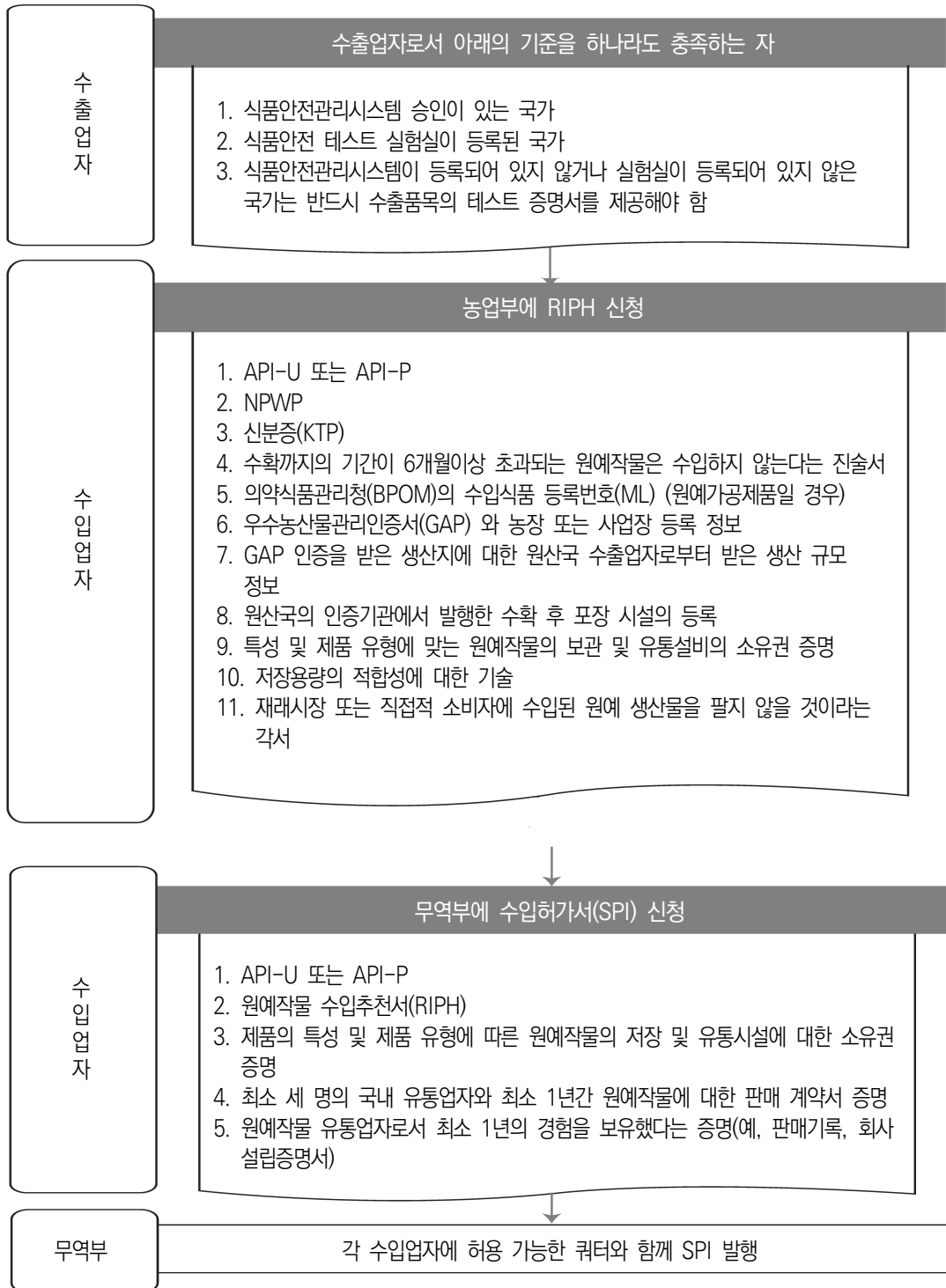
- ③ 원예생산물 수입 권고사항에 관한 농업부 장관 규정 제 38호 /Permentan/HR.060/11/2017
 - 이는 상기 농업부 장관 규정 제 16호 /Permentan/HR.060/5/2017의 개정안으로, 해당 규정을 통해 반기별로 발표되던 수입허가 스케줄이 연간 스케줄로 운영된다.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 업체별 최대 2회에 한해 수시로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RIPH) 신청이 가능하다.

- 원예작물은 특정 조건 하에서 다음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허용된다.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국가
 - 이 국가들로부터 수입 시, 반드시 사전통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 * 한국은 현재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2017년 6월 기준)
- 식품안전시험기관 또는 연구실이 등록된 국가
 - 이들 국가들에서 수입 시, 다음을 수반해야 한다.
 - a. 전자 사전통보
 - b. 분석증명서(CoA)
-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승인되지 않고 연구실이 등록되지 않은 국가
 - 이들 국가들에서 수입 시, 다음을 수반해야 한다.
 - a. 전자 사전통보
 - b. 원산국의 관할 식품안전당국 또는 공인 자격기관에서 발행한 식품안전증명서
- * 인도네시아 도착 시 식물유래 신선식품(FFPO)의 감시 빈도가 높아지며, 수입업자에 실험실 테스트 비용이 청구된다.
- 다음 조건에 해당 되는 국가들은 해당 승인이 유예되거나 철회된다.
 -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5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원산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이 유예된다.
 -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4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식품 안전성 테스트 실험실 등록이 취소된다.
 - 같은 유형의 식물 유래 신선식품(FFPO)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의 실험실 테스트 결과 중 3가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식물 유래 신선식품의 수입이 중단된다.

○ 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절차



4. 인삼

- 인도네시아는 인삼수입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 혹은 법규가 없다. 인삼의 형태 및 분류에 따라 인삼은 포장식품 또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절차에 따른다.
- 인삼이 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포장식품을 관할하는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인삼이 뿌리삼의 형태라면, 신선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삼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 수입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 신선, 뿌리 건삼(벌크)을 제외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 등록을 해야만 수입유통이 가능하다.
- 등록서류는 수입업체가 제조수출업체에 필요서류를 협조 받아 수입업체가 식품의약청에 직접 등록한다.
- 인삼엑기스 등 인삼 제품은 전통식물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등록이 더 까다로우며, 최근에 2~3년 동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준비하다가 포기한 업체가 다수이다.
- 따라서, 인삼등록은 역량이 있는 수입업체가 식품의약청과 친밀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해야 하고, 비공식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의 등록서류이며 수출업체가 준비하여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의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등록 서류
 - = 수출업체 관련 정보 =
 - 1. 업체의 대표 사인이 들어간 업체 및 제품 설명서
 - 2. 무역 라이선스
 - 3. 자유 판매(CFS) 증명서 /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로부터 인정받은 제약제품의 인증(CPP)
 - 4. 우수제조설비인증(GMP)
 - 5. 제조업체의 약정문서
 - 6. 제품 등록 책임자로서 대표의 위임장
 - 7. 협력 약정서 (계약 / 라이선스 / 유통)



= 기술적 요구사항 =

1. 세부 데이터
2. 생산 방법
3. 제품 코드 / 코드의 의미와 일치하는 배치
4. 포장과 뚜껑 설명서
5. 원재료 분석 증명서(CoA)
6. 제품 분석증명서(CoA)
7. 안정성 테스트 방법과 결과
8. 인도네시아에 승인된 보안테스트 실험실
9.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에 대한 알코올 테스트
10. 독성 시험
11. 꿀을 포함하는 제품 및 파생 상품에 대한 클로람페니콜 테스트
12. 캡슐 출처 설명서, 젤라틴 분석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할랄 인증서, 회사측 설명서

= 샘플과 포장 디자인 =

1. 원래의 라벨이 붙어 있는 샘플 (현지 OT 또는 전통 약재만, 필요시)
2. 계획된 패키지 디자인
3. 효능/유용성 설명서, 사용규칙, 유효기간, 경고/주의, 부작용, 금기사항, 약물 상호작용

5. 소고기

○ 소고기 수입은 수출 국가 및 수출업체 승인 요건의 형태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다. 소고기 수입허가서(IP)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도살장은 할랄 인증 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① 도체, 육류, 내장 및 그 가공품의 인도네시아 수입에 관한 농업부 장관 규정 제 34호/Permentan/PK.210/7/2016

- 본 규정은 도체, 육류, 내장 및 그 가공품의 인도네시아 수입을 국유기업(BUMN), 지방정부 소유기업(BUMD), 사회기관 또는 국제기관 대표와 같은 사업체가 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 본 규정은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한 동물성 식품과 축산물의 수입은 API-U 또는 API-P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② 원산국 내 지역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특정 조건하의 정육 수입에 관한 농업부 장관 규정 제 17호/Permentan/PK.450/5/2016

-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가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내 구제역 청정지역이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인정한 공식 구제역 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식량조달청(BULOG)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식량조달청(BULOG)은 무역부(MoT)에 온라인으로 수입허가서(IP)를 신청해야 하며 가축 및 동물건강 총국(DGLAHS)에 온라인으로 수입추천서(IR)를 신청해야 한다.

③ 동물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제 59호/M-DAG/Per/8/2016

- 이 규정은 2016년 8월에 발효 되었고, 제 37호/M-DAG/PER/5/2016에 의해 개정된 이전 규정 제 5호/M-DAG/PER/1/2016을 대체한다. 동물과 축산물의 수입허가서(IP) 발급 및 제품 포장 시 사용되는 포장 재료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다.

○ 수출국 기준

- 농업부 규정 제 34호/Permentan/PK.210/7/2016 및 규정 제 17호Permentan/PK.450/5/2016는 다음의 국가에서만 소고기 수입을 허가한다.

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인정한 구제역 청정 국가

② 자국 내 구제역 청정지역 및 OIE가 승인한 구제역 통제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 수입은 인도네시아 식량조달청(BULOG)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구제역 청정 국가(2017년 7월 기준)

알바니아	독일	노르웨이
호주	그리스	파나마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파라과이
벨라루스	가이아나	필리핀
벨기에	아이티	폴란드
벨리즈	온두라스	포르투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헝가리	루마니아
브루나이	아이슬란드	산 마리노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캐나다	아일랜드	싱가폴
칠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일본	스페인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스와질랜드
쿠바	레소토	스웨덴
싸이프러스	리투아니아	스위스
체코공화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마다가스카르	우크라이나
도미니카공화국	몰타	영국
엘 살바도르	멕시코	미국
에스토니아	몬테네그로	우루과이
핀란드	뉴 칼레도니아	바누아투
마케도니아	뉴질랜드	
프랑스	니카라과	

* 유럽연합 관할의 코소보는 제외

○ 관련 문서 및 신청절차 - 수출업자

- 수출업자 요건

-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및 사업체는 법령의 형태로 농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요구된다.
 - ① 사업체는 반드시 원산국 검역당국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② 동물성 제품은 절대로 구제역, 수포성 구내염(VS), 리프트 밸리얼(RVF), 우폐역(CBPP) 및 광우병(BSE)을 포함한 전염성 가축질병에 감염된 동물에서 취해서는 안된다.

- ③ 국제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보증 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식품안전보증 증명서로 검증 받아야 한다.
 - ④ 모든 도살, 절단, 취급 및 가공은 전적으로 할랄 관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⑤ 도살장에는 할랄 도살업자가 있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할랄 인증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 위의 요건이 충족된 후 승인절차는 다음의 세 단계를 밟아야 한다.

① 서면 검토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한다. 위해 요소 중점 관리 제도 또는 할랄 인증 시스템과 같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에 근거한 식품안전보증 시스템 검토가 이에 포함된다. 서면 검토는 3월, 6월, 10월, 12월 연 4회 실시된다.

② 실사 및 검수

서면 검토가 완료되면 수출업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위생 및 할랄 조치에 대한 실사 및 검수를 실시한다. 검수는 가축 및 동물 건강 총국(DGLAHS) 감사팀이 수행한다. 할랄 인증제도에 대한 검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MUI)의 할랄 감사관이나 수출국의 MUI승인을 받은 이슬람 단체에 의해 수행된다.

③ 실사 평가

실사가 완료되면 위험 평가팀이 결과를 평가한다. DGLAHS는 공식 결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 포장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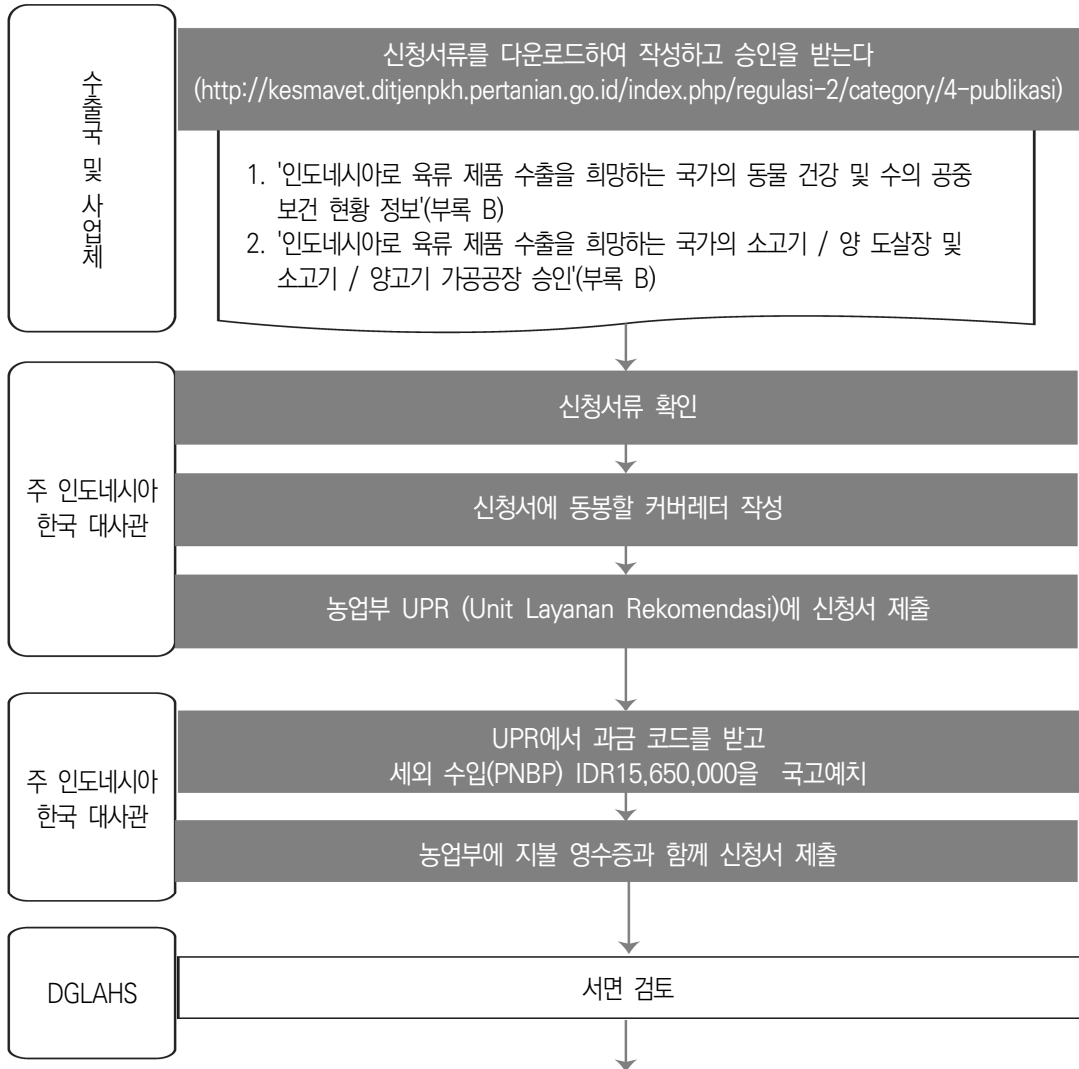
- 수출국의 포장재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등급의 무독성 재료로 만들어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벨은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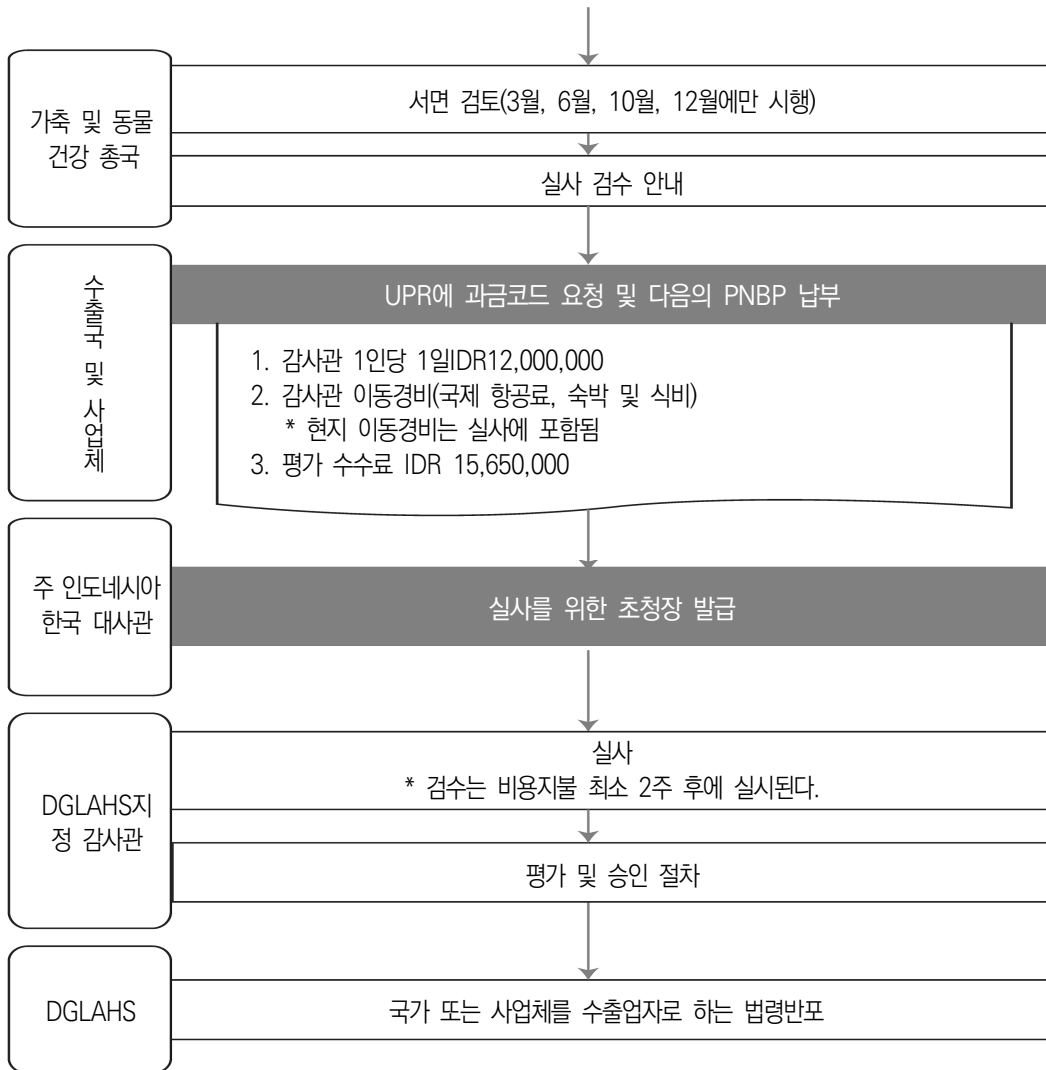
- ① 인도네시아가 도착국으로 표시
- ② 축산물 이력 번호(NKV)
- ③ 도축 또는 가공일
- ④ 제품의 수량, 유형 및 사양
- ⑤ 할랄로고

- 할랄인증

- 가공 소고기를 포함한 모든 수입 소고기는 할랄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 수출국 및 사업제 승인절차





○ 관련 등록 및 라이선스 - 수입업자

- 수입추천서 및 수입허가서

· 농업부 규정 제 34호Permentan/PK.210/7/2016에 따라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취득하여야 한다.

① DGLAHS의 수입추천서

② 무역부의 수입허가서

· DGLAHS의 수입추천서는 수입허가 신청을 위해 발행 후 3개월 동안 유효하며, 수입허가서는 수입추천서 발행으로부터 6개월동안 유효하다.

· 무역부는 수입허가서 발급을 통해 수입업자의 수입량을 결정한다.

-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 유형

번호	HS 코드	내용	육류 범주	절단 유형
	02.01	소고기, 정육 또는 냉장육		
1	0201.10.00	도체 및 이분도체		
2	0201.20.00.00	기타 부분육, 뼈포함	프라임 컷	채끝, 우둔살 및 등심, 티본스테이크, 갈비, OP 갈비/조리용갈비, 양지 및 가슴부위에서 나온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0201.30.00.00	발골육	프라임 컷	저민 안심, 힘줄/허리근을 제외한 안심, 안심머리, 안심/등심, 양지/설도 삼각살, 둔부 필레살 윗등심, 업진살, 등심, 둔부살 또는 양지 또는 가슴부위에서 나온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이차컷	도가니, 우둔살, 앞다리 또는 허벅지 부위에서 나온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부위 제조	잡육 65-95 CL, 후사분체, 전사분체 또는 육 부위 제조의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02.02	육류, 냉동		
4	0202.10.00.00	도체 및 이분도체		
5	0202.20.00.00	기타 육류 부위, 뼈포함	프라임 컷	채끝, 우둔살 및 등심, 티본 스테이크, 갈비
			이차컷	양지머리/갈비, 갈비살, 등갈비살, 콘로 갈비, 뼈있는 목살, 사태 또는 허벅지의 다른 부위 이름 OP 갈비/조리용 갈비, 양지/업진살, 또는 양지 및 가슴의 다른 부위명
6	0202.30.00.00	뼈 없는 육류	프라임 컷	저민 안심, 힘줄을 제거한 안심, 둔부 안심, 채끝/등심, 양지/설도 삼각살, 갈비살,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윗 등심, 등심, 둔부살, 설도, 둔부 필레살, 윗등심, 갈비, 업진살, 또는 양지 및 가슴 부위에서 나온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이차컷	도가니, 우둔, 실버사이드, 안창, 앞다리살, 또는 허벅지에서 나온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부위 제조	잡육 65-95 CL, 힘줄을 제거한 간 소고기/ 곱게 간 쇠고기, 각둑썰기한 쇠고기/덩어리육, 우둔살, 양지, 전사분체, 후사분체 또는 부위 제조의 다른 부위명 또는 형태

번호	HS 코드	내용	육류 범주	절단 유형
	02.06	소를 포함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의 식용 가능한 동물 유해		
7	0206.10.00.00	육우, 신선 또는 냉장	뼈가 없는 고급 잡육	허 - 롱 컷, 허, 허 - 쇼트 컷, 허 - 특별 손질한 쇼트 컷, 허 특별 손질한 스위스 컷
			뼈가 있는 고급 잡육	꼬리 (6070/V 6571), 꼬리부위, 발, 심장, 폐
			뼈 있음	
8	0206.21.00.00	육우, 냉동	뼈가 없는 고급잡육	허, 허 - 롱 컷, 허 - 쇼트, 허 - 특별 손질한 쇼트 컷, 허 특별 손질한 스위스 컷, 허 뿌리살
9	0206.22.00.00	간	간류	
10	0206.29.00.00	기타	뼈가 없는 고급 잡육	볼살, 머리고기, 입술, 힘줄, 심장, 폐
			뼈가 있는 고급 잡육	꼬리, 꼬리부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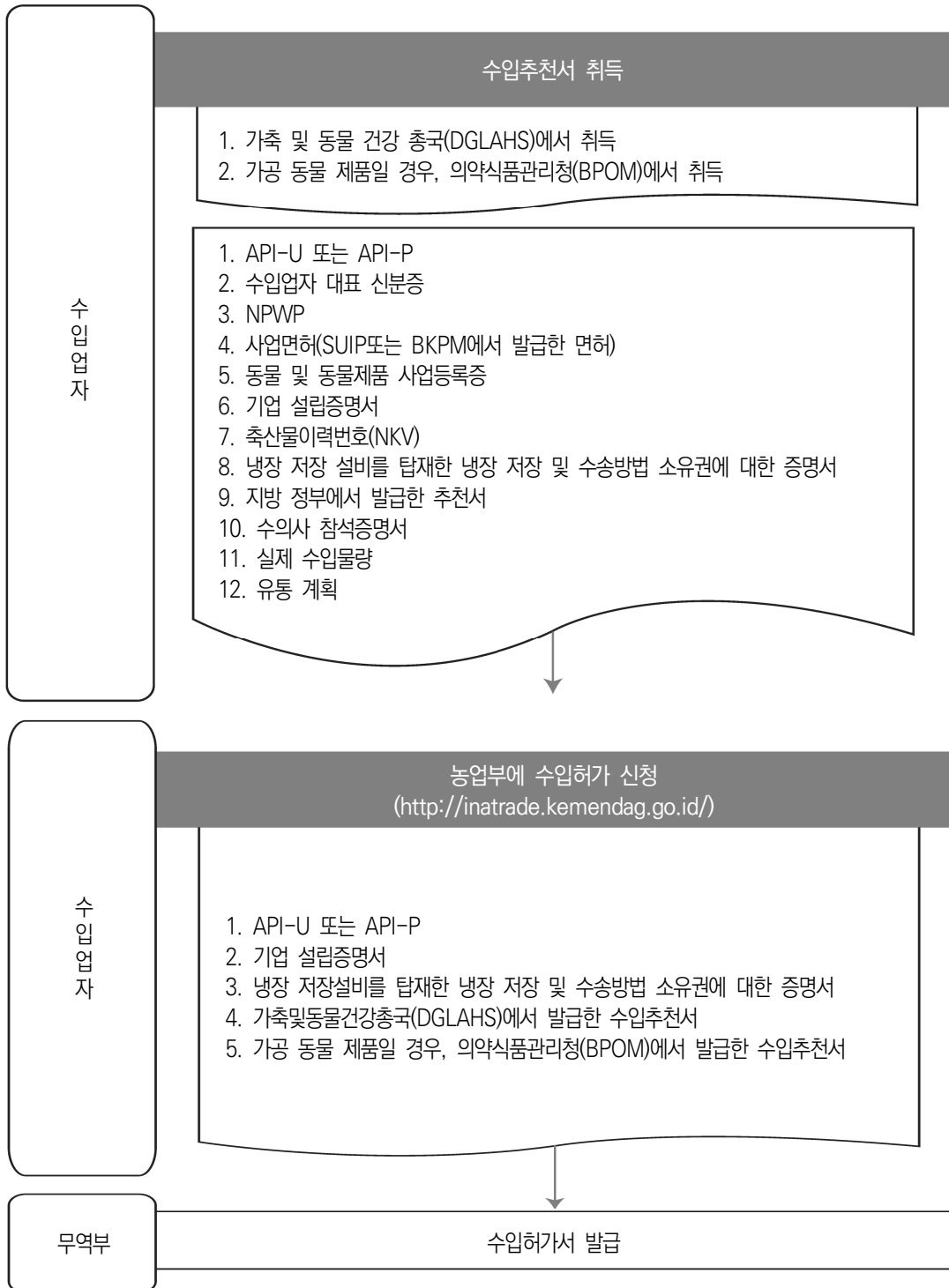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도체, 육류 및 가공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별첨 1에 열거된 규정 제 34호Permentan/PK.210/7/2016에 속해야만 한다.

- 저장기간 요건

· 인도네시아 도착 전, 도체, 정육 및 내장의 저장기간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냉동 도체 및 정육의 경우 도축 시점부터 인도네시아 도착까지 영하 18도 이하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
- ② 도축 시점부터 인도네시아 도착까지 영상 4도 이하에서 최대 3개월까지 보관

○ 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절차



6. 우유 및 유제품 수출요건

○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요건

- 인도네시아로 유제품 수출 시, 제품시험 테스트, 인수공통감염병(예: 구제역), 검역, 식품안전인증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사업체로 HACCP 및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적인 요건

- a. 브루셀라증,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b. 최소한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c.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d.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 e.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2) 수출업자의 요건

- 우유 및 유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회사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a. 법인설립허가증(SIUP) 사본
 - b. 법인납세번호(NPWP) 사본
 - c. 사업자등록증(STDP) 사본
 - d. 일반업자 수입 인증번호(APIU) 사본
 - e.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 f.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
 - g.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건강 분야 지방정부 기관의 추천서 사본
 - h. 축산물 이력번호(NKV) 사본
 - I. 건강 안전 증명서 사본
 - j. 원산지 증명서 사본
 - k.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
 - l. 할랄 인증서 사본
 - m. 청구서 사본
 - n. 작성한 현황문서 (이전에 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

○ 유제품 수입업체 요건

- 가공식품(축산물의 부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동봉하여 전자 행정 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 회사정관;
 - 사업승인서 (SIUP) 또는 축산 위생 사업허가
 - 사업자 등록증 (TDP);
 - 수입등록번호 (API);
 - 기준에 부합하는 도축장의 소유 혹은 도축장과의 계약 증명
 - 창고(냉장창고)와 가공식품 운송 수단의 소유·임차의 증명

○ 유제품 분류에 대한 정의

- 01.0: 카테고리 02.0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유제품
- 01.1: 우유 및 우유를 원료로 한 음료
- 01.2: 발효 우유 및 Produk Susu Hasil Hidrolisa Enzim Renin (카테고리 01.1.2에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
- 01.3: 연유 및 이와 유사한 것
- 01.4: 생크림 및 동종제품
- 01.5: 우유 분말 가루, 생크림 분말 가루 및 이와 유사한 것
- 01.6: 치즈 및 이와 유사한 것
- 01.7: 우유를 원료로 한 디저트 식품 (예, 푸딩, 요거트, 과일 첨가 요거트)
- 01.8: 유장* 및 유장 제품 (유장 치즈 제외)
 - *유장: 젓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
- 유제품으로 우유, 생크림, 버터밀크, 치즈, 유장 등이 있으며, 유제품은 젓소, 물소, 말, 염소, 양 등 가축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원료로 한다.
- 보통, 우유를 함유하는 음료는 우유 함유량이 5% 미만으로 음료로 분류된다.

- 일반적인 유제품 분류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제품	유지방 함량(%)	탈지유 총 밀도(%)	기타
일반 우유	3% 초과	8% 초과	
무지방 우유/탈지우유	1.25% 미만		단백질 함량 2.7% 미만
저지방 우유	1.25~3% 미만		단백질 함량 2.7% 초과
합성착향료 성분을 함유한 우유	2% 초과	12% 초과	
우유성분을 함유한 음료	0.3% 초과		
요거트	3%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저지방 요거트	1.25~3% 미만	8% 초과	젖산 0.9% 초과
무지방 요거트	1.25% 초과	8% 초과	젖산 0.9% 초과
연유	8% 초과		
크리머 음료(非우유)-액상형태	3.25% 초과	8.25% 미만	
크리머 음료(非우유)-분말형태	26% 초과		액상 함량 5% 미만
휘핑크림	35% 초과		

7. 냉장·냉동식품 수입항 추가

- 법령명 : 냉장·냉동식품 수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15년 제84호 개정에 대한 무역부장관령 2016년 제40호
 - 발효일: 2016년 6월 7일 / 시행일: 2016년 8월 7일
 - 개정 목적 : 냉장·냉동식품의 원활한 통관
 - 법령 주요 내용
 - 본 개정령에 따라 해상항(Bitung 항구) 1곳이 신 수입항으로 추가
(단, 육로항 및 항공항은 추가 없이 기존 법령과 동일하다.)
 - 제5조에 따르면, 냉장·냉동식품은 다음과 같은 수입항으로 운송해야 한다.
 - ① 육로항: Cikarang Dry Port (Bekasi)
 - ② 해상항: Belawan 항구(Medan), Tanjung Priok 항구(Jakarta), Merak 항구(Cilegon), Tanjung Emas 항구(Semarang), Tanjung Perak 항구(Surabaya), Soekarno Hatta 항구(Makassar), Batu Ampar 항구(Batam), Bitung 항구(Bitung)
 - ③ 항공항: 인도네시아 전 국제공항
- *괄호 안은 해당 지역명이다.

제5절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 개요

- 인증명칭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 법적 근거 : 대통령령 2000년 제 102호
- 분류
 -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
 - 품목의 SNI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 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 SNI 인증 마크



인증 절차 및 기준

- 인증 절차
 - 1) SNI 인증 신청
 - LSPro(Product Certification Bodies)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인증 비용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단,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2) LSPro의 심사
 - 우선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됐고 관련 서류가 완비됐는지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한다.
 -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된다.

- 신청 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와 체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Sample Test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SUCOFINDO 등과 같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한다.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4)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한다.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해서 점검한다.

○ 인증기준 : 국제표준 ISO 9000과 유사하나 품목별로 상이하다.

- SNI인증 필요서류
 - 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타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있는 경우)
 - 기타 인증기관 요구서류

■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시험 기관의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SNI 발급에 약 40일 소요된다.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 소요비용

- 신청 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만약 2명의 검사관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박 3일 기준 순수 행정비용(항공료, 일당, 식대 등 제외)만 약 5,000만 루피아(약 500만 원)가 소요되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항공료)와 체류비용 또한 신청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I SNI인증 비용 I

구분	유형	단위	금액(루피아)
1	신청비	Per request	1,350,000
2	타당성 검사를 위한 평가자 비용		
	a. 일반 품목(특정 품목 이외)	Per request	1,800,000
	b. 특정 품목(열간압연 강재, 냉간압연 강재)	Per request	3,600,000
3	타당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자 비용		
	1. 샘플링을 위한 평가자 비용		
	a. 평가팀장	Per person/day	5,400,000
	b. 평가자	Per person/day	4,050,000
	c. 전문가	Per person/day	3,600,000
	d. 샘플링 직원(SNI 마크와 제품 인증)	Per person/day	2,700,000
	2. 평가팀장, 평가자, 전문가, 샘플링 직원 일일 서비스 비용	Per person/day	1,800,000
4	인증 처리비		
	a. 기술 위원회	Per request	1,125,000
	b. 평가 위원회	Per request	1,575,000
	c. 인증 처리	Per SNI	1,800,000
5	제품 인증기관(LSPRO)		
	a. Package A(유효한 ISO9000인증 보유)	Per company	10,000,000
	b. Package B(ISO 9000인증 미보유)	Per company	13,500,000
	c. 감시	Per company	4,500,000
6	SNI 주선을 위한 상담비	Per arrangement	4,500,000

출처 : LSPRO

■ 시행배경 및 경과

- 당초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 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 대통령령 2000년 제102호 12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제도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통관 시에 SNI인증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는 SNI Mandator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007년 7월 1일부터 총 39개 품목에 대해 동 통관 강제제도를 시행한 이래, 2008년 8월 13일에 4개 제품군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으로 늘렸고, 2009년 1월 7일에는 열연코일과 갈바륨 합금강 등 철강재 제품군을 추가해 총 44개 제품군으로 확대
- 식음료 제품군 중 밀가루는 2008년 산업부장관령 제49호(이후 2011년 산업부장관령 제35호 발효), 카카오가루는 2009년 산업부장관령 제45호(이후 2010년 산업부장관령 제60호 발효), 페트병 생수와 미네랄워터는 2012년 산업부장관령 제49호, 백설탕은 2013년 농업부장관령 제68호에 의해 의무인증 등록 제품군으로 변경(출처 : 산업부 및 농업부장관령)
- 2016년 1월 인스턴트커피 SNI 인증 의무화
- 2016년 7월 27일부로 비스킷 SNI 인증 의무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무기한 연기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참치, 고등어, 정어리 캔 제품의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2016년 12월 27일부로 제정하고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7년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관련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령 2016년 제58호

제품명	HS CODE	SNI
참치 캔 제품(Tuna dalam Kemasan Kaleng)	1604.14.10.00	8223:2016
고등어 캔 제품(Makerel dalam Kemasan Kaleng)	1604.15.10.00	8222:2016
정어리 캔 제품(Sarden dalam Kemasan Kaleng)	1604.13.10.00 1604.12.10.00	8222:2016

■ 관련기관

1)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SNI 정책 수립에서 관계기관의 감독과 SNI에 관한 정보의 대외 공시까지 SNI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주소 : Manggala Wanabakti Bld,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Jakarta Indonesia
- 전화번호: +(6221) 5747043 ext. 117/262, 5747044
- 팩스: +(6221) 5747045
- 이메일: tbt.indonesia@gmail.com, tbt.indonesia@bsn.go.id

- 2) Komite Akreditasi Nasional (KAN) –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 BSN에 국가 표준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인증 심사를 실제 수행하는 LSPro의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Lembaga Sertifikasi Product (LSPro) – Product Certification Bodies
 - 국내외 기업에서 접수된 SNI 인증 심사요청에 대해 샘플 검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BSN에서 지정한 LSPro는 38개에 이르며 인증기관 목록은 <http://sisni.bsn.go.id/index.php?/lembsert/inspeksi/publik/1/X9/X9/1/X9/X9>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각 기관마다 인증 가능한 품목들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험인증기관은 아래 3개 기관이다.

실험인증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LS Pro Sucofindo ICS, PT Sucofindo	Graha Sucofindo B1 Floor, Jl. Raya Pasar Minggu Kav. 34, Jakarta Selatan Telp: 62-21-798-3666 / Fax: 62-21-798-3888
LSPro Pustan -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Industry Building 21st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52-53 Jakarta Telp: 62-21-525-5509, Ext. 2357, 526-5285 Fax: 62-21-5290-3228
LSPro TUV Rheinland Indonesia - PT TUV Rheinland Indonesia	Menara Karya 10th Floor, Jl. HR Rasuna Said, Block X-5, Kav. 1-2, Jakarta 12950 Telp: 62-21-5794-4579 / Fax: 62-21-5794-4575

■ 최근 동향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을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강제인증 리스트 품목을 추가한 사례가 있다.
- 위와 같이 전반적으로 SNI 인증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움직임에 유의 주시해야 한다.

■ 수출/수입 기업 애로사항 및 시사점

- SN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검사관을 자사 부담으로 초청해 실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신청업체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 강제인증품목의 경우 SNI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이 불가하고 인증 취득 후 수시검사에서 SNI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 사업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 SNI 강제인증제도는 자국산 생산제품의 보호를 위해 품질기준이라는 비관세 기술 장벽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선 현지 진출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가장 신속하게 표준제도에 적응하는 것이 시간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므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SNI인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6절

기타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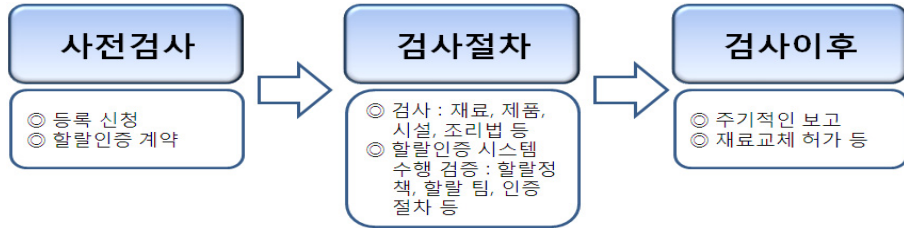
수입식품 등록번호(ML Number)

- 소비자보호법(1999)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BPOM))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에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과금이 부과된다.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에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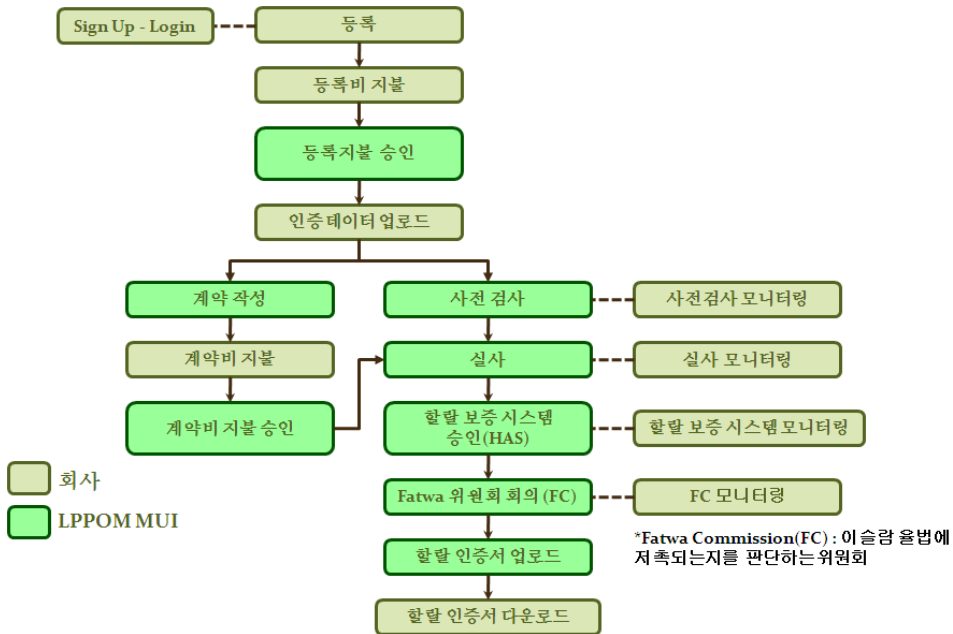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비정부 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 발급
 - LPPOM MUI는 중앙기관과 33개의 지역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할랄 인정 범위
 -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MUI 할랄 부착만 허용하고 있다.
 - 원재료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에서 인정하는 해외 41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한다.
 - * 한국 이슬람 중앙회(KMF)의 LPPOM MUI 인정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 그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만 인정한다.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 부착은 권고 사항으로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 다만,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의거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 할랄 인증 절차



- 온라인 할랄 인증 절차



- 할랄 인증 필요서류



- 할랄 보증 시스템 자체 매뉴얼
- 할랄 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 차트
-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
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 제조공장 정보
- 제품 및 원료 정보
-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 할랄 인증 비용 및 기간

- 할랄 인증에 드는 비용의 경우 품목 및 회사별로 상이하다.
 - * 할랄 인증 심사단 교통/숙박비도 할랄 인증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 할랄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또한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1~2개월 소요된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랄 인증 등록 시 약 2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할랄 인증을 받을 경우 신청비 및 컨설팅비를 포함하여 약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 MUI할랄 로고 및 인증서

 <p>XXXXXXXXXXXXXXXXX (할랄 인증번호)</p>	
MUI 할랄 로고	MUI 할랄 인증서

○ LPPOM-MUI가 인정하는 해외 할랄 인증기관 등록요건 및 절차

- 1 WHFC(세계 할랄 식품위원회)의 회원(멤버)이 되어야 한다.
- 2 ISLAM SOCIETY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 3 독립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Syariah(이슬람율법)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 6 할랄 인증을 위한 전문 감사가 있어야 한다.
- 7 사기업이 아닌 한국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는 공식기관이어야 한다.

▣ 할랄(Halal) 인증 여부 표기의 의무화

○ 2019년 할랄 인증 의무화 예고

-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 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였다. 해당 법령에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 인증 업무를 정부 기관(BPJPH)으로 이관예정
-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는 물건으로 할랄 인증의 범위가 확대된다.
- 2014년 발표 당시 이번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BPJPH)

- 할랄 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 기관인 할랄 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현재 신설된 상태이지만 아직 그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할랄 인증청(BPJPH) 기능	
- 할랄 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 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 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 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 제품보장에 관한 감독

- 할랄 인증청(BPJPH) 할랄 인증 절차

- ① 할랄 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 인증청(BPJPH)에 제출
- ② 할랄 인증청(BPJPH)은 할랄 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 ③ 할랄 감사기관(LPH) 소속 할랄 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④ 할랄 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 인증청(BPJPH)에 전달
- ⑤ 할랄 인증청은 MUI(현 할랄 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 인증 발급

▣ 선적 전 검사제도

- 선적 전 검사제도는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감독관(Surveyor)이 선적항에서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 검사기관이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 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 (LS)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시 해당 LS를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철강제 등과 같은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2009년 이전에 중고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 및 복사기 등 제품에 대해 이미 도입되어 있다.)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PT. SUCOFINDO에서 운영 중으로, PT. SUCOFINDO는 행정 인증과 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인증은 문서 및 허가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검사이고, 기술 인증은 선적항 국가에서 수행하는 물리적 검사이다. 이 외에도 산업 전반에서 교육, 연수, 컨설팅, 연구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선적 전 검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수입업자는 www.app-vpti.com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요청서(Verific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할 경우, 해당 인증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인증주문서(Verification Order)가 신청 당일에 발급된다.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후에 제출할 경우, 인증주문서는 오후 또는 익일에 발급된다.
 - ③ 인증주문서는 검사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KSO 사무소로 보내진다. 해외의 KSO 사무소는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수출업자/제품판매자에게 보냄. 검사날짜가 확정되면 해외 KSO 사무소는 조사관을 수출업자가 알려준 장소로 보낸다.
 - ④ 해당 국가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외 KSO 사무소는 Surveyor Report (LS) 발급을 위한 인증결과보고서를 발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최종 서류(수출업자의 Final/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Details, Lab Test, Certificate of Origin 등)를 받는다. 최종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Surveyor Report(LS)는 발급되지 않는다.
 - ⑤ Surveyor Report (LS)는 최종 서류가 승인된 이후에 발급된다.
 - ⑥ Surveyor Report (LS) 발급 후, Surveyor Report (LS)는 우편을 통해 수입업자 주소로 보내지거나 자카르타 KSO 사무소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찾아간다.

제 3 장

검역 제도

제1절 일반사항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이다.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 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이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입국 가능하다.

■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될 수 있다.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된다.
처리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된다.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역류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역류가 된다.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



거부	<p>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역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p>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 후 추가 처리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p>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된다.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 증명서가 발급된다.</p>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른다.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1.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3. 화물하역 승인서
4. 훈증 증명서
5. 소독 증명서
6. 식물 검역 증명서
7.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8.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제2절

품목별 검역 정보

1.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

-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하다. 인도네시아 법안 No.14/2002 - “식물 검역”이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Step 1〉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 검역청(IAAQ)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체 금액
2. 제품의 유형
3. 생산지역 및 상표
4. 운송수단
5. 목적적/경유지 항구
6. 포장재의 종류
7. 컨테이너 번호

〈Step 2〉

수입업자들은 진입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도착을 보고하고, 실물을 인도. 농림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KT 2)를 발급

〈Step 3〉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1. 식물, 종자 진입 허가서
2. 식물 건강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서



4.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
6. 화물 목록
7. 선하증권 (B/L)
8.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검역담당관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OPTK)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의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OPTK가 인도네시아 영내에 진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tep 5〉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OPTK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장의 section 1에 나열된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한다.

〈Step 6〉

수입업자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Step 7〉

검역담당관은 미-감염/미-오염 증명서 (KT 9)을 발급하여, 제품을 인도한다.

2. 수산물의 검역절차

-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 기초가 되는 법안은 “수산물의 검역”인 인도네시아 법안 No. 15 (2002)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수산제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도착 후, 수입업자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tep 2〉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

〈Step 3〉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

1. 수산제품의 수입허가
2.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 (사본)
3.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검역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 품질 분야의 건강 증명서
4.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O)
5.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미생물 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 냉동상태에서 순증량이 최소 95%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 국가의 시험성적서
6.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
7.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

〈Step 4〉

서류가 구비되지 못했을 경우,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 지역에서의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 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가 발급된다.

〈Step 5〉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실험은 10일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 검역담당관은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료 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 (MRA) 혹은 양해각서 (MoU)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1%이다.

〈Step 6〉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의 화물 인도증명서 (KI-D15)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절차는 종료된다.

제 4 장

관세 제도

▶ 제1절 수입 관세 납부 방법

▣ 주요 내용

- 수입세 책정을 위해 관세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2010년 160호 개정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2016년 34호가 발효됨에 따른 공지이다.
- 수입 관세 납부절차
 - ①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신청한다.
 - 제출서류: 인보이스, packing 목록, B/L, 수입허가서
 - ② 수입품 통보서(PIB)
 - PIB는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관세청이 제공한 모듈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출한다.
 - ③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한다.
 - ④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하기와 같이 4종류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 ▷ Red Line: 제품 실물 확인 및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자 (신규 수입업자, 규정 위반이 많은 수입업자 등), 한시적 수입품, 재 수입품 대상
 - 총 수입품 중 Red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가량
 - 수입서류 처리 기간: ± 4.76일

▷ Yellow Line: 서류 심사

- 중간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Yellow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15.84%가량
- 수입서류 처리 기간: ± 2.42일

▷ Green Line: 제품 통관 후, 서류 심사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대상
- 총 수입품 중 Green Line에 해당되는 비율은 50.81%가량
- 수입서류 처리 기간: ± 0.01일

▷ 대표 협력사(MITA)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대상. 관세청 대표 협력사로 이미 확정
- 총 수입품 중 대표 협력사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는 비율은 28.27%가량
- 수입서류 처리 기간: ± 0.01일

제2절

FTA 특혜 관세 수혜조건

■ 현황 및 문제점

- 한·아세안 FTA 협정이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C/O)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C/O)는 대한상공회의소(KCCI)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2016년 상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아세안 FTA협정문 부속서 3의 제9조(직접운송)에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수입업체의 피해사례 발생할 수 있다.
* (피해사례) 부산항에서 '17. 5. 1. 출항한 선박이 중국, 베트남, 태국을 거쳐 물품의 환적 없이 인도네시아에 '17. 5. 15.에 도착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해당 서류 미비를 사유로 수입업체에 US\$6,141의 관세를 납부하라 통지했다.

■ 관련 법령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것으로 정당화될 것
 -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 다. 상품의 상업 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피해 발생 재발 방지 방안

○ 관세청에서는 '16. 8. 5. 관세청 FTA포털(yes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 “인도네시아 수출 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철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 피해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는 물품 선적 전 선사와 협의하여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선사가 한국에서 도착항인 인도네시아까지 운송과정 중 경유지 항구에서 물품환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확인서

* 확인서 상에는 선화증권번호, 컨테이너 번호, 경유지(국가, 지역)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선사에서 발급하는 선화증권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할 수 있는 통과선하증권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선박 항로는 선적 시 매 건마다 실제 항로를 명시해야 한다.

* 선하증권 상에 하기의 문구를 표시(예시)

THROUGH BILL OF LADING :

CARRYING VESSEL IS DIRECT VESSEL FROM BUSAN TO JAKARTA PORT CONTAINER WILL NOT INVOLVED LOADING & UNLOADING AT ANY TRASIT PORTS.

ROUTE FOR CARRYING VESSEL IS AS FOLLOWS ;

BUSAN-ULSAN-SHANGHAI-HOCHIMINH-LAEMCHABANG-JAKARTA

제 5 장

라벨링 제도

▶ 제1절 일반사항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된다.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 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이 되면, 근무일 5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된다.

제2절 표시방법 유의점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 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하다.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 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선 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된다.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는다.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순이다.
 - 건강 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열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열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열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열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g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g 이하일 때, 총 50g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g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g 이하 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넥 혹은 음식제품의 100g당 포화지방이 1g 이하 이며, 열량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열량이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램/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g 이하일 경우

- 저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mg 이하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g 이하일 때 총 50g의 경우
- 무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 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 홍보 문구는 적법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건강 표시 사례	
〈허용되는 표현〉	〈허용되지 않는 표현〉
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이다.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연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해준다. 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간장은 IQ를 향상시킨다.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 (돼지고기 함유) 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가당 연유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 (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알콜 음료의 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 (21세 미만 및 임신부에 의한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 (방사선 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 조사의 이유 및 해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 조사의 년월 및 방사선 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한다.이 되어야 한다. 식품이 재-방사선 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재-방사선 조사 불가) 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유전자 조작으로 발생된 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라벨링 사례

라벨링 사례 : 과일 주스

1. 제품 명칭
2. 성분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수입자
6. 영양소 정보
7. Halal 인증
8. 유통기한





제3절 돼지고기 표시 관련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식품포장지 돼지고기 표시 관련 관심도 증가

- 최근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성분 포함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므로 식품에 돼지고기 성분 함유 여부는 중요한 이슈 사항이다.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시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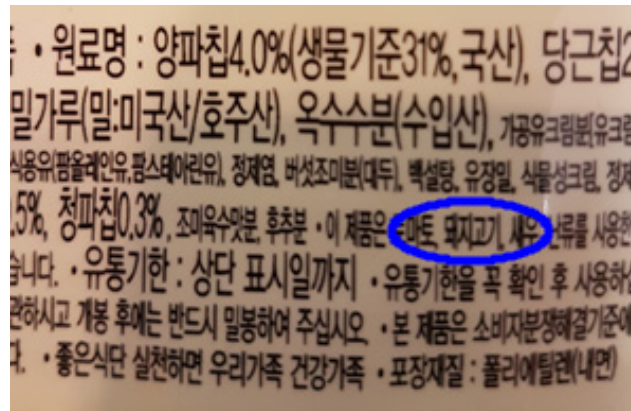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규정(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시/라벨이 의무이다.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한다.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표기로 인한 문제 발생
-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한글 문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르면 돼지고기, 난류, 우유 등 21가지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 돼지고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등록된 한국 수입식품 중 다수에 위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 소비자들에 의해 문제 제기 가능성 상존한다.
- 향후 재등록 시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규정에 의거 아래의 문구 또는 “돼지 함유”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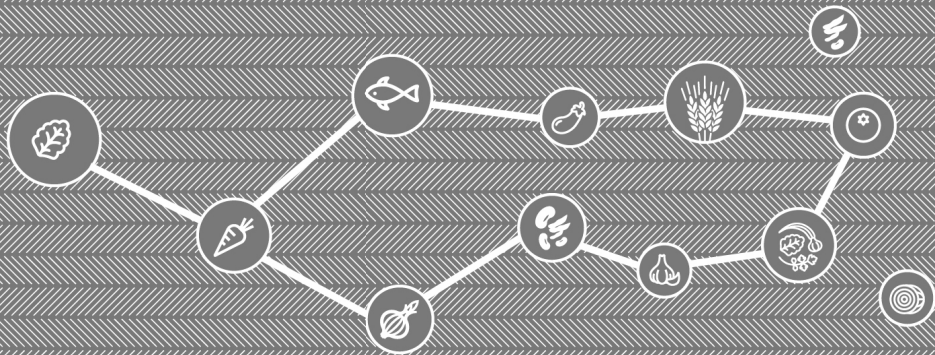
▲ 해석 : 제조과정 중 돼지에서 나온 원료와 접촉되었다.

제4절 포장

-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No. HK.00.05.1.55.1621)은 식품 포장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BPOM 청장은 2009년 4월에 식품 포장 재료의 수입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승인된 식품 포장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 포장의 규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산업규정 혹은 실무지침은 없으며 중량 및 척도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사용된다.
- 식품법(1996)에서 규제되는 포장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자는 금지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2. 판매를 위한 식품의 포장에는 부패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식품의 포장에서 금지되는 포장재료 및 방법 등을 정의한다.
 4. 포장 재료의 인체 건강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 포장 재료는 안전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재질의 포장 재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식품의 포장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5. 소형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벌크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개봉 및 재포장은 금지한다.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러시아



- 제1장 수출 현안
- 제2장 통관 제도
- 제3장 검역 제도
- 제4장 관세 제도
- 제5장 라벨링 제도
- 제6장 통관문제사례

2017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러시아

Contents

제1장 수출 현안	219
제1절 식품금수 조치 현황	219
제2장 통관 제도	225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225
제2절 통관 제도 특징	243
제3장 검역 제도	245
제1절 검역 제도 일반	245
제2절 수입 제한 현황	310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319
제4장 관세 제도	334
제1절 관세 제도 일반	334
제2절 관세 제도 변동사항	340
제5장 라벨링 제도	347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347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353
제3절 라벨링 사례	358
제6장 통관문제사례	360
제1절 통관문제사례	360
제2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62

제 1 장

수출 현안

▶ 제1절 ▶ 식품금수 조치 현황

1. 서방 식품 금수 조치

- 자국 생산자 지원 및 서방 제재를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도입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의 식품 금수 조치가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 그동안 매년 연장되면서 수입금지 식품 목록도 일부 변경되었다. 최근 개정으로 2017년 11월 4일부터 다음 품목도 목록에 추가되었다.
 - 추가 금지 품목 : 살아있는 돼지(순종번식용 동물 제외),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신선, 냉장, 냉동),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돼지의 지방(라드 포함)과 가금의 지방, 소·면양·산양의 지방,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동물유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103 (단, 0103 10 000 0 제외)	살아있는 돼지(단, 순종번식용 동물 제외)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0202*****	쇠고기(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206 (단, 0206 10 100 0, 0206 22 000 1, 0206 29 100 0, 0206 30 000 1, 0206 30 000 3, 0206 41 000 1, 0206 49 000 1, 0206 80 100 0, 0206 90 100 0***** 제외)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단, 의약품 생산을 위한 상품은 제외한다.)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from 0210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from 0301 (단, 030111000 0, 030119 000 0 제외)	살아있는 어류 (단, 대서양연어(Salmo salar)의 치어, 브라운송어(Salmo trutta)의 치어, 무지개송어(Oncorhynchus mykiss)의 치어, 대문짝납치(Psetta maxima)의 치어, 유럽농어(Dicentrarchus labrax)의 치어, 살아있는 관상어류는 제외한다.)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11월 2일 개정
0302, 0303, 0304, 0305, from 0306, from 0307,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단, 굴 치패, 홍합 치패, 흰다리새우 (Litopenaeus vannamei) 치비는 제외한다.)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11월 2일 개정
from 0401, from 0402, from 0403, from 0404, from 0405, 0406	우유와 유제품 (단, 치료용 식이식품 및 예방용 식이식품을 위한 특수무유당우유 및 특수무유당유제품은 제외한다.)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0701 (단, 0701 10 000 0 제외), 0702 00 000, 0703 (단, 0703 10 110 0 제외),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단, 0712 90 110 0 제외), 0713 (단, 0713 10 100 0 제외), 0714	채소류, 식용의 뿌리와 괴경 (단, 씨감자, 씨양파, 파종용 잡종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은 제외한다.)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6년 6월 9일 개정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류와 견과류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1501	돼지의 지방(lard(포함)과 가금의 지방 (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EAEU HS코드	품명***	비고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1503 00	라드스테아린(lardstearin), 라드유(lard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동물유(animal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2017년 11월 4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1601 00	소시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from 1901 90 110 0, from 1901 90 910 0, from 2106 90 920 0, from 2106 90 980 4, from 2106 90 980 5, from 2106 90 980 9	조제식품 (단,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운동선수의 영양을 위한 특수 식품****, 비타민-미네랄 복합제, 향미첨가제, 단백질 농축물(동물성 및 식물성) 및 그 혼합물, 식이 섬유, 식품 첨가물(복합제 포함)은 제외한다.)	2014년 8월 7일 정부결의 붙임 목록 포함, 2015년 9월 30일 개정
from 1901 90 990 0	치즈 생산기술로 제조되고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상인 조제식품	
from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단, 생물학적 활성첨가제는 제외한다.)	2016년 11월 1일부터 목록에 추가 포함, 2017년 5월 23일 개정

*** 어린이용 식품은 제외한다.

**** 러시아 연방 국가대표팀을 위한 것으로 러시아 연방체육부가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어린이용 식품은 제외한다. 러시아 연방농업부에서 승인한 해당 상품의 수입허가량 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농업부가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의약품 및 생물학적 활성첨가제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러시아 연방산업통상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의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러시아 연방산업통상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상품의 용도 확인

○ 제3국을 통한 제재제품 반입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2015년 8월 6일부터 러시아로 반입되는 제재국의 원료 및 식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폐기 유효기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폐기처분 대상: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국가 혹은 이에 동조하는 국가의 원료 및 식품
- 담당기관: 연방 관세청, 동식물 검역국, 소비자권의 보호복지감독국
- 위반 시 법인은 행정처분을 받으며 5만~30만 루블 상당의 벌금형 또는 압수



- 금수 조치 도입 이후 러시아는 상품 부족과 가격 인상을 피하고자 수입금지제품 대체제품을 모색해왔으며, 외국 및 러시아생산자들이 유럽생산자의 빈자리에 들어와 러시아 시장에서 새로이 입지를 구축한다.
- 식품 금수 조치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현시점에 한국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러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터키 식품 금수 조치

- 2015년 11월 24일 터키군의 러시아 전투기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 조치와 관련해 터키를 상대로 일련의 특별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 칙령에 서명했다.
- 푸틴 대통령이 터키 상품 수입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령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터키산 채소류, 과실류, 가금육, 소금 등 수입금지 목록을 승인했다.
- 작년에 들어서 양국 관계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제한조치도 하나씩 해제되는 중이며 몇 차례에 걸쳐 수입금지 목록도 개정되었다.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207 14	닭고기 이분도체 및 식용 설육 (냉동)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207 27	칠면조고기 이분도체 및 식용 설육 (냉동)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603 12	카네이션 (신선)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702 00 000	토마토 (신선 또는 냉장)**	**러시아 농업부에 의해 승인된 반입 허가량의 범위 내 수입상품은 예외로 한다. 2017년 11월 1일부터 부분적 해제 (현재 3개 업체만 허가)
0703 10	양파, 샬롯양파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704 10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707 00	오이 (신선 또는 냉장)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5 10	오렌지 (신선 또는 건조)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5 20	신선 또는 건조 귤(탄제린 및 온주밀감 포함), 클레멘타인, 월킹 및 이와 유사한 감귤류 교잡종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6 10	포도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8 10	사과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8 30	배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EAEU HS코드	품명	비고
0809 10	살구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9 30	복숭아(넥타 포함)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09 40	자두 및 가시자두 (신선)	2016년 10월 2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0810 10	딸기 (신선)	2017년 6월 10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1704 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2501 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 포함),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17년 3월 18일부터 수입 제한조치 해제

- 2017년 11월 1일부터 동식물 검역국은 이전에 동식물 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한 3개 터키 업체(Özaltin, Agrobay, SÜRAL)에서의 토마토 수입을 허가한다. 이 업체들은 완전 생산 사이클을 보유하며 수출업체이기도 하다.
- 러시아 업체들이 온실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상황이라 러시아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토마토 공급 재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첫 단계로 러시아는 연간 5만 톤의 터키산 토마토 수입을 허용한다. 이는 금수 조치 도입 전보다 6배나 적은 물량으로 금수 조치 전 터키산 토마토는 수입산 토마토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다.

3. 특별식물 위생체제 도입

- 2015년 12월 7일부터 동식물 검역국은 특별식물 위생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벨라루스를 통한 반입을 포함하여 원산지 불명의 제품이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식품 금수 조치에 해당되는 규제제품이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채 경로를 변경하여 벨라루스를 통해 반입되는 상황이 심각해졌고 벨라루스에서의 공급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벨라루스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 사리에 맞지 않는 물류 경로(이스라엘→체코→리투아니아→벨라루스→러시아, 브라질→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벨라루스→러시아)를 통해 러시아로 제품을 반입하는 수많은 차량이 역류되었다(15년 400대 이상).
 - 중국산 제품을 먼저 리투아니아로 운송하고 그다음에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공급하기도 한다.



- 동식물 검역국은 터키산 금지제품이 벨라루스를 통해 반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동식물 검역국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국가 및 제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원산지 국가 제품의 공급을 특별히 통제할 예정이다.

신고된 원산지 국가	통제 품목
모로코	신선 버섯, 사과, 배, 딸기, 당근, 감
터키	사과, 버섯, 배추, 키위, 오이, 토마토
이집트	가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허브
이스라엘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랙베리
마케도니아	신선 버섯, 신선 파프리카, 배, 키위, 애호박
에콰도르	복숭아, 넥타, 배
남아프리카공화국	배, 사과, 무
중국	양상추, 배(콘페렌츠), 사과
브라질	배, 가지, 커런트,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
스위스	사과, 라디키오(Radicchio)
멕시코	배, 사과

제 2 장

통관 제도

▶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러시아 수입 관리체계는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구분된다.

- 관세 조치 : 수입 관세를 통하여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보호 및 국가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이다.
- 비관세 조치 :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

▣ 세관 총서 : 러시아 연방 세관(Federal Customs Service;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ТС России)

- 러시아 세관 기구는 재무부의 관세국으로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1917년부터 무역 및 산업 인민위원회(МКТР)의 한 부분으로 소비에트 세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1991년에 소비에트 세관 서비스는 경제개발부의 국가세관위원회(GTK)로 대체되었으며 2006년 GTK는 연방 세관으로 변경되었다.
- 러시아 연방 세관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직속세관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동아시아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 아래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다.

- 중앙 세관(CTU) ots-geg@mtu.customs.ru
- 시베리아 세관(STU) stu-kl@stu.zsttk.ru
- 북서 세관(SZTU) kontakt_sztu@mail.customs.ru
- 칼리닌그라드 세관 ovs@customs.kaliningrad.org
- 남부 세관(JTU) jtu_kontakt@mail.customs.ru
- 불가 세관(PTU) ptu_odo@ptu.customs.ru
- 우랄 세관(UTU) UTU-KS-MTS@ural.customs.ru
- 극동 세관(DVTU) dvtu@dvtu.vladivostok.ru
- 북 코카서스 세관(SKTU) ssbsktu@mail.ru

나. 법률체계

■ 법률명 :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 3국 관세동맹 발족에 따라 러시아의 통관/관세법 'Federal Law on customs regul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이 제정되어 2010.12.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2015.10.19일부터 개정본이 발효·시행되었다.

■ 규정사항

- 러시아로 물건을 수입 또는 러시아에서 물품을 수출, 러시아 연방 국경을 통과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일반원칙
- 상품을 신고 및 기타 통관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대외무역상품분류(TN VED EAEU)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기 위한 규칙
- 관세 적용을 위한 기준
- 세관검사에 대한 절차(위험 관리 시스템, 세관 검사 및 검색, 세관 감사 등)
-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제품의 출시에 대한 중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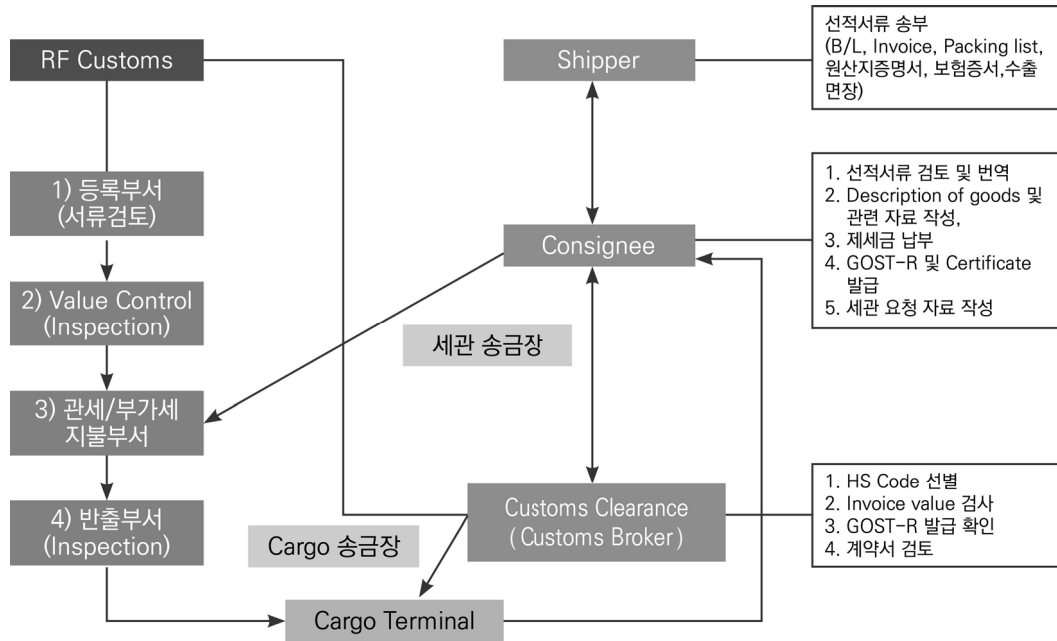
- 관세 적용에 대한 지급, 회복, 강제 추가부담금 절차
- 세관 당국에 대한 결정, 조치 또는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 등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법 협정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이 2017년 4월 11일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법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에 통합 통관 규정이 도입되었다.
- 협정서에서 확립된 내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 국경을 통한 상품의 이동 절차 및 조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의 사용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의 상품 출발·도착 및 임시보관, 세관 신고 및 통과, 기타 세관 업무와 관련된 세관 업무 수행 절차
 - 관세, 특별·반덤핑·상계 관세 및 세관통제에 대한 지급 절차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또는 역외에서 상품 소유, 사용 및/또는 처분할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세관당국 간의 권력관계 규제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이 상호 동의하는 조건 하에 별도의 프로토콜을 통해 협정서 개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 관세법에 관한 협정은 회원국들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이행한 것에 관한 최종 서면 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단,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못한다.
- 관세법 협정 발효와 관련하여, 효력을 중지하는 국제조약 목록(부속서 2)과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조약의 규정 목록(부속서 3)이 시행된다.

2. 통관 수속

가. 통관 수속 개요



나. 수입허가

모든 수입허가는 경제개발통상부가 발급하고, 세관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 단, 이에 대한 예외로 운동용 무기류 수입허가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가 관장하며, 암호해독 데이터 수입은 일반 허가 외에 연방통신국(Federal Agency of Government Communications)의 승인이 필요하다.

※ 수입허가 품목 : 무기류, 무기제조용 원료, 군사 목적의 기술, 폭발물, 핵·방사능 관련 물질, 귀금속류, 마약류, 독극물, 암호해독 프로그램, 원당 및 설탕, 컬러TV 등

수입허가를 규율하는 법규는 ‘러시아 연방의 재화(용역) 허가에 관한 절차 규정 제1299호(1996. 11. 3)’이다.

수입허가는 일회용 허가 와 일반 허가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 일반 허가는 1년 기간 이내에 단일계약에 의한 여러 개의 위탁수입에 대한 허가이다.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리스트는 ‘러시아 연방 내 수출입 쿼터 부과 및 허가에 관한 정부법령 제854호(1992. 11. 6)’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는 별도의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보석류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의 보석류 수출입절차에 대한 대통령령 제973호’(2001. 6. 21)가 규정하고 있다.

▣ 수입 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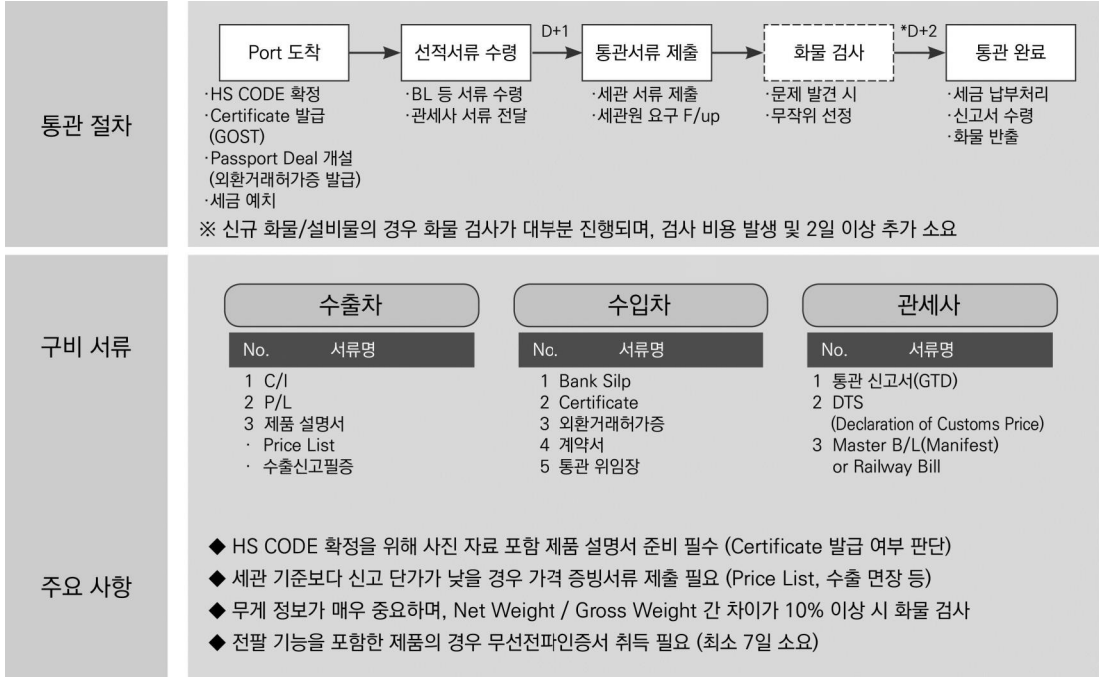
신고 전 서류준비	① 세관신고서,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필수 준비 -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C/O) 등을 품목별로 추가 제출 ② 관세납부 전 사전 예치 요건 충족 - 수입물품·운송수단, 해당금액 예치 등 ③ 관할 세관 수하인 업체 등록 및 등록 번호 취득 ④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 취득/품질 인증마크 부착/품목별 인증서 획득 등의 수입 요건 충족
↓	
수입신고	① 수입신고서는 서류 및 디스켓 제출 - EDI신고는 현재 도입 단계임 ② 수입물품 신고가격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③ 지정품목은 러시아 연방 FEACC코드(관세코드)를 세관신고서에 기재 - 해당 품목: 육류, 포도주, 알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손목기계, 약기 등
↓	
심사 · 검사	① 물품 검사 후 화물 검사서 작성 ② 보세운송시, 국경검사대 송부 내용/보세운송면장과 수입신고서 내용 비교 ③ 계약서 내용 및 화물 반입 서류를 비교 검사
↓	
관세납부	① 평균 수입관세 13%, CIF가격 기준 종가세 부과 - 원재료 5% < 부자재 10% < 제품 10~20% ② 일부 상품은 종량세 및 수량세, 증가·종량혼합세 적용 ③ 관세 외 부가가치세(최고 18%), 소비세 부과
↓	
신고수리 물품반출	① 모든 관련 서류 사본을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Federal Customs Committee)에 송부 - 연방관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통관 결정 → 물품반출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수입 통관 시 유의사항

신고 전 서류준비	<p>★ 러시아어 통관서류 준비 등</p> <p>① HS코드가 영문으로 공개되지 않아 확인·적용이 어려움</p> <p>② 영문서류는 허용되지 않고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 - 제품 설명서 및 라벨링도 러시아어 기재</p> <p>③ 서류상의 경미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자의적 해석과 규제 가능 - 통관서류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p> <p>④ 품질인증에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수입자와 충분히 협의 필요</p>
↓	
수입신고	<p>★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에 주의</p> <p>① 통관 절차상 일선 세관장 및 담당자의 재량권이 상당함 - 통관 항구마다 세관 집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불합리한 HS코드·관세를 적용 방지를 위해 신뢰도가 높은 통관사 선정 필요</p> <p>② 물품단가를 저가신고(Under Value) 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적발 시 압류조치, 매우 심각한 행정/형사 처벌을 받음</p> <p>③ 최저 준거가격제도 시행 중 - 세관신고 가격이 최저 준거가격에 미달될 경우 준거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부가세 납부 후 행정심판을 통해 환급 받음 * 러시아 중앙세관의 최저 준거가격(reference price) 적용</p>
↓	
심사 · 검사	<p>★ 상대적으로 높은 화물검사 비율에 대비</p> <p>① 화물검사는 Random 방식의 표본 추출 검사 원칙을 적용 - 다양한 검사방식 및 까다로운 검사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p> <p>②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수검사 실시, 평균 화물의 44% 검사로 화물검사 비율이 높은 편임</p> <p>③ 화물검사 속도가 늦고 검사 시 제품파손 및 분실 아누려</p>
↓	
관세납부	<p>① 관세 및 부가세는 납부예치 계좌 충전 금액으로 납부 가능</p> <p>② 관세 외 사치품을 중심으로 10~400%의 소비세가 부과됨 - 해당 품목: 에틸알코올, 주정용액, 알코올 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9개 품목 중심</p>
↓	
신고수리 물품반출	<p>★ 관세위원회의 최종 서류 심사로 인해 추가 통관 시일 소요</p> <p>① 서류나 물품에 결함이 없을 시에도 통관의 지연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가능</p> <p>② 보관료가 비싼 편으로 통관 지연 시 부대비용이 상당함</p>

수입 신고 절차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다. 세관 수입자 등록서류 및 통관 접수서류

세관 수입자 등록서류 목록

No.	등록서류
A-1	정관, 변경/개정분 포함(공증본)
A-2	입헌동의서(공증)
A-3	사업자등록증명서(세무서 발행 납세자등록증, 공증본)
A-4	RosStat 발행증명서(국가통계위원회증명서)
A-5	지급계좌 개설한은행의 Reference(러시아 classifier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에 등록된 은행코드, 발행 후 1달 이내의 문서)
A-6	외환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Reference(1달 이내 발행된 문서)
A-7	세무국 등록증명서(세금납부번호, 산업기업체 분류, 공증본)
A-8	러시아 연방 법인등기부등재증명서(공증본)
A-9	회사 대차대조표(최근 분기, 세무국의 허가승인본)
A-10	최고경영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No.	등록서류
A-11	회계담당자 임명에 관한 이행결의문
A-12	최고경영자 여권사본(공증본)
A-13	회계담당자 여권사본(공증본)
A-14	회사의 법적 등록 주소에 대한 차용계약서
A-15	통관 브로커 위임장
A-16	법인장이 외국인인 경우 노동허가증

※ 세관 수입자 등록은 해당 세관에 처음 통관 접수 시 필요하며 통관서류와 동시 접수

통관 접수서류 목록

구분	No.	통관접수서류	언어
필수 접수 서류 항목	B-1	계약서, 부속협약서	러시아어/영어
	B-2	운송장(B/L, CMR, AWB)	러시아어/영어
	B-3	Invoice	
	B-4	Packing list(Detailed Packing list)	러시아어/영어
	B-5	제품설명서(사용 목적, 기능, 동작 원리, 사용절차, 구성품, 규격, 사진, 도면, 시험성적서 등)	러시아어
	B-6	원산지 증명서	러시아어/영어
	B-7	보험증서(Certificate of Insurance)	러시아어/영어
	B-8	수출신고서(수출신고서의 경우 선적사의 자국어 사용)	러시아어/선적사 자국어
	B-9	Certificate(HS코드에 따른 관련 Certificate 발행) ⇒ GOST-R, Declaration, Refusal Letter, Fire certificate 등	러시아어
	B-10	외환거래확인서(PassportSGELKI)	러시아어
	B-11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은행확인서	러시아어
기타 접수 서류	C-1	제작사 상표(Trade Mark) 사용허가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2	매뉴얼 및 CD/DVD 저작권(License)이전확인서	러시아어/영어
	C-3	정품수입 확인서(일부 제한 품목)-현지해당법인에서 수령	러시아어
	C-4	MSDS(화학제품) 및 시험성적서(글루, 가향제)	러시아어
	C-5	식물검역증	러시아어/영어
	C-6	Technical Passport (전력변환기 통관 시)	러시아어/영어

□ 일반통관 시 필요서류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 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사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어
	3	제품설명서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자세한 기술 자료 준비 필요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 여부 결정)	수출자		원본(사본)	러시아어
	4	Price List 선적지 상공회의소(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인증 가격 리스트	수출자	세관 요구시	사본	영어
	5	수출신고필증 수출업자가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는 서류	수출자/ 관세사	세관 요구시	사본	영어
관세사	6	통관 신고서 (GTD)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7	DTS (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율 산출 근거, GTD Attached 서류	관세사		원본	러시아어
	8	Master B/L (Manifest) or Railway Bill 하역 후 선사의 agent로부터 전달받는 선사의 stamp가 찍혀 있는 MBL 원본(Moscow 통관 시는 Railway Bill 원본 제출)	선사		원본	-
수입자	9	Bank Slip 세관과 연결된 은행계좌로 송금된 통관 자금 송금 증명서. 통관과 함께 통관 금액이 차감됨.	은행		원본	러시아어
	10	Certificate for Commodity (GOST) 제품 품질 증명서. 증명서 발급 브로커 회사를 토아해 발급받아 수입 시마다 제출함.	증명서 발급 브로커		사본	러시아어
	11	외환거래허가증(20,000불 이상 송금 시 발급 필요)	은행		사본공증본	러시아어
	12	Contract(수출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		사본	영어/러시아어
	13	위임장(통관 업무를 위임한다는 증명서)	-		사본	러시아어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 및 Calculation of Transportation Cost 서류 세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음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특정 아이템 수출 시(ex. Lamp)에 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 요구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 보세통관 시 필요서류

주체	No.	서류명	작성/발급자	필수 여부	사본/원본	표기 언어
수출자	1	C/I (Commercial Invoice)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2	P/L (Packing List)	수출자	필수	사본	영어
운송사	3	Railway Bill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4	보세운송신고서 (VTT)	통관브로커	필수	사본	러시아어
	5	Master B/L (Manifest)	선사	필수	원본	-

※ 보세통관이라 할지라도 Inspection 및 서류 검사, HS Code 기재 등을 세심하게 검사함
 철도 위는 하나의 일종의 보세 자치구역이라 할 수 있음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라. 통관 관련 비용

- 러시아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적용되며, 통관 수속에 들어가는 기타 경비로는 통관비, 세관원 동행료, 창고 보관료 등이 있다.

3. 화물의 운송

가. 극동 러시아 및 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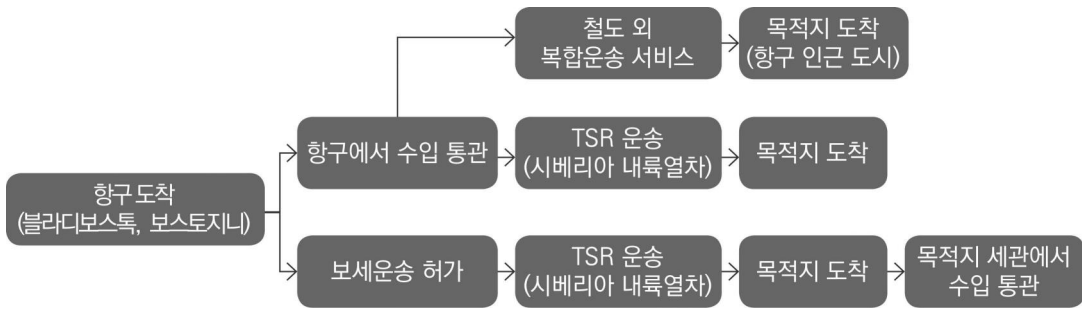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보스토치니 항과 블라디보스톡 항까지 해상 운송되어 내륙으로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을 통해 운송되거나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된다.

☐ 화물의 통관방법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수화주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항 도착 → 철도에 환적하기 전에 수화주 혹은 수화주 대리인이 직접 수입 통관 → 러시아 내국화물 자격으로 TSR로 운송
- 보세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항 도착 →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TSR로 운송 → 목적지의 세관에서 통관 절차 진행
- 복합운송 통관방법 :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항 도착 → 국내 운송업자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제휴해서 제공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내륙운송(하버롭스크 지역 등 항구 인근 지역으로의 운송에 주로 이용)

❑ **통관 시점에 따라 철도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수입 통관을 거친 화물은 부가가치세 18%가 면제되나 보세운송 되어 목적지에서 통관이 예정되어있는 화물은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철도 운송료가 결정된다.



나.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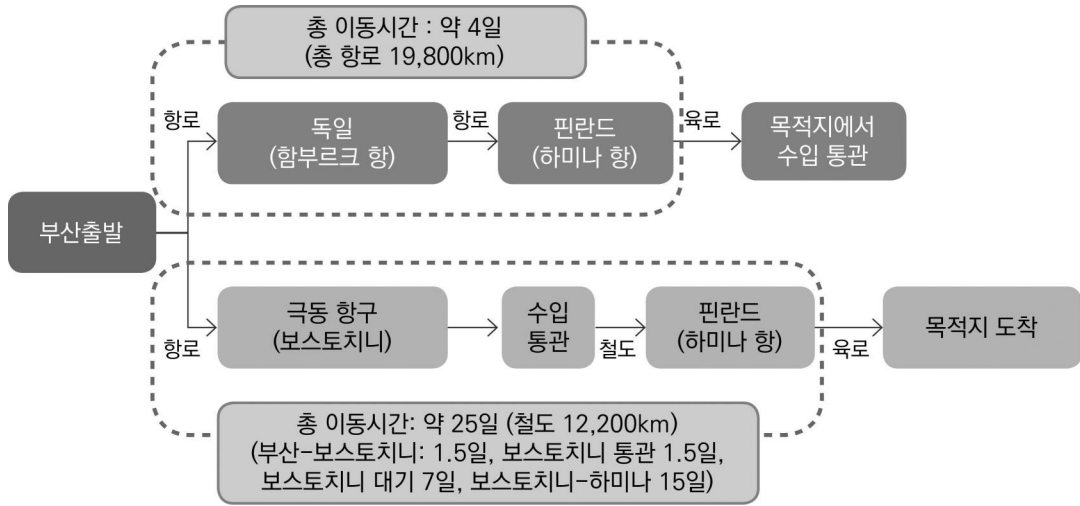
❑ 모스크바를 목적지로 하는 화물이 주로 이용하는 운송경로이며 핀란드 하미나 항을 경유한다.

❑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은 2가지 경로가 있다.

- 함부르크 항 경우 : 독일 함부르크 항 도착 → 선박으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 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보스토치니 항 경우 : 보스토치니 항 도착 → 기차로 이동하여 핀란드 하미나 항 도착 → 트럭으로 모스크바 이동

❑ 극동 러시아 화물 운송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운송 기간이 길고 제3국 경유 등 복잡하다.

- 독일과 핀란드를 거치는 항로 운송의 경우, 목적지인 모스크바 세관(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부 러시아 지역 세관)까지 별도 대기나 지체 없이 운송된 후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다.
- 동아시아지역의 보스토치니 항까지만 항로로 운송되는 경우, 도착지까지의 운송수단이 TSR과 트럭이기 때문에 전체 운송 기간이 매우 길고 제3국을 다시 경유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항공화물 운송

☐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 세르메체보 2 공항으로 직송

○ 항공이동 소요기간은 1일, 통관은 3~7일

☐ 주로 중량이나 부피가 작은 화물에 적합하며 정상 통관을 하는 화물이다.

4. 비관세 조치

가. 표준 및 인증

☐ 통관 시 수입품에는 지방 국세청이 발급한 안전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식품류의 라벨이나 포장지에는 러시아어로 제품명, 생산자, 중량, 성분, 유효일자, 기타 정보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비식품류에는 라벨이나 설명서 등에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정 및 품질 인증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증이 요구되는 모든 제품은 국세청의 인가를 받은 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표준 및 인증 제도를 규율하는 연방기술규제법(제184-FZ호, 2002.12.27)은 인증이 필요한 제품 범위를 줄였으며, 처음으로 자율검사제(Declaration of Conformity)를 도입하였다.
- 강제인증제도의 성격인 국가표준규격(GOST)을 도입하였다. 특정상품의 수입 시 표준규격의 확인 및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요구한다.
 - 일부 대상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청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임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한국주재 인증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있으며, 기타 인증 대행기관으로는 Sercons Korea, CTR Far East, GSI(범세 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 해당 항목이 이미 유럽의 인증(CE) 등을 통과했을 시, GOST인증이 면제될 수 있다.
 - 약 2주 정도의 인증시간이 필요하다.

나. 정부구매의 국산품 우대

- 공식적으로 정부구매 시 국산품에 부여하는 특혜는 거의 없으나, 정부구매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관계로 비공식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는 많이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정부조달 입찰에 최종 선정된 외국산 제품 중 러시아 법령(N94-FZ)이 정한 품목군에 속한 제품일 경우, 최종 낙찰 가격 보다 15%를 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법령을 2011년에 시행한다.
- 2012년 3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동 법령을 2013년에도 연장하고 WTO가입 이후 대폭 관세율이 낮아질 돼지고기(신선, 냉장, 냉동), 설탕(사탕무 및 사탕수수 원료), 농기계 장비, 종이류를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라 발표했다.

■ 공공조달을 위해 허가가 제한되는 외국산 식품

- 국내시장 보호 및 러시아 생산자 지원을 위해 일부 외국산 식품들은 공공조달에서 제한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 필요 식품에만 적용되며 상점, 소매체인, 상업적인 요식업체에 납품되는 식품공급, 상업적 구매는 적용되지 않다.
- 러시아 정부는 공공조달 제한 식품 목록을 승인하여 가공 및 저장 처리된 어류, 어란 및 어란



대용물, 갑각류 및 연체동물,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용 설육, 우유 및 유제품, 정미, 설탕, 소금 등이 목록에 포함된다.

- 공공조달을 위한 구매 시, 주문자는 공급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2개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외국(유라시아경제연합 제외)에서 생산된 식품 공급을 제안하는 모든 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전 러시아 제품분류 코드 (OK 034-2014)	공공조달 제한 외국산 식품 목록
10.20.1	어류제품(신선, 냉장 또는 냉동)
10.20.2	기타 방식으로 제조 또는 저장 처리된 어류; 어린 및 어린 대용물
10.20.3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무척추동물(냉동, 가공 또는 저장 처리)
10.84.30.120	식용의 증발염
10.84.30.130	요오드 첨가된 식용의 식탁염
10.11.11.110	쇠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1.120	송아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12	돼지고기(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어린이 식품용 포함)
10.11.20.110	소 식용 설육(방금 정육한 것, 식은 것, 또는 냉장)
10.11.31	소의 육(쇠고기, 송아지고기)(냉동, 어린이 식품용 포함)
10.11.32	돼지고기(냉동, 어린이 식품용 포함)
10.12.1	가금육(냉장, 어린이 식품용 포함)
10.12.40.120	가금류의 식용 설육(냉동)
10.51.2	우유 및 크림(건조, 승화시킨 것)
10.51.30.100	버터
10.51.30.110	버터
10.51.30.200	오일 페이스트
10.51.30.210	오일 페이스트
10.51.4, 10.51.40.120	치즈, 치즈제품, 코티지치즈 제외
10.51.51	우유 및 크림(응축 또는 설탕 첨가 또는 기타 감미료 첨가한 것, 건조하지 않은 것)
10.61.11.000	쌀(정미)
10.81.12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없는 고체 형태의 화학적으로 깨끗한 자당과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백설탕
10.81.13	향미 또는 색소첨가물이 있는 사탕무 또는 사탕수수로 만든 정제설탕; 메이플 슈거 및 메이플 시럽

다. 사전예치조건

- ▣ 러시아 통관법은 수입 물품 및 운송수단의 예치, 제3자 보증, 해당 금액의 예치 등을 통해 관세납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외환통제

- ▣ 수입거래는 러시아 외환법규의 규제를 받으며, 주된 법률은 외환법 제3615-1호(1992.10.9 제정, 2004.6.17 개정)와 ‘거주자에 의한 수입품 지급조정 통제에 관한 중앙은행 및 국제청 합동명령 제91-1/01-11/28644호(2000.10.4.)이다.
- ▣ 수입자는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거래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동 서류는 상세한 수입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통관 시 수입자는 동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마. 국내 대행자

- ▣ 통관법 172조에 따라 러시아 조직만이 통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입계약의 러시아 측 당사자가 없는 경우 외국인 수입자는 수입 물품을 세관 보세창고에 맡기던지 러시아 국적의 통관대행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6. 변동사항 및 이슈

가. 관세 행정 개선

- ▣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고자, 세관 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했다.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각국 세관 임원회의를 통해 2012년 6월 17일부터 관세동맹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의무적인 사전통지’를 도입했다.
 - 해당 조치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지향하며 대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구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 2012년 5월 러시아 전략기획청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로 관세 행정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 목표: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개선
 - 2012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2013년에 시범을 거쳐 2014~2018년까지 정착시킨다.
 - 구체적인 방안: 통관서류 축소 및 소요기간, 비용 단축



- 통관 서류 축소: 수입 통관 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 통관 소요기간 단축: 수입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통관 비용 절감: 수입 통관 시 소요되는 비용을 2012년 1,800달러(1컨테이너 평균)에서 2015년 1,300백 달러, 2018년 1,000달러로 줄이고, 수출 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 절감할 계획이다.
- 기타: 통관 간소화 적용대상 기업(기관) 확대, 세관원 복지 개선, 세관 규정 위반 행정 처분 정비

나. 보호무역 조치강화

■ 러시아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보호무역 중지(Standstill)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수입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 EU 집행위의 G20 국가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제5차 보고서('11.6)에 의하면 러시아는 경제위기 이후 1년('08.10~'09.10월)간 G20 국가 중 가장 많은 보호무역 조치(48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인상 등 국경 무역장벽 35건, 기술·조달 장벽 4건, 투자 장벽 1건, 수출촉진 1건 등 총 48건의 무역 제한조치 도입

※ 러 무역 제한조치 상세내용은 http://ec.europa.eu/trade/index_en.htm 참조

■ 러시아 정부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대외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WTO 가입을 전후로 하여, 철강, 농기계, 섬유, 상용차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및 세이프가드 조사를 강화한다. 2012년도 하반기에만 반덤핑 판정 3건, 반덤핑 조사 2건, 세이프가드 조사 4건에 착수했다.

○ 2013년 세이프가드 7건 등 총 8건에서 2014년도에는 4건으로 감소한다. 2014년도 상용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1건이 2015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와 EU의 연합 협정 개시 후 1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유럽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 2014년 9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반입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관세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독립국가연합국의 자유무역 지대 참가국인 우크라이나는 기존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EU와 연합 협정을 체결하려는 우크라이나의 행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결정되었다.
- 관세율 인상 품목 :
 - 육류, 유제품, 제과 제품, 과실류, 곡물, 맥주, 포도주, 정류, 담배, 경차, 버스, 냉장고, 의복, 신발, 금속제품,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플라스틱, 미네랄 비료
 - 여객 및 화물 선박, 기계, 화장품, 직물, 가구, 스포츠 장비 등 174개 품목
- EU산 상품이 무관세로 우크라이나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10일이 카운트 다운되기 시작되며, 이후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유럽산과 동일하게 도입할 계획이다.

다. 2012년 8월 22일, WTO 156번째 회원국 지위 발효

- '93년 GATT 시절 가입을 신청한 이후 '98년부터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자국 내 에너지 가격 협상 문제와 美, EU와의 이견이 있었다, '08년 그루지아와의 정치적 분쟁 등으로 회원 가입에 난항을 겪어왔다.
- '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약20년 만에 러시아의 WTO가입이 최종 승인되었다.
- G20 회원국 중 유일하게 미가입국이던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 및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 WTO 이후 러시아 수입 통관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여 교역·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

라. 화물 운송 지연 발생 사유

-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은 대부분 동아시아지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데 겨울철에는 혹한으로 인해 터미널에서 수하 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 이로 인해 평소에 비해 2~3배 운송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운송시기를 잘 선정해야한다.

제2절 통관 제도 특징

1.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 제도

- 러시아의 통관 제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하며 정부 재정확보를 위해 수입 관세 제도, 규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정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국상품의 통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사회주의적 관습, 전산시스템의 미구축, 일률적이지 못한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세계 공용 통관관습 불인정, 높은 보세창고료 등으로 특수한 통관여건을 지니고 있다.
-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보낼 경우 UPS, DHL, TNT 등을 이용하더라도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2. 높은 통관비용

- 러시아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1%이며 부가가치세는 18%지만 그 외 특수품목세, 각종 수수료, 인증서 및 증명서 취득비용, 법인세 등 수출가격 외에 현지 판매 가격에 미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 또한,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기간의 고의적 지연, 관료의 횡포 등으로 뇌물을 주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에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는다 고 법제화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통관 발생

- 이러한 복잡한 통관구조와 높은 통관비용으로 회색 통관, 간이통관, 블랙통관 등으로 일컫는 이중통관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회색 통관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추후 러시아 조세 당국에 의해 판매 물품에 대한 적법 수입 여부 등이 재차 점검되고 있고 러시아의 WTO 가입을 전후로 단속이 강화되었다.

☐ 통관 절차상 유의사항

- 수입 신고는 수입자와 관세사가 할 수 있다.
 - 통관 관할지 세관에 수입업체 등록
 - HS코드는 영문 공개가 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움
 - 각 제품 또는 설비에 대한 기술자료 준비
 - 러시아어로 된 통관 서류만 인정(영문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품설명서, 라벨링 모두 러시아어 기재
 - 인보이스 상 과소평가(Under value)는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라벨링 내역, 인증서 내역, 인보이스 상 명시된 물품 내역, 계약서 상 물품 내역 등은 모두 다 동일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실제 통관 제품과 서류 내역이 불일치하여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 3 장

검역 제도

▶ 제1절 ▶ 검역 제도 일반

1. 수입 검사기관

- 러시아 연방 보건부(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기관인 보건사회개발감독국(Roszdravnadzor)에서 의료기기 등록증을 발급하고 의약품 등록을 담당한다.
 - 위생관리 및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한다.

- 소비자권익 보호 및 복지 감독국(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2004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2012년까지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하 기관이었다가 2012년 5월부터 러시아 연방정부 직속기관에 포함되었다.
 - 러시아 연방 보건부의 위생관리 업무는 Rospotrebnadzor로 이관되어 위생증명서 발행, 관세동맹의 위생 감독, 제품 국가등록, CU 국가등록 등의 업무 총괄

-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 산하 집행기관으로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의 제품인증서 표준 관리
 - 2004년 국가표준위원회(State Standards Committee; GOSSTANDART)가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tekhnregulirovaniye)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2010년부터 약칭은 ROSSTANDART로 변경

■ 러시아 연방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으로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업무, 수입 및 국내 농수산물 및 축산물 관리
- 산하 기관인 동식물 검역국(Rosselkhozadzor)에서 수의, 식물 검역, 농약 사용, 토양, 육종, 농업식물 종자,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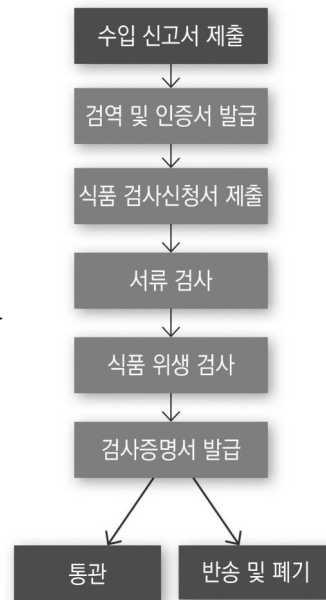
러시아 농업부 관련 조직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r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동식물 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 곡물 품질 평가센터(Federal Centre of Quality and Safety Assurance for Grain and Grain products)

2. 식품검사 절차

가. 수입식품 신고

- 러시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
- 운송 계약, 착물 증서, Invoice, Packing List를 첨부하여 제출
 - 이 서류들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 계획(팔레트 등)
 -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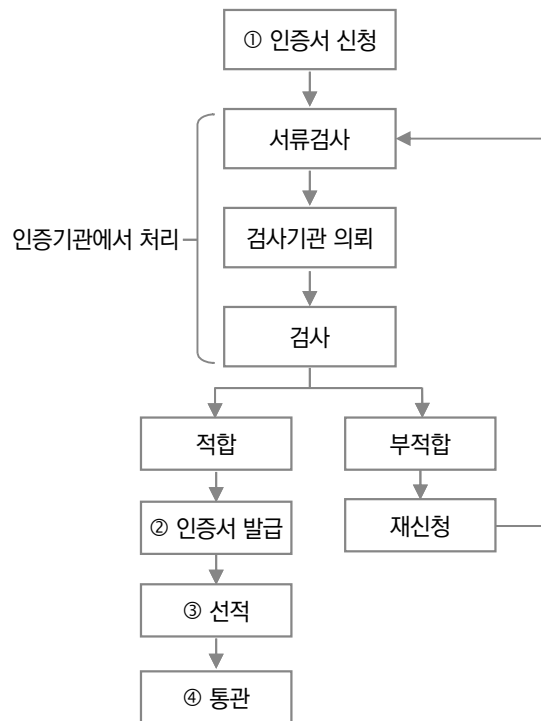
나. 검역 및 관련 인증서 발급

- 수의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 동식물 검역국에서 육류 및 가공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수의증명서가 요구
-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 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 : 이 증명서는 수입되는 식품이 인체에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GOST를 받기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러시아 보건부가 인정한 시험 기관에서 시험하고 러시아 보건부가 발급하는데 동 과정까지를 한국SGS(주)에서 대행해 주고 있다. 위생증명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폐지되고 관세동맹에서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하는 통합 상품목록에 해당되는 제품은 관세동맹 내에서 사용 및 판매를 위해 위생증명서 대신 국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0년 7월 이전에 러시아에서 발급되었던 위생증명서 품목군도 CU국가등록에 포함되어 러시아 위생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출업체는 추후 국가등록증명서로 대체하면 된다.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종전의 위생증명서가 강화된 형태로 2010년 7월부터 발효되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에 공통적으로 시행 중이며 일부 농식품의 경우 GOST-R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이다.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 검사로 샘플테스트가 필요하다. 국가등록 대상 품목은 Rospotrebnadzor에 등록해야 한다. 국가등록증명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가등록증명서 획득 시 관세동맹국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술규정, 통합위생규정과 같은 강제규범에 해당하는 제품의 국가등록증 단일양식을 승인한다. 현재 2010년 5월 2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299에 의해 승인된 국가등록증 용지 양식이 적용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요건 내에서 발행된 증서의 경우 동일한 양식이 적용된다. 새로운 형식의 국가등록증 양식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전에 받은 증서는 재발행 필요 없으며 변경 없이 유효하다.
- 감정서(Expert Conclusion) : 국가등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국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당 그룹의 식품은 통합위생요구에 제품이 적합한지 확인해주는 감정서(Expert Conclusion)를 발급받게 된다. 감정서는 Rospotrebnadzor 또는 그 산하 지역감독국에서 발급한다. 감정서는 유효기간이 없고 발급일부부터 제품 공급 또는 생산 중단일까지 관세동맹 전 영토에서 사용 가능하다.

- 안전인증서(Safety Certificate) :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에서 발행하는 안전규격인증서로,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은 강제인증품목에 해당한다. 러시아 연방 표준위원회는 해외에서 SGS, MERTCONTROL 등에 인증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한국SGS(주)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대 러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하루 만에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규진출품목의 경우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 원산지 인증서 : 이 인증서는 관세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며 인증서는 위생 인증서를 발급하는 국가 위생 역학 검사부처의 지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식품검사 신청서 제출

- 수입업자는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서류 검사 및 식품 위생 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아래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센터에 식품 위생 검사를 요청한다.
- 안전 인증서 : 이 인증서는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ROSSTANDART)에서 발급하며 시험 완료 를 위해서는 5kg의 샘플이 필요하다. 발급에 5~7일 정도 소요되고 안전 인증서는 표준화 센터에 의해 수행된 시료검사 및 위생 인증서에 기초가 된다.
- 러시아 표준규격 인증서(GOST-R) : GOSSTANDART에 의해 정해진 표준에 대한 부합 인증서는 모든 수입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제품에 가장 중요한 인정서이다.
- CU 인증서(TR CU Certificate) : 2013년 2월 14일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의 관세 관련 공통 인증제도인 CU(Custom Union) 인증이 도입되어 품목별 차이는 보이겠지만 2015년 3월까지 GOST-R 인증이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CU 인증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마. 검사증명서 발급

-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러시아 관할 세관에 통보

바. 통관 조치

- 러시아 세관은 적합 판정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면 출하가격에 따라 관세를 입금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 서류 등을 확인하고 수입식품을 통관시킴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러시아 표준규격 인증서(GOST-R) 예시



Ⅱ GOST-R(러시아 표준규격) Ⅱ

■ 정의 : 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 표준규격)

- Gosstandart : 러시아어로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국가, 주(state,))와 стандарт(표준)이란 뜻의 영어식 표현인 Gosudarstvenny의 앞 세글자(Gos-)와 표준, 규격을 뜻하는 Standart를 합쳐서(Gosudarstvenny +Standart) 국가규격을 의미한다.
- 이 기관에서 관리하는 각 규격인증을 GOST 또는 GOST-R로 표기하고 있다.

■ 주관기관

- 구 GOSSTANDART(러시아 연방국가표준위원회: GOST), 현 ROSSTANDART : www.gost.ru
- 한국SGS : www.sgsgroup.kr

■ 대상 품목

-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 검사증명서(Hygienic Certificate)가 필요한 제품
예) foods, toy, construction and finishing materials, household electric items, objects and articles for medical use, textiles
-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예) 1개만 인도되는 상품,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외교관계 사무소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상품
- 통관 시 GOST-R 인증이 필수적인 품목
예)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가정용 기기/공구, 바이크, 완구 및 아동복, 자전거, 보육기기, 농산물, 식품, 음료, 담배, 가구, 식기구, 도기류, 화학약품(살충제, 농약), 화학제품, 비료, 세제, 사진 및 영상기기, 고무제품, 목재류, 의류, 신발류, 안전모, 세라믹/금속/동/알루미늄제품, 철금속/비귀금속 제품, 원자로, 보일러기기, 전기기기, 선박, 측정, 제어, 정밀, 지상 운송수단(철도차량 및 트레일러 제외), 시계, 악기류, 무기류, 스포츠용품

■ 인증마크



■ 적용국가

- 러시아(GOST-R), 카자흐스탄(GOST-K), 우즈베키스탄(GOST-U), 벨라루스(GOST-B), 몰도비아(GOST-M)

■ 기타

-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없으며, GOST 인증서가 없는 경우 러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못 하며, 시장에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수거 확인 등의 사후 관리 제도를 거친다.

사. 변동사항 및 이슈

■ 관세동맹(Customs Union) 출범에 따라 관세동맹 회원국은 인증 제도를 CU 인증(TR CU Certificate)으로 통일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구성된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2013년 2월부터 회원국 간 표준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이전의 표준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줌
- 2011년 1월 28일 관세동맹위원회는 ‘관세동맹 범주 내에서 강제요건이 확립되어있는 제품 통합목록’을 발표
 - 대상제품 : 식품, 알코올제품, 사료 및 사료첨가물, 곡물, 담배제품 등 총 66개
- 인증마크 변경 :
 - 예전 GOST, TR 마크에서 EAC 마크로 변경
 - EAC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의 약자
 - 제품이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모든 평가 절차를 통과했음을 증명해주는 마크

■ 관세동맹 CU인증 마크 ■



- GOST-R과 CU 인증 간 변경사항 :
 - 인증비 상승, 공장심사 추가
 - 러시아 바이어 또는 러시아 지사와의 계약서가 존재해야 CU 인증 신청 가능

변경사항	GOST-R	TR CU
신청자	제조사 또는 바이어	러시아 바이어, consignee
준비서류	부분적 영문 제출 가능	러시아어 서류 제출
공장심사	제외	공장심사+샘플 테스트
인증비	200-350만원	800만원-1100만원+공장심사비용
인증서 유효기간	3년	5년
인증서 발급기간	5-10일	공장심사 후 약3주

▣ 각 인증별 유효기간

- 러시아의 표준 인증인 GOST-R이 유효한 유효기간은 제품마다 다르며, 이는 관세동맹의 표준규정을 담당하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명시되어 있다.
※ 각 품목별 적용되는 기술규정에 관한 상세내용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참조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act/tecreg/deptexreg/tr/Pages/default.aspx>
-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이 있을 경우, 이 기술규정에서 명시하는 유효기간까지는 GOST-R과 CU 인증이 모두 유효하며, 이후에는 CU 인증만 유효하다.
- 해당 기술규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 시까지 GOST-R이 유효하다.
- 현재는 GOST-R과 CU 인증 사이의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식품, 경공업 제품, 차량(부품) 등 상당수 품목이 2015년 2월과 3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CU 인증만 유효하다.
- 하기 표에서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정을 제외한 7개의 식품 관련 기술규정의 유효기간이 2015년 2월 15일에 만료되었으며 해당 품목은 GOST-R 대신 CU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기술규정 명칭	만료일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15.2.15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TR CU 022/2011)	'15.2.15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정(TR CU 023/2011)	'15.2.15
유지제품 기술규정(TR CU 024/2011)	'15.2.15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기술규정(TR CU 027/2012)	'15.2.15/ '14.1.1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	'15.2.15/ '14.1.1
곡물 안전 기술규정(TR CU 015/2012)	'15.2.15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	'15.12.31/ '15.5.1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4/2013)	'15.12.31/ '15.5.1

※ 만료일은 유통기간 만료일을 의미하며, 이후부터 CU 인증만 유효하다.

-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유통기간 만료일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의무적 요건에 제품이 적합함을 확인시켜주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서류가 있을 시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즉,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에서는 기술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이 유통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각 나라의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 제품도 유통 가능하다.
 - 제품에 대한 강제적인 적합성 평가에 관한 서류가 없고 적합성 마크의 라벨링이 없을 경우 2015년 5월 1일까지 유효하다.
 -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 및 육류제품은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과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4/2013)'에 정립된 강제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기술규정 요건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관세동맹 회원국의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품 유통마크 'EAC'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한다.

■ 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제정 현황

- 2015년 12월초 기준, 총 35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정이 채택된 상태이고 34개의 기술규정이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 현재 식품 관련 채택된 기술규정으로는 곡물 안전, 유지제품 안전, 식품 안전, 식품 라벨링,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 우유 및 유제품 안전,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담배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이 있다.

- 2015년 12월초 기준, 채택된 10개의 식품관련 기술규정 중 담배제품을 제외한 9개의 기술규정이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기술규정 명칭	발효일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13.7.1부터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TR CU 022/2011)	'13.7.1부터
과실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정(TR CU 023/2011)	'13.7.1부터
유지제품 기술규정(TR CU 024/2011)	'13.7.1부터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기술규정(TR CU 027/2012)	'13.7.1부터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	'13.7.1부터
곡물 안전 기술규정(TR CU 015/2012)	'13.7.1부터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	'14.5.1부터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4/2013)	'14.5.1부터
담배제품 기술규정(TR CU 035/2014)	'16.5.15부터

-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식품 관련 기술규정으로는 알코올제품, 어류 및 어류제품, 가공육 및 그 가공제품, 용기 포장된 생수에 관한 기술규정이 있다.
- 2015년 1월부터 관세동맹의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지역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규정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EAEU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유지제품 기술규정(TR CU 024/2011) 개정

- 2015년 1월 27일 '유지제품 기술규정(TR CU 024/2011)' 개정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지령 No2 발표로 관세동맹 유지제품 기술규정 개정이 승인되고 2016년 1월 15일부터 개정본이 발효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용 유지제품의 라벨링 조건 변경
 - 운송 패키지 표기정보 상세화 : 중량 포장되지 않은 식용 유지제품 구성성분(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성분, 비타민, 향미증진제 의무 표기)은 중량 순서로 표기
 - 적합성 평가 시에 신청인에 관한 것
- 2016년 1월 15일 이전에 통합식품등록부에 올라간 유지제품 적합성 평가서류들(정보)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5년 11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 개정안에서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에 대한 부가 요건을 확립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개념과 식별특징 확립
 - 초콜릿 및 상기 제품들 생산 시에 유지제품과 동물성지방 사용 요건
 -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 생산 시에 향미제 및 착색제 사용 요건
 - 식품 안전 기술규정에 변경내용이 채택될 경우, 23개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다. : 초콜릿(다크, 일반, 스위트, 엑스트라밀크, 화이트 초콜릿 등), 코코아제품(코코아버터, 코코아조분, 코코아가루 등), 초콜릿스프레드, 코팅용 초콜릿 글레이즈(일반, 밀크, 화이트, 디저트 초콜릿글레이즈) 등
- 기술규정의 신규 별첨 No11 ‘초콜릿, 코팅용 초콜릿글레이즈, 초콜릿스프레드, 코코아제품의 식별특징’에는 식별특징에 관한 설명이 들어간다.
 - 다크 초콜릿은 설탕, 감미료, 코코아버터 없이 제조를 허용한다.
 - ‘초콜릿’ 정의: 같은 코코아 밋(또는) 코코아버터, 설탕 밋(또는) 감미료로 제조된 식품으로, 유제품을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식품성분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6년 6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을 재개정함으로써 오류 제거 등 기술규정의 개별 조항을 수정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첨 No2 ‘미생물 안전기준’에 나오는 표1에서 제1.3항의 기존 명칭 ‘곡물(종자),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을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으로 변경, 제1.6항의 기존 명칭 ‘기름원료 및 유지제품’을 ‘유지제품’으로 변경
 - ‘1.10. 임신부 및 수유여성을 위한 식품’과 ‘1.13. 어린이, 미숙아, 저체중 어린이를 위한 식이치료용 전문식품’ 부분 삭제
 -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요건은 별첨 No3 제4항에 기술
 - 별첨 No7의 제1.1항 ‘항정신성, 마약성의 강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 및 식물가공품’을 위해 새로운 항목 도입

■ 가금육 통조림 품질 규제 GOST 승인

-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국가 간 표준 GOST 28589-2014 ‘육류통조림. 그 자체 즈에 담겨있는 가금육. 기술조건’이 도입될 예정
- 일상생활, 식이요법, 외식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품질의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 신규 GOST는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에 규정되어있는 생산조직과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다.
- 러시아표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국가간기술위원회 №116 ‘가금류·계란가공품과 승화건조법’이 권장되고 있다. 그 자체 즈에 담겨있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의 고기로 제조된 제품의 영양 및 안전 평가기준과 조건을 규정한다.

■ 식품위생요구 개정

- 2015년 9월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결정 №106을 통해 위생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품들에 대한 통합 위생 요구(Unified Sanitary-Epidemiological and Hygienic Requirements) 제2장 제22부를 개정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식품 생산 시 사용 허가된 식품첨가물 목록 정정
 - 아스코르브산(E300)은 산화방지제와 밀가루 개량제(Flour treatment agent)로 사용 가능
 - 소시지를 포함하는 육류제품에서 인산(E338) 및 인산염의 최대허용치 정정: 육류원료 1kg당 첨가된 인산염 3g, 조제품 1kg당 전체(첨가된 것+자연의 것) 인산 8g
- 본 결정은 관세동맹 기술규정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TR CU 029/2012)’에 이와 유사한 변경이 도입되는 순간부터 발효 예정이다.

■ 적합성신고 필수 주스제품 목록 수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76(‘14.05.26) 개정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정(TR CU 023/2011)’에 따라 세관 신고 시 적합성평가(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승인
- 해당 개정에 관한 결정 №70은 2016년 6월 15일 발표되어 7월 15일 발효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또는 그와 같은 서류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 추가 : 세관 관리 시, 적합성평가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서류 정보를 제출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 감귤류 세포(cells), 과실 및 채소 과육, 과실 및 채소 껍질의 경우, EAEU HS코드 수 증가

○ 주스제품 적합성평가서류 형태는 변경되지 않는다.: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주스제품 목록: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토마토 제외)(압착주스, 환원주스, 농축주스, 침출주스(농축침출주스 포함) 포함), 과실 및(또는) 채소 넥타,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함유음료, 모르스(Mors: non-carbonated Russian fruit drink), 농축 모르스, 과실 및(또는) 채소 껍질(토마토 제외), 농축 과실 및(또는) 채소 껍질(토마토 제외), 토마토주스, 토마토껍질, 농축토마토껍질(페이스트), 농축천연향 과실 또는 채소 물질, 감귤류 cells, 과실 및(또는) 채소 과육, 과실채소 혼합껍질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 유통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은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가정에서 개인 생산 주스제품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새로운 형태의 주스제품과 전문식품에 해당되는 주스제품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양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주스, 넥타, 모르스(Mors), 껍질의 경우, 전문식품 통합 등록부/새로운 형태의 식품 통합 등록부에 충분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따로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2016년 10월 18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162에 의해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0/2016)”이 채택되었다. 본 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

○ 식용 어류제품의 안전 요건과 생산, 보관, 운송, 판매 및 폐기,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필수 요건이 확립되었다. 기술규정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 및 제품에 기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규정한다.

○ 식용 어류제품이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EAEU 영역에서 유통 가능하다. EAEU 시장에서는 단일유통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등 부적합 제품은 유통에서 철회될 수 있다.

- 양식 식품에는 천연 또는 합성 호르몬 물질 및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동물용 의약품, 성장 촉진제, 의약품의 잔류 최대 허용 기준은 정해진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어떤 식용 어류제품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지 규정한다. 특히 제품 두께에서 -18°C 이상 온도의 냉동제품, 저장 중에 해동된 제품, 인체 건강에 위험한 생물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등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는다.
- 양식의 어류 및 식품에 기생충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생산 과정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이 있다.
- 이 기술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발효하나, 예외 조항이 있다. 예외는 제조업체의 정보를 근거로 한 식품 내 성장 촉진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관련 국가 간 표준 및 방법론 개발 이후 발효될 것이다.
- 2017년 4월 24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40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0/2016)의 과도기 조항”이 발표되었다.
- 과도기 조항 주요 내용
 - A) 적합성 평가서는 EAEU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문서로,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EAEU 040/2016)"의 규제대상 제품에 대해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적합성 평가서는 문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 유효하다.
 - 기술규정의 발효일로부터는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 발행 또는 채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까지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강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서와 국가 적합성 마크(시장에서의 유통 마크) 표시 없이도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3월 1일까지 허용된다.
 - C) 기술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행되거나 채택된 문서 즉 강제요건에 따른 적합성 평가서가 있는 경우, EAEU의 법령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이전에 정해진 강제요건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및 회원국 영토 내 유통이 2019년 9월 1일까지 허용된다.

- 제품에는 국가 적합성 마크를 표시한다. EAEU 시장에서 통합 유통 마크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D) 상기 "B"호와 "C"호에 언급된 제품의 유통은 회원국의 법률에 정해진 제품 유통기한 동안 허용된다.

☐ 포장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개정된 ‘포장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05/2011)의 효력 도입 절차를 결정했다.
- 포장 안전 기술규정(TR CU 005/2011) 요건에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는 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영내에서 제품(기술규정의 규제대상)의 생산 및 출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허용된다.
-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에 출하된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의 보관기간(유효기간) 동안 유통이 허용된다.
- 포장 안전 기술규정 개정 주요내용
 - 포장 안전 기술규정은 의료제품·의약품·담배제품·위험화물용의 클로저, 자동차·철도·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화물 운송을 위한 팔레트, 화물컨테이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복합재료, 첨부서류, 보관기간 등의 용어 정의
 - 복합클로저 요건 명시: 수축되는 후드의 점착접합부는 견고해야 하며 밀봉 개스킷은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 중고 포장(클로저)은 본 기술규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 어린이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클로저)의 관능 지표 요건 명시
 - 2017년 5월 21일 발효될 예정이다.

☐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 ‘천연광천수를 포함한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TR EEU 044/2017)’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45가 2017년 9월 5일 발표되었다.
- 이 문서는 올해 6월 23일에 채택되었으며 문서의 발효는 2017년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 이 결정을 통해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술규정이 공식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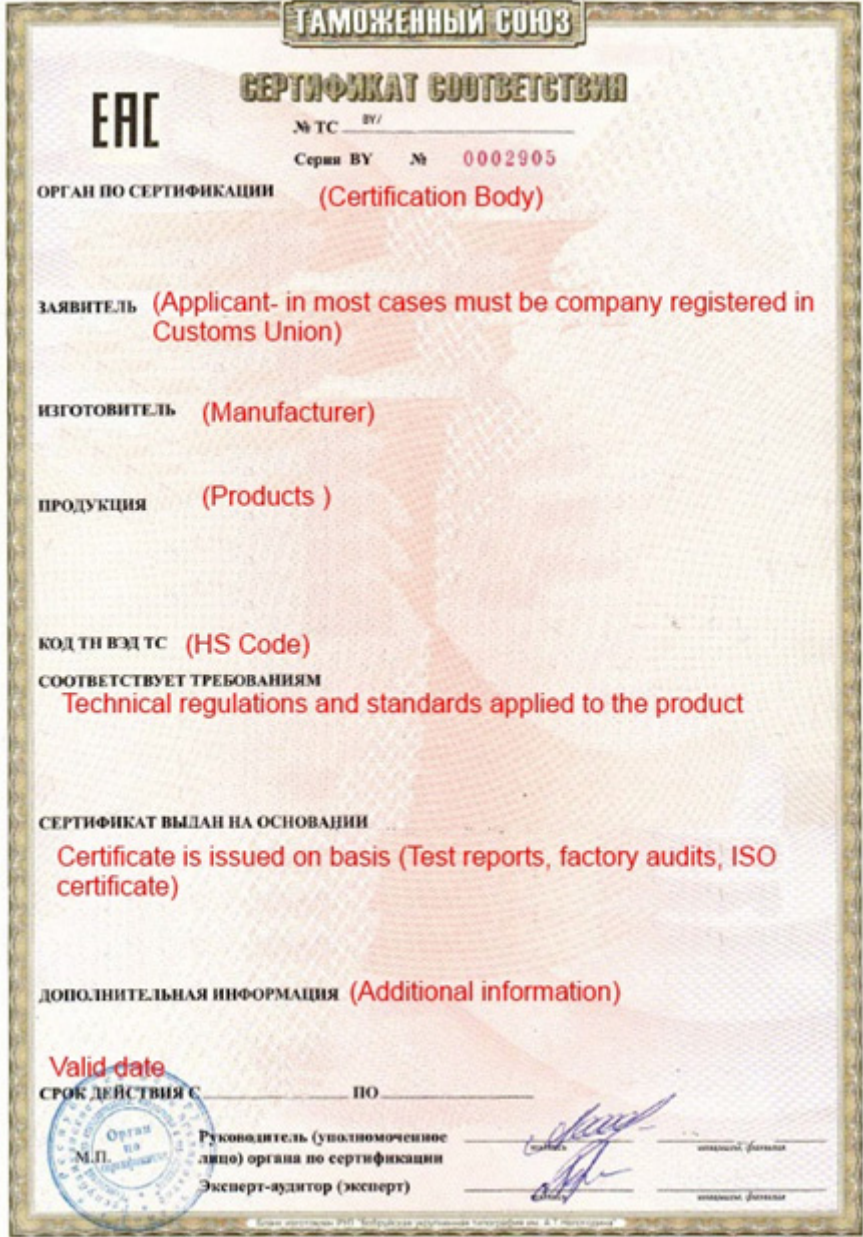
채택되었고 이 기술규정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 다만, 별첨 1, 2, 3의 특정 조항들(별첨1 제5항, 별첨2 표2,4, 별첨3 표4 등)의 경우 예외로 정해져, 이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샘플 채취규정 등 검사(테스트) 및 측정 방법 및 규칙과 관련된 국가 간 표준 개발 후 발효될 예정

- 문서는 또한 ‘포장 식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 발효일 이전에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정부와 함께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TR CU 021/2011)’에 대한 변경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포장 식수의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에서 규제하는 영역 : 천연 미네랄워터(천연광천수), 혼합 식수, 처리된 식수, 천연 식수, 어린이용 식수, 인위적으로 미네랄을 첨가한 식수, 포장 식수의 생산, 운송, 보관, 판매 및 폐기 과정
- 어린이용 식수의 라벨링에는 연령그룹(3세까지 또는 3세부터), 광물질, 화학 성분요소, 그 최소값 및 최대값 등 주요성분, 보관조건, 개봉 후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생산자와 판매자는 화학, 미생물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천연광천수 및 혼합 식수에서 유해물질의 함량을 제한한다. 납 0.01mg/dm³ 이하, 수은 0.001mg/dm³ 이하, 카드뮴 0.003mg/dm³ 이하 등
 - 미네랄 및 혼합 식수에서 특정 총 알파활동(specific total alpha activity)은 0.2-0.5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정 총 베타활동(specific total beta activity)은 1.0Bq/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기술규정의 규제 대상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국가등록의 형태로 수행된다. 특히, 식탁용 약수, 어린이용 식수, 치유용 천연광천수에 대한 국가등록증을 수령해야 한다. 식수와 관련된 경우 적합성 평가는 국가감독의 형태로 제공된다.
- 포장 식수에 대한 적합성 선언(DoC)을 위해서는 출고방식(단일제품(Single production (One-shipment)) 혹은 시리얼 제품(Serial production)), 제조업체, 기타 요인에 따라 적합성 선언 인증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도식 1d, 2d, 3d, 4d, 6d에 따른다. 관련 식수에 대한 국가등록은 “식품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제24조에 따라 수행된다.

번호	제품 테스트, 유형 검사	생산 평가	생산 관리	신청	적합성 확인 문서
1d	제품 샘플 테스트는 제조업체가 수행한다.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한다.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2d	제품 로트(단일제품) 테스트는 신청자가 수행한다.	-	-	제품 로트(단일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판매자(공급자)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제품 로트(단일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3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한다.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4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로트(단일제품) 테스트	-	-	제품 로트(단일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판매자(공급자)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제품 로트(단일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5d	유형 검사(테스트)	-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한다.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6d	공인된 테스트실험실(센터)에서 제품 샘플 테스트	관리시스템인증기관에 의한 감독관리 및 관리시스템인증	생산 관리는 제조업체가 수행한다.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의 경우, 신청자는 관세동맹 회원국의 제조업체 또는 관세동맹 영역 내에서 외국 제조업체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	시리얼로 출고된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관세동맹 CU인증서(TR CU Certificate) 예시



3. 식품위생 검사기관

가. 검사대상

☐ 관세동맹에서 위생 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 식품(자연 혹은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 포함)(CU HS코드 02-05류, 07-09류, 11-25류, 27-29류, 32-34류, 35류),
- 담배제품 및 담배원료(CU HS코드 24류)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미네랄워터(내추럴 테이블워터, 메디컬 테이블워터, 메디컬워터), 병에 든 식수(용기 포장: 어린이용 식품에 이용되는 것 포함), 토닉음료, 알코올제품(저알코올제품, 맥주 포함)
- 전문식품(어린이용 식품, 임산부 및 모유수유 여성용 식품, 식이요법 제품(치료 및 예방),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포함);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한 원료, 유기농제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제조된 식품(유전자변형미생물체 포함)
- 식품첨가물, 복합식품첨가물, 향미제, 식물성 추출물(향미물질 및 원료성분으로 이용되는 것), 미생물 배양체 및 박테리아 스타터, 기술적 보조제(효소제 포함)

☐ 감정서(Expert Conclusion) 발급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함유하지 않는 식품 및 특수식품첨가물이 아닌 식품(자연 또는 가공된 형태로 인간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제품)

나. 수의검역

☐ 수의검역은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에서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러시아 농업부 수의국
- 수의국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 각 주 및 지방자치공화국의 수의부처
- 시 및 기타 행정조직 수의부처
- 각 지방의 동물질병연구소, 기타 수의연구소
- 지방 수의병원
- 국립 수의검사소 등 기타

▣ 수의검역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모든 종류의 동물
 - 수의 연방법에 따른 '동물'의 정의: 가축과 기타 생산적/비생산적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무척추동물(꿀벌 포함), 어류, 어란, 수생포유동물, 수생무척추동물, 기타 양식대상 및 수생생물자원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 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러시아에서 수입 가능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한다.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 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취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사료
- 동물 의약품 등

▣ 수의 연방법 개정사항

- 러시아의 동물 관련법 '수의 연방법'은 1993.5.14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5년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수의법 개정 및 러시아 개별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



No243-FZ에 서명하여 개정판이 2015.7.24일부터 발효되었다.

- 신규 수의 연방법에 추가된 사항 : 예방, 진단, 치료, 제한, 기타조치, 검역설정과 해제, 감염/동물병 확산방지 제한조치, 수의 동반서류 작성 관련 규정 등
- 정부는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 및 관련 위생 감정검사 절차 확립
- 수의위생 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다.
 - 식물성산물 사료첨가제 및 사료
 - 식품시장 판매 비산 업용 식물성산물 제품
 - 국방, 내무, 국가안보, 안전보장 분야 관련기관 이용 제품

▣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 유전공학분야 국가규제에 관한 연방법 No86-FZ('96.07.05)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환경방출에 대한 관리 도입
 - GMO 및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 러시아 내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재배 및 번식 금지. *감정 및 학술연구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 GMO 및 관련제품의 수입업체는 반드시 등록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GMO 및 GMO 제품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등록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유효기간이 종료된 GMO 및(또는) GMO 사용품 또는 GMO 함유제품에 대해 벌금부과 : 공무원 1만~5만 루블, 업체(법인) 10만~50만 루블
 - 허가된 종과 사용 조건을 위반한 GMO 사용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재가 있다.
- 본 연방법 No358-FZ('16.07.03)은 2016년 7월 4일 발효
 - 벌금에 관한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시사점: 최근 아르헨티나(대두박), 브라질(대두박), 독일(대두박), 중국(식물성사료)의 일부 업체들에서 생산된 사료 및 사료첨가물에 샘플 검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GMO성분이

검출되었다. 첨부서류에 GMO 함량에 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되었다.

▣ 동물용 사료에 대한 동물관련(veterinary) 첨부서류 발급절차 변경

- 식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사료 및 사료첨가물을 러시아로 반입할 시, 사료 사용을 허가하는 동물관련(veterinary) 첨부서류는 GMO 존재여부 또는 GMO 품종식별에 대한 실험실검사 결과를 받은 후에만 통관 장소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 수출국의 동물관련 서류 없이 반입된 사료에 대한 첨부서류 작성 및 발급은 품질증명서, 실험실검사결과에 기초하며 수출국의 전염병상황과 동식물 검역국의 제한조치를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경우, 동물관련 첨부서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시사점 : 사료에서 GMO 검출 경우와 러시아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GMO 품종 검출 경우가 빈번해짐으로 인해 동식물 검역국의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

▣ 사료첨가물

- 2016년 7월 9일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상품에 제기되는 통합수의(위생)요건 개정이 발효되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사료첨가물 관련 조항 추가보완
 - HS코드 from 1518 00,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3203 00, from 3302, from 3504 00,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로 반입되는 동물성성분 함유 사료첨가물과 수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은 수의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HS코드	품명	첨부서류	반입허가	제3국의 업체명단
from 1518 00, from 2102, from 2309, from 2936, from 3002, from 3203 00, from 3302, from 3504 00, from 3507, from 3808, from 3824	사료첨가물	동물성분 함유 상품과 수의학용 상품(동물용 사료에서도 포함)을 위한 수의증명서	YES	반입허가서와 수의증명서에 관리대상상품을 출하하는 업체명 및 (또는) 넘버를 기재해야 한다.



-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은 제조업체에 의해 발급되는 품질안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증명서 없이 반입 및 운송 가능하다.
 - 이 조항은 상기 HS코드에도 해당한다.
- 러시아 연방과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전권기관들은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7('10.06.18)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통합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상품에 명시된 HS코드(from 2102, from 29, from 3507 포함)로 제3국에서부터 러시아 연방 및 카자흐스탄 영토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의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은 관세동맹 회원국 전권기관들의 반입허가와 수의증명서 없이도 러시아 연방 및 카자흐스탄으로 반입 가능하다.
- HS코드 from 2102, from 29, from 3507의 상품, 동물성, 화학합성 및 미생물합성의 사료첨가물의 반입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 식물성 사료첨가물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반입 조건은 회원국의 전권기관들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다. 식물검역

■ 식물검역은 러시아 연방 동식물 검역국에서 담당하며 관련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검사담당 직원은 국경에서 제품을 검사해야 한다.

■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2010년 12월 29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No456의 별첨 '러시아 연방 영토로 규제제품 반입, 보관, 운송, 가공, 사용 시 식물검역규정'에는 '규제제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제기되는 러시아 연방의 검역식물 위생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본 규정은 러시아 연방 영토로 검역대상이 침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 상기 '규제제품 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에 의해 승인된 '관세동맹의 관세국경과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을 의미한다.

※ '규제제품 목록' 개정본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exnreg/depsanmer/regulation/Documents/>

Перечень%20продукции_03.04.2017.pdf

- 규제제품 종류는 관세동맹의 대외 경제활동 단일상품명명법(CU HS코드)에 따른 것이다.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출범 이후 EAEU HS코드로 명칭 변경
- 반입되는 규제제품에는 2014년 12월 15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501에 의해 승인된 '검역대상(식물병해충, 잡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은 특정 규제제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규제제품의 수출국 혹은 원산지국가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단, 수입산 규제제품의 반입, 운송, 보관, 사용 과정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검역식물 위생요건에 의해 규정된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
※ 새로 발표된 '검역대상(식물병해충, 잡초) 목록'은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svps.ru/fsvps/laws/4126.html>
-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존재할 시에 제품의 소유주는 검역대상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 혹은 소독처리를 보장해야 한다.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그룹에 해당되는 규제제품은 규제제품 수출국(재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 본 규정의 별첨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서부터 규제제품의 수출이 전제되는 경우에, 수입상은 규제제품이 러시아 연방의 식물위생요건에 부응함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입상은 전제된 국가에서부터 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식물위생요건과 검역대상에 관하여 식물검역영역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집행하는 연방 집행권력 기관에 문의할 권리를 가진다.
- 검역대상이 있을 시에는 규제제품 로트를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금지하거나 혹은 세관경유의 세관절차에 규제제품 로트가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조건들을 준수하는 규제제품 로트를 반입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반입 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 로트의 러시아 연방 반입은 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해야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식물위생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식물검역법 요건에 규제제품이 적합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각 국가영토에서 검역대상 확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는 국가에서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국가에서 반입되는 규제제품은 의무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의 러시아 연방 반입은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연중 허가되고 있다.
- 향후 가공을 위해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은 검역잡초 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종자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해야 한다. 생존력 있는 종자와 함께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을 가공장소에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의 웨이스트는 종자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하는 기술로 가공, 폐기처분해야 한다.
- *Striga sp.sp*의 종자와 함께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을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은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Striga sp.sp*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될 수 있으며, 단, 오직 *Striga sp.sp*이 없는 지역들에서부터 반입될 수 있다.
 - 이는 러시아 연방으로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최소 3년간의 검사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부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주무부처는 이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 *Striga sp.sp* 확산 국가들에서의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의 식물 위생 상태를 확인한 후에 허용된다.
- *Stenocarpella macrospora*,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heterostrophus* race T, *Pantoe stewartii* 병균이 있는 가공용 옥수수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다.
-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은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러시아 연방 영토 반입이 허용될 수 있으며, 단, *Tilletia indica*이 없는 지역들에서 원산지인 경우에만 한한다. 이는 현장조사와 실험실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수출국의 주무부처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 반영되어야 한다.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밀과 밀 가공제품의 반입과 사용은 오직 실험실 감정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허가된다.

- *Tilletia indica*이 발견되는 경우에 밀과 밀 가공제품은 반송, 폐기처분한다.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부터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의 러시아 연방 반입은 노브고로드 주, 볼로그드 주, 키로프 주, 페름 주, 스베르들롭스크 주, 튜멘 주, 톰스크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무르만스크 주, 카렐리아공화국, 아르한겔스크 주, 코미공화국, 캄차트카 주, 사할린 주, 마가단 주, 사하공화국의 제분업체들과 제빵업체들에서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직 11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과 북빙양 항, 마가단 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항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의 하역은 항구에서 고립된 선착장에서 이루어지며 운송수단인 선박은 운송을 마친 후 처리를 해야 한다.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 호밀, 메슬린과 그 가공제품을 소매유통에서 판매하고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Tilletia indica* 확산 국가들에서 반입된 밀과 밀 가공제품을 담았던 패키지는 최소 3시간 11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방법으로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 본 규정의 별첨에 기재되어 있는 별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확산 국가들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된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은 그 속에서 활성상태에 있는 임의의 살아있는 대상들이 발견될 시에 *Trogoderma granarium*의 유충을 제거하는 처리조건에 따라 운송수단에서 예방소독처리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
- *Trogoderma granarium* 확산국이 원산지인 맥아를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것은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식물위생 검사를 완전히 다한 이후에만 허용되고 있고, 사용은 참고 검사 결과에 따라 허용된다.
- 콩과식물과 그 가공제품에서 살아있는 *Callosobruchus spp.*이 발견될 시에 곡물은 소독처리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하며, 운송수단도 소독 처리해야 한다.

▣ 종자 및 재식재료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종자 및 재식재료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검역유해생물체들에 의해 감염된 식물들의 재식재료 및 종자는 러시아 연방 영토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 반입 지점들에서 종자 및 재식재료 로트는 동반하는 식물위생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육안검사를 받게 된다.
- 종자 및 재식재료는 검사, 선별(샘플링), 샘플감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한다.
- 식물위생실험실감정조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 종자 및 재식재료를 용도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감정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규제물질은 검역유해생물체들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 종자 및 번식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된 감자는 실제 종자, Solanum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들의 괴경(주로 *S. tuberosum*), 미니괴경(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즈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즈(조직배양에서 *Solanum spp.*를 함유하는 미소괴경을 포함하는 식물들)를 포함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번식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는줄기를 형성하는 종들,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들 혹은 하이브리드를 포함할 수 있다.
- 씨감자 로트들은 새로운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
- 씨감자 로트들에서 토양의 존재는 제품 중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토양이 허용되고 있다.
- 분화류 식물과 폐쇄뿌리체계를 갖는 식물은 검역유해생물체들이 없는 영양분기질에 심어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어야 한다.
- 검역유해생물체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의 토양 덩어리가 뿌리에 있는 식물의 러시아 연방 영토 반입은 토양과 함께 확산될 수 있는 검역대상들 모두에 대한 필수적인 토양샘플 실험실감정검사를 포함하는 검역식물위생관리 시행 시에 허용되고 있다.
-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과수, 장과식물, 관상식물, 포도나무(딸기 제외)의 재식재료는 잎, 꽃, 과실이 없는 휴면상태이어야 한다.
-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 종자 및 재식재료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검역유해생물체들이 발견된 반입된 종자 및 재식재료 로트들은 소독 처리되어야 하며,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송 혹은 폐기처분된다.

- 종자 혹은 재식재료 로트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 발견 시에 오직 로트의 감염된 부분만 소독처리, 반송 혹은 폐기처분된다.
 - 씨감자는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진균·세균·바이러스·선충의 병원균이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장과, 핵과, 견과류의 묘목, 삽수, 접수는 식물해충, 진균·세균·바이러스·선충의 병원균이 없어야 하며 상기 해충 및 병원균이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산호세깅지벌레(*Quadraspidiotus perniciosus*)와 뽕나무깅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 즉, 해당 생물체들이 검역의미를 갖지 않는 국가 혹은 국가의 일부에서부터 식물들의 재식재료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단, 수출국에서 식물들을 소독 처리하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이는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본 규정 별첨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산호세깅지벌레(*Q. perniciosus*)와 뽕나무깅지벌레(*P. pentagona*)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들에서부터 재식재료 및 접목재료의 반입 및 판매는 오직 소독처리 이후에만 허가된다.
- Cherry rasp leaf nepovirus가 없는 생산 장소 또는/혹은 구역, 지역들에서부터 사과나무, 뽕나무, 양뽕나무의 묘목, 삽수, 접수의 반입은 허용되고 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해당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 수입산 종자 및 재식재료를 사용하여 시행된 파종(재식)은 검역식물위생조사를 받게 된다.
- 1997년 12월 17일자 '채종업에 관한 연방법(종자관련법)' №149-FZ에 따르면, 농업식물 종자 로트의 러시아 반입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된다.:
 - 종자 로트에 종자의 품종품질 및 파종품질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반입이 허가되었다. 종자의 품종품질인증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증서 혹은 수출국의 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종자의 파종(재식)품질인증서는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인증서 혹은 수출국의 국립종자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종자 로트는 러시아 연방법과 국제법규범들에 규정되어있는 요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 종자 품종은 러시아 영토에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단, 학술연구, 국가테스트, 러시아 반출용의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종자 로트는 예외로 한다.

- 러시아 세관기관들이 러시아로 반입된 식물품종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러시아 농업부에서 발행한 ‘반입된 식물품종 종자에 대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 초본’을 제출한다. 초본에 명시되어있는 품종 명칭이 국가등록부에 부재하는 경우에 그 품종은 러시아영토로 반입할 수 없다.
- 러시아로 반입되는 농업식물 종자 및 재식재료는 그 품종품질 및 파종품질을 증명해주는 3가지의 서류가 요구된다.:
 - 종자 및 재식재료의 품종품질에 대한 인증서
 - 종자 및 재식재료의 파종품질에 대한 인증서
 - 반입된 식물품종 종자에 대한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 초본

▣ 과실류, 채소류, 감자(식용 및 공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과실류, 채소류, 감자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검역대상들 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들과 함께 장과, 핵과, 감귤류, 기타 식물의 과실류의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있는 경우들은 제외한다.
- 과실류와 채소류의 개별 포장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자 또는/혹은 재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 과실류와 채소류는 국가검역식물위생관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한다.
- 로트에서 채취된 과실류와 채소류의 샘플(샘플들)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이 검출되면, 이 로트는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
- 감자와 기타 덩이줄기채소 및 뿌리채소에서 토양 불순물은 제품 중량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페트로자보드스크, 식티브카르, 솔리감스크, 페름, 예카테린부르그, 옴스크, 톱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치타, 블라고베센스크, 하바롭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시를 연결하는 라인을 따라 위치하는 잠재적인 서식지역 경계보다 더 북쪽에서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ha molesta* Busck.)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Wisgh)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의 반입과 판매가 연중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 위험지역, 즉, 상기 명시된 라인보다 더 남쪽에서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ha molesta* Busck.)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niponensis* Wisgh)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의 반입과 판매가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허가되고 있다.
 - 4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이 지역으로 반입되는 장과 및 핵과식물 과실류에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이 완전히 없어야 한다.
 - 이는 해당 제품의 러시아 연방 반입 시에 육안검사 후에 확인되며 필요시에는 해당 규제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확인된다.
-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의 경우,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쥬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의 반입은 제한 없이 허용되며, 이 경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의 반입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허용된다.
 - 흑해와 아조프해의 남부항구들을 통해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감귤류 반입 시에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쥬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로 반출이 허가되고 있다. 단, 냉동차량과 기차의 냉동칸에서 감귤류를 운송하는 조건에 한한다.
 - 상기 명시된 경계보다 더 남쪽 지역에서 냉동차량과 기차의 냉동칸을 오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로스토프 주와 보로네쥬 주의 행정경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Wied.)와 *Conotrachelus nepuphar* Hb.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의 사용은 소독처리를 실시한 경우에 연중 허용되고 있다.
- 러시아의 위험지역 영토, 즉, 토양-기후 조건이 검역대상이 풍토에 적응하게 해주고 검역대상이 확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영토에서 검역유해생물체들에 의해 감염된 제품의 운송은 차양이 있고 정상상태의 밀봉된 기차칸, 유개화물자동차, 냉동차 혹은 컨테이너에서만 허용된다.
- 과실류와 채소류 반입 시에 식물성산물 재료의 깔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감귤류 과실의 냉동은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에 맞서는 모드로 여름철(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에 냉장실에서 실시한다. 최소 20일, 이 기간 동안 4.5℃ 이하의 선창 온도로 러시아 연방 항구까지 항해를 지속할 시에 하루에 최소 3회 각각의 선창과 각각의 선창 갑판에서 온도를 측정하면서 냉동선에서 항해하는 동안 냉동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 절화(생화) 화훼류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절화(생화) 화훼류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검역대상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검역대상들과 함께 절화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생화-절화의 개별 포장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 생화-절화는 검역식물위생관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원래의 포장에 있어야 한다.
- 검역대상들에 감염된 생화-절화 로트는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
- 몇 개의 로트로 이루어진 화물에서 생화-절화 로트의 감염이 발견될 시에 오직 감염된 로트만 소독처리하거나 혹은 소독처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
- 국화(Chrysanthemum, Dendranthema) 생산 지역, 장소, 구역은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국화화부병균(*Didymella ligulicola* (K.F. Baker, Dimock & Davis) von Arx)과 국화흰녹병균(*Puccinia horiana* P. Henn.) 확산국가들에서 국화화부병균과 국화흰녹병균이 없어야 하며, 이는 발송 이전에 선행되는 3년간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부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의 ‘추가신고’ 항목에서 이에 관하여 기재한다.
- 식물위생증명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수화물, 핸드캐리, 우편으로 1~2개의 생화 부케의 반입은 검역식물위생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 목재포장재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목재포장재 반입·운송·보관·사용 과정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목재포장재(수리된 목재포장재의 부분들도 포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독처리해야 하며 마크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에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책임자는 상기 규제제품 검사 시에 국제기준의 특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마킹이 부재할 시에 목재포장재의 반입은 검역식물위생관리 결과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 소독처리, 반송 혹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목재포장재는 검역대상들이 발견된 순간부터 적합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기 전까지 검역대상들이 확산될 수 없는 조건 하에 보관해야 한다.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

- 동 식물검역규정에 따른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 반입 시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아래와 같다.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제품은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될 수 있다.
-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의 경우, 제품의 검역식물위생상태에 대한 검역식물위생 모니터링을 선별적으로 실시한다.
- 본 규정의 별첨에 명시되어있는 각 국가영토에서 검역대상 확산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는 국가에서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국가에서 반입되는 규제제품은 의무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역식물위생 모니터링 결과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된 식물위생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에서 검역대상이 검출된 경우에, 그러한 제품에 대한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들이 적용되게 된다.

■ 한반도와 그 인접 섬들(한국, 북한)에서 러시아 연방 영토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수출국의 영토에 확산되어있는 검역대상들

- 해충

국명 - 라틴명	러시아 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담배거세미나방 - Spodoptera litura Fabr.	0601;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702 00 000; 0704; 0705; 0707 00; 0708; 0709; 1214; 2530 90 980 0
유리알락하늘소 - Anoplophora glabripennis (Motschulsky)	0106 90 009; 0604 91 900 0; 0604 99 100 0; 4401 10 000; 4401 21 000 0; 4401 22 000 0; 4401 30; 4403 (4403 10 000 제외); 1404 90 000 0; 4401 30 900 0; 4406 10 000 0; 4407; 4409; 4415; 4418 40 000 0; 4416 00 000 0; 4418 10; 4418 20



국명 - 라틴명	러시아 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미국흰불나방 - <i>Hyphantria cunea</i> Drury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6;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1404 90 000 0; 4401 30 900 0
복숭아순나방 - <i>Grapholitha molesta</i> Busck.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산호세각지벌레 - <i>Quadraspidiotus perniciosus</i> Comst.	0106 90 009; 0602 (0602 90 100 0 제외); 0603 11 000 0 -0603 19 800 0;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8
곡식수시렁이 - <i>Trogoderma granarium</i> Ev.	0801; 0802; 0803 00; 0804; 0805; 0806; 0813;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1 00; 1102 (1102 90 900 1 제외); 1104; 1106 10 000 0; 1107; 1201 00; 1202; 1203 00 000 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8;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1 (1211 30 000 0, 1211 40 000 0 제외); 1212 99 700 0; 1801 00 000 0; 1802 00 000 0; 2302; 2304 00 000 0; 2305 00 000 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50 0; 2309 90 990 0; 9705 00 000 0; 2309
감자나방 - <i>Phthorimaea operculella</i> Zell.	0701; 2530 90 980 0
칼로스브루투스 속의 콩바구미과 - <i>Callosobruchus</i> spp.	1201 00
복숭아심식나방 - <i>Carposina niponensis</i> Wlsg.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2530 90 980 0
뽕나무각지벌레 - <i>Pseudaulacaspis pentagona</i> (Targ.-Toz.)	0106 90 009; 0602 (0602 90 100 0 제외); 0603 11 000 0 -0603 19 800 0; 0604 91 900 0 0604 99 100 0; 0808
필록세라(포도나무부리진디) - <i>Viteus vitifoliae</i> (Fitch.)	2530 90 980 0
왜콩풍뎡이 - <i>Popillia japonica</i> Newm.	0601;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0701; 0702 00 000 0; 0703; 0706;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1211 (1211 30 000 0, 1211 40 000 0 제외); 2530 90 980 0

○ 식물병

국명 - 라틴명	러시아 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감자꽃마름병 - <i>Ralstonia solanacearum</i> (Smith) Yabuuchi et al. (= <i>Pseudomonas solanacearum</i> (Smith) Smith	0106 90 001 0; 2530 90 980 0; 3002 90 500 0; 3002 90 900 0
벼흰잎마름병 - <i>Xanthomonas oryzae</i> pv. <i>oryzae</i> (Ishiyama) Swings et al.	0106 90 009; 1006; 1104;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2530 90 980 0; 3002 90 500 0; 3002 90 900 0; 9705 00 000 0; 4601
감자암종병 - <i>Synchytrium endobioticum</i> (Schilb.) Percival	0601; 0701; 0706; 0714 20 100 0; 0714 90 110 0; 1212 91; 1214; 2530 90 980 0; 2703 00 000 0; 3101 00 000 0
자두곰보병 - Plum pox potyvirus	0809; 0810 (0810 60 000 0 제외)

○ 잡초

국명 - 라틴명	러시아 연방 영토에 식물위생위험을 줄 수 있는 규제제품 종류 (CU HS코드)
돼지풀 - <i>Ambrosia artemisiifolia</i> L.	0708; 0712 90 110 0; 0713;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4; 1107; 1201 0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1214; 2302; 2304 00 00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90 0; 2530 90 980 0; 3101 00 000 0; 9705 00 000 0; 0904-0910; 1404 20 000 0; 1404 90 000 0; 2103 90 900 9; 2505; 2517 10 100 0; 5101 11 000 0; 5102; 5103 10 100 0; 5201 00; 5202; 5301; 5302
새삼속 - <i>Cuscuta</i> spp.	0601; 0708; 0712 90 110 0; 0713; 0806; 1001; 1002 00 000 0; 1003 00; 1004 00 000 0; 1005; 1006; 1007 00; 1008; 1104; 1107; 1201 00; 1204 00; 1205 (1205 10 900 0 제외); 1206 00 (1206 00 910 0 제외); 1207; 1209 (1209 29 600 0, 1209 29 800 0, 1209 91 100 0, 1209 99 910 0, 1209 99 990 0 제외); 1213 00 000 0; 1214; 2302; 2304 00 000; 2306 (2306 49 000 0 제외); 2309 90 990 0; 2530 90 980 0; 3101 00 000 0; 9705 00 000 0; 0904-0910; 1404 20 000 0; 1404 90 000 0; 2103 90 900 9; 2505; 2517 10 100 0; 5101 11 000 0; 5102; 5103 10 100 0; 5201 00; 5202; 5301; 5302



■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 이행절차 규정 개정

- 2014년 11월 14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 이행절차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표되었다. 해당 개정은 2014년 10월 9일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No93에 의해 승인되었다.
- 목적지에 있는 주무부처의 담당자에게 규제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2회 또는 그 이상) 통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세동맹의 단일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시에 규제제품 발송지에서 규제제품 소유주에게 30일간 식물위생증명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
- 목적지에서 규제제품 도착에 관한 통지는 도착일 다음날 근무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 목재포장재 관리 강화

- 2016년 유럽연합 수입 목재포장재(EAEU HS코드 4415)에서 소나무재선충(*Brusaphelenchus xylophilus*) 검출이 빈번해진 관계로,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은 러시아 산림과 생태환경 보존 및 수출잠재력 보존을 위해 목재포장재 관리를 강화했다.
 - 독립적인 상품으로서 목재포장재 반입 시, 국경검문소는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 검역국에 발송
 - 상품의 패키지로서 목재포장재 반입 시, 발송국가 및(또는) 원산지국가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중국,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인 경우, 국경검문소는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 검역국에 통보 혹은 발송
- 세관은 상품의 검사(육안검사) 관련 작업 시행 시,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15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른 표식이 없는 목재포장재를 발견할 경우에 실제관리(검역식물위생관리)를 위해 상품을 동식물 검역국에 발송한다.
- 동식물 검역국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 시행 시, “2010년 12월 1일자 전러시아 식물 검역센터 표준 STO VNIKR 6.003-2010”을 지침으로 삼고 동식물 검역국 사이트 시범동영상 “유해생물체 유입의 원천으로서 목재포장재” 정보를 이용한다.
- 감염원 : 크리스마스트리의 나뭇가지, 재식재료, 침엽수류의 목재(툽밥, 삭편상의 목재 등의 목재의 웨이스트 포함), 목재포장재
- 기주식물은 거의 모든 침엽수 종(*Pinus*, *Picea*, *Abies*, *Cedrus*, *Larix*, *Chamaecyparis*, *Pseudotsuga*)이 해당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일본에 등록되어 있다.

- 시사점: 한국은 소나무재선충 확산국가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 수출할 경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검사)를 받게 되니 이번 조치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러시아 측에서 한국 수출업체에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러시아 연방 농업부령 №456에 따라 독립적인 상품이 아닌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시행 시,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점과 ISPM №15 표식으로 같음되는 점을 러시아 측에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 규제제품 반입 및 이동을 위한 한시적 검역식물위생조치 도입

- 동식물 검역국은 규제제품 반입 및 이동을 위한 한시적 검역식물위생조치로서 다음 요구사항을 2017년 7월 24일부터 도입했다.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에 대한 추가로 러시아의 검역대상 57종도 반입 및 이동되는 제품에 부재하여야 한다.
 - ※ 해당 검역대상 57종 목록은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fsvps.ru/fsvps-docs/ru/news/files/20348/list1.pdf>
- 이 57종의 유해생물체는 이전에 2014년 12월 15일자 러시아 농업부령 №501에 의해 승인된 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 이 유해생물체들은 러시아 영토에 부재하며 적응 및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식물위생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라.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식물검역

▣ 유라시아경제연합 식물검역 통합문서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서 공통 적용되는 식물검역 관련 주요 규범문서 3개를 채택한다. 이 문서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 승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7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검역대상목록 승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58



(https://docs.eaeunion.org/docs/ru-ru/01413200/cncd_06032017_158)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에서 통합식품검역규정·규범 승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사회 결정 No159

- EAEU 회원국들의 식물위생 및 수의(동물) 관리 분야 관련 법률은 각각 다른 시기에 개발되어 서로 차이가 있고 각 검역 기관들의 접근방식이 서로 달라서 통합규정을 제정하였다.
-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No157)에는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 채소류와 감자, 곡물, 콩과작물 및 유식물의 종자와 그 가공품, 과일 및 열매,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 제재목(침엽수류, 활엽수류), 기타 규제제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가공업체,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및 라벨링 종사업체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 통합식품검역규정·규범(No159)에는 검역식물위생조사,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의 소독처리, 식물위생인증, 회원국 영토에서 검역대상 통합목록 편성 및 규제 등을 정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

-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과 관세영역에서 규제제품 및 규제대상에 제기되는 통합검역식물 위생요건”의 총칙에 따르면, 본 요건은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및 규제대상에 적용된다.
- EAEU 통합검역대상목록에 포함된 검역대상에 감염된 규제제품은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금지되었다.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규제제품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가공,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용기 포함)에 처하게 된다. 단, 본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가능하다.
 - 식물위생증명서는 규제제품에 첨부하는 국제양식의 문서로, 1951년 12월 6일자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수출국(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되며 규제제품이 수입국의 식물위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해주는 문서이다.
 -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에는 채소류(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 등), 과일류(사과, 배, 살구, 수박, 멜론, 복숭아 등), 베리(딸기, 라스베리, 체리, 빌베리 등), 버섯류(재배 및 야생 포함), 허브(상추, 파슬리, 딜 등), 견과류 및 기타 식물성산물 등이 해당된다. 해당

규제제품의 전체목록은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8에 나와 있다.

- 식물위생 위험이 낮은 규제제품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 가능하다.
-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사항” 란에는 “규제제품이 본 요건에 명시된 검역유해생물체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됨”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식물위생증명서 부기 요건은 해당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이 제기되는 개별 규제제품에만 적용된다. 개별 규제제품에 대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은 표 NoNo1,2,3,4,5,6,7,8에 명시돼 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영문 부기문구는 다음과 같다.: “Regulated products are produced in pest-free area, places and (or) sites of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nified requirements adopted by the Council Decis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s of 30.11. 2016 No 157.”
 - 2017년 7월 1일 이전에 발송되고 해당 부기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은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 결과에 따라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 승무원, 자동차 운전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국경을 통해 이동하는 꽃다발 3개 이하의 화훼류, 총 중량 5kg 이하의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식물위생증명서 첨부 없이도 허가된다.
 - 꽃다발 개수 제한, 규제제품의 중량 제한은 각 승객(1인당)에 적용되며 미성년자도 동일 적용된다.
- 우편을 포함하여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승객, 선박·항공기·열차식당칸 승무원의 핸드캐리, 동반 및 동반하지 않은 수하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씨감자 및 식용감자, 종자개량용 및 학술연구 목적용의 재료 포함)는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에 놓여있고 이 운송수단의 승무원 및 팀이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제품을 운송수단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물검역기관의 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검역대상에 의해 감염된 운송수단 내의 예비식량은 소독처리, 폐기되거나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 운송수단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특수보관시설에 봉인되어야 한다.

- 규제제품을 포장재로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시에 검역대상의 전파자가 될 수 없는 재료(두께가 6mm 이하의 얇은 나무로 완전히 제조된 목재포장재, 판지, 종이, 섬유, 중합의 재료)가 사용되어야 한다.
-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살아있는 검역대상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그러한 대상의 반입이 계획되어있는 연합의 회원국의 식물검역기관의 허가에 따라 과학학술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 본 요건은 규제제품의 생산, 수확, 가공, 운송, 보관, 판매, 사용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개인(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 포함), 법인, 회원국의 집행권력기관, 식물검역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 식물의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의 형태) 및 재식재료(모종의 형태)는 검역잡초를 포함하여 검역대상이 없어야 한다.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는 *Ambrosia psilostachya*, *Ambrosia artemisiifolia*, *Ambrosia trifida*, *Iva axillaris*, *Acroptilon repens*, *Ipomoea hederacea*, *Ipomoea lacunose*, *Solanum carolinense*, *Solanum rostratum*, *Solanum elaeagnifolium*, *Solanum triflorum*, *Cuscuta* spp., *Helianthus ciliaris*, *Striga* spp., *Bidens pilosa*, *Cenchrus longispinus*가 없어야 한다.
 - 종자재료(종자 또는 과실 형태)는 *Striga* spp. 무발생 지역에서 수확되어야 한다.
 - 재식재료(모종 형태)는 *Cuscuta* spp.가 없어야 한다.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포장되어야 하며, 제품명, 생산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 수출업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 상기 명시된 라벨링 없이 반입 또는 이동하고(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는 EAEU 관세영역 반입 또는 EAEU 관세영역 내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 종자 및 육종을 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감자는 종자, *Solanum*속의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주로 *Solanum tuberosum*종), 미니괴경(minituber)(양료배지에서 재배된 감자의 마이크로프랜츠(microplants)에서 파생된 괴경), 마이크로프랜츠(미소괴경(microtuber) 포함한 조직배양에서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Solanum* spp.속을 함유하는 식물)를 포함한다.

- 상기 육종재료는 Solanum속의 기타 기근줄기를 형성하는 종 또는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 또는 잡종을 포함할 수 있다.
- 감자 괴경(Solanum tuberosum)과 Solanum속의 기타 덩이뿌리를 형성하는 종의 괴경(Solanum속의 덩이뿌리 및 순을 형성하는 야생종 포함)의 샘플을 중남미국가에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은 학술연구 및 육종 목적으로만 허가되며 유입-검역 양묘장에 보내어야 한다.
- 토양 덩어리와 토양을 함유한 영양 혼합물이 있는 식물과 토양 기질이 있는 화분식물을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EAEU 관세영역 내 이동은 검역대상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허용된다.
- 검역대상이 검출된 수입 종자재료 및 재식재료의 로트(로트의 일부)는 소독처리,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종자재료		
1	곡물 및 콩과작물의 종자 (from 1209, 0708, from 1001, from 1002, from 1003, from 1004, from 1006, from 1007, from 1008, from 1201)	종자, 용기, 패키지, 운송수단은 본 요건의 16항에 명시된 검역대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Callosobruchus spp., Trógoderma granarium, Caulophilus latinasus가 없어야 한다.
2	밀속(Triticum spp.), 라이밀속 (Triticosecale)의 종자 (from 1001, 1008 60 0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Rathayibacter tritic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 Tilletia (Neovossia) indic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	옥수수(Zea mays ssp.)의 종자 (from 0709 99 6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antoea stewartii subsp. stewartii, Stenocarpella macrospora와 Stenocarpella maydis, Cochliobolus carbonum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쌀(Oryza spp.)의 종자 (from 1006)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벼흰잎마름병(Xanthomonas oryzae pv. oryzae), 벼세균성 줄무늬병(Xanthomonas oryzae pv. oryz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5	해바라기(Helianthus spp.)의 종자 (from 1206 00 1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바라기 포름시스(Diaporthe helianth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6	콩과작물의 종자 (0708, from 1201,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Cercospora kikuch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생산되어야 한다.
7	가지과식물, 열매식물, 박과식물의 종자 (from 1209 91, from 1209 99 99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8	고추속(Capsicum spp.)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9	토마토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과 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 감자꽃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0	박과작물의 종자 (1207 70 000 0, from 1209)	본 표의 1항과 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박과작물의 과실썩음병을 일으키는 Acidovorax citrull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1	파속(Allium spp.)의 다양한 종의 종자 (from 1209)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2	목화속(Gossypium spp.)의 종자 (1207 21 000 0)	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홍숨벌레(Pectinophora gossypiella)와 Glomerella gossypi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씨감자		
13	감자(Solanum tuberosum)의 실제 종자 및 마이크로프랜츠(시험관에 있는 것)(미소과경 포함) (from 0602, from 0701)	본 요건의 18항, 19항과 본 표의 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Ahdeah mottie comovirus,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T trichovirus가 없어야 한다.
14	종자용의 감자 괴경 (마이크로프랜츠와 미소과경은 제외) (from 0701)	본 요건의 18항, 19항과 본 표의 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자는 Potato yellowing alfamovirus, Andean potato weevils(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Potato T trichovirus 무발생 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꽃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감자갈썩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나병(Phthorimaea operculella); 콜롬비아부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p>씨감자는 식물잔여물이 없어야 한다. 토양의 존재 허용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1% 이하이어야 한다.</p> <p>씨감자 로트에서 토양과 함께 확산되는 검역대상이 검출될 경우, 이후 공급 시에 토양의 존재 허용량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0.1% 이하로 정해졌다.</p>
과수의 묘목, 대목, 삽수		
15	<p>이과, 핵과, 각과류의 묘목, 대목, 삽수 (관상형태 포함)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p>	<p>본 표의 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벗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i>Numonia pyrivorella</i>, <i>Ceroplastes rusci</i>, 산호세깍지벌레(<i>Quadrastidiotus perniciosus</i>), <i>Anoplophora chinensis</i>,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자두바구미(<i>Conotrachelus nenuphar</i>), 원두사과나무하늘소(<i>Saperda candida</i>), 뽕나무깍지벌레(<i>Pseudauleucapsis pentagona</i>),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cki</i>), 사과호리비단벌레(<i>Agrilus mali</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거북밀깍지벌레(<i>Ceroplastes japonicas</i>), <i>Popillia japonica</i>, 배나무흰깍지벌레(<i>Lopholeucaspis japonica</i>)가 없어야 한다.</p> <p>산호세깍지벌레(<i>Quadrastidiotus perniciosus</i>), 뽕나무깍지벌레(<i>Pseudauleucapsis pentagona</i>), 배나무흰깍지벌레(<i>Lopholeucaspis japonica</i>), <i>Ceroplastes rusci</i>,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cki</i>)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수출국에서 식물을 소독처리한 이후에만 허가되며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p> <p>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등근무늬네포바이러스(<i>Tomato ringspot nepovirus</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a</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16	<p>사과나무(<i>Malus spp.</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p>	<p>본 표의 15항, 19항, 2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젯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Cherry rasp leaf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17	<p>Prunus속의 핵과식물의 묘목, 대목, 삽수(관상형태 포함)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p>	<p>본 표의 1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젯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자두곰보병(<i>Plum pox potyvirus</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8	복숭아나무(<i>Prunus persica</i>)와 아몬드나무(<i>Prunus dulcis</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Peach rosette nepovirus; 복숭아잠재모자이크바이러스(<i>Peach latent mosaic viroid</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9	사과나무(<i>Malus spp.</i>), 배나무(<i>Pyrus spp.</i>), 풀명자나무(<i>Chaenomeles japonica</i>), 산사나무(<i>Crataegus spp.</i>), 마가목(<i>Sorbus spp.</i>), 채진목(<i>Amelanchier spp.</i>), 비파나무(<i>Eriobotrya japonica</i>), 섬개아광나무(<i>Cotoneaster spp.</i>), 피라칸사(<i>Pyracantha spp.</i>), 스트란베시아(<i>Stranvaesia spp.</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수화상병(<i>Erwinia amylovora</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0	자두나무(<i>Prunus domestica</i>)와 살구나무(<i>Armeniaca vulgaris</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수화상병(<i>Erwinia amylovora</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1	사과나무(<i>Malus spp.</i>), 배나무, 퀸스(<i>Cydonia spp.</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15항과 19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과빛자루병(<i>Apple proliferation phytoplasma</i>), Pear decline phytoplasm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2	호두나무와 <i>Juglans</i> 의 기타 종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i>Sirococcus clavignenti-juglandacearum</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3	피칸(<i>Carya illinoensis</i>)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e</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열매식물의 묘목, 대목, 삽수		
24	열매식물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i>Spodoptera littoralis</i> , 산호세각지벌레(<i>Quadraspidotus perniciosus</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i>Liriomyza sativae</i> , 뽕나무각지벌레(<i>Pseudaulacaspis pentagona</i>),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i>Popillia japonica</i> 가 없어야 한다.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p>콜롬비아부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등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p>산호세각지벌레(Quadraspidotus perniciosus), 뽕나무각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확산지역에서 열매식물 묘목 및 삽수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25	블랙베리(Rubus spp.)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본 표의 2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Phytophthora fragariae,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26	딸기(Fragaria spp.), 라스베리(Rubus idaeus)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본 표의 24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딸기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 Phytophthora fragariae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27	빌베리, 블루베리(Vaccinium spp.)의 묘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본 표의 2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Diaporthe vaccinia, Phytophthora ramor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포도나무의 묘목, 대목, 삽수		
28	포도나무(Vitis spp.)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필록세라(Dactylospheera (Viteus) vitifoliae), Margorodes vitis 무발생 지역과 Pseudococcus citriculus, Xylophilus ampelinus, Candidatus Phytoplasma viti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등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Peach rosette nepovirus, Texas root rot (Phymatotrichopsis omnivore), 가루각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각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p>Pseudococcus citriculu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가루각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거북밀각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관상식물의 인경, 구경, 근경		
29	관상식물의 인경, 구경, 근경 (from 0601)	<p>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가 없어야 한다.</p> <p>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부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p>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0	Allium spp.속 식물의 인경 (from 0601, from 0703)	Xantomonas axonopodis pv. alli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관상식물의 수목 및 관목

31	모든 관상식물의 수목 및 관목 (산림관상식물은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유리알락하늘소(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담배거세미나방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 (Liriomyza huidobrensis), Popillia japonica,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 원두사과나무하늘소 (Saperda candida); 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iotus perniciosus), 봉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가 없어야 한다.</p> <p>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cola), Chalara fraxinea,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p>산호세깍지벌레(Quadraspidiotus perniciosus), 봉나무깍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32	풀명자나무(Chaenomeles japonica), 산 사나무(Crataegus),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마가목(Sorbus), 채진목 (Amelanchier), 피라칸사(Pyraecantha),	<p>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p>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스트란베시아(Stranvaesia), 비파나무 (Eriobotrya japonica)의 묘목, 대목, 삽수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산림관상식물 및 산림식물의 묘목		
33	침엽수류(Coniferae)의 묘목(분재 포함) (단, Thuja속, Taxus속, Pinus속은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4	재식용의 Pinus속 소나무 식물 (묘목, 분재) (from 0602 90 410 0)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Western pine beetle(Dendroctonus brevicomis), 소나무좀(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valens,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Mycosphaerella dearnesii,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5	활엽수류의 묘목 (오크(Quercus spp.), 밤나무(Castanea spp.), 탄오크(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 밤나무 (Castanopsis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 물푸레나무(Fraxinus spp.), 자작나무(Betula spp.), 오리나무(Alnus spp.), 장미과(Rosaceae)는 제외)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alni, Sirococcus clavigignenti-juglandacearum,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과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6	장미과(Rosaceae) 활엽수류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두사과나무하늘소(Saperda candida) 무발생 지역과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제외))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7	오크(Quercus spp.), 밤나무(Castanea spp.), 탄오크(Lithocarpus densiflorus), 자이언트 밤나무(Castanopsis chrysophylla), 유럽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나무시들음병 병원균(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38	오크(Quercus), 밤나무(Castanea)의 과실 (0802 41 000 0, 0802 42 000 0, from 1209 99 109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크(Quercus), 밤나무(Castanea) 과실의 반입은 참나무시들음병 병원균(Ceratocystis fagacearum)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허가된다.
39	물푸레나무(Fraxinus)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 Chalara fraxine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0	자작나무(Betula)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요건의 43항, 46항과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grilus anxius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1	오리나무(Alnus)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3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Phytophthora aln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2	활엽수류 및 침엽수류 관상식물의 묘목, 뿌리가 토양 덩어리가 있는 과수의 묘목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31항, 33항, 3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Texas root rot(Phymatotrichopsis omnivore)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화분식물		
43	다양한 종류의 화분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Popillia japonica, Ripersiella Rhizoecus hibisci, 산호세깍지벌레(Quadrastidiotus perniciosus), 봉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Pseudococcus citriculus,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둥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Echinothrips americanus,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Spodoptera frugiperda,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Spodoptera eridania, Helicoverpa zea, Liriomyza langei, Liriomyza nitzkei, Amauromyza maculosa, 담배총채벌레(Frankliniella fusca), Frankliniella insularis, Frankliniella schultzei, Frankliniella tritici,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하와이총채벌레(Thrips hawaiiensis), Chrysodeixis chalcites, 붉은금무늬밤나방(Chrysodeixis eriosoma), Sunflower beetle(Zygogramma exclamationis),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Liriomyza sativae,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Tetranychus evansi가 없어야 한다.
44	펠라르고늄(Pelargonium)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라늄녹병(Puccinia pelargonii-zonalis), 감자뿔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5	카멜리아(Camellia)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백균핵버섯(Ciborinia camelliae)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6	국화(Chrysanthemum) 식물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화화부병(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Puccinia horian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 모종		
47	열매식물, 화훼류, 채소류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새삼속(Cuscuta spp.)의 식물,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Potato flea beetle(Epitrix cucumeris), Epitrix tuberis, 남미토마토나방(Tuta absoluta),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왜콩풍뎅이(Popillia japonica),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가 없어야 한다. Tobacco ringspot nepovirus, 토마토동근무늬네포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양파의 세균성 잎마름병(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박과작물 과실썩음병 병원균(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부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8	딸기(Fragaria)와 라스베리(Rubus)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ideaus)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Phytophthora fragariae, 딸기탄저병(Colletotrichum acutatum)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9	빌베리, 크랜베리, Vaccinium속의 기타 종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Rhagoletis mendax가 없어야 한다.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kernoviae, Diaporthe vaccinia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50	국화(Chrysanthemum)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화화부병(Didymella ligulicola), 국화흰녹병(Puccinia horiana)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51	페튜니아(Petunia)와 페퍼(Piper spp)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 감자갈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52	토마토(Lycopersicon spp.)의 모종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본 표의 47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omato yellow leaf curl begomovirus), 감자갈쭉병(Potato spindle tuber viroid), 감자꽃마름병(Ralstonia solanacearum)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열대식물

53	열대식물 및 아열대식물(감귤류, 야자수,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등) (from 0602 (단, 0602 90 100 0은 제외))	Anoplophora chinensis, 왜콩풍뎅이(Popillia japonica),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toralis,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Liriomyza sativae, 흑다리잎굴파리(Liriomyza huidobrensis), 왜콩풍뎅이(Popillia japonica),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 병나무깍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배나무흰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japonicas), Fig wax scale(Ceroplastes rusci), Pseudococcus citriculus,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 Rhizococcus hibisci, Megaselia scalaris,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없어야 한다. Impatiens necrotic spot virus, 감자암종병(Synchytrium endobioticum), Potato smut(Thecaphora solani),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콜롬비아뿌리혹선충(Meloidogyne chitwoodi), Meloidogyne fallax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	--

▣ 채소류 및 감자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감자와 기타 덩이줄기채소 및 뿌리채소에서 토양의 혼합물은 제품의 실제 중량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되는 채소류 및 감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Helicoverpa zea*, *Liriomyza nietzkei*, *Frankliniella fusca*, *Premnotrypes* spp.,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Bactrocera cucurbitae*, *Acidovorax citrull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Globodera pallida*, *Ralstonia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T virus*,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Tecia solanivora*, *Thecaphora solani*, *Myiopardalis pardalina*,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Globodera rostochiensi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Epilachna vigintioctomaculata*, *Phthorimaea operculella*, *Tetranychus evansi*, *Meloidogyne chitwoodi*, *Spodoptera frugiperd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Meloidogyne fallax*, *Liriomyza sativae*, *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 *Synchytrium endobioticum*,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Tuta absoluta*,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한다.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식용 및 공업용 감자 (<i>Solanum tuberosum</i>) (신선 또는 냉장) (0701)	Andean potato weevils(<i>Premnotrypes</i> spp.), Guatemalan potato moth(<i>Tecia solanivora</i>), 감자나방(<i>Phthorimaea operculella</i>), <i>Potato flea beetle</i> (<i>Epitrix cucumeris</i>), <i>Epitrix tuberis</i> 가 없어야 한다. <i>Potato Andean mottle comovirus</i> , 감자구균(<i>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i>), <i>Potato T virus</i> , <i>Potato yellowing alfamovirus</i> 무발생 생산지역과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콜롬비아뿌리혹선충 (<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i>Potato smut</i> (<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i>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endobioticum); 감자꽃마름병(<i>Ralstonia solanacearum</i>), <i>Impatiens necrotic spot virus</i> , 감자갈쭉병(<i>Potato spindle tuber viroid</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토마토(<i>Lycopersicon</i>) (신선 또는 냉장) (0702 00 000)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Fabr.), <i>Spodoptera littoralis</i> <i>Spodoptera littoralis</i> , Guatemalan potato moth(<i>Tecia solanivora</i>), <i>Tetranychus evansi</i> , 남미토마토나방(<i>Tuta absoluta</i>)이 없어야 한다.
3	양파(<i>Allium cepa</i>), 쪽파(<i>Allium ascalonicum</i>), 마늘(<i>Allium sativum</i>), 리크(<i>Allium porrum</i>)와 기타 파속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3)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i>Liriomyza nitzkei</i> , <i>Spodoptera frugiperda</i> , <i>Spodoptera eridania</i> , <i>Helicoverpa zea</i> , 콜롬비아부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양파의 세균성잎마름병(<i>Xanthomonas axonopodis</i> pv. <i>alli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이 없어야 한다. <i>Potato smut</i> (<i>Thecaphora solani</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부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Brassica속의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채소 (신선 또는 냉장) (0704)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 <i>Chrysodeixis chalcites</i> 가 없어야 한다.
5	상추(<i>Lactuca sativa</i>) 및 치커리(<i>Cichorium</i> spp.) (신선 또는 냉장) (0705)	꽃노랑총채벌레(<i>Frankliniella occidentalis</i>), 오이총채벌레(<i>Thrips palmi</i>), 담배가루이(<i>Bemisia tabaci</i>), 담배거세미나방(<i>Spodoptera litura</i>), <i>Spodoptera littoralis</i> , 아메리카잎굴파리(<i>Liriomyza trifolii</i>), <i>Liriomyza sativae</i> , 흑다리잎굴파리(<i>Liriomyza huidobrensis</i>), 담배총채벌레(<i>Frankliniella fusca</i>), <i>Frankliniella insularis</i> , <i>Frankliniella schultzei</i> , <i>Frankliniella tritici</i> , 볼록총채벌레(<i>Scirtothrips dorsalis</i>), 하와이총채벌레(<i>Thrips hawaiiensis</i>)가 없어야 한다.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콜롬비아부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6	당근(<i>Daucus</i>), 순무(<i>Brassica rapa</i>), 샐러드용 사탕무뿌리(<i>Beta</i>), 선모(<i>Tragopogon</i>), 셀러리악(<i>Apium</i>), 무(<i>Raphanus sativus</i>)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 (신선 또는 냉장)	<i>Potato smut</i> (<i>Thecaphora solani</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a</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부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Texas root rot(<i>Phymatotrichopsis omnivora</i>), <i>Potato</i>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0706)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7	오이(<i>Cucumis sativus</i>) 및 작은 오이(<i>gherkins</i>) (신선 또는 냉장) (0707 00)	박과작물과실썩음병(<i>Acidovorax citrulli</i>)이 없어야 한다.
8	스위드(<i>Brassica napobrassica</i>), 사료용 뿌리식물, 사료용 케일(<i>Brassica aleracea</i> var. <i>acephata</i>), 맹골드(<i>Beta vulgaris</i>) (from 0709, from 1214)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9	사탕무(<i>Beta vulgaris</i>) (1212 91)	-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Beet necrotic yellow vein benyvirus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0	채두류 (고투리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 (0708)	<i>Callosobruchus</i> spp.속의 콩바구미가 없어야 한다.
11	기타 채소류 (신선 또는 냉장) (0709)	본 요건의 24항을 준수해야 한다.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12	매니옥(<i>Manihot esculenta</i>), 칩뿌리(<i>Maranta</i>), 샬렘, 국아 또는 돼지감자(<i>Helianthus tuberosus</i>), 고구마(<i>Ipomoea batatas</i>),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 (신선 또는 냉장) (0714)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Texas root rot (<i>Phymatotrichopsis omnivora</i>) 무발생 지역과 콜롬비아뿌리혹선충(<i>Meloidogyne chitwoodi</i>), <i>Meloidogyne fallax</i> , 감자흰시스트선충(<i>Globodera pallida</i>), 감자시스트선충(<i>Globodera rostochiensis</i>), Texas root rot (<i>Phymatotrichopsis omnivora</i>), Potato smut(<i>Thecaphora solani</i>), 감자암종병(<i>Synchytrium endobioticum</i>) 무발생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3	멜론(수박 포함) (from 0807)	멜론파리(<i>Myiopardalis pardalina</i>), 오이과실파리(<i>Bactrocera curcurbitae</i>), 박과작물과실썩음병(<i>Acidovorax citrulli</i>), 대청가시풀(<i>Cenhrus longispinus</i>)이 없어야 한다.

▣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스트리가속(*Striga* spp) 검역잡초의 종자에 오염된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 로트는 반송하여야 한다. 다른 검역잡초의 종자 또는 과실이 검출될 시에 그 로트는 반송, 폐기하거나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술로 검역식물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이 있는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식물검역관이 정한 업체에 가공을 위해 보내진다.
- 벌크 형태의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해주는 선박의 선창, 컨테이너, 곡물운반화차, 자동차차량으로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 포장된 형태의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오직 새 것의 기체 투과성 포장으로만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허용된다. 이 항목의 요건은 소비자포장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을 선박의 선창에서 내릴 시에 수면과 부두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작업은 단단한 바닥표면(콘크리트, 아스팔트)으로 덮여있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 하역장과 철로에서 생성되는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의 유출물은 매일 제거하여야 한다.
- 식용, 사료용, 공업용으로 지정되어있는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를 파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Trogoderma granarium* 및(또는) *Caulophilus latinasus* Say 확산국가에서 반입되는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검역식물위생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운송수단에서 내릴 수 있다.
- 발아, 성장 및 향후 번식이 가능한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이 있는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의 웨이스트는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의 생존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술로 가공하여야 한다.

- 수출을 위해 곡물 및 곡물가공품 로트를 발송하는 경우 검역잡초의 종자 및 과실이 있는 곡물 및 곡물가공품을 가공하러 보내지 않아도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이 허용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3, 1104, 1201, 1202, 1204 00, 1205, 1206 00, 1207, from 2302)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은 스트리가속(<i>Striga</i> spp)의 식물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에서만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다.
2	곡물, 콩과작물 및 유지식물의 종자, 그 가공품 (0713,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00, 1102, 1103, 1104, 1106 10 000 0, 1201, 1202, 1203 00 000 0, 1204 00, 1205, 1206 00, 1207, from 2302)	<i>Callosobruhus</i> 속의 콩바구미, <i>Caulophilus latinasus</i> , 곡식수시령이(<i>Trogoderma granarium</i>)가 없어야 한다. 곡물 및 곡물가공품의 살아있는 저장해충이 검출될 시에 곡식수시령이의 활성유충에 대한 처리법에 따라 운송수단에서 소독 처리하여야 하며, 소독처리 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3	밀, 메슬린, 라이밀 (1001, 1008 60 000 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Tilletia indica</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옥수수 (1005)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Stenocarpella macrospora</i> 와 <i>Stenocarpella maydis</i> , <i>Cochliobolus heterostrophus</i> race T, <i>Pantoea stewartii</i> subsp. <i>stewartii</i>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5	콩작물 및 그 가공품 (0713, 1106 10 000 0, 1201, 1202)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Callosobruhus</i> spp.속의 콩바구미가 없어야 한다.
6	대두 (1201)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콩자주무늬병(<i>Cercospora kikuchii</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생산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7	맥아 (1107)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백(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한다.) (from 2304 00 00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백(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한다.) (from 2305 00 000 0)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0	2304 00 000이나 2305 00 000 0의 유박을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입상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한한다.) (from 2306)	본 표의 1항과 2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실 및 열매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통합목록에 포함되어있는 검역대상에 감염된 과실 및 열매는 EAEU 관세영역으로의 반입과 EAEU 관세영역 내에서의 이동이 금지된다. 단, Plum pox potyvirus, 깍지벌레 검역 종들이 있는 과실 및 열매는 예외로 한다.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및 원산지장소,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단, EA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EAEU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AEU HS코드 0807호의 규제제품을 벌크 형태로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아보카도(<i>Persea americana</i>), 구아버(<i>Psidium guajava</i>), 망고(<i>Mangifera</i>) (신선) (from 0804)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한다.
2	포도 (신선 또는 건조) (0806)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 새삼속(<i>Cuscuta spp.</i>)이 없어야 한다.
3	멜론(수박 포함) (신선) (from 0807)	박과작물과실씩음병(<i>Acidovorax citrulli</i>), 멜론파리(<i>Myiopardalis pardalina</i>), 오이과실파리(<i>Bactrocera cucurbitae</i>), 대청가시풀(<i>Cenhrus longispinus</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4	파파야(<i>Carica papaya</i>) (신선) (from 0807)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한다.
5	사과(<i>Malus ssp.</i>), 배(<i>Pyrus ssp.</i>), 퀸스(<i>Cydonia</i>) (신선) (0808)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6	살구, 체리, 단양벚, 복숭아(넥타 포함), 자두 및 슬로우(<i>Prunus</i> spp.) (신선) (0809)	복숭아순나방(<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심식나방(<i>Carposina niponensis</i>),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 벚초파리(<i>Drosophila suzukii</i>),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한다. 잣빛무늬병(<i>Monilinia fructicol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7	석류(<i>Punica L.</i>) (신선) (from 0810)	지중해과실파리(<i>Ceratitis capitata</i>)가 없어야 한다. 가루깍지벌레(<i>Pseudococcus comstoki</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8	빌베리, 블루베리, 월굴의 열매 (신선) (from 0810)	<i>Rhagoletis mendax</i> , 사과과실파리(<i>Rhagoletis pomonella</i>)가 없어야 한다. <i>Diaporthe vaccinia</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9	딸기(<i>Fragaria</i>)의 열매 (신선) (from 0810)	딸기탄저병(<i>Colletotrichum acutatum</i>) 무발생 생산장소 및/또는 생산포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10	기타 과실 (신선) (신선 석류, 빌베리, 블루베리, 월굴의 열매, 딸기는 제외) (from 0810)	본 요건의 36항, 37항, 38항을 준수해야 한다.

❑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에는 *Spodoptera litura*, *Liriomyza trifolii*, *Liriomyza nitzkei*, *Frankliniella fusca*, *Didymella ligulicola*, *Puccinia horiana*, *Xanthomonas axonopodis* pv. *allii*, *Puccinia pelargonii-zonalis*, *Ciborinia camelliae*, *Frankliniella tritici*, *Thrips hawaiiensis*, *Spodoptera littoralis*, *Frankliniella occidentalis*, *Chrysodeixis eriosoma*, *Chrysodeixis chalcites*, *Frankliniella insularis*, *Scirtothrips dorsalis*, *Liriomyza langei*, *Spodoptera frugiperda*, *Helicoverpa zea*, *Tetranychus evansi*, *Liriomyza sativae*, *Zygogramma exclamationis*, *Bemisia tabaci*, *Frankliniella schultzei*, *Thrips palmi*, *Amauromyza maculosa*, *Echinothrips americanus*, *Liriomyza huidobrensis*, *Spodoptera eridania*가 없어야 한다.
- 규제제품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국가, 수출국 및/또는 재수출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 온실 및 온실에서 규제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타 업체들에서 사용하기 위한 절화와 꽃봉오리를 보관 및 선별의 목적으로 EAEU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 상기 명시된 검역대상들이 절화 로트(로트의 일부)에서 검출될 시에 감염된 로트(로트의 일부)는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실험실 감정검사로 확인된 결과 그러한 검역대상들이 로트(로트의 일부)에 없을 시에 검역대상이 없는 로트의 부분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절화와 꽃봉오리 (신선) (0603 11 000 0 - 0603 19 700 0)	본 요건의 39항에 명시된 검역대상들이 없어야 한다. 국화화부병(<i>Didymella ligulicola</i>), 국화흰녹병(<i>Puccinia horiana</i>), 제라늄녹병(<i>Puccinia pelargonii-zonalis</i>), 동백군핵버섯(<i>Ciborinia camelliae</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 제재목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제재목의 운송은 제재목이 검역대상에 감염 및(또는) 오염될 가능성을 방지해주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제재목은 본 요건의 45항과 46항에 명시된 검역대상의 확산지역을 통해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 제재목은 본 요건의 45항과 46항에 명시된 검역대상(산림해충)의 비행이 없는 시기에 운송되어야 한다.
 - 제재목은 검역대상에 의한 제재목의 감염을 방지해줄 수 있는 폐쇄된 운송수단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 본 요건은 식물학적으로 다음 속에 해당되는 침엽수류 제재목에 적용된다. :
 - a) 가문비나무속(*Picea*), b) 개잎갈나무속(*Cedrus*), c) 쿠프레수스속(*Cupressus*),
 - d) 잎갈나무속(*Larix*), e) 향나무속(*Juniperus*), f) 전나무속(*Abies*),
 - g) 미송속(*Pseudotsuga*), h) 소나무속(*Pinus*), i) 솔송나무속(*Tsuga*)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침엽수류 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Choristoneura fumiferana*, *Monochamus scutellatus*, *Dendroctonus micans*, *Monochamus urussovii*, *Ips grandicollis*, *Ips calligraphus*, *Dendroctonus ponderosae*, *Dendroctonus rufipennis*, *Dendroctonus brevicomis*, *Choristoneura occidentalis*, *Ips plastographus*, *Monochamus carolinensis*, *Mycosphaerella dearnessii*, *Monochamus sutor*, *Ips pini*, *Monochamus clamator*,

Atropellis piniphila, Atropellis pinicola, Dendroctonus valens, Monochamus notatus, Dendrolimus sibiricus, Leptoglossus occidentalis, Bursaphelenchus xylophilus, Monochamus obtusus,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Monochamus impluviatus, Monochamus nitens, Monochamus saltuarius, Monochamus galloprovincialis, Monochamus titillator, Monochamus alternatus가 없어야 한다.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침엽수류의 절단한 가지(식물) (소나무속(Pinus), 측백나무속(Thuja), 주목속(Taxus)의 식물은 제외한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포함한다. (0604 20 200 0, 0604 20 400 0, from 0604 90 910 0, from 0604 90 990 0)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astern Blackheaded Budworm(Acleris variana),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가문비나무잎말이나방(Choristoneura fumiferana), Spruce Beetle(Dendroctonus rufipennis), Western blackheaded budworm(Acleris gloverana), Western spruce budworm(Choristoneura occidentalis),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Phytophthora ramorum, 소나무허리노린재(Leptoglossus occidenta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Mycosphaerella dearnessii,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침엽수류의 목재 (소나무속(Pinus), 측백나무속(Thuja), 주목속(Taxus)의 목재는 제외한다.),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제재목, 뿔나무를 포함한다. (파쇄한 목재, 목재 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1 000, from 4403 11 000, 4403 23, 4403 24, from 4403 25, from 4403 26 000 0, from 4404 10 000 0, 4407 12, from 4407 19)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Monochamus titillator),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3	침엽수류의 수피가 제거된 목재 (소나무속(Pinus), 측백나무속(Thuja), 주목속(Taxus)의 목재는 제외한다.), (파쇄한 목재, 목재 웨이스트, free bark,	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p>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1 000, from 4403 11 000, from 4403 23, from 4403 24, from 4403 25, from 4403 26 000 0, from 4404 10 000 0)</p>	<p>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4	<p>침엽수류의 파쇄한 목재 또는 목재 웨이스트 (소나무속(Pinus), 측백나무속(Thuja), 주목속(Taxus)의 목재는 제외한다.), 조각난 목재, 대패밥, 톱밥을 포함한다., (free bark를 제외한다.) (from 4401 21 000 0, from 4401 31 000 0, from 4401 40)</p>	<p>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5	<p>소나무속(Pinus)의 목재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제재목, 펠나무를 포함한다.), (파쇄한 목재, 목재 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1 000, from 4403 11 000, 4403 21, 4403 22, from 4404 1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Monochamus titillator), Eastern Six-Spined ips(Ips calligraphus), Eastern fivespined ips(Ips grandicollis), Pine Engraver Beetle(Ips pini), Ips plastographus, 소나무 줄기암·가지암의 병원균 Atropellis piniphila와 Atropellis pinicola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6	<p>소나무속(Pinus)의 수피가 제거된 목재 (파쇄한 목재, 목재 웨이스트, free bark,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1 000, from 4403 11 000, from 4403 21, from 4403 22, from 4404 1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솔수염하늘소 (Monochamus alternatus), Carolina sawyer(Monochamus carolinensis), Spotted Pine Sawyer(Monochamus clamator), Monochamus marmorator, Monochamus mutator, Northeastern sawyer(Monochamus notatus), Obtuse sawyer(Monochamus obtusus), White-spotted sawyer(Monochamus scutellatus), Southern pine sawyer (Monochamus titillator)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7	소나무속(Pinus)의 파쇄한 목재 (조각난 목재, 대패밥, 톱밥을 포함한다.), (free bark를 제외한다.) (from 4401 21 000 0, from 4401 31 000 0, from 4401 40)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8	침엽수류의 격리된 수피(isolated bark) (from 4401 40 900 0)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i>Bursaphelenchus xylophilus</i>)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활엽수류 제재목은 *Lymantria dispar asiatica*, *Anoplophora glabripennis*, *Agrilus anxius*, *Corythucha arcuata*, *Anoplophora chinensis*, *Corythucha ciliata*, *Ceratocystis fagacearum*, *Chalara fraxinea*, *Phytophthora kernoviae*, *Phytophthora ramorum*, *Phytophthora alni*, *Agrilus mali*, *Agrilus planipennis*가 없어야 한다.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활엽수류의 절단한 가지(식물) (from 0604 20 900 0, from 0604 90 910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 <i>Lymantria dispar asiatica</i> , 미국흰불나방(<i>Hyphantria cunea</i>), <i>Phytophthora alni</i> , <i>Chalara fraxinea</i> , <i>Phytophthora kernoviae</i> , <i>Phytophthora ramorum</i> , <i>P. kernoviae</i> , Oak lace bug(<i>Corythucha arcuata</i>), 참나무시들음병(<i>Ceratocystis fagacearum</i>), 버즘나무방패벌레(<i>Corythucha ciliata</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활엽수류의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목재, (멜나무를 포함한다.),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from 4403 91, from 4403 93, from 4403 94 000 0, 4403 95 000, 4403 96 000, from 4403 97 000, from 4403 99 000, from 4404 20 000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Oak lace bug(<i>Corythucha arcuata</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 Oak lace bug(<i>Corythucha arcuata</i>), 버즘나무방패벌레(<i>Corythucha ciliata</i>), <i>Lymantria dispar asiatica</i> , 미국흰불나방(<i>Hyphantria cunea</i>), 참나무시들음병(<i>Ceratocystis fagacearum</i>), <i>Chalara fraxinea</i> , <i>Phytophthora alni</i> , <i>Phytophthora kernoviae</i> , <i>Phytophthora ramorum</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3	<p>자작나무(<i>Betula</i>)의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목재, (떨나무를 포함한다.),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9, from 4403 95 000, from 4403 96 000, from 4404 2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Agrilus anxius</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4	<p>물푸레나무(<i>Fraxinus</i>)의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목재, (떨나무를 포함한다.),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3, from 4403 99 000 1, from 4404 2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호리비단벌레(<i>Agrilus planipennis</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i>Chalara fraxinea</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5	<p>장미과(<i>Rosaceae</i>)의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목재, (떨나무를 포함한다.),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9, from 4403 99 000 9, from 4404 2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원두사과나무하늘소(<i>Saperda candida</i>),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i>Lymantria dispar asiatica</i>, 미국흰불나방(<i>Hyphantria cunea</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6	<p>너도밤나무(<i>Fagus</i>), 오크(<i>Quercus</i>), 밤나무(<i>Castanea</i>), 탄오크(<i>Lithocarpus densiflorus</i>), 자이언트밤나무(<i>Castanopsis chrysophylla</i>)의 수피가 제거되지 않은 목재, (떨나무를 포함한다.),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1, from 4403 12 000 2, from 4403 12 000 9, from 4403 91, from 4403 93, from 4403 94 000 0, from 4403 99 000 9, from 4404 2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리알락하늘소(<i>Anoplophora glabripennis</i>), <i>Anoplophora chinensis</i>, <i>Lymantria dispar asiatica</i>, 미국흰불나방(<i>Hyphantria cunea</i>), 참나무시들음병(<i>Ceratocystis fagacearum</i>), <i>Phytophthora ramorum</i>, <i>P. kernoviae</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p>
7	<p>활엽수류의 파쇄한 목재(나무조각, 대패밥, 톱밥, 기타 목재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4401 22 000 0, from 4401 31 000 0, from 4401 40, from 4404 20 000 0)</p>	<p>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i>Agrilus anxius</i>, 사과호리비단벌레(<i>Agrilus mali</i>), 서울호리비단벌레(<i>Agrilus planipennis</i>), 참나무시들음병(<i>Ceratocystis fagacearum</i>), <i>Chalara fraxinea</i>, <i>Phytophthora alni</i>, <i>Phytophthora kernoviae</i>, <i>Phytophthora ramorum</i>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p>

No.	제재목 유형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8	활엽수류의 수피가 제거된 목재 (포장용 목재를 제외한다.) (from 4401 12 000, from 4403 12 000, from 4403 91, from 4403 93, from 4403 94 000 0, from 4403 95 000, from 4403 96 000, from 4403 97 000, from 4403 98 000 0, from 4403 99 000, from 4404 20 000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리알락하늘소(Anoplophora glabripennis), Anoplophora chinensis, 참나무시들음병(Ceratocystis fagacearum), 원두사과나무하늘소(Saperda candida) Agrilus anxius, 사과호리비단벌레(Agrilus mali), 서울호리비단벌레(Agrilus planipennis)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9	격리된 수피(isolated bark) (from 1404 90 000 8, from 4401 40 900 0)	본 요건의 43항과 4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나무시들음병(Ceratocystis fagacearum), Phytophthora ramorum, P. kernoviae, Lymantria dispar asiatica, 미국흰불나방(Hyphantria cunea) 무발생 지역 및(또는) 장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상기 생물체 확산지역에서의 반입은 규제제품 로트를 소독처리하고 식물위생증명서에 소독처리에 관한 관련 기록을 기재한 경우에 허용된다.

○ 다음의 검역식물 위생요건은 목재포장재 및 짐갈개에 적용된다.

- 목재포장재 및 목재짐갈개재료(EAEU HS코드 from 4415, 4416 00 000 0)는 수피가 제거된 것이어야 하며 목재의 전체 두께(중심부 포함)에 최소 온도 56℃로 최소 30분간 열처리하거나 훈증처리 하여야 한다.
- 처리 사실은 포장재 및 짐갈개재료에서 "HT"(열처리) 또는 "MB"(메틸 브로마이드 처리) 또는 "DH"(유전자열: dielectric heating) 마크로 확인된다. 마크는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불로 지져서 표지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색채로 표지하여야 하며(빨강과 오렌지색은 제외한다.) 목재용기가 사용될 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목재포장재 물품의 적어도 반대편 두 면에 위치해야 한다.)
- 목재포장재 및 목재짐갈개재료가 동일한 유형 및 품질의 목재로 제조되고 검역대상이 없을 경우에, 제재목 이동 시 수피가 제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목재짐갈개재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기타 규제제품에 대한 검역식물 위생요건

-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고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기타 규제제품은 다음의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No.	규제제품 (EAEU HS코드)	특별검역식물 위생요건
1	코코넛, 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1)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Ev.)가 없어야 한다.
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Ev.)가 없어야 한다.
3	건조한 과실(0801-0806호의 과실은 제외한다.),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Dinoderus bifoveolatus가 없어야 한다.
4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살충용, 살균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전체의 것 또는 절단한 것, 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로 된 것) (1211) (단, 1211 30 000 0, 1211 40 000 0은 제외한다.)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새삼속(Cuscuta spp.),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5	로우커스트 나무의 과실 (종자를 포함한다.) (1212 92 00 0, 1212 99 410 0, 1212 99 490 0)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가 없어야 한다.
6	살구·복숭아(넥타를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씨 및 핵, 치커리(Cichorium intybus var. sativum) 뿌리(1212 94 000 0, from 1212 99 950 0)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가 없어야 한다.
7	곡물의 껍질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압착한 것이며, 팰리트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from 1213 00 000 0, from 1401 90 000 0)	새삼속(Cuscuta spp.),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
8	토양 (from 2530 90 000 9, from 3824 99 960 9)	학술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토양 샘플을 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및 연합의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은 회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 단, 본 요건의 20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9	토단(토단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703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이 없어야 한다.
1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식물성 또는 동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감자흰시스트선충(Globodera pallida)이 없어야 한다.
11	동물학, 식물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from 9705 00 000 0)	모든 검역잡초 종의 종자 및(또는) 과실, 곡식수시령이(Trogoderma granarium Ev.)가 없어야 한다.

마. 생선, 해산물 및 가공품

- 신선/냉장/냉동 생선, 해산물 및 관련 가공제품은 적합한 온도에서 가공되어야 하며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바다 및 민물생선은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기생충이 허용범위 내에 있을 경우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면 수출 가능하다.
- 사료로 유전자 변형식품은 제공될 수 없다.
- 제품 선적은 온도규정에 상응하지 않게 처리된 경우 러시아 검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가능하다.

제2절 수입 제한 현황

■ 유럽연합(EU)

- 2013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다.
 - 감자
 - 과수·관상식물·산림관상식물의 재식재료
- 원산지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단, 국제식물위생조치기준에 입각하여 검역대상 무발생 장소로 인정된 폴란드, 헝가리, 독일 영토에 위치한 생산포장과 핀란드 양묘장 3곳은 제외했다.
- 2015년 4월 25일부터 불가리아 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규제제품의 러시아 연방영토 반입을 금지했다.
- 2015년 9월 1일부터 불가리아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임의의 규제제품에 대한 러시아 반입을 금지했다.
 - 금지 사유는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첨부한 규제제품 반입 때문이다.

■ 폴란드

- 2014년 8월 1일부터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제3국에서 러시아로 폴란드 원산지의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신선 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 신선 살구, 체리, 양벚, 복숭아, 벵타, 자두, 가시자두(슬로우) (CU HS코드 0809)
 - 신선 또는 냉장의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 이와 유사한 식용의 유채속(Brassica)의 채소 (CU HS코드 0704)
 - 신선 또는 냉장의 기타 채소 (CU HS코드 0709). 단, 버섯 제외
- 2014년 10월 6일부터 폴란드 국립육종·식물보호감독국이 발행한 폴란드 재수출 식물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는 규제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했다.

■ 몰도바

- 2014년 7월 21일부터 몰도바에서 러시아로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신선 사과, 배, 마르멜로 (CU HS코드 0808)

- 신선 살구, 체리, 양벚, 복숭아, 벵타, 자두, 가시자두(슬로우) (CU HS코드 0809)
- 몰도바에서 오는 승객들의 핸드캐리와 수하물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식물성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불허했다.
- 2015년부터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의 검사를 통과한 일부 몰도바업체들의 제품은 반입 허가되었다.
- 2016년 3월 14일부터 러시아에 등록된 수령인 앞으로 작성된 몰도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고 벨고로드 주, 쿠르스크 주, 브란스크 주, 스몰렌스크 주 지역동식물 검역국의 관할지역에 위치하는 러시아 국경 검역소를 통해서만 제품 반입을 허가했다.

▣ 우크라이나

- 2014년 6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식용감자(CU HS코드 070190)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2014년 7월 28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핸드캐리, 수하물, 우편을 통한 식물성제품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2014년 8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대두, 해바라기씨, 옥수수, 대두박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2014년 10월 22일부터 우크라이나 원산지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오는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모든 규제제품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2015년 3월 30일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이 허가되었다.: 나무로 만든 케이스, 상자, 크레이트, 드럼 및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펠릿, 박스펠릿,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펠릿칼러(CU HS코드 4415)
- 2015년 2월 26일부터 제재목(CU HS코드 4407) 반입이 허가되었다.

▣ 그루지야

- 2015년 10월 28일부터 그루지야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에 대한 한시적 반입제한을 폐지했다.



- 그루지아에서 오는 시민들의 핸드캐리와 수하물을 통해 이동하는 규제제품은 러시아 반입을 불허한다.

■ 벨라루스

- 2014년 8월 7일자 러시아 정부령 №778에 명시된 제재상품목록에 포함된 식물성제품을 벨라루스에서 제3국으로 이동할 시에 2014년 11월 24일부터 러시아를 통한 경유를 제한했다.
 - 이러한 제품은 관세동맹 외부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하는 검문소들을 통해서만 이동 가능하다.

■ 방글라데시

- 2015년 5월 6일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러시아로 감자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원산지의 감자 반입도 한시적 제한했다.
 - 제한 사유는 방글라데시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감자에서 감자꽃마름병균(*Ralstonia solanacearum*)이 수차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 이집트

-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감자가 감자꽃마름병균(*Ralstonia solanacearum*)과 감자시스트선충(*Globodera rostochiensis*)에 감염된 경우들이 2015년에 수차례 검출되어 동식물 검역국은 일부 이집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대해 2015년 4월 9일부터 한시적 반입을 제한했다.

■ 파키스탄

- 2014년 2월 24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식용감자 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식물위생요건을 엄수하는 조건 하에 13개 파키스탄 수출업체들은 제외되었다.
- 2016년 11월 2일부터 파키스탄에서 러시아로 과채류제품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중지했다.

■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러시아 검역대상의 반복적 적발과 관련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도착하는 승객들의 수하물 및 핸드캐리로 반입되는 식물성 산물의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알바니아

- 2014년 12월 8일부터 알바니아 원산지 및 알바니아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모든 규제제품의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 미국

- 2015년 5월 1일부터 미국 원산지의 땅콩(EAEU HS코드 1202)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제3국을 통한 반입 포함)
- 2016년 2월 15일부터 미국 원산지 및 미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다음의 규제제품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제3국을 통한 반입 포함)
 - 옥수수(EAEU HS코드 1005), 파종용 개량종 감미옥수수(*Zea mays* var. *saccharata*) (EAEU HS코드 0712 90 110 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 불분)(EAEU HS코드 1201)

■ 터키

- 러시아 검역대상에 감염된 규제제품 적발과 관련하여, 다음의 터키 원산지 규제제품의 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제3국을 통한 반입 포함)
 - 2016년 3월 17일부터 파프리카(EAEU HS코드 0709601000)와 석류(EAEU HS코드 0801909800) 반입을 제한했다.
 - 2016년 4월 25일부터 가지(EAEU HS코드 07093000) 반입을 제한했다.
 - 2016년 5월 16일부터 결구상추(EAEU HS코드 070511)와 아이스베르그상추(EAEU HS코드 070519) 반입을 제한했다.
 - 2016년 5월 19일부터 호박류 및 호박과(*CUCURBITA* SPP.)의 기타 채소(EAEU HS코드 070993) 반입을 제한했다.
 - 2016년 7월 4일부터 토마토(EAEU HS코드 0702) 반입을 제한했다.

■ 아프가니스탄, 부르키나파소, 베냉, 기니비사우, 말리,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 2016년 8월 10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규제제품 반입 제한을 연장했다.
 - 아프가니스탄 : 양벳
 - 부르키나파소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살구, 무화과, 양벳
 - 베냉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벳
 - 기니비사우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살구, 무화과, 양벳
 - 말리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벳
 - 우간다 : 버섯, 무화과
 - 코트디부아르 : 배, 사과,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벳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벳
 - 콩고민주공화국 : 배, 사과, 딸기, 버섯, 수박, 멜론, 무화과, 양벳

■ 소말리아 연방공화국

- 2016년 8월 10일부터 소말리아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소말리아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모든 규제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허가했다.

■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 2016년 8월 10일부터 나이지리아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유라시아 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나이지리아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모든 규제제품의 러시아 반입을 허가했다.

■ 부르키나파소

- 2016년 9월 28일부터 부르키나파소 원산지의 살구, 딸기, 배의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중지했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2016년 9월 28일부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원산지의 복숭아, 벵타, 포도의 재수출을 위한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중지했다.
- 2017년 1월 19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을 러시아에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시리아 아랍공화국

- 2016년 11월 2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시리아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시리아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우간다 공화국

- 2016년 11월 2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우간다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우간다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기니비사우 공화국

- 2016년 11월 28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기니비사우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기니비사우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

- 2016년 11월 28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아프가니스탄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아프가니스탄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산마리노 공화국

- 2016년 11월 28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산마리노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산마리노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말리 공화국

- 2016년 12월 6일부터 말리 원산지의 규제제품, 말리 공화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서신에 명시된 규제제품(즉, 땅콩, 참깨, 면화, 망고, 기장)에 대해서만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 적도기니 공화국

- 2016년 12월 14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적도기니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적도기니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부룬디 공화국

- 2017년 1월 16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국경의 러시아 구역에 위치한 검문소를 통해서만 부룬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한 부룬디 원산지의 식물위생위험이 높은 규제제품의 러시아 다이렉트 공급을 허가했다.

■ 서방 식품 금수 조치

- 2014년 8월 7일에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연방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구현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러시아 연방정부결의에 따라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원산지의 일부 식품과 농산물의 러시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 식품 금수 조치 도입 사유는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유럽연합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강경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유럽연합은 6월 25일부터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산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발효한 바 있고 화물운송업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금지 도입 등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재에는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시민과 러시아회사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가 원산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가 8월 7일부터 도입되었다. 2014년 8월 6일자 대통령령 №560에 규정되어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생산자들의 이해와 특수주민그룹의 이해를 손해 없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정부당국은 밝혔다.
- 러시아 연방정부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을 승인하였고, 수입금지대상이 되는 원산지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금지대상 품목은 1년간 러시아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CU HS코드	수입 금지 품목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0202	쇠고기(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0210 중에서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우유와 유제품
0701, 0702 00 000, 0703,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채소, 식용의 뿌리와 괴경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실과 견과류
1601 00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1901 90 110 0, 1901 90 910 0	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치즈와 커티지치즈를 포함한 조제식품
2106 90 920 0, 2106 90 980 4, 2106 90 980 5, 2106 90 980 9	조제식품(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우유함유제품)

- 러시아시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들과 어린이 식품은 이 제한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입금지 제품 목록 변경 및 확대
 -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변경 목록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가 8월 20일에 관련 결의서에 서명했다.

-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에서 반입이 금지된 연어와 브라운송어의 치어, 씨감자, 탈유당우유, 파종용 양파, 생물학적 활성첨가제와 비타민이 수입금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 금지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채소와 뿌리 중에서 씨감자, 씨에서 자란 알양파, 파종용 하이브리드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은 제외되었다.
- 우유와 유제품 중에서 탈유당우유와 탈유당유제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비타민-미네랄 복합제, 향미첨가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이 제재대상에서 해제되었다.
- 신규 결의서에는 활어 수입금지가 별도로 등록된다. 단, 대서양연어와 브라운송어의 치어 반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제3절

한국산 농산물 검역규정

1. 신선농산물 검역

가. 수출 가능품목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감자,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팔레놉시스(호접란), 난초, 국화,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화훼류 기타 : 튤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 버섯 및 화훼류 기타품목은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는 수출불가

나. 수출 불가품목

- 곡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접목선인장 포함)
※ 상기 품목 외는 수출가능 여부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실적 통계가 있는 품목도 없어 수출가능 여부는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2. 과실류 수출요건

가. 사과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사과 과신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나. 배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Numonia pyrivorella*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다. 복숭아, 자두, 살구

- 복숭아순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하는 지역산 과실이 남쪽 항구로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수입될 경우 : 입항지 또는 도착지에서 훈증소독

※ 관련 문의처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러시아 검역요건 담당부서 : T. 031-420-7671

라. 러시아 식물성산물 등록 신청업체 현황

- 현재 러시아로 식물성산물(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에 등록 신청을 한 한국 수출업체는 총 54개 업체이다.
- 신청 품목으로는 인삼, 홍삼, 홍삼 드링크, 사과, 딸기, 체리 토마토, 배, 버섯, 쌀, 라면, 파프리카, 멜론, 자두, 수박, 감, 유자차, 생강차, 블랙베리 차, 녹차, 딸기잼, 포도잼, 사과잼, 화훼류, 아스파라거스, 양파, 양배추, 새송이버섯, 당근, 김치, 오이 등이 있다.

3. 축산물 수출요건

가. 한국의 동물감염에 대한 제한조치 현황

- 2000년 - 구제역
- 2002년 - 구제역
- 2004년 - 조류 독감

나. 수입 제한 세부내역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살아있는 가금류, 부화할 수 있는 알, 가금육과 모든 종류의 가금생산물, 가금류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가금류 사양·도살·절단용 중고 장비	13-8-01/799	'04.1.23.
구제역 (FMD)	2010년 2월 11일부터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 모든 종류의 가축생산물(완제품, 원료,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도살해서 생긴 부산물 포함), 가축사양·도살·가공용 중고 장비, 동물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FS-GK-2/1204	'10.2.11.
	2014년 5월 30일부터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하지 않은 돼지피제품(HS코드 3502에 의거)과 번식용 및 고기용 돼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공급이 한시적으로 제한되었다.(*단,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No.317에 의해 승인된 수의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품에 요구되는 단일 수의(수의-위생)요건을 준수할 시에, 동물용 사료 생산에 이용되고 열처리한 피제품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러시아 연방 영토로 공급 가능하다.)	FS-AS-8/9066	'14.5.29



제한사유	제한품목	Instruction No.	일자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NoFS-GK-2/1204에 의해 도입된 한국에서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수입 제한은 화학적 및 미생물적 합성의 사료첨가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S-EN-7/18926	'14.11.3
	2004년 1월 23일자 지시 No.13-8-01/799, 2010년 2월 11일자 지시 FS-GK-2/1204, 2014년 5월 29일자 지시 FS-AS-8/9066, 2014년 11월 3일자 지시 FS-EN-7/18926에 의해 도입된 제한조치들은 비생산적인 동물(non-productive animal)용의 조제사료를 한국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반입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조제사료는 열처리(섭씨 70도 이상의 온도로 최소 20분)를 거친 것으로 소매포장된 것에 한한다.	FS-NV-8/3508	'15.3.6

다. 수입축산물 수의검역관련 인증

No.	인증 내역	승인일자	관리번호
1	Veterinary certificate for pork exported to the Russian Federation	'99.1.25.	
2	Veterinary certificate for fish and seafood (fishery products) and products of their processing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07	
3	Veterinary certificate for fatten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4	Veterinary certificate for breeding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5	Veterinary certificate for slaughter pigs expor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Russian Federation	'08.8.26.	FS-NV-2/8731 dd.29.08.2008

☐ 육류 및 육류제품 부문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 한국은 육류 및 육류제품 부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의 식용 설육 및 비계를 러시아로 수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 이전에 러시아 수출 허가를 받았던 모든 한국 업체들이 2010년 2월 11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출 중단된 상태이다.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활동유형	상태	관리번호
1	S 173, P 57	Daesang Farmsco Co., 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 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2	S 203, P 158	Korea Cold Storage Co.,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 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10년 2월 11일자 FS-GK-2/1204 from11.02.2010
3	P 357	Modern Co., Ltd.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 설육 및 비계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4	S 196, P 195	NACF Moguchon Kimje Meat Processing Plant	돼지고기, 돼지의 식용 설육 및 비계	돼지 도살, 절단, 돼지고기 보관	'10.2.11부터 한시적 제한	FS-GK-2/1204 from11.02.2010

※ 상기 업체 '한시적 제한' 상태

☐ 사료 및 사료첨가물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6410000-502-2009-0002	EreBon Co., Ltd	비생산적인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5.2.13부터 수입허가	FS-NV-8/2189 from13.02.2015
2	6300000-502-1987-0001	Je-Il Feed Ltd	비생산적인 관상용 동물, 조류, 어류용의 사료	'15.2.13부터 수입허가	FS-NV-8/2189 from13.02.2015
3	409-81-43675	ECOBIO INC.	사료 및 사료첨가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4	613-81-65943	H&F CO. LTD	사료 및 사료첨가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5	KRF-0031	OURHOME Co., Ltd.	어류사료분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6	KRF-0032	OURHOME Inc.	어류사료분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4. 수산물 수출요건

▣ 어류 및 해산물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9	ASIA COLD STORAGE CO., LTD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2	KRF-0029	BORIM LOGISTICS CO.,LTD. BUSAN COLD STORAGRE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3	384-16	COSIS Co.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4	54-1	Daesang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09.4.15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5	KRF-0001	DONGWON COLD STORAGE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6	KRF-0002	DONGYEONG COLD PLAZA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FS-EN-7/5845 from20.05.2013
7	KRS-0033	INSUNG GLOBAL CORPORATION	Fish and seafood	'15.1.27부터 수입허가	FS-EN-8/1020 from27.01.2015
8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Fish and seafood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from18.01.2017
9	KRF-0004	SAMJIN GLOBALNET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0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1	KRF-0006	TONG YOUNG FISHERIES Co., LTD	Fish and seafood	'14.9.22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2	KRF-0048	WandoAbalone Co., Ltd.	Fish and seafood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from05.07.2017
13	KRF-0008	WOO SHIN COLD STORAGE CO., LTD	Fish and seafood	'12.11.28부터 수입허가	FS-EN-7/15841 from28.11.2012
14	450-20	Wooil fisheries Co.,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15	160-18	Yusung mulsan co., Ltd	Fish and seafood	'09.5.1부터 수입허가	FS-NV-4/3316 from15.04.2009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어류 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어란으로 제조된 대용물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25	DONGRIM FOO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1	DONGWON F&B CO., 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4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5	KRF-0034	IS GLOBAL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7	KRF-00047	SAMJIN MULSAN Co., LTD	어류조제품 및 통조림, 철갑상어알 및 대용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갑각류·연체동물·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통조림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19	Dongpyo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25	DONGRIM FOO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1	DONGWON F&B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4	KRF-0034	IS GLOBAL CO.,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048	WandoAbalone Co., Ltd.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7	KRF-00042	YUSUNG MULSAN CO.,LTD GOSEONG FACTORY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 무척추동물 조제품 및 통조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활어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활어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17	TAEIL FOOD.,CO.LTD	활어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 냉동·냉장제품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F-0028	COLD STORAGE INTER-BURGO II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36	Deokhwa food.Co. Ltd	냉동·냉장제품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5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6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40	HAN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34	IS GLOBAL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S-0001	KUM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S-0002	KUM WOONG FISHERIES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5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6	KRF-0044	YOU WANG CO.,LTD	냉동·냉장제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2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린(철갑상어알, 연어알 제외)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어란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36	Deokhwa food.Co. Ltd	어란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연체동물(산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13	DAI ONE FOOD CO., 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연체동물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6	KRF-0010	EIYOH KOREA CO., LTD	연체동물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7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S-0003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S-0004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S-0007	INSUNG CORPORATION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34	IS GLOBAL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5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6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연체동물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7	KRF-0017	TAEIL FOOD.,CO.LTD	연체동물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8	KRF-0048	WandoAbalone Co., Ltd.	연체동물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 반가공품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3	DAI ONE FOOD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4	KRF-0025	DONGRIM FOO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11	DONGWON F&B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7	KRF-0010	EIYOH KOREA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18	HANSUNG FOODS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F-0034	IS GLOBAL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3	KRF-0032	OURHOME Inc.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5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16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8	KRF-0049	The Third Factory of Everblueseas Co., LTD	어류 반가공품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9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44	YOU WANG CO.,LTD	어류 반가공품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갑각류(산 것, 신선, 냉장, 냉동, 보일링)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S-0003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S-0007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34	IS GLOBAL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50	MOKYANG F1 CO., LTD	갑각류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6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갑각류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7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갑각류(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S-0003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S-0007	INSUNG CORPORATION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34	IS GLOBAL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갑각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냉동 어류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14	CENTRAL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28	COLD STORAGE INTER-BURGO II CO., 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13	DAI ONE FOOD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25	DONGRIM FOO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7	KRF-0011	DONGWON F&B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9	KRF-0040	HANNIL COLD STORAGE CO.,LTD. SECOND FACTORY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F-0005	HONGJIN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F-0006	HONGJIN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3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S-0003	IN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5	KRS-0004	IN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6	KRS-0007	INSUNG CORPORATION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7	KRF-0034	IS GLOB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8	KRS-0001	KUM PYEONG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9	KRS-0002	KUM WOONG FISHERIES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0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1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22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3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냉동 어류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24	KRF-0015	SNB INTERNATIONAL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5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6	KRF-0017	TAEIL FOOD.,CO.LTD	냉동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7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8	KRF-0044	YOU WANG CO.,LTD	냉동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신선 또는 냉장 어류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5	DONGRIM FOO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11	DONGWON F&B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34	IS GLOBAL CO.,LTD.	신선·냉장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5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6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7	KRF-0017	TAEIL FOOD.,CO.LTD	신선·냉장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훈제 어류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20	Bada Myeongga	건조·염장·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2	KRF-0005	C.K. GLOBAL CO.,LTD	건조·염장·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건조·염장·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36	Deokhwa food.Co. Ltd	건조·염장·훈제 어류	'17.8.23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7776
5	KRF-0010	EIYOH KOREA CO., LTD	건조·염장·훈제 어류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6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8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9	KRF-0034	IS GLOBAL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0	KRF-0043	SEA&TREASURE FOOD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12	KRF-0016	WOOIL FISHERIES CO.,LTD.	건조·염장· 훈제 어류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어류 식용 설육(냉장, 냉동)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번호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어류 식용 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25	DONGRIM FOOD	어류 식용 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3	KRF-0011	DONGWON F&B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4	KRS-0008	DONGWON FISHERIES CO.,LTD	어류 식용 설육	'17.6.21부터 한시적 제한	FS-NV-7/11612
5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F-0039	SAJO INDUSTRIES CO.,LTD.	어류 식용 설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9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7.7.5부터 수입허가	FS-KS-7/13623
10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어류 식용 설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1개 업체 '한시적 제한', 그 외 업체 '제한 없음' 상태

신선·냉장·냉동 어류피레트 및 기타 어육 허가받은 한국 업체 현황

No.	업체 넘버	업체명	품목	상태	관리번호
1	KRF-0005	C.K. GLOB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2	KRF-0041	CHEONG A GOOD FOOD CO.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3	KRF-0037	GEUM JEONG Seafood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4	KRF-0007	HEE CHANG TRADING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5	KRF-0046	IASS HOLDINGS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6	KRF-0034	IS GLOB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7	KRF-0038	MS DISTRI PARK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8	KRF-0012	SEYANG MULSAN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9	KRF-0035	Shin Hyun Marine Co., 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5.7.27부터 수입허가	FS-NV-8/12788
10	KRF-0015	SNB INTERNATIONAL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1	KRF-0003	SUNG JIN FISHERY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2	KRF-0017	TAEIL FOOD.,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7.1.18부터 수입허가	FS-NV-7/794
13	KRF-0045	YANGJI ENTERPRISE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14	KRF-0044	YOU WANG CO.,LTD	어류 피레트, 기타 어육	'16.9.14부터 수입허가	FS-EN-7/17360

※ 상기 업체 '제한 없음' 상태

- 동식물 검역국은 각 국가마다 품목별 수입허가여부 상태를 다섯 가지 색깔로 구분하고 있으며 녹색,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나뉜다.
- 녹색은 '제한 없음' 상태이며, 이는 현재 해당업체가 관리대상 상품을 아무런 금지나 부가적 부담 없이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노란색은 '실험실 관리 강화' 상태이며, 이는 수출은 가능하지만 각각의 수출상품 로트가 실험실 관리를 받기 위해 샘플 채취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 붉은색은 '한시적 제한' 상태이며, 이는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 보라색은 '인증 중단' 상태이며, 이는 해당 업체에서의 관리대상 상품 수출이 현재 수출국의 주무부처의 보고에 따라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
 - 파란색은 실험실 관리 강화 상태에서 샘플 채취가 완료되었지만 현재 실험실에서 샘플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4 장

관세 제도

▶ 제1절 관세 제도 일반

가. 개요

- 러시아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 공통관세율을 따르고 있고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통관 시에는 제품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나. 수입 관세

- 수입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 혼합형으로 부과된다.
- 기본 관세율은 4단계(5%, 10%, 15%, 20%)이며 평균관세율은 11%수준
- 고관세 품목으로는 설탕(40%), 담배(30%), 자동차(25%), 가금류(25%) 등
- 통관시 수입 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관세 부과기준은 HS 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 경제상품 코드이다.
 - 러시아는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방식을 상품분류코드로 채택하고 있어 그에 따라 모든 상품은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된다.
 - 관세동맹 출범으로 인해 201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대외 경제상품코드는 효력을 상실하고 관세동맹 대외 경제상품코드(CU HS코드)가 발효되었으며,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 경제상품코드(EAEU HS코드)로 명칭이 변경된다.

□ 또한 러시아는 수입대상국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의 기준에 따른 103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고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는 최혜국세율을 부과한다.

○ 단 CIS 회원국은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사탕, 알코올류, 담배 등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CIS 회원국 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예외조치가 적용된다.

구분	적용 관세율	비고
CIS 국가	면세	
최혜국 지위 국가	기본관세율	EU 회원국 포함 129개국
개발도상국	기본관세율의 75%	한국 포함 103개국
저개발국	면세	정부령 413, 414호
최혜국 비대상 국가	기본관세율의 200%	

○ 2017년 1월 13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반입 시에 특혜관세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원산지의 상품 목록을 승인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반입 시에 특혜관세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상품	
EAEU HS코드	품명
02 (0203, 0207 제외)	육과 식용 설육
03 (0305 제외)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철갑상어 및 연어류, 그 어란은 제외한다.)
04	유제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식물의 부분, 절화와 장식용 잎
07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및 멜론의 껍질
09	커피, 차, 마테, 또는 파라과이 차, 향신료
1006	쌀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2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및 곡물, 공업용 및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천연 락(lac),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 반입 시에 특혜관세가 제공되는 개발도상국 원산지 상품	
EAEU HS코드	품명
15 (1509, 1517 - 1522 00 제외)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및 식물성 납
16	육류,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801 00 000 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2 00 000 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
20 (2001 10 000 0, 2009 50, 2009 71, 2009 79 제외)	채소, 과일,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가공품
2103	소스 조제용 제품과 조제한 소스, 가미제 및 혼합조미료, 겨자의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 및 브로스, 수프 및 브로스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5 (2501 00 91, 2529 21 000 0, 2529 22 000 0 제외)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수입 관세율은 원료, 반가공품, 완제품 순으로 높아지나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 2001년 최고관세율을 기존 30%에서 20%~25%까지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했다.
- 러시아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지 공장용도의 설비,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2012년 8월 22일부로 러시아가 WTO에 정식 가입이 되면서 11%의 평균 수입 관세율을 2017년까지 7.8%로 낮출 예정이다.
- WTO 가입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었고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 관세동맹 산하의 규제기관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이 적용대상이다.

■ 수입가격의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 종량세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관세로 징수한다.

다. 소비세(EXCISE TAX)

-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 등

▣ 적용세율 : 20%~570%

▣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한다.

- 적용품목 :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용 벤진, 승용차 등
- 1998년 2월 18일부로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10~20% 인상되었다.
- 러시아 연방 조세법 제193조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소비세 대상상품들의 2018년도, 2019년도 소비세가 확정되었다.

품명	소비세 (% 또는 루블)		
	2017년	2018년	2019년
식품 또는 비식품 원료로 제조된 에틸알코올 (변성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원료, 포도증류주, 과일증류주, 코냑, 칼바도스, 위스키를 포함하며,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된 것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상품이 아닌 것에 한한다.)	107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107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107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알코올 함유 제품: 에틸알코올 용량이 9%를 초과하는 용액, 유화액, 현탁액 및 기타 유형의 액체 형태의 제품 (금속성 에어로졸 용기의 알코올 함유 향수 및 화장품, 금속성 에어로졸 용기의 알코올 함유 가정용 화학제품을 제외한다.)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에틸알코올 용량이 9% 이하인 알코올제품 (맥주, 맥주를 기저로 제조되는 음료,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사이다(cider), 페리, 메도부하(Medovukha), 식품 원료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과일증류주를 제외한다.)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418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에틸알코올 용량이 9%를 초과하는 알코올제품 (맥주, 와인, 과일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식품 원료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523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523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523루블 /소비세 대상상품에 함유된 에틸알코올 1L



품명	소비세 (% 또는 루블)		
	2017년	2018년	2019년
과일증류주를 제외한다.)			
와인(지리적 표시가 보호된 와인, 원산지명 보호 와인,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제외한다.), 과일와인, 식품 원료 및(또는) 알코올화된 포도즙 또는 다른 과일즙, 및(또는) 와인증류주 및(또는) 과일증류주에서 생산된 정류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음료	18루블 /1L	18루블 /1L	18루블 /1L
사이다(cider), 페리, 메도부하(Medovukha)	21루블 /1L	21루블 /1L	21루블 /1L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지리적 표시 보호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원산지명 보호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제외한다.)	36루블 /1L	36루블 /1L	36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0.5% 이하인 것)	0루블 /1L	0루블 /1L	0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0.5%를 초과하고 8.6% 이하인 것), 에틸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맥주를 기저로 제조된 음료	21루블 /1L	21루블 /1L	21루블 /1L
맥주(에틸알코올 용량이 8.6% 초과하는 것)	39루블 /1L	39루블 /1L	39루블 /1L
담배(파이프 담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워터파이프) (담배제품 생산용 원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제외한다.)	1kg당 2520루블	1kg당 2772루블	1kg당 3050루블
시가	1개당 171루블	1개당 188루블	1개당 207루블
시가릴로(꺾련), bidi, cretek	1000개당 2428루블	1000개당 2671루블	1000개당 2938루블
꺾련(cigarettes), 파피루스	1000개+최대소매 가의 14.5%당 1562루블 (단,1000개당 최소 2123루블)	1000개+최대소매 가의 14.5%당 1718루블 (단,1000개당 최소 2335루블)	1000개+최대소매 가의 14.5%당 1890루블 (단,1000개당 최소 2568루블)
가열방식으로 소비되는 담배(담배제품)	1kg당 4800루블	1kg당 5280루블	1kg당 5808루블

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18%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식료품, 어린이용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향후 부가세를 15%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인해 아직까지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적용세율 : 세관 신고가격의 18%,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10%

- 일부 기술연구용 장비, 외국원조에 관련된 수입품목, 외국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용으로 수입된 품목 등에는 부가세를 면제한다.
- 2002년 1월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던 의약품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제2절 관세 제도 변동사항

가.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 관세율 조정

▣ 유라시아경제연합 HS코드 및 통합관세율 개정

- 2015년 7월 1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일부 품목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관세율 및 통합대의 경제상품코드(EAEU HS코드)를 개정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으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 2015년 1월 EAEU 출범 이후 EAEU에 적용되는 관세율 등 조정 역할 수행
 - 회원국 관련 기관은 EEC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계, 수출입금지조치, 세이프가드 등 규제 공동 시행
-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있는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 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 주요 개정 내용 :
 - 2015년 9월 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 관세율 변경 : 어류, 낙농품, 새의 알, 기타의 산 식물, 채소류, 과실류, 쌀, 식물성기름, 당류와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주스 등
 - ※ 신규 식품 수입 관세율은 Kati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7.do?menuCode=895&articleseq=27&pageIndex=4&searchCondition=&searchKeyword=&contseq=&country_code=&item_seq=&item_seq2=&item_seq3=&bbsid=1
 - 2015년 12월 31일부터 일부 세부품목들의 수입 관세율 변경 : 일부 냉동 고등어와 땅콩 조제품 등

HS코드	품목	'15.8.31 이전	'15.9.1 이후	'15.12.31 이후
0303541000	SCOMBER SCOMBRUS 또는 SCOMBER JAPONICUS종의 고등어, 냉동	5%, 최소 0.03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0303549000	SCOMBER AUSTRALASICUS종의 고등어, 냉동	6%, 최소 0.036유로/kg	4%, 최소 0.026유로/kg	3%, 최소 0.02유로/kg
2008111000 2008119100 2008119600 2008119800	땅콩버터 기타 조제땅콩 볶은 땅콩 기타 땅콩(볶은 것 제외)	9.9%	7.3%	6%

▣ 일부 품목 수입 관세율 재조정

- 2015년 8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EAEU 통합관세율)을 재조정했다.
- ‘기타 산 식물’ 수입 관세율 조정
 - HS코드 0602904900과 0602909100으로 2015년 9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은 “5%”로 하향 조정했다.

HS코드	품목	'15.9.20 이전	'15.9.20 이후
0602904900	기타	15%	5%
0602909100	선인장류를 제외한 꽃봉오리 또는 꽃을 가진 현화식물, 온실용	15%	5%

- ‘사과주스’ 수입 관세율 조정
 - HS코드 2009712002와 2009791903으로 2015년 9월 20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율은 “10%로 하되 최소세율은 1리터당 0.05유로”로 하향 조정했다.

HS코드	품목	'15.9.20 이전	'15.9.20 ~'16.8.31
2009712002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설탕 첨가, 농축한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탱크·플렉시탱크에 담겨있는 것)	15%, 최소 0.07유로/리터	10%, 최소 0.05유로/리터
2009791903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67을 초과하는 것, 농축한 것, 가격이 순중량 100kg당 30유로를 초과하는 것, 용량 40kg 이하의 통·탱크·플렉시탱크에 담겨있는 것)	15%	10%, 최소 0.05유로/리터



○ ‘열대수종 목재’ 수입 관세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일부 열대수종 목재에 대한 EAEU 공통수입 관세율을 확정했다.
- 해당 품목은 HS코드 4408 39 850 9로, 2016년 6월 1일~2019년 5월 31일까지 수입 관세율 0%이다.
- 2016년 5월 31일까지 부과된 현행 제로관세율을 2019년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EAEU HS코드	품목	현행	제로관세율 연장
			'16.6.1~'19.5.31
4408 39 850 9	-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목재로 한정하며 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의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한 것을 제외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하지 않은 것으로서 두께가 1m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 쌀 관련 EAEU HS코드 및 공통관세율 개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에 대한 EAEU HS코드 및 공통관세율 개정 결정안을 승인했다.

HS코드	품명	변경사항
1006 30 670 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980 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삭제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서 삭제
1006 30 670	장폭비 3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670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른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 관세율 0% - 장폭비 3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한다.

HS코드	품명	변경사항
1006 30 670 9	기타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 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1006 30 980	장폭비 30이상(장립종 정미쌀, 반숙미가 아닌 것)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1006 30 980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해당 소호 부가해설 1에 따른다.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 관세율 0% - 장폭비 30이상의 장립종 정미쌀 포함 - 유라시아경제연합과 3자 간의 국제협약에 의해 할당관세(tariff quota) 부과 *전권기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을 시에 한한다.
1006 30 980 9	기타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에 포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수입 관세율 변경을 결정하는 민감품목 목록에 포함 - 수입 관세율 10%(최소 0.03유로/kg)

▣ 일부 농산품 수입 관세율 변경 예정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일부 농산품의 경우 한시적으로 인하된 수입 관세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브뤼셀 스프라우트는 현행 5%에서 이전 수입 관세율 13%로 되돌아갈 예정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 현행 제로관세율에서 5%로 변경될 것이다.
- 제로관세율 결정은 경제위기와 환율차로 인해 품귀현상 및 가격인상 위험이 있어서 2016년 3월에 채택되었다. 그 당시 피스타치오, 대추야자, 건포도는 5%에서 0%로, 브뤼셀 스프라우트는 13%에서 5%로 인하되었다. 이 결정은 2019년 5월말까지 유효하다.
- 2016년 유라시아경제연합 시장에 브뤼셀 스프라우트 주요 공급국은 폴란드, 코트디부아르이며, 피스타치오, 대추야자의 경우 이란, 건포도의 경우 터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이다. 2016년 제품 공급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 새 결정은 관보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발효될 예정이다. 단, 2018년 2월 1일 이전에는 발효되지 않는다.

HS코드	품목	현행(%)	변경(%)
0704 20 000 0	브뤼셀 스프라우트(방울양배추)	5	13
0802 51 000 0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5
0802 52 000 0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벗긴 것	0	5
0804 10 000 0	대추야자	0	5
0806 20 100 0	포도. 건조한 것, Korinka	0	5
0806 20 900 0	포도. 건조한 것, 기타	0	5

○ 코코아제품 수입 관세율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는 코코아제품의 수입 관세율-제로관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코코아제품은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하지 않은 것)(EAEU HS코드 1803 10 000 0), 코코아 버터, 코코아 지방(EAEU HS코드 1804 00 000 0)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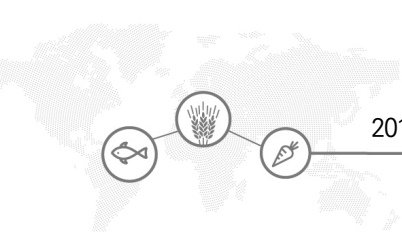
나. 2018년도 수입 관세할당(Tariff quota)

■ 2018년도 유라시아경제연합 수입 관세할당

- 2017년 8월 18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8년 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영역 반입 일부 농식품에 대한 관세할당량 확정
-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관세영역 반입 농식품에 관세할당 적용
 -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생산 및 반입 상품은 제외
 - 적용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일부 유청 및 조제유청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천 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쇠고기 (신선 또는 냉장)	0201 10 000 1, 0201 20 200 1, 0201 20 300 1, 0201 20 500 1, 0201 20 900 1, 0201 30 000 4	0.0	0.0	21.0	3.5	40.0
쇠고기(냉동)	0202 10 000 1, 0202 20 100 1, 0202 20 300 1, 0202 20 500 1, 0202 20 900 1, 0202 30 100 4, 0202 30 500 4, 0202 30 900 4					530.0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0203 11 100 1, 0203 11 900 1, 0203 12 110 1, 0203 12 190 1,	0.0	20.0	0.0	3.5	400.0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천 톤)				
		아르 메니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러시아
	0203 12 900 1, 0203 19 110 1, 0203 19 130 1, 0203 19 150 1, 0203 19 550 1, 0203 19 590 1, 0203 19 900 1, 0203 21 100 1, 0203 21 900 1, 0203 22 110 1, 0203 22 1 901, 0203 22 900 1, 0203 29 110 1, 0203 29 130 1, 0203 29 150 1, 0203 29 550 1, 0203 29 590 1, 0203 29 900 1					
돼지 잡육(trimming)	0203 29 550 2, 0203 29 900 2					30.0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냉동한 닭 도체의 절반 또는 사분도체로 안에 뼈있는 것, 냉동한 닭다 리 및 그 절단육으로 안 에 뼈있는 것	0207 14 200 1, 0207 14 600 1	0.0	0.0	128.0	58.0	250.0
닭의 뼈없는 육 (신선 또는 냉장)	0207 13 100 1		10.0	12.0		0.0
닭의 뼈없는 육(냉동)	0207 14 100 1					100.0
칠면조의 뼈없는 육 (신선 또는 냉장)	0207 26 100 1		0.9			0.0
칠면조의 뼈없는 육 (냉동)	0207 27 100 1					14.0
칠면조 도체의 뼈있는 부분 (냉동)	0207 27 300 1, 0207 27 400 1, 0207 27 600 1, 0207 27 700 1		0.0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제0105호의 가 금류의 것으로서 신 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것)	0207 11 100 1, 0207 11 300 1, 0207 11 900 1, 0207 12 100 1, 0207 12 900 1, 0207 13 200 1, 0207 13 300 1, 0207 13 400 1, 0207 13 500 1, 0207 13 600 1, 0207 13 700 1, 0207 13 910 1, 0207 13 990 1, 0207 14 300 1, 0207 14 400 1, 0207 14 500 1, 0207 14 700 1, 0207 14 910 1, 0207 14 990 1, 0207 24 100 1, 0207 24 900 1, 0207 25 100 1, 0207 25 900 1, 0207 26 200 1, 0207 26 300 1, 0207 26 400 1, 0207 26 500 1, 0207 26 600 1, 0207 26 700 1, 0207 26 800 1, 0207 26 910 1, 0207 26 990 1, 0207 27 200 1, 0207 27 500 1,	0.0	0.0			0.0



품명	EAEU HS코드	관세할당량 (단위: 천 톤)				
		아르 메니아	벨라루스	카자 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러시아
	0207 27 800 1, 0207 27 910 1, 0207 27 990 1, 0207 41 200 1, 0207 41 300 1, 0207 41 800 1, 0207 42 300 1, 0207 42 800 1, 0207 43 000 1, 0207 44 100 1, 0207 44 210 1, 0207 44 310 1, 0207 44 410 1, 0207 44 510 1, 0207 44 610 1, 0207 44 710 1, 0207 44 810 1, 0207 44 910 1, 0207 44 990 1, 0207 45 100 1, 0207 45 210 1, 0207 45 310 1, 0207 45 410 1, 0207 45 510 1, 0207 45 610 1, 0207 45 710 1, 0207 45 810 1, 0207 45 930 1, 0207 45 950 1, 0207 45 990 1, 0207 51 100 1, 0207 51 900 1, 0207 52 100 1, 0207 52 900 1, 0207 53 000 1, 0207 54 100 1, 0207 54 210 1, 0207 54 310 1, 0207 54 410 1, 0207 54 510 1, 0207 54 610 1, 0207 54 710 1, 0207 54 810 1, 0207 54 910 1, 0207 54 990 1, 0207 55 100 1, 0207 55 210 1, 0207 55 310 1, 0207 55 410 1, 0207 55 510 1, 0207 55 610 1, 0207 55 710 1, 0207 55 810 1, 0207 55 930 1, 0207 55 950 1, 0207 55 990 1, 0207 60 050 1, 0207 60 100 1, 0207 60 210 1, 0207 60 310 1, 0207 60 410 1, 0207 60 510 1, 0207 60 610 1, 0207 60 810 1, 0207 60 910 1, 0207 60 990 1					
유청과 조제유청의 일 부 종류 (분말, 입자 또는 기 타 고체상태)(설탕 또 는 기타 감미료를 추 가하지 않은 것)	0404 10 120 1, 0404 10 160 1	0.0	0.0	0.0	0.0	15.0

제 5 장

라벨링 제도

▶ 제1절 라벨링 제도 일반

1. 라벨링 및 제품표기사항

가. 식품표시제도

- ▣ 러시아의 식품 표준규정은 소비자용 패키지에 포장되어있는 자국 식료품과 수입상품에 적용이 되며, 러시아 지역에서 도·소매로 판매되고 있으며, 사회 급식을 담당하는 기업, 학교, 유치원, 진료소,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가표준위원회(GOSSTANDART)의 상품표기법(GOST R 51074-2003 ‘식품. 소비자를 위한 정보. 일반요건’, 2005.6.30)에 의거하여 모든 러시아의 수입제품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나. 상품설명서

- ▣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 제품명, 원산지,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설명서를 러시아어로 첨부해야 한다.
 - 해당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한다.
- ▣ 상품설명서에는 다음 8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특성 및 특징, 강제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주소

다. 제품라벨

■ 러시아는 소비자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라벨링의 요구조건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제품에 맞는 특정한 라벨이 무엇인지, (식품 첨가물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모든 조제약품들의 경우에서처럼) 추가적인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 러시아의 라벨링 관련 법규는 기존의 EU의 지침들을 따르고 있으며 기존의 유럽의 관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 기본 기재사항

- 제품명
- 제조업체(업체명, 국가, 법적 등록 주소)
- 제조업체의 상표(있을 시에)
- 제품의 순중량 혹은 양 혹은 수량
- 제품의 구성성분
- 제품의 영양가(칼로리, 단백질·지방·탄수화물·비타민·다량영양소·미량원소의 함량)
- 사용 용도와 방법(어린이 식품, 다이어트식품,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의 경우)
- 즉석섭취식품 조리법에 대한 권고사항(농축 및 반가공품 식품의 경우)
- 유효기간
- 식품의 보관 방법 및 보관기간
- 식품의 판매 기간
- 제조일과 포장일
- 제품 제조 시에 의거해서 만든 적용된 규범서류
-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GOST R 인증마크)

■ 추가 기재 사항

- 냉장(냉동)된 육류, 가금류, 내장, 완제품 등의 모든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진공포장 또는 가스충전포장의 경우에는 포장방식을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 완제품 통조림의 경우 최종 조리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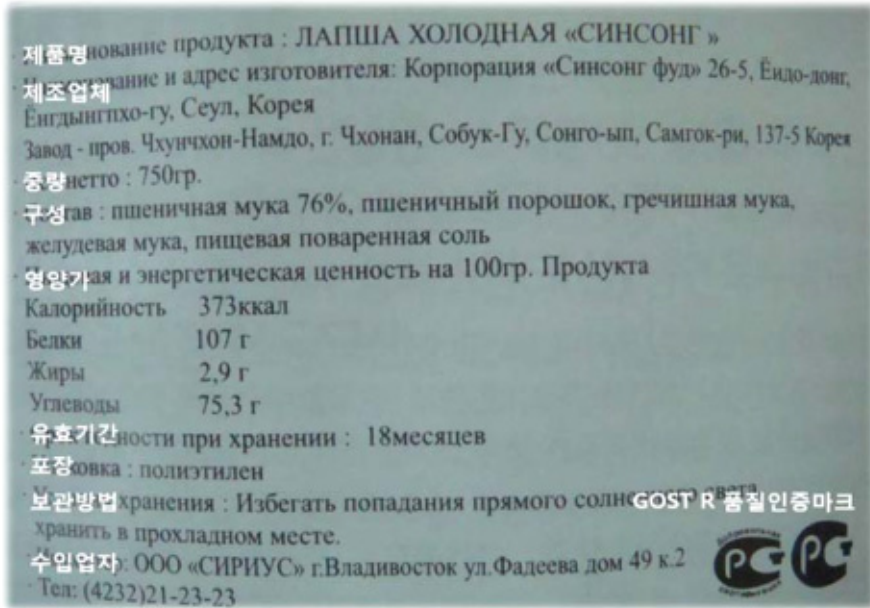
■ GOST R 51074-2003은 아래의 표시를 요구한다.

-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첨가물, 착향료, 비의도적 생성물질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원료를 함유하는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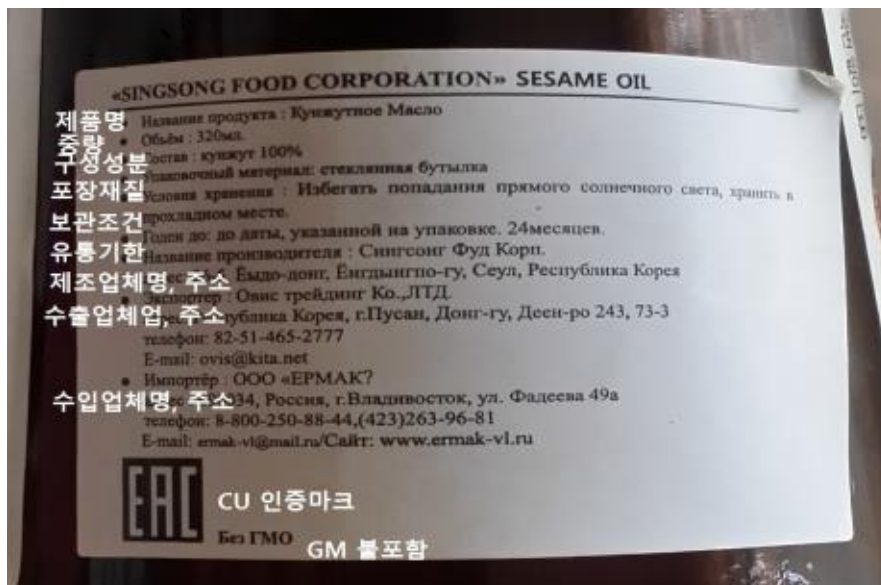
■ 유기농 통합규정

-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준 GOST R 57022-2016 ‘유기농제품. 자율인증 절차(Organic production. The procedure of voluntary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ion)’ 도입
 - 도입 목적 : 유기농제품에 자율인증에 대한 단일규정 정립
 - 현재 식품첨가물, 합성비료, GMO 미사용 제품 표시 라벨링 및 인증서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킴
- GOST R 57022-2016 라벨링은 해당 제품이 안전성 및 모든 필수 검사항목 통과를 인증하는 것이다.
- 본 기준은 유기농 생산, 라벨링, 제품관리에 대한 유기농제품 라벨링 및 유기농생산에 관한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No834/2007 이행절차 조항과 함께 2008년 9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No889/2008(2008년 9월 18일자 유럽연합 공식 통보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L 32-1999, REV. 1-2001)’,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기본 기준에 따라 개발되었다.
- 본 기준은 이전에 승인된 국가기준 GOST R 56104-2014 ‘유기식품. 용어와 정의’, GOST R 56508-2015 ‘유기농제품. 생산·보관·운송 규정’과 상호연관된다.

예시1. 구 라벨링



예시2. 현 라벨링



예시3. 현 라벨링



예시4. 현 라벨링





라. 영양성분표시

- GOST R 51074-2003은 국제표준을 준수하며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모든 특별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량표기 없이 나열 할 수 있다.
- 일일권장섭취량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한다.
 - 100g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또는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 한다.
 - 100g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 이상일 경우 표시해야한다.

마. GM(Genetically Modified; 유전자변형) 식품표시

- 러시아는 다음의 15개 GM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 콩 3종류, 옥수수 8종류, 사탕수수 1종류, 감자 2종류, 쌀 1종류
(자세한 내용은 2009년 포스트의 GAIN 생명공학 연례보고서 참조)
- GM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해당 내용을 러시아어로 표기해야한다.
 - GM 미생물이 직접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임"을 표시
 - 비활성 GM 미생물이 사용된 제품은 "GM 미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임"을 표시
- 단, GM 원료의 함량이 0.9% 미만일 경우는 자연혼입으로 간주되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식품 라벨링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22/2011) 개정
 - 식품 라벨링에 관한 기술규정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GMO 제품은 반드시 관련 정보("유전적으로 변형된 제품",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만든 제품"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를 포함해야 한다.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의 통합유통마크 옆에 "ГМО(GMO)"라는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 이 마크는 통합유통마크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이어야 한다.



제2절

품목별 라벨링 표기방법

1. 주류

- 주류제품에 대한 라벨요구사항은 연방법 171과 국가 표준 GOST R 51074-2003 및 GOST R 52194-2003에 표시되며 보드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가 적용대상이 된다.

- 모든 수입 제품의 대부분에 필요한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이 필요하다.
 - 모든 주류제품은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으로 활성화 된 식품첨가물, 비 전통적인 재료, 생명공학기술에서 파생 된 제품의 모든 구성요소,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 등을 표기해야한다.
 - 맥주 :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 함량(무알콜 맥주와 아로마와 맛이 첨가된 맥주는 제외), 에틸 알코올의 최소 비율, 병입 날짜, 기본 원료, 영양 구성
 - 와인 : 병입 시설, 병입날짜 또는 숙성날짜, 에틸알코올 비율, 당도(드라이와인 제외)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 음료 - 에틸 알코올 함량, 설탕 농도(설탕이 재료로 사용된 경우), 병입날짜, 구성 (맛과 제품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목록 포함),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제품의 유통기한

- 2007년 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경고가 과도한 음주의 건강 위험에 대한 라벨에 표시해야한다.



2. 육류 및 가공육

- ❑ 냉동 가공육 고기, 부산물, 소비자편의제품, 소시지 또는 육류 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으로 표시해야한다.
- ❑ 진공팩이나 MGM 가스팩으로 포장된 경우 가공육 고기, 소비자편의제품, 요리재료, 소시지, 고기 제품 등으로 표시해야한다.
- ❑ 캔 제품은 고기,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성분함량을 표시해야한다.

3. 과채류 및 감자

- ❑ 포장된 모든 신선 과채류와 감자는 제품명, 제조업체자명(법적 등록주소, 국가),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순중량 혹은 양, 품종, 상품품종(있을 시에), 제품가공법(필요할 시에), 홍보적 성격의 정보(필요할 시에), 수확일과 포장일, 온실재배여부, 보관법(필요할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 가공품(캔 제품 포함)은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된 제품의 비중(시럽, 마리네이드, 염수장으로 조리된 제품의 경우), 구성성분, 채소 혹은 과실의 비중(넥타 및 음료의 경우), 식품 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 활성 첨가물, 제품 영양가, 감미료 함량, 보관기간(건조된 베리, 과실, 채소, 감자의 경우) 등을 표시해야 한다.

4. 차, 커피, 차음료 및 커피음료

- ❑ 차와 커피의 명칭은 원산지로 보충될 수 있으며 입상차는 ‘입상’이라고 명칭가능
- ❑ 차, 커피, 차 및 커피제품 제조 시에 향미증진제가 사용된다면 향을 명칭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레몬향의 홍차)
- ❑ 차, 차음료, 커피음료의 경우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커피의 경우 보관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 진공포장일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 일회용 티백, 커피백, 차음료 및 커피음료 백은 제조업체명, 제조업체 상표(있을 시에), 제품명, 순중량, 품종(있을 시에), 적용된 규범서류를 표시해야 한다.

5. 식용 소금

- ❑ 제조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한다.(예를 들어, 증발소금, 암염, 침전소금)
- ❑ 제조업체(명칭, 국가, 법적등록주소), 제조일과 포장일, 품종, 순중량, 제분방법, 식품 첨가물, 적용된 규범서류, 적합성 인증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 포대 혹은 포대에 붙은 라벨에는 제품명, 순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 ❑ 요오드 첨가한 소금의 경우 첨가된 요오드의 형태, 요오드 함량, 일일권장량, 유효기간, 문구(유효기간이 지난 요오드 첨가한 소금은 일반식염으로 사용함이라는 문구) 등의 부가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6. 종자

- ❑ 소매유통 용도의 종자 패키지에 있는 라벨링에는 종자 판매자(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 허가된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입각한 식물명과 품종명, 품종품질과 파종품질에 대한 표준(기술요건) 표시, 로트 넘버, 패키지에 들어있는 종자의 수량(개) 혹은 무게(그램), 판매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 ❑ 패키지(팩)에 명시되어 있는 로트 넘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로트 넘버는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넘버와 일치해야 한다.
- ❑ 식물이 품종개량성과 국가등록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부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판매 및 사용이 허가된 품종에 관한 목록이다. 품종개량업자들이 만들고 품종테스트구역에서 생산력, 질병 및 해충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 받은 새로운 품종들이 매년 등록부에 올라가고 있다. 관련 정보는 러시아 연방 국가품종개량성과테스트 및 보호위원회 사이트(<http://www.gossort.com/>)에서 참조

7. 팜유함유제품

- 러시아 정부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 라벨링 규정을 변경할 계획
- 러시아 농업부는 관세동맹의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까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 현재 계획 중인 개정안 내용

 - 유라시아경제연합 내에서 팜유함유제품에 강제 라벨링 도입
 - 팜유함유제품 또는 팜유를 사용하여 제조된 유지방 대용물 함유제품은 라벨링에 표시해야 한다. 상표 또는 패키지 앞면에 “제품은 팜유를 함유하고 있음” 표기
 - 생산자들은 식물성유지와 기타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라벨링에다가 ‘유제품’ 및 ‘우유성분제품’이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성분에 팜유가 함유되어있는 상품들은 앞으로 ‘유제품’ 단어 사용 금지
 -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지방(비유지방 포함) 함량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큰 글꼴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상표 또는 패키지의 정보 적는 부분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 팜유 함유에 관한 정보 표기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의 굵은 활자로 기재해야 하며 상표 또는 패키지 앞면 총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제품성분 및 라벨링에 관한 기술규정 요구사항 위반 시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개정내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러시아행정위반법에 포함시킬 계획

8. 환원우유 및 우유음료

- 2015년 9월 2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33/2013)’에 명시되어있는 용어, 조항, 라벨링 요건에 관한 공식 해설 발표
- 환원우유(환원유, reconstituted milk), 우유음료(유음료, milk beverage)에 대한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다.

 - ‘환원우유’ 정의 : 농축유·응축유 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소비자 용기에 중량 포장된 유제품 또는 우유가공품 생산을 위한 원료(마시는 우유 제외)
 - ‘우유음료’ 정의 : 우유 및(또는) 우유성분 및(또는) 유제품으로 제조된 유제품 또는 우유성분제품을 의미하며, 농축유 및(또는) 응축유 및 (또는) 분유와 물로 제조된 것도 포함된다. 우유성분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그 밖의 유제품 또는 우유가 아닌 성분을 첨가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며, 우유단백질 함량이 2.6% 이상, 탈지분유 함량이 7.4% 이상인 것(유제품의 경우)
 - ‘건조우유가공품’ 정의 : 건조물질의 질량 비중이 90%에 이를 때까지 우유에서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우유가공제품
- 라벨링 요건에 따르면, 환원우유의 명칭을 만들 때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주원료를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어줘야 한다.

 - ‘분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분유 및 응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농축유로 제조된 환원우유’ 식으로 명명
 - 동일한 크기의 글꼴 사용

제3절 라벨링 사례

1. 2017년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가. 중국산 식품첨가물, 개고양이사료, 냉동콩치, 신선냉동어류

- 중국산 식품첨가물 collagen peptide의 라벨링에 러시아어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반송되었다.
- 중국산 개고양이 사료의 라벨링에 제조업체명과 업체번호가 미표기되어 반입 중단되었다.
- 중국산 냉동콩치의 라벨링에 제품 생산일이 미표기되어 실험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물 이동이 중단되었다.
- 중국산 신선냉동어류의 라벨링에 어류 저장 조건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박스에서 스페인어 문구가 적발되어 반송되었다.
- 2011년 12월 9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에 의해 승인된 관세동맹의 '식품 안전 기술규정(TR CU 021/2011)'과 '식품 라벨링 기술규정(TR CU 022/2011)' 요건에 따르면 라벨링에 러시아어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산 분유

- 사우디아라비아산 분유의 라벨링 정보에 러시아어 표기가 없어서 역류되었다.

다. 브라질산 치즈 및 육류제품

- 브라질산 치즈의 라벨링 정보에 러시아어 표기가 없어서 역류되었다.
- 브라질산 육류제품의 라벨링에 제3국 업체 명단에 없는 업체정보와 제품종류를 러시아어가 아닌 외국어로 표기하여 반입 금지되었다.

라. 호주산 꿀

- 호주산 꿀의 라벨링 정보에 러시아어 표기가 없어서 역류되었다.

마. 키르기스스탄산 꿀

- 키르기스스탄산 꿀 패키지에 라벨링이 부재하여 역류되었다.

바. 터키산 과실류, 벨라루스산 양배추

- 터키산 과실류와 벨라루스산 양배추의 패키지 라벨링에 신빙성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반송되었다.
- 러시아 식물검역규정에 따르면, 과실류 및 채소류의 각 패키지에는 제품명, 원산지, 수출업체 또는 재수출업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라벨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 베트남산 견어물

- 베트남산 견어물의 날개 패키지에 제조업체 정보가 다른 라벨링이 적발되어 화물 운송이 중단되고 샘플 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받게 된다.

아. 인도산 땅콩, 모로코산 블루베리

- 인도산 땅콩의 패키지 라벨링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적발되어 화물 통과 금지되었다.
- 모로코산 블루베리의 패키지 라벨링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적발되어 반송되었다.

자. 종자

- 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판매관련서류들의 부재, 판매기간 만료, 라벨링 위반 등이다. 종자 패키지에는 반드시 생산자 주소, 식물명과 품종, 로트 넘버, 판매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라벨링에 필수정보가 모두 다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 6 장

통관문제사례

▶ 제1절 통관문제사례

1. 2017년 검역 불합격 사례

- '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 내에서 검역 불합격된 수입산 식품의 문제 사례와 후속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주요 관련이슈

■ 식물병해충 · 잡초

- 규제대상인 식물성산물 상당수가 병해충, 잡초 검출로 인해 반입 금지, 폐기,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식물성산물 반입 시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검역대상(식물병해충·잡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생존력 있는 검역대상이 없어야 하고 수출국 식물위생증명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검역대상 검출 시에는 규제제품 반입 금지 또는 세관경유 통관 절차에 규제제품 배치 금지 또는 조건에 적합한 규제제품만 반입 허가 등의 결정을 내렸다.
- 2015년부터 러시아 검역대상(병해충·잡초) 목록이 발효 중이고 2017년 7월 1일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검역대상 목록이 발효되었으니 해당 목록을 숙지하여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농약 및 오염물질

- 기술규정에는 해당 품목별로 독소, 미코톡신, 벤조피렌, 방사성 핵종 및 해충에 대한 최대허용치가 규정되어 있다.

- 러시아에서 승인하고 있는 농약과 승인 농약별 허용 기준치들을 사전에 숙지, 사용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

- 최근 러시아에서는 유전자 변형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문제가 심의 중이므로 식품 원료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 곡물 및 곡물제품 패키지

- 패키지에 포장된 곡물 및 곡물 가공제품 반입 시에 패키지는 새것이어야 하고 통기성이 있어야 한다.
- 쌀, 팥콩 등 곡물 반입 시에 진공 패키지에 포장되어 있어 불합격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관련 서류

- 식품 수입 시 요구되는 관련 서류(식물위생증명서, 수의첨부서류 등)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 문서에 유효 기간이 있을 경우, 컨테이너 도착날짜보다 문서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하다.
- 제품 개별 패키지의 제품명/제품 HS코드/생산일/업체 등의 정보와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하다.
- 식품금수 조치로 인해 수입 금지된 제품들이 위조 식물위생증명서로 제3국을 통해 반입되는 사례들이 급증하면서 러시아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수출(재수출)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국(재수출국)의 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나. 월별 검역 불합격 사례

▣ 2017년에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는 아래와 같이 1건 검색되었다.

월	지역검역국	품목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5월	연해주	참치통조림	서류 검사 시 제출된 수의증명서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안검사 시 통조림통과 포장박스에 제품 제조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물 이동 중단, 로트는 블라디보스토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고 반송할 예정이다.

자료: 러시아 동식물 검역국, 전러시아 식물 검역센터



제2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러시아 연방 세관 Federal Customs Service
 - www.russian-customs.org
- 블라디보스톡 항만공사 The Commercial Port of Vladivostok
 - www.vmtp.ru
- 보스토치니 항만공사 Vostochny Port
 - www.vpnet.ru
-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공사 Port of St. Petersburg
 - www.pasp.ru
- 러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ussian Federation
 - <http://minzdrav.gov.ru>
- 러시아 농업부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www.mcx.ru
- 러시아 기술표준청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ng and Metrology; ROSSTANDART
 - <http://www.gost.ru/wps/portal/en>
 - 한국SGS : www.sgsgroup.kr
- 동식물 검역국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Rosselkhoz nadzor
 - http://www.fsvps.ru/fsvps/main.html?_language=en
- 소비자권익 보호 및 복지 감독국 Federal Service for Surveillanc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and Human Wellbeing; Rospotrebnadzor
 - <http://www.rospotrebnadzor.ru/en/>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USDA FAS GAIN Report
 - general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into Russia
 - <http://gain.fas.usda.gov>
- DHL Guide for DHL Express Dutiable Shipments to Moscow, Russia
 - http://www.dhl.com/en/express/shipping/customs_support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 www.qia.go.kr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ita.net, www.kotra.or.kr
- Kati 농수산물무역정보
 - www.kati.net

